

1037-07-0430-01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언론·노동편 (V) -



nis 국가정보원
www.nis.go.kr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언론·노동편 (V) -

정치

IV

사법

1. 서론
2. 정치인 사찰
3. 선거개입
4. 정당·국회활동 개입
5. 정치자금 통제
6. 결론

1. 서론
2. 재판에 대한 개입
3.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4.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
5.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6. 결론

언론

V

노동

1. 총론
2. 조사내용
3.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탄압실태
4. 결론

1. 서론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4. 결론

학원

VI

간첩

1. 개요
2. 조사결과
3. 결론

1. 총론
2.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검토
3.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4. 결론



1. 총론
2. 조사내용
3.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탄압실태
4. 결론

언론
통제

1. 서론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4. 결론

조사
결과



-
1. 총론
 2. 조사내용
 3.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탄압실태
 4. 결론
-

I. 총론

-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 9
 - 2. 조사의 범위 · 9
-

- 가. 조사대상 시기 / 9
- 나. 조사대상 사건 / 10

- 3. 조사방법 · 11
-

- 가. 자료수집 / 11
- 나. 면담조사 / 11
- 다. 기 타 / 12

II. 조사내용

- 1. 시대상황과 한국언론 · 12
-

- 가. 5·16 정변이후 언론통제 / 13
 - 나. 언론과 권력의 관계 / 17
 - 다. 시대별 대표적 통제 / 21
-

- 2.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개입 · 35
-

- 가. 정보기관과 언론통제 / 35
- 나.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방법 / 46

Ⅲ.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실태

1. 군사정권의 권력강화 및 안정에 이용된 사건 · 66

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매각사건 / 66

2. 필화(筆禍) 사건 · 66

가.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 / 66

나. 『사상계』 (五賊) 필화사건 / 78

다. 『다리』誌 필화사건 / 91

라. 『창조』誌 필화사건 / 99

마. 1987년 『신동아』·『월간조선』 제작 방해사건 / 104

3. 언론자유실천 및 언론노조결성 · 114

가. 동아일보 광고탄압 / 114

나. 동아일보기자 대량해직 / 129

다. 조선일보기자 대량해직 / 133

라. 동아·조선 투위관련 주요사건 / 136

마. 한국일보 노조운동 / 142

바. 중정의 기자협회 견제 / 150

사. 조선일보 광고탄압 / 157

4. 보도지침 · 165

- 가. 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 165
 - 나.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 185
 - 다. 외신에 대한 통제 / 196
 - 라. 중정 개입 보도통제 사례 / 208
-

5. 언론인 연행 및 사찰 · 228

- 가.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인 연행 / 228
- 나. 전두환 정권하의 언론인 연행 / 248
- 다. 신동아·월간조선 제작 방해사건 / 251
- 라. 문공부의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 / 253

IV. 결 론 · 256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과거 군사정권 시대 국가정보기관의 언론개입 및 통제사례를 조사하여 과거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어두웠던 행적을 반성·치유하고 국가정보원이 민주화 시대의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난 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주도된 일련의 언론개입 및 통제 등에 의하여 침해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국가 권력의 정당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바람직한 국가정보원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조사의 범위

가 조사대상 시기

정보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언론통제 및 개입사례에 대한 조사대상 시기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6월 10일 이후부터 1993년 2월 25일 발족한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5·16 이전 제 1·2 공화국 시기 수행된 언론통제 및 개입사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문민정부 수립이후의 시기도 조사대상 시기에 제외하고자 한다.

* 본 언론편 보고서 집필에는 외부 전문가로 김주연, 김서중, 박용규님이 참여하였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있는 언론탄압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그외 과거 군사정권의 전반적인 언론통제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탄압의 사례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정권 차원의 언론통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기관 역할 등을 한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4개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언론통제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으며 더불어 국정원에서 확인된 문건들을 토대로 언론통제 관련 사례들-연행, 사찰, 보도통제 등-을 기존자료와 함께 새로이 정리하였다.

《주요 조사대상 14개 사건》

순 번	발생연도	조사대상 사건명	사건성격
1	1962년	「부일장학회」 사건	
2	1965년	「경향신문」 강제매각사건	
3	1969년	『신동아』 借款 필화사건	필화사건
4	1970년	『사상계』 필화사건	〃
5	1971년	『다리』 誌 필화사건	〃
6	1973년	『창조』 誌 필화사건	〃
7	1973년	「조선일보」 광고탄압 사건	〃
8	1973년	DJ 납치사건 관련 언론 조정	〃
9	1974년	한국일보 언론노조 결성 방해사건	언론자유 노조운동
10	1974-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 강제해직사건	〃
11	〃	조선일보 기자 강제 해직사건	〃
12	70,80년대	보도지침 및 정보기관의 언론사 출입·상주	보도통제
13	1986년	평화의 댐 관련 언론 조정	〃
14	1987년	『신동아』·『월간조선』 제작방해 사건	〃

3 조사 방법

가 자료수집

- 1) 일반자료(논문, 단행본, 학술지 등)
- 2) 院 보관자료(의견서)
- 3) 관련기관 보관자료(국가기록원, 국회, 감사원·민보위 자료 등)

나 면담조사

1) 면담조사 목적

사건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공개자료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기관 언론통제 개입사건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관의 조사사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억제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면담대상자 선정

5·16 쿠데타 이후 정부 및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통제 실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면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및 개입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통제 과정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들을 면담하였다. 다만 면담대상자중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기술하였거나 면담거부 의사를 표명한 자 및 사망·병 등으로 면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제외하였다.

- 1) 워크숍 및 세미나
- 2) 강연회 및 학술회의
- 3) 외부전문가 諮問

* 외부 諮問은 언론학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II

조사내용

1

시대상황과 한국언론

한국사회는 근대를 향한 역사 전환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고, 대신 식민지배와 민족분단, 그리고 연이은 권위주의 통치를 겪어야 했다.¹⁾ 이러한 역사의 경험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원칙이 제대로 정착할 수는 없었다. 즉 독재 정권 시절을 경험한 우리는 다양한 통제를 겪어야 했다. 그 중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제에 국가정보기구도 일익을 담당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제인 국가정보기관이 언론을 왜,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제를 필요로 했던 정권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 정권이 행했던 통제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통제중 언론에 대한 통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필요하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언론 통제는 이러한 통제의 일부로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1) 안병욱, 「1970년대 유신체제와 반유신 민주화운동」,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p14.

1) 쿠데타와 정당성의 결여

5·16, 유신, 5·18로 이어지는 쿠데타는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당시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권의 통제, 특히 언론통제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가) 4·19 혁명을 뒤집은 5·16 쿠데타

4·19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반독재 투쟁이었다. 하지만 원조경제와 이에 따른 대미예속의 심화와 국내 경제의 파탄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야당과 학생, 지식인들로 대변되는 중산층 운동으로 폭발하여 4·19라는 항쟁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4·19의 배경을 5·16 군사정권은 경제건설과 정치안정을 내세우면서 쿠데타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4·19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학생의 주도하에 도시빈민 및 노동자의 가세로 4·19에 이르는 과정과, 두번째는 4·19 이후 학생 및 비관적 정치인의 퇴조와 기층 민중운동역량의 성장 및 일부 학생과 지식인의 이념적 성장 과정이며, 세 번째는 군부등장에 의한 5·16 쿠데타로의 귀결과정”²⁾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기층 민중운동과 혁신세력 등장으로 야기된 혼란은, 당시 미국의 군사원조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힘입어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인 군부로 하여금 국가재건을 자임하고

2) 김성환, 「4월 혁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 송건호·박현채 외,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p307.

나서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군부 특히 소장파 장교들은 그들의 쿠데타를 합리화 시켜주는 이념으로 사회질서의 정립 즉 반공주의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대중 동원의 이념은 경제 제일주의였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은 대중을 새로운 이념에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조건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교육, 언론, 문화기구의 적극적 동원이었다.

나) 維新의 필요성

외자도입을 통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면서 70년대 한국 경제는 외형적 성장을 이룩했다. 반면 외자도입에 의존한 산업구조는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제 세력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수출촉진에 따른 환율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권은 경제개발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불안정(외채상환의 부담에 따른 기업운영 곤란), 도농간 불균형 발전, 소외계층의 등장, 노동운동의 성장 등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³⁾

게다가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 방위부담을 줄이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는 데탕트 정책을 실시한 결과 미군철수가 시작되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⁴⁾ 반공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정권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박정희와 그 주변 인물들은 19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유지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절감하였다.⁵⁾ 그 선거는 자금과 행정력을 이용한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당시 민중의 저항은

3)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1991, pp192-195.

4) 남북대화는 박정희 정권의 선택이었다기 보다 당시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냉전체제의 붕괴 조짐의 반영이었다. 김영순, 「유신체제의 수립원인에 관한 연구」,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1988, pp53-54.

5) 안병욱, 앞 글, p18.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의지에 반비례해서 강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정권에는 위기였으며, 이러한 위기를 박 정권은 유신체제의 출범으로 대응했다.

다) 10·26사태이후 신군부 쿠데타

유신정권이 10·26사태로 무너지면서 각계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었지만 이 또한 신군부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신군부의 집권과정은 5·16 쿠데타와 달리 많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유신시절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당성 확보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언론의 통제가 필요했다.

또한 신군부는 1979-80년의 공황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요구의 일환으로 상승된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자생력을 잃은 기업정리 등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높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⁶⁾ 5공 정권에 의한 체제재생산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했다.

2) 이데올로기 통제의 강화

당시 민중의 요구에 반하여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분출하는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무마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 장치를 사용하였다.

물리적 통제방식의 사용과 더불어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방식이 사용되었다. 물리적 통제방식은 단순히 외압적 통제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물리적 통제 자체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절차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앞 책, pp236-237.

아울러 공교육, 다양한 사회교육, 그리고 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데올로기 강요는 직·간접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강요된 성격이었다.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에서 이루어진 반공교육, 새마을교육, 유신교육, 이데올로기교육(1980년대) 등은 민중의 사회의식을 구조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의식에 부응하여 언론의 내용 통제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통제는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동시에 관제 언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유신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동원 정책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동원 정책이 총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⁷⁾ 즉 첫째 법적인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사후적으로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혁당 사건이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총체적인 국가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경쟁과 분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인 이데올로기 세력의 정치운동은 탄압의 대상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 틀을 쓴 정치제도가 5공까지 이어진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동원체계에서 이탈하는 국민들에 대해 억압적 국가기구가 총체적으로 동원되었다. 넷째, 이데올로기 정책이 체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수준에서 수립·집행되었다. 정부의 한 부처의 역할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공간에서 추진하였던 새마을 운동, 다양한 형태의 반공 교육 그리고 언론이 결합하였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다른 형태의 이데올로기 동원 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였다. 언론은 모든 이데올로기 동원체제의 내용을

7) 김영수, 「유신체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동원 정책」,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pp232-237.

제공하고, 확산시키고, 합리화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나

언론과 권력의 관계

1) 정당화를 위한 언론통제의 필요성

정당성이 결여된 쿠데타 정권으로서는 그들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이 필요했고, 이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언론이었다.

5·16쿠데타 정권은 국가재건을 내세웠다. 즉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 경제적으로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고 여기에 대중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교육, 언론, 문화기구를 동원하였다.

유신 직전 경제적 위기는 심화되었고, 유신시기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다. 동시에 그 결과로 정권은 경제개발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불안정과 미군철수 및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공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정권에게는 정권 존립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밀려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총동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역시 언론이었다.

유신정권이 10·26사태로 무너진 후 신군부는 많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1979년 공황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요구의 일환으로 상승된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저항의 범위와 강도가 갈수록 확대되었다. 유신시대를 거쳐 온 기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따라서 언론통제는 신군부 등장 당시뿐만 아니라 통치기간 내내 지속해야 할 과제였다.

2) 권력에 대한 언론의 구조적 종속화

언론에 대한 다양한 통제가 작동하였지만 이러한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언론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변하면서 언론통제에 맞서고자 하는 저항력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5·16정변 이후 정부의 언론기업화 정책은 언론사주와 언론종사자의 이해관계 분리를 초래하였다. 1960년대 정부조치에 대한 언론사의 대응은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언론사주가 정부통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언론을 재정비하여 통제하려는 군사정부의 의도는 1962년 6월 28일 발표된 ‘최고회의 언론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기본방침 5개항과 세부방침 20개항으로 구성된 이 조치는 건전한 언론기업 육성과 언론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1963년 12월 12일 제정된 ‘신문 및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어 합법화 과정을 거쳤으며, 언론의 기업화를 유도하였다.

이 결과 언론산업 내의 갈등(경영진과 일선기자 사이의)은 증폭되었다. 1968년 신동아 사건이후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은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 초반과도 달라졌다고 평가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원의 언론사 출입, 기자 구속 등이 실행될 수 있었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유신정권 시기 언론은 긴급조치와 같은 조치로 인해 숨을 쉴 수도 없었지만 동아·조선 기자해직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탄압에 대한 언론사주의 적극적 수용은 언론의 성격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언론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언론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12.27)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되었으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언론은 언론자유수호투쟁을 전개해 맞서 나갔다. 그러나 유신체제가 출범한 이후(1972.12.27 유신헌법 공포기점) 정부는 유신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언론을 적극 통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유신헌법의 성격이 그러했던 만큼 정상적인 법에 의해 언론이 규제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는 없다. 1972년과 1973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언론 통폐합과정도 그러하다.⁸⁾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탄압(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이후 언론사의 적극적인 변신(신문협회를 통한 언론의 이해 극대화, 보도 지침에 대한 순응, 언론인 보수화)은 언론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은 신군부가 추진한 것이나 신군부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신군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언론을 정비하려는 의도와 기업화한 언론이 언론 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언론인 강제해직이다. 1980년 당시 해직 언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문헌들도 이를 서로 다르게 밝히고 있다. 정진석⁹⁾은 1980년 언론인 수와 1981년 언론인 수의 증감을 비교하여 언론인 1,917명이 해직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고 중앙지의 해직기자 수가 717명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¹⁰⁾ 또 다른 문헌은 신문 협회이사회에서 밝혀진 결과를 근거로 488명의 해직을 지적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그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군부(보안사 언론대책반)가 요구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가 해직 당했다는 사실¹²⁾이다. 언론 경영진은 신군부에 대항해서

8) 문종대, 「1970년대 신문산업의 자본축적 과정」, 김왕석·임동욱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아침, 1990, p209.

9) 정진석, 「80년대 한국언론의 공과」,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1989.10, p5.

10) 정진석, 「한국의 인쇄매체」, 『한국의 언론 II』, 한국언론연구원, 1992, p67.

11) 김민남 외,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 아침, 1993, p317.

언론을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 그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경영진과 일선 언론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언론정책에 의해 나타난 구조적 변화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구에 의한 통제제가 더욱 용이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통제정책과 더불어 소위 ‘당근’의 의미로 정권에 유리하도록 일선 언론인들을 관리했던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이와 함께 일선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에 유착함으로써 언론의 공익적 의무를 저버리고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사례들도 있었음은 언론계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군부통제가 종식됐다고 여겨지던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가 작성한 다음 문건은 과거 왜곡된 권언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각하, 조선일보 000 기자 격려 지시

○ 각하께서는 (생략)

- 영부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93년중 언론보도와 관련, 조선일보 정치부 000기자(민자당 출입)의 정부정책 등에 대한 긍정적 논조가 가장 돋보였다고 말씀하신 데 이어
- 000 수행실장에게 격려토록 지시하심에 따라 000실장이 도착 즉시 000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하의 뜻과 송년인사를 전했다 함.

○ 한편 000기자(00세)는

- 각하의 민자당 대표·대선후보 시절부터 직·간접 지지논조를 전개 하면서, 최00내무장관, 홍00총무수석 등 상도동 인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 000 부친상을 당했을 때 각하께서 친히 전화를 통해 조의를 표하셨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다 함.

12)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이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직 언론인의 약 60%는 신군부의 요구보다는 이를 기회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끼어 넣은 명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는 언론경영진과 언론종사자 간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가 아닌 갈등관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언론이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경영진의 이해와 언론종사자의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다양한 통제 유형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해왔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통제의 한 유형인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이 시기별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1) 5·16 쿠데타 이후 유신 이전 언론통제

5·16 쿠데타 이후 유신 이전까지 언론에 대한 통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화를 통한 언론의 구조적 성격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더불어서 개별 언론사에 대한 통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언론인에 대한 통제도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던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16 군사정권은 체제 재생산의 한 수단으로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다. 언론 장악에 사용했던 방식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등 다양한 방식들을 다 포괄하였다. 1960년대를 규정하는 언론에 대한 통제는 1961년 5월 16일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 11호, 1962년 6월 28일 언론정책 25개항, 동년 7월 30일 언론정책시행기준, 1963년 12월 12일 공포된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1964년 8월 5일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으로 이어지는 언론 전반에 관한 법제적 통제가 추진되었다. 또 1961년 7월 3일 공포된 ‘반공법’은 직접적으로 언론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소위 고무·찬양 조항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정부의 언론정책은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갖는 성격에 따라 경제적 성격의 조치와 정치적 성격의 조치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제도적 조건 아래 형성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기반으로 테러, 경제조치, 고소(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정보기관들의 직간접 개입이 이루어졌다.

가) 경제적 성격의 통제

흔히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는 언론통제에서 경제적 영향력 행사는 당근에 해당한다. 5·16 쿠데타 정권의 경제정책은 건전한 언론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가제였던(미군정법령 88호와 공보부령 제 1호가 계속 적용됨) 언론사 설립이 신고제(‘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1960년 7월 1일 법률 제 553호로 공포)로 바뀌면서 언론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사정권은 이를 정비하여 체제 순응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건전 언론육성을 명분으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언론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언론만이 생존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남은 언론기관들이 모두 생존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기업화는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것이 1962년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언론정책 25개항(기본방침 5개항, 세부방침 20개항)이다. 그 목적은 최고회의 공보담당 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책의 기본정신은 이른바 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기업으로서 성립시키도록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¹³⁾고 밝힌 것처럼 언론의 기업화를 위한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언론을 소수화함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언론의 기업화를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며,¹⁴⁾ 셋째는

13) 주동황,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80.

언론 내부에서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하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68년 신동아 사태에서 동아일보가 관련자뿐만 아니라 이사 주필 천관우를 비롯, 신동아 주간 홍승면, 신동아 부장 손세일 등을 해임하고 동아일보 발행인을 교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1950년대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러한 언론 경영진의 태도는 1975년 동아·조선 사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해직언론인 숫자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경영진이 앞장 서 언론 종사자들을 직장으로 부터 해직시켰다는 사실은 언론의 성향이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조치들이 등장한 이후 언론은 꾸준한 성장을 유지한다. 매출액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앙일간지들은 1962년에서 1970년 사이에 연평균 35-45%의 성장률을 기록해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의 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이 9.9%와 21.4%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¹⁵⁾

결국 정부의 언론기업화 시도는 언론에 대한 경제적 통제인 동시에 살아남은 언론에게는 경제적 특혜로 작용했다. 이것은 언론 현실에 자본의 이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권력의 언론 통제가 언론인의 희생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동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14) 1960년대 언론이 기업화하면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 비판을 자제하는 보도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진석(1985)은 특히 언론윤리위원회법 과동이 있는 이후로 “5·16 직후부터 1964년 말까지는 자주 일어났던 필화사건과 이로 인한 언론인 구속사건이 줄어들어는 반면, 기업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경영주들의 힘이 커지는 반면 기자는 샐러리맨화 했다는 자조 섞인 뉘그러기가 나오게 된 것은 그보다 몇 년 뒤의 일이지는 했지만 이 때부터 그러한 변모는 시작되고 있었다”(305쪽)고 서술하였다.

15) 주동황, 앞 논문, p100.

나) 정치적 성격의 통제와 법적 조치들

정치적 성격의 통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1961년 제정한 반공법과 민정 이양 이후 재개되는 언론의 대정부 비판을 통제하고자 1964년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다.

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 법률 제 643호로 공포된 후 1962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남시욱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해 7월 28일에는 동아일보 사설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를 문제삼아 집필자 황산덕을 구속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한국일보 기사 ‘가칭 사회노동당주비설’을 문제삼아 사장 장기영 등 4명을 구속하는 데 적용되었다. 물론 이 사건 당사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풀려났으나 언론의 비판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후에도 MBC 황용주 사장, 조선일보 이영희 기자, 대전방송국 편집부장 김정욱 등 언론인에 대해 반공법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¹⁶⁾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점증하는 언론의 대정부 비판을 억제하고자 1964년 6월 3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해제 조건으로 여야가 입법하기로 합의했던 두 개 법률 중 하나이다. 언론계는 이에 대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 언론인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따라 언론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오직 4개 언론사(동아, 조선, 경향, 대구매일)만이 반대하고 1개사(대한)가 기권하였다. 이 결과 정부 당국은 4개 언론사에 대해 제재조치¹⁷⁾를 행함으로써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정부는 9월 8일 유성회담을 통해 신문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제로 법 시행 유보를 결정하였다.¹⁸⁾

16) 박권상, 「군정 하의 신문」, 『신문평론』 27, 1968 가을, p27.

17) 전국의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4개지 구독을 금지시키고, 신문용지 구입 편의도 중단했다. 더불어 금융제제도 가하였다.

18) 김언호, 「언론과 권력의 갈등,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의 전개과정」, 『창작과 비평』,

다) 기타 조치들

3공화국의 대표적 언론통제의 하나는 언론사 강제매각이다. 5·16 쿠데타 과정에서 미움을 받았던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인수 과정을 통해 부산일보, 서울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강제 헌납토록 했던 사실 및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에 대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경매토록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3공화국 시절 또 하나 두드러진 언론통제 방식은 기자들에 대한 테러이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1년 남짓한 기간만해도 1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5년 7월 24일 군인난입사건을 보도한 한국일보 조모 기자, 경향신문 권도호 기자, 부산일보 최림조 기자 등의 피습사건, 1965년 9월 7일 동아일보 변권연 편집국장 대리 집 대문 폭파사건, 9월 8일 조동화 제작과장 납치 폭행사건 등 의혹사건이 발생했다.

또 하나는 각종 필화사건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산일보 연재물 「불길 속의 월남-내가 본 베트남 전선」이라는 월프레드 버체트 기자의 수기가 반공법에 저촉된다는 편집국장과의 외신부 기자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사건, 대구매일이 간첩이 묻어 둔 권총과 무전기를 학생들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을 기사화함으로써 간첩을 도주케 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 김창무, 편집부장 안덕환, 취재부 차장 이상관 기자 등 3명을 구속한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3공화국의 언론탄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양식은 기관원의 출입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계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이후 기관원의 출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민당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다른 언론들이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이유로 반박기사를 냈지만, 동아일보는 「신민당의 언론관」, 신아일보는 「언론에 압력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1977.9, p45.

2) 유신 시대

유신 시기 긴급조치에 의한 제도적 탄압이 강화되었고, 기관원에 의한 통제가 빈번해졌다.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는 유신시대 언론통제를 대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75년 5월 2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 학생들의 불법집회와 시위, 재산의 해외도피, 불법 해외이주, 공무원의 수뢰 및 회계 부조리 등을 엄단하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고 개정 및 폐기를 주장, 청원, 선동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하도록 했다. 5월 30일 언론기관의 긴급조치 위반여부를 심의할 보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6월 19일에는 전과관리법을 개정하여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1977년 8월 27일에는 긴급조치 9호에 저촉되는 11종의 출판물을 적발하여 배포 또는 판매를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대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한국경제신문 등 5개 일간지를 각종 부조리 혐의로 수사하고 문공부에 한국경제신문, 종합신문, 전광산업신보의 폐간을 건의했다. 문공부는 12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긴급조치를 적용, 폐간시키고 군경민보 등 월간지 18종의 등록을 취소했다.

긴급 조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통제 방식들이 사용되었다.

가) 언론통폐합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던 통제 수단은 언론통폐합을 통해 반정부 언론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통폐합 실태를 보면 우선 1972년에는 대구일보(3.30)와 대구경제일보(4.1)가

자진 폐간형식으로 문을 닫았고, 이어 지방지 통폐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3년 들어서는 한국경제일보(3.28), 동화통신(3.31), 대한일보(5.15) 등을 차례로 폐간하였다. 이는 중앙지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진폐간 형식을 띠었다.

문제는 지방지의 통폐합 과정이다. 정부는 1도 1사 원칙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언론사 통폐합을 유도해 나갔다. 통폐합의 결과 1도 1사 주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걸쳐 많은 지방지가 사라져 실제로 1도 1사 주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단지 14개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독점체제를 구축해주는 대신, 비판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었다. 통폐합 과정에서 살아남은 언론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 순응하는 수순을 밟아 나갔다.

<표 2 > 1973년의 언론통폐합

매체명	시행일	내용	이유
한국경제일보	3. 28	폐간	경영난
동화통신	4. 30	폐간	재정난
대한일보	5. 15	폐간	일신상의 이유
대전일보	5. 25	2사 통합	충남일보로 개제
중도일보			
호남매일	5. 30	폐간	경영 상의 이유
전북일보	6. 1	3사통합	전북일보로 개제
전북매일			
호남일보			
AK뉴스	6. 30	폐간	불명
경기일보	9. 1	3사 통합	경기신문으로 개제
경기매일			
연합신문			

* 자료 : 한국신문협회, 1982, pp372-373, 한국신문편집인협회, p96.

나)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동아·조선 기자 해직

1975년 동아일보에서는 163명이 해직되고, 이 중 134명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33명의 기자가 해직당하고 1명이 재입사해서 결국 32명이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한바 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2년에 이어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소재 신문방송 및 각 지역신문, 방송들로 확대되었다.¹⁹⁾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광고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이미 기업화하여 광고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진 언론으로서는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독자들의 광고가 들어올 때 투쟁에 호의적이었던 경영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은 언론기업 경영진과 기자 등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통제효과를 낼 수 있었다.²⁰⁾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을 기업화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경제적 통제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이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 언론자유수호투쟁에 앞장섰던 몇몇 기자가 1974년 2월에 일반적으로 발령난 후 언론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하였다.

다) 프레스카드제 도입

프레스카드제의 도입은 명분상으로는 사이버 언론을 줄이고, 기자 임금의

19) 김민남 외,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93, p355.

20) 김진홍, 『언론통제의 정치학』, 『홍성신서 69』, 홍성사, 1981, p91.

현실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웠다. 1970년대 들어서 사이버 기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기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각 언론사에 임금현실화를 실행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기자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1970년의 차관 도입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신문산업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신문산업은 국가에서 실시한 프레스카드 발급을 기회로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전체기자의 38%에 해당하는 1,920명을 해고하였다. 결국 국가의 언론통제수단인 프레스카드 발급은 한국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신문기자의 자격, 취재자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화 과정을 통해 순치된 사주인 발행인들은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1971년 12월 17일 ‘언론자유에 관한 결정사항’을 채택하여 자진해서 결의하는 형식으로 지지하였다.²¹⁾ 프레스카드제는 1973년 3월 7일 행정부 각 처의 기자실을 줄이고, 출입기자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입기자대책’에 따라 완성되었다.

이후 1973년 7월 4일에는 그 동안 주간으로 발행해온 기자협회보를 문공부가 월간으로 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 회보는 1964년 11월 10일 월간으로 창간했으나 1968년 8월 3일 이후 주간으로 발행했는데 이를 환원 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자들의 발언 기회를 봉쇄하고자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라) 보도지침

보도지침은 5공화국 시절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시절 계속 하달되었다. 긴급조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던 유신정권도 언론사 장악이 유신

21)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p174.

정권 정착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내용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또 유신정권 시절에는 언론의 내용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1973년 10월 19일에는 당시 문공부 장관 이원경이 각 신문사의 편집 국장과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불러 1) 데모·연좌·퇴학처분·휴강 등 학원내의 움직임과 관련 된 내용은 당분간 일체 보도를 삼가고 2)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 나왔을 때는 1단 정도로 작게 취급하며 3) 월남사태를 크게 하지 말고 4) 연탄 문제 등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는 되도록 작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²²⁾

마) 물리적 통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 그 저항에 대한 다양한 통제가 다시 실행되는 악순환이 있었던 시절이 유신 시절이다. 그 중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통제도 있었다. 이 과정에 취재 방해, 폭행, 구속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표 14> 국가의 기자노동자의 노동과정 방해 현황

연도	임의동행	연행	폭행	취재방해	구속	기타
70		2		1		
71	1	17	7	35		
72	11	2			1	
73		2				
74		6	7	1	4	
75		2		1	2	
76-79		2	14			폭행은 79년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20년』, 1982, pp714-747 재구성, 문종대,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p203 재인용

22) 김언호, 「르브 자유언론운동」, 『신동아』, 1975 3월호, p80.

유신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언론인에 대한 대부분의 폭행 주체는 주로 경찰이나 군인이었다. 폭행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9년 8월 11일 기자 15명에 대한 폭행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집단폭행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회사 여공들의 강제해산을 취재하던 기자 15명에게 경찰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기자들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들이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다.

1974년 접어들어서는 유신정권에 의한 언론인 연행사건이 빈번해졌다. 합동통신의 기자가 지방 병무행정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중앙일보 기자가 5월 3일 박영복에 관한 부정 대부사건을 보도했다가 구속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향, 동아, 조선, 동아방송 기자들이 수차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을 풍자한 시사만화가도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1974년 9월에는 특권 상류층 여성들 다수가 보석 밀수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또한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기사화되지 못했다.

유신정권의 개입은 기자 협회장 선거에서도 이루어졌다. 1974년 9월 한국기자협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의 각 신문사 발행인들이 서울소재 기자는 출마를 못하도록 결의하여 사장과 기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언론에 대한 사찰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기관원이 상주하다시피 할 정도로 출입하였다. 기관원들은 출입하면서 직접 내용에 간섭하여 기사를 바꾸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실천운동을 펴면서 기관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을 써붙이기도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언론인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국내 언론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외신 기자들의 경우도, 1973년 8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지국이 폐쇄되고 특파원은 추방되었으며 이어 1974년에 2월 4일에는 아사히 신문의 국내 수입허가도 취소되었다.

3) 5공 정권 이후

5공 정권 시기의 언론통제는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신군부의 언론통제 과정에는 이전 정권과 달리 통폐합 이후 살아남은 다수의 언론 경영진들의 호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당근 정책이 실행되었다.

5공화국 시절 언론통제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는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이고 둘째는 언론기본법의 제정이며 마지막으로 홍보조정실(후에 홍보정책실)의 보도지침 등이다.

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은 신군부가 추진한 것이지만 신군부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신군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언론을 정비하려는 의도와 기업화한 언론이 언론 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보안사에서 요구한 숫자보다 더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 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통폐합의 경우도 신군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기보다는 언론 쪽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다. 언론통폐합의 시나리오가 담긴 ‘건전언론육성종합 방안보고’에는 언론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전문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재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종합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언론사에서 했음을 지적하였고, 신아일보 발행인이었던 장기봉은 조선일보 방우영이 신문정비를 촉구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는 70년대말 기업화된 언론이 출혈적 신문판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인상이라는 경영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동아·중앙일보의 경우에도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매출액은 증가하나 매출 순이익율은 감소했다. 당시 신문으로서는 당면과제가 경영 합리화였다고 볼 수 있다.

언론통폐합의 결과 중앙 일간지의 경우 6개 종합지, 2개 경제지, 2개 영자지 그리고 1개 스포츠 신문만이 남게 된다. 지방지는 1도 1사 원칙을 내세웠다. 정권의 측면에서 보면 저항하는 언론 대신 순응하는 언론, 타율적 협조대신 자율적 협조를 하는 언론을 만들자는 의도가 중요했다.²³⁾ 그런데 언론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언론 통폐합의 결과 잔존하는 언론은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동시에 흡수통합으로 인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나) 언론기본법

1980년의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은 언론구조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하고(3조), 시설기준 조항(21조)을 유지하며, 발행인의 결격 사유(16조)·등록취소 조항(24조)을 강화하는 등 언론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제정되었다.

훗날 밝혀진 건전언론 종합육성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타율적이고 강압적 협조를 하고 있는 언론 상황을 자발적 협조의 상황으로 바꾸자는 데 언론기본법 제정의 주안점이 있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언론관련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언론기관의 겸영을 금지한다. 셋째, 언론 유관기관을 설립하여 언론을 측면 통제한다.²⁴⁾ 넷째, 문공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3) 유재천, 「권위주의에서 자율과 조정으로 - 80년대 언론정책」, 『사상』, 1991 가을, 46쪽에서 유재천은 5공화국 시절 언론정책의 특징을 첫째, 정부가 시혜자로서 언론의 조정기관으로 등장한 점 둘째, 사실상의 국영방송인 공영방송제도를 실시한 점 셋째, 지방뉴스 취재를 일원화한 점 넷째, 체제 순응력을 지니고 친정부적인 언론인의 양성을 시도한 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24) 김해식, 「1960년대 이후 한국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국가, 자본, 언론 자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p155.

다) 보도지침

5공 정권은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언론을 제도적으로 장악했음에도 1981년 1월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만들어 일일보도내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홍보조정실은 ‘언론기관의 보도협조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분 아래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보도지침’을 통해서 기사편집 영역에 개입하였다. 보도지침은 홍보조정실이 매일 각 언론기관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었다. 훗날 홍보조정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았으며, 군과 안기부가 협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 통제의 의미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인 사회통제는 우리나라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3공화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들은 쿠데타 또는 친위쿠데타 형식으로 정권을 잡거나 연장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했다.

정당성 결핍을 감추기 위해 언론장악은 중요했다. 제도적으로 언론을 정비하고, 언론을 동조자로 만드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전형적인 언론정책이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제도적으로는 순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인 비판·감시·견제 기능은 언론인들을 끊임없이 자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으로서의 제도적인 통제 못지않게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 때 다양한 권력기구가 동원된다. 그 중에서도 국가 정보기구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그 권력의 크기와 합법적 틀을 벗어나는 권력의 행사방식이 권위적 통제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구에 의한 통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변질 즉, 경영진의 이탈, 권언유착 언론인의 양산 등 제반 조건이 갖추어질 때이다.

2)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개입

가 | 정보기관과 언론통제

1) 정보기관과 언론과의 관계

정보기관의 역할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즉 정보기관은 일차적으로는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방첩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은 국익과 직결된 경제·산업·통상·과학기술·환경 관련 정보수집·분석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정 책임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자 역할도 할 수 있다.²⁵⁾

정보기관과 언론의 관계는 대체로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눌 수 있다.²⁶⁾ 미국에서는 언론이 CIA의 비밀공작 계획도 사전에 보도했을 정도로 국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 정보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유럽 국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언론의 취재 대상에서 빗겨나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정보기관이 국내정치 개입이나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탄압을 저질러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당연히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탄압하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부 국가들에서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다.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는 자신들을 비판하면 그곳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언론에 실리게 하거나, 외국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영국 언론이 그것을 다시 다루도록 하는 방식을

25) 임준태, 「한국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호, 2006, pp378-41.

26) 김재홍, 「국가 정보기관과 언론의 관계」, 『신문과 방송』 1998년 7월호, pp112-117.

사용한 적이 있었다.²⁷⁾ 독일의 경우에도 분단상태였던 70년대에 정보 기관인 BND가 언론인들의 신변자료와 기사를 수집·분석해, 이를 토대로 언론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한 바가 있다.²⁸⁾ 즉 언론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하기도 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리한 여론의 조성을 위해 간혹 언론을 간접적으로 이용했을 뿐 정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탄압하지는 않았다.

제 3세계의 경우 군사정권은 언론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만큼,²⁹⁾ 이런 나라들의 정보기관들도 언론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보도는 일체 금지시키는 한편 언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 우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정보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금지시키면서, 언론을 통제하였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는 중앙정보부(뒤의 안기부, 국정원), 군의 보안사(뒤의 기무사), 경찰의 정보기관 등을 들 수 있다.³⁰⁾ 이러한 정보 기관들은 군사정권 시절 본연의 역할보다 정권의 유지를 위한 역할에 더 치중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을 위해 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넘어서서 국정전반의 조정 역할까지 하려고 하였다. 즉, 정보기관들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정보기관은 집권 세력의 의사에 반하는 여론형성을 막고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27) 폴 포트·조너단 블로흐, 이주영 역,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창비, 2005, pp162-163.

28) 송태수, 「독일판 조갑제 파문: 「언더커버」의 충격고발」, 『월간 말』 1999년 2월호, pp102-103.

29) 엘리자베스 폭스, 김진홍 역, 『제3 세계의 언론과 정치』, 전예원, 1992, pp49-63.

30) 한국의 정보보안기관으로 국가정보원 외에 경찰청의 정보국·보안국·외사관리관실,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합참정보본부, 검찰청 공안부를 드는 연구자도 있다. 임준태, 앞의 글, p385.

특히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961년 6월 10일에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처음부터 언론 통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사정권은 정당성의 부족을 여론 조작으로 보상받기 위해 언론 동원이 절실히 필요했고 군사정권 기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때로는 언론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언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중앙정보부는 창설 직후부터 언론의 취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언론이 자신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단순히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언론보도 내용을 직접 지시하고 강제하는 양상까지 보였다. 중앙정보부 같은 정보기관이 언론 활동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언론을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실상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공작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권 기간 내내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활동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 놓은 채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였다. 중앙정보부나 그 뒤를 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의회나 언론 등의 통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며,³¹⁾ 오직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 결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다루는 언론통제 및 개입사건들이다.

2) 정보기관에 의한 언론통제의 효율성

중앙정보부는 창설 초기부터 언론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주로 정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사후 통제를 실시했다. 즉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연행하여 취재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언론인을 구속시켰다.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언론인들에게 일종의 위협 효과(chilling effect)를 낳기도 했다. 정보기관이 지니는 위압적 상징성은 언론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중앙정보부가 자리하고 있던

31) 이계수,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4호, 2003, pp247-278.

‘남산’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인들이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한 언론 통제는 처음부터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보부의 언론인 연행은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었다. 불법 연행이 수시로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중앙정보부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형식적인 근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³²⁾ 단순한 정보기관에 그쳤던 것이 아니고 수사권을 지닌 경찰과 같은 기능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언론통제는 매우 강력하고도 효율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언론의 취재보도 영역에 개입하고 통제를 가했던 것이다.

이렇듯 군사정권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언론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데는 박정희의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했다.³³⁾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64년에 ‘한일굴욕외교’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³⁴⁾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이 학생시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언론 규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시혜성 보류’로 귀결되면서, 언론계로서는 “싸움엔 이기고도 결과는 패배”한 셈이 되었다.³⁵⁾

박정희 정권은 ‘언론윤리위원회법 과동’ 이후 굳이 언론통제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도 언론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내에 ‘언론담당조정반’을 설치하라는 특명을 내렸다.³⁶⁾ 1964년 말 이후 중앙정보부가 언론통제에 있어서

32) 곽노현,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민주법학』 12호, 1997, pp330-347.

33) 정진석, 『한국현대언론사론』, 전예원, 1985, pp303-304.

34) 김해식, 『한국 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pp109-117.

35)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pp139-144.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실제로 1965년에 들어서면서 언론통제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주요 일간지에 대한 논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수사상 필요’ 목적이었으나 1965.1.1부터 1966.4.30까지 조선일보의 논조를 분석한 문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당국에서 수사상 필요하오니 1965.1.1부터 현재까지의 조선일보 사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등 제 문제에 관한 기사 및 논평 등에 관하여 그 논조를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1966.5.2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³⁷⁾

이러한 협조요청에 의해 해당국은 1965.1.1-4.30, 1965.5.1-12.31, 1966.1.1-6.30 세 기간으로 나눠 논조분석을 한 뒤, 이를 취합해 중요 논조분석 항목에 대한 관련기사 건수를 다음 표와 같이 보고했다.³⁸⁾

구분	항 목	건 수
1	정부 및 여당의 정책 비판	120건
2	민심을 선동한 기사	182건
3	야당의 주장을 선전한 기사	52건
4	공무원의 부정부패 규탄기사	105건
5	사회악의 범죄와 OO을 비난한 기사	71건
6	좌익찬양의 혐의 기사	37건
7	반미적인 기사	4건
8	반일적인 기사 (주로 한일협정 반대)	61건
9	국군과월 반대기사	6건
10	국토통일에 관한 기사	4건
계		642건

36) 김경재, 『혁명과 우상 : 김형욱 회고록』, 전예원, 1991, p279.

37)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논조에 대한 판단의뢰」

38)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중요논조분석 自 1965.1.1 至 1966.6.30」

10개항의 ‘중요논조분석 항목’을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떤 종류의 기사를 붙은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965.1.1- 1966.6.30 기간의 논조를 분석했던 다음 표를 볼 때, 언론 분석 초기부터 작업이 매우 세부적으로 진행 됐음도 확인된다.

《내 용 별 취 급 비 율³⁹⁾》

내용		직접적 반정부 당 비방	야당주장 및 정부공격	야당 선동	부정 부패	사회악 일반범죄	물가요금 공납금 문제	민심자극 사회불안 조성	소 계
보 도 기 사	1면톱	2	17	3				2	24
	1면	5	10	12	3	2	1	2	35
	2면	2	2				12		16
	3면톱	5			13	4	2	3	27
	3면	3			18	29	5	9	64
사실		18	5	7	7	4	4	4	49
논평		5	3	2	9	3	4	3	29
기획기사		3	2		8	3	2	6	24
논단		5	2		12	3	2		24
가십,단평		12	8	7	9	7	4	7	54
만화		15	3		13	11	5	8	55
계		75 (19%)	52 (13%)	31 (8%)	92 (23%)	66 (16%)	41 (10%)	44 (11%)	401 (100%)

한편, 1965.1.1-1966.6.30까지 논조 분석했던 보고서의 ‘총평’에 다음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 일간지에 대한 논조 분석도 했음을 확인하였다.

39)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중요논조분석 自 1965.1.1 至 1966.6.30」

가. 경향, 동아 등에 비하여 조선일보의 논조 및 취재편집내용은 비교적 온건하나 한일회담 가조인을 전후한 무렵부터는 집중적으로 反(韓)日(회담)적인 논조 및 대민 선동적인 논란을 주제로 한 취재에 있어서 경향, 동아에 못지않은 과장 보도 내지는 선동적 저의를 노출하고 있다.⁴⁰⁾

「조선일보 논조분석」 보고서를 어떤 용도로 수사에 활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동 보고서의 ‘판단서’ 내용은 중앙정보부의 對언론관과 이후 조선일보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정책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목 : 조선일보 기사분석

분석판단 : 1965.1.1일부터 1966.6.30일까지 18개월간의 본지에 게재된 중요 기사논조를 분석한 바, 別欄의 통계숫자와 여히 그 대부분이 정부 및 여당의 시정방침을 비난하는 반정부적인 기사로서 민심의 선동, 공무원의 부정부패상을 필요이상으로 선전 선동하여 공정을 기해야 될 신문의 사명을 망각하고 고의로 정부와 여당을 궁지에 빠뜨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시키고, 때로는 중공의 원폭실험 등을 대서특필한 것은 贊共의 혐의도 不無하므로 이를 국가보안법 제4조(선동선전), 반공법 4조(찬양고무) 또는 특별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허위선전유포)을 적용 처벌할 것도 고려해 보았으나, 거개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발생 혹은 당국이 발표한 기사이거나 외신을 통한 보도일 뿐 아니라 표현 또한 직접적이 아니고 교묘한 우회적인 기재방식을 취하여 이를 즉각 처벌함은 도리어 사회적인 비난과 여론만 악화시킬 우려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에는 8.15해방 후 장기간의 현안이었던 한일협정의 체결이며, 그 예가 없었던 국군의 파월문제사실로 중대한 사건이 산적했던 시간이고, 또 이에 수반한 야당의원들의 극한투쟁, 학생들의 대대적인 데모 선동으로 인한 위수령 발포 등등의 기사는 유독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동아, 경향, 한국, 대한 등이 태반 동일한 기사와 논조였던 야당지의 입장도 고려 일거에 처벌보다는 금후의 동태를 엄중 감시함과 동시 주관 ○○報로 하여금 특별한 지도와 각성의 기회를 주도록 함이 우선 타당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함⁴¹⁾

40)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중요논조분석 自 1965.1.1 至 1966.6.30」

41)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기사 분석」

이렇듯 중앙정보부가 언론통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언론 통제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인을 연행해 조사하거나 구속하던 사후통제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아예 비판적인 언론사나 언론인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전통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언론통제는 중앙정보부 같은 정보기관이 나서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대한 사전통제에 나서면서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는 보도지침도 하달되기 시작했다. 정보기관원은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사에 출입하였는데 이는 편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으며, 언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보도지침은 편집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간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주로 중앙정보부가 보도지침을 하달했지만,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에는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보도지침 하달의 채널이 되었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해 입수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이들을 회유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언론인의 활동에 대한 사찰을 통해 금품수수 등을 찾아내고, 신원 내사를 통해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하여 탄압을 가하거나 회유하는 데 이용했다. 또한 언론사 경영실태나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광고탄압이나 세무사찰을 통한 압박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었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기관원 상주나 보도지침의 하달을 통해 편집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3) 중앙정보부와 타 언론통제 기관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물론 공보담당 부처, 군 보안부대, 경찰, 청와대, 정부 각 부처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론통제에 나섰고, 이런 통제가 때로는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통제와 혼선을 빚기도 했다. 군사정권 하에서 문화공보부 같은 공보담당 부처는 공식적으로는 언론관련 주무 부서였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중앙정보부 같은 정보기관들이 언론통제에서 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정보기관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 대체로 중앙정보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연행해 조사하는 일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외에 경찰이나 군 수사기관도 담당했다.⁴²⁾ 중앙정보부는 원칙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권한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정권에 대해 비판적일 뿐인 기사들을 문제 삼아 기자들을 연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유신 정권 때까지는 경찰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언론인을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와 협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당시 현역 육군 중위가 격려광고를 내서 광고국장이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안사는 석방하려 했지만, 정보부에서 구속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⁴³⁾ 또한 경찰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언론인을 연행해 수사할 때도, 중앙정보부가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⁴⁴⁾ 유신 정권 시절까지는 중앙정보부가 언론통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과 1966년에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했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 폭행당하는 일이 빈발했다.⁴⁵⁾ 또 ‘정체

42) 기자협회, 『기자협회 30년사』, pp308-316, 정진석, 앞 책, pp281-330.

43) 김희진, 『유신체제와 언론통제』, 아이엔, 1999, p41.

44) 남시욱, 『체험적 기자론』, 나남, 1997, pp329-330.

45) 송건호, 앞 책, p153.

불명의 괴한들'이 언론인의 집 앞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언론인을 납치·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중 상당수는 군 방첩대 소행이었지만, 중앙정보부가 한 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⁴⁶⁾ 군 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는 군 관련 보도 사건에 관해서만 관여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에 대해 수사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때로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던 것이다.

언론사에 출입하거나 상주하는 일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중앙정보부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과동 이후 사전통제를 위해 기관원들을 언론사에 출입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앙정보부원이 출입하기 시작한 이후 군 정보기관이나 경찰에서도 출입하기 시작했다. 유신 정권하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은 아예 상주하고 있었고, 보안사나 치안본부의 요원들은 수시로 출입했던 것이다.⁴⁷⁾

박정희 정권하에서 중앙정보부 외에 보안사, 공보부처, 청와대, 정부 각 부처들도 모두 보도지침을 언론사에 내려 보냈다. 유신 정권까지는 중앙정보부가 주로 내려 보냈지만,⁴⁸⁾ 이런 보도지침이 때로는 타 기관이 내려 보낸 보도지침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중앙정보부가 보도를 금지한 것을 다른 기관이나 부처들이 보도를 허용한 경우가 있었고, 반대 경우도 없지 않았다.⁴⁹⁾ 중앙정보부가 주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기는 했지만, 언론사에 대한 각 부처의 요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979년 10·26이후 한동안 중앙정보부 역할 중 많은 부분을 보안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1980년 3월경에 만들어져 언론인 강제해직을 주도했던 '언론대책반'은 보안사 요원에 중앙정보부, 경찰, 문공부에서 파견된 요원을

46) 김충식, 『정치공작 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동아일보사, 1992, pp103-106.

47) 김희진, 『유신체제와 언론통제』, 아이엔, 1999, pp25-26.

48) 노계원, 「제3공화국 말기 언론통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pp17-19.

49) 김희진, 앞 책, pp82-83.

더해서 만들어졌다. 보안사 자체 요원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언론사를 출입하던 기관원들이었다.⁵⁰⁾ 계엄 하에서는 보안사 요원들이 주로 언론사에 상주하며 활동하였고 보도지침도 주로 보안사가 내려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의 보도지침 하달 역할을 보안사가 대신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 출범이후 문화공보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설치, 일괄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는 통일된 창구로 활용하였다. 유신 정권시절 중앙정보부 같은 정보기관이 직접 나서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 “언론계의 불만을 유발”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여러 곳에서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 혼선이 빚어졌던 점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홍보조정실은 안기부나 보안사 등의 요구를 종합하여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렸다. 다만 방송관련 보도지침은 때로는 안기부가 직접 보도지침을 내리기도 했다.⁵¹⁾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보부의 뒤를 이은 안기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1988년 12월 12일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이철 의원은 「해엄(解嚴)후의 언론·종교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계엄 해제 이후 신군부가 의도했던 언론조정 정책의 내용을 밝혔다.⁵²⁾ 이 문건에는 계엄해제시 문공부가 전면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중앙정보부 등은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측면 지원이란 바로 보도지침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나 보안사가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5년 초에 문공부 장관이 편집국장들을 소집해 “홍보조정실 주문은 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것이 있다. 지침을 위반하는 보도가 정국불안과 연결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문공부의 손을

50) 김기철, 『합수부 사람들과 오리발 각서』, 중앙일보사, 1993, pp66-67, “언론관계 업무를 주도해 왔던 중앙정보부 신문과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가져다 활동을 개시했다”고 했다.

51) 김해식, 앞 책, p162.

52) 이철, 「제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1988, pp32-33.

떠나는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⁵³⁾ 문공부의 손을 떠난 사태란 곧 안기부나 보안사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이었다.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채주는 “보도지침과 압력이 가해지는 경로는 여러 갈래다. 행정부 쪽에서는 문공부 홍보조정관, 홍보조정실장, 장관의 경우이며, 안기부는 담당 기관원과 그 윗선이 있었다. 가장 난감한 것은 대통령 이름을 인용하는 청와대의 압력이며, 편집국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보안사령부 협조요청”이었다고 밝혔다.⁵⁴⁾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안기부 못지않게 보안사가 언론 탄압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한 조정활동만큼은 중앙정보부나 그 뒤를 이은 안기부가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나 |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방법

1) 언론인 연행 및 구속

중앙정보부는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쓴 언론인들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해 가서 취재경위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법적 절차 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되는 연행은 언론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이 1-2일 동안 취재보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풀려

53) 김성우, 『돌아가는 배』, 삶과 꿈, 1999, pp242-243.

54) 이채주,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나남, 2003, p110.

났지만, 언론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1961년부터 196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이 많았다. 이는 민주당 정부하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언론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군사정부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⁵⁵⁾ 다만 1964년까지는 언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이영희는 풀려난 직후 쓴 글에서 “나의 경우는 고문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육체적 고통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⁵⁶⁾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겪은 직후인 1965년 이후 3선 개헌이 이루어지는 1969년까지도 많은 언론인들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신동아』 1968년 10월호의 ‘북괴와 중소분쟁’, 12월호의 ‘차관’ 특집 기사를 문제 삼아 동아일보사의 김진배 기자, 박창래 기자, 신동아의 손세일 부장, 심재호 기자, 이정윤 기자 등 5명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연행된 언론인들 중 구속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사안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를 두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이다.⁵⁷⁾

편집인협회장이었던 최석채는 1967년 11월 11일에 열린 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중앙정보부 부장에게 항의문을 보냈다고 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문사 간부를 임의동행하지 말아라.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별개 문제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의 동행할 때에는 간단한 사항은 신문사에 와서 물어봐라. 상당한 조서가 필요하고 긴 시간을 요할 때 임의 동행하는 것은 물론 협조할 용의가 있지만, 그 사장 또는 편집국장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몇 시 몇 분에 데려가서 몇 시 몇 분까지 돌려보낸다는 약속을 해놓고 해달라.”⁵⁸⁾

55) 정진석, 앞 책, p290.

56) 이영희,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기자협회보』 4호(1965.2.15), p4.

57) 김충식, 앞 책, pp145-146.

중앙정보부의 연행은 1968년에 다시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신동아 사건이었다. 「기자협회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솔직한 말로 5·16 이후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 최대한도의 ‘협조’를 해왔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 정도는 일부 독자들로부터 ‘신문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기자를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태도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 언론가의 일각에서는 당국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측도 있었다.”⁵⁹⁾

1969년 이후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가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당연히 중앙정보부에 의한 언론인 연행과 구속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취재된 모든 기사가 보도과정에서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이었다.⁶⁰⁾ 결국 연행이나 구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언론통제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도 중앙정보부 등에 의한 기자의 연행이 있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못했다.⁶¹⁾ 특히 중앙정보부에 의한 기자 연행은 보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지침까지 내려왔을 정도였다.⁶²⁾ 1974년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루어진 두 건의 언론인 연행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74년 10월 22일과 23일에 한국일보의 사장 장강재, 편집국장 김경환, 종합편집부장 이상우 등 세 사람은 홍순일 특파원이 쓴 월남에 관한 기사가 문제가 되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⁶³⁾ 이 사건은 한국일보 노조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10월 23일에는

58) 한국편집인협회, 「매스컴 관계 세미나 제4집 : 신문과 독자」, 1968, p118.

59) 「언론가 : 협조와 구속」, 『기자협회보』 40호(1968.8.13), p4.

60) 김해식, 앞의 책, pp123-124.

61) 고귀남, 「기자구속에 냉담한 신문」, 『기자협회보』 128호(1970.5.1), p4.

62) 이수기, 『보도지침과 신문의 이해』, 금호출판사, 2002, p73.

63)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 1974년 겨울』, 미디어집, 2005, pp31-44.

동아일보의 편집국장 송건호와 사회부장, 지방부장이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⁶⁴⁾ 이 사건은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앙정보부에 의해 언론인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중앙정보부는 기자들의 노조 결성이나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련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안기부에 의한 언론인 연행이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권하의 안기부 연행에 대해 이채주는 다음의 견해를 밝혔다.

“5공화국 기간 동안의 언론인 연행은 영장이나 구인장 등도 갖추지 않은 불법 연행이었다. (-중략-) 게다가 기사 내용 자체가 실정법에 저촉됐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의 ‘협조요청’ 또는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나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⁶⁵⁾

64)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 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해담솔, 2005, pp112-113.

65) 이채주, 앞 책, p296.

2)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과 정보수집 활동

중앙정보부의 기관원들은 대략 196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언론사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한일협정반대 시위에 언론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군사정권이 사전통제를 위해 언론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관원들을 언론사에 출입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은 “비공식적 검열방법으로 언론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신홍범은 “한국 언론의 암흑시대는 중앙정보부를 비롯 정보기관원들이 언론사를 출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했다.⁶⁷⁾

1967년 4월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기관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IPI와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회’에 이에 관한 소명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부분의 신문들은 오히려 신민당을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신아일보와 동아일보 정도만이 신민당이 제기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지만, 그나마도 소명서 제출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신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1967년 언론이 이미 자유고 독립이고를 모두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⁶⁸⁾

3선 개헌을 앞두고 있던 1968년을 전후해서는 “각 언론사 편집국엔 중앙정보부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일선 기자들이 데스크에 송고한 기사를 송두리째 빼달라거나 표현을 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일상화 되었다”고 한다.⁶⁹⁾ 이렇듯 언론사에 상주하게 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편집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언론사나 소속 언론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66) 김해식, 앞 책, p86.

67)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앞 책, p249.

68) 송건호, 앞 책, pp155-158.

69)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12.

1971년의 4·27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 둔 4월 15일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 선언을 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른바 정보기관의 상주가 빚어내는 모든 불합리한 사태는 일선 언론인인 우리들에게 치욕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하며, “우리의 명예를 걸고 정보요원의 사내 상주 또는 출입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⁷⁰⁾ 이틀 뒤인 4월 17일에 조선일보 기자들도 “정보기관원이 편집국을 수시로 출입, 신문 제작에 굴욕적인 압력을 가해도 이를 배격하지 못한 언론의 무기력을 자괴하고 이제 우리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되찾기 위해 새출발하려 한다”며, “정보기관의 사내 항시 출입과 같은 부당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⁷¹⁾ 기자들은 언론 자유의 회복은 당장 기관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보였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편집국장 박권상이 중앙정보부 보안담당 차장보에게 전화통화로 요구하자 한때 기관원이 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1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다시 기관원이 들어오게 되었다.⁷²⁾ 유신체제 출범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언론사 상주와 정보수집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1974년 10월 24일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며 “기관원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일보 기자들도 ‘민주언론수호결의’를 하며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을 일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조선일보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이 대량해고로 막을 내리면서 더 이상 기관원 상주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관원들은 보도지침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주목하는 등 편집에 간여하기도 했지만,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관원들은 금품수수 사실 같은 약점이나 또는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보고하였고, 중앙정보부는 이런 정보들을 언론인들을 회유하거나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다.

70)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72.

71)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두레출판사, 1993, pp37-38.

72) 동아일보사 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 백서』, 1989, pp26-27.

예를 들어, 1966년 4-5월 두 달간에 걸쳐 당시 경향신문 부주필 ○○○ 외 79명의 언론인에 대한 6.25전후 부역사실을 조사한 것은 이념적 성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⁷³⁾ 1972년 9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내사하고,⁷⁴⁾ 1979년 11월 당시 야당 총재였다가 제명당한 김영삼과 친한 기자 12명을 내사한 것은 기자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것이었다.⁷⁵⁾ 그리고 1982년 6월 안기부 시절 경제부 기자 18명의 금품수수 사실을 내사한 것은 對언론 견제활동이었다.⁷⁶⁾

즉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기자들의 촌지수수 실태를 파악하거나 불순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사 경영진에게 해고 압력을 가하거나 출입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기자들에게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기관원들이 언론사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경영진에 각종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원의 언론사 상주는 전두환 정권 내내 유지되었다. 안기부 요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기관원의 언론사 상주는 6·29 이후 계속되었다. 1990년 당시 언론사 담당 기관원이 안기부 23명, 보안사 13명, 치안본부 및 시도경찰국 8명, 관할경찰서 15명 등 59명으로 확인되었다는 기록도 있다.⁷⁷⁾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관원들이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언론사에 출입하지는 못하고 학연이나 지연 등을 활용해 주로 언론사 밖에서 언론인들을 만나 정보수집 및 보도조정 활동을 하였다.⁷⁸⁾

73) 중앙정보부, 「언론인 부역사실 조사보고」

74) 중앙정보부, 「동아일보 박○○ 비위 내사보고」

75) 중앙정보부, 「금품수수 언론인 조사보고」

76) 중앙정보부, 「금품수수 언론인 조사보고」

77) 김해식, 앞 책, p180.

78) 「미디어오늘」, 1995. 5. 17(1)

3) 보도지침의 하달과 보도통제

언론사에 출입하던 기관원들의 개별적 간섭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가 보도지침으로 나타났다. 이미 3선 개헌을 전후한 1960년대 말 중앙정보부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을 내렸다.⁷⁹⁾ 이것은 1971년 4월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하며 “작게는 뉴스원의 봉쇄로부터 기사의 경중과 보도 여부에까지 외부의 손길이 미쳤다”고 했던 데서 잘 드러난다.⁸⁰⁾

박정희 정권하에서 보도지침은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보부가 내려 보냈다. 1972년에 유신 체제가 출범하고, 1974년에 긴급조치 1·2호가 공포되면서 보도지침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언론기관이 긴급조치를 잘못 이해해서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기관을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일일이 지면 제작에 간여하기 시작하였고 언론사로서는 소극적인 반항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⁸¹⁾ 중앙정보부가 직접 나선 것은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정보기관이 언론의 내용에 개입한다는 것이 오히려 언론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도지침을 내리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언론사에 보도 통제는 주로 통제기관의 해당 매체 담당자와 매체사의 담당데스크 사이에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중앙정보부 소속의 각 언론사별 전담자는 전화를 통해 보도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전면금지 또는 부분적 제한을 통보하고, 언론사를 직접 방문했을 때는 주로 통제의 배경이나 불가피성을 설명해주는 수순을 밟았다. 전담요원은 수시로(1일 1-2회) 언론사를 방문하여 언론인과의 친면을 다지고 회유책을 구사하여 친밀감을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통제 절차와 효과를 얻으려고 했다.

79)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앞 책, pp249-250.

80)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72.

81) 김희진, 앞 책, pp28-29.

그러나 통제 요청에 대한 반응이 소극적이거나 미흡한 결과 및 사전 허가가 없는 단독기사 보도 등 통제지침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협박 외에 연행과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⁸²⁾

중앙정보부는 정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을 언론이 아예 다루지 않도록 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정권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사안일 경우에는 “보도 내용과 형식을 사전 결정,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하거나 “1단 또는 내용을 얼버무려 과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사안이 중요해도 보도만 막으면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 불가’를 지시했다.⁸³⁾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에는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이 청와대의 지시나 안기부·보안사 같은 정보기관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홍보조정실은 1985년 10월 11일에 홍보정책실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7년 12월에 결국 폐지되었다.⁸⁴⁾ 안기부는 단순히 홍보조정실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안기부는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역할도 하였다.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나 편집 간부를 연행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나 그 뒤를 이은 안기부는 외신에 대해 보도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외국인 기자들에게는 주로 도청이나 미행을 통해 압력을 가하고, 때로 체재연장을 거부하여 떠나도록 만들었다. 외국 언론사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인으로서 자신이 일하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충성하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⁸⁵⁾ 중앙

82) 노계원, 앞 글, pp19-20.

83) 이수기, 앞 책, p29.

84) 김해식, 앞 책, pp161-164.

85) 브루스 더닝, 「한국의 민주화 투쟁 취재」, 『6월항쟁 20주년 국제언론인 세미나 자료집』,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2007.6, pp12-13.

정보부나 안기부는 외국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통제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는 잡지나 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시사잡지 뿐만 아니라 여성, 종교잡지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했고, 책에 대한 판매금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안기부가 1982.12.2 작성한 「판금도서 “A교수의 에세이 21” 등 3권 시판 허용여부 검토 보고」 문건은 중정, 안기부가 서적 판매금지에 간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⁶⁾

연세대학교 정치학교수 김○○은 정부의 개방정책과 관련, 1974.1.1-1981.11.30간 문공부에서 판금 조치한 불온간행물 총 157권중 “A교수의 에세이 21장” 등 32권에 대해 해제조치를 건의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중략)

3. 검토

-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자본주의 파괴를 선동하는 등 용공성향이 있는 “프랑스 혁명” 등 22권과 현실을 극렬하게 왜곡비판한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등 7권은 불온내용의 서적이므로 국가 반공정책과 대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계속 판금조치하고
- 7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를 언론인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지성인들이 비판력을 상실한 불신사회라고 비판한 “A교수의 에세이 21”과 “지성과 반지성” 및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외세의존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한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등 3권은
 - 당시 긴급조치 9호(유언비어 날조, 유포)에 저촉, 판금조치 되었으나, 79.12 동 조치가 해제되었고
 - 그 내용이 제1공화국 이후 7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적, 사회풍토쇄신을 역설한 것으로 지나친 현실부정이나 투쟁선동 소지가 별무할 뿐더러
 - 당시의 실정이 이미 조선, 동아, 중앙 등 일간지와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현 시점에서 시사성이 없으며
 - 현 제5공화국과 여론형성에 과급되는 영향이 별무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제 조치함이 가하겠음

86) 중앙정보부, 「판금도서 “A교수의 에세이 21” 등 3권 시판 허용여부 검토 보고」

- 나. “A교수의 에세이 21장” 등 3권 판금해제시 예상효과
 - 과거의 현실비판 등에 대해서 관용, 포용정책 시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
 - 정부의 개방지향적인 문화정책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당시 소외되었던 지식인들의 호응 유도
 - 당시 경색된 실정과 현 자율화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독자들의 냉정한 판단기회 부여

5. 조치

- 문공부에 통보
 - “A교수의 에세이 21장”, “지성과 반지성”, “한국의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등 3권에 대해 판금 해제하고
 - 여타 “프랑스 혁명” 등 29권은 계속 판금조치토록 조정하겠음

한편 미상년 9.22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불온간행물 규제대책 문건을 보면, 각종 간행물의 검열, 배포금지, 내용삭제, 수정배포 등의 실무적인 조치를 문공부가 수행은 하였으나, 규제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작업은 중앙정보부가 하였고, 관계기관협의회 구성도 중정이 주도적으로 했음이 확인된다.⁸⁷⁾

불온간행물 규제대책

1. 상황

현재 국내에서 출간 또는 배포되는 간행물은 관계법규에 의거, 사전검열을 통해 불온성 여부를 검토 후 배포금지, 내용삭제, 수정배포 등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 간행물 검열은

- 국내 간행물의 경우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공부가 출판물 2부를 배포전(정기간행물은 즉시, 비정기 간행물은 배포 15일전 까지) 납본을 받아 이를 검토, 불온 간행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외에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금지, 삭제 및 수정 등 조치
-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간행물 경우는 배포 48시간 전에 2부를, 비정기 간행물은 1부를 각각 납본 받아 검토 후 불온내용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배포 또는 판매 중지, 내용 삭제명령 등 강제 조치

87) 중앙정보부, 「불온 간행물 규제 대책」

- 그러나 검열요원의 부족, 관계법규의 미비 등으로 이들 간행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일부 반체제 분자들에 의해 불온간행물이 시중에 대량 유출됨으로써 불온사상 확산 우려

2. 불온간행물 규제 실태

- 국내 간행물의 경우에는 사전검열규정이 없고 납본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본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고 벌칙(과태료 5만원)도 경미하여 납본을 기피하거나 납본과 동시에 배포함에 따라 불온간행물의 국내 유통의 효율적 저지 곤란
- 문제간행물에 대한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압수, 수색영장 발부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므로 사후 조치시까지의 기간 중, 기 배포된 간행물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 무등록 출판업자에 의한 해적출판물, 해방전후에 반입 또는 출판되어 고서적상 등을 통해 매매되거나 주한외국기관 등을 통해 반입, 국내 유입되는 불온간행물은 원천적으로 당국의 검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적발 곤란
- 여행자 휴대반입, 통관화물 및 소포에 의한 국내반입 간행물은 통관시 검열하고 있으며 불온성여부를 판단키 곤란한 간행물은 문공부와 협조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검열기구가 없는 데다가 검열능력부족으로 불온간행물 유입 가능성 다분
- 문공부의 간행물검토요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분석으로 하지 못하고 저자, 출판사 및 제목에 의거 1차 선별하여 검토할 뿐이며 문제서적이 납본되어도 문제성을 사전 발견치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不無하는 등 검열이 형식화

<연간납본 및 검토요원현황>

구 분	납 본 량 (건)	검 열 인 원 (명)
국내 정기 간행물	14,000	4
국내 비정기 간행물	20,000	4
외국 정기 간행물	2,900	2
외국 비정기 간행물	14,000	2
계	50,900	12

- 이와 같은 검열업무상의 맹점을 틈타 국민의 반공의식과 안보의식을 해치는 각종 불온간행물이 출판, 유통되어 반체제분자들의 저항의식을 조장함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오도 우려

<실례>

-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관련자들이 취득한 복귀 발간 대남선전책자 「현대사상연구」
- △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설명한 「자본주의발전이론」(「스위지」 著)
- △ 쿠바혁명의 실상을 쿠바혁명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설명한 「들어라 양키여」(C.W. 밀즈 著)
- △ 제정 러시아에 항거, 일생동안 혁명운동을 한 레닌의 생애를 서술한 「볼셰비키 혁명」(E.H 카 著)
- △ 국민의 교육은 단순한 문맹퇴치보다 정부시책 비판 등 현실참여를 강조하는 의식화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라질 망명정객의 저작 「교육과 의식화」 및 「페다고지(원명 : 피압박자의 교육론)」(파울로 프레이리 著)

3. 대책방향

가. 검열요원 증원

현재 일간지를 제외한 국내발간 간행물이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각종 간행물 검열은 문공부 홍보조정실 12명의 검열관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형식화 경향이 있으므로 검열요원을 대폭 증강 (1차적으로 12명에서 25명으로 증원)

나.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문공부, 체신부, 검찰, 치안본부, 관세청, 중정 등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문제 간행물과 출판사에 대한 처리 및 조치방안을 협의

다. 국내반입 간행물 검열 강화

여행자 휴대반입, 통관화물 등을 통한 불순간행물 유입에 대비, 전문 검열요원의 출입국항 파견

라. 관계법규의 운영강화 및 보완검토

현행법 운용을 최대한 강화, 간행물의 사전 납본의무를 시행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행정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는

- △ 벌칙을 강화하고
- △ 국내간행물에 대해서도 외국간행물과 같이 배포중지, 내용삭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규제조항 신설 등 법규 보완 검토

4) 언론사에 대한 압력

정보기관은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거치면서 언론사의 경영진과 편집진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간섭이 효율적인 언론 통제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정보기관은 언론사의 경영 실태나 세금 포탈문제 등을 파악하고 이를 언론 통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심지어는 은행 부채를 상환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경영진에 대한 각종 압력을 가해 언론사를 매각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인 경향신문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경향신문 간첩사건을 기회로 공매 처분하기에 이른다.

또한 광고주를 협박해 광고를 중단시키거나, 세금 포탈을 문제 삼아서 언론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미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에 대한 통제를 위해 광고탄압을 사용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 출신인 방○○는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광고를 못 내게 조정하면 아무리 강한 신문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권력자 앞에 손을 들지 않겠느냐는 발상을 했지만, 정부와 언론이 직접 부딪친다는 것은 정부의 사활이 달린 위험한 일이라는 점에서 ‘우회적인 조정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⁸⁸⁾

김형욱은 1968년 신동아 사건 당시 “동아일보와 관련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명령하였다. 당시만 해도 아직 세무행정이 영성하였고 어지간한 기업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업실적과 소득보고에 있어서 다소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털면 먼지 안 날 기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⁸⁹⁾ 실제 중앙정보부가 1965년 7월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상계』의 ‘세금포탈’에 대한 내사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⁹⁰⁾

88) 문일석, 앞 책, pp76-78.

89) 김경재, 앞 책, p290.

90) 중앙정보부, 「사상계사 세금포탈에 대한 내사」

제목 : 사상계사 세금포탈에 대한 내사

요약 : 보고

1. 인적사항 : 사상계사장 장준하 48세
2. 내사결과
 - 가. 장준하는 1962.1.1부터 1964.12.31까지 사상계社를 경영중 개인영업세 104,470원, 사업소득세 293,154원(資先料 포함), 공과금 397,618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으며
 - 나. 동 장준하는 종로세무서로부터 1965.5.12부터 금년 5.26까지 기한 내에 前示 추정세 397,618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았고
 - 다. 1965.6.1부터 금년 6.11까지 기한 체납건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받고 동 추정금을 납부치 않았고
 - 라. 동 장준하는 ○○ 독촉장을 받고 장차 자기재산이 압수될 것을 예측하여 전화기 5대를 양○○ 외 2명에게 명의 변경하는 동시 압류대상이 될 만한 기물을 처분 중에 있으며
 - 마. 종로세무서장은 犯則者인 장준하에게 추정금 외에 금 56,536원의 벌과금 납부를 통고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이행치 않아 1965.6.15 서울지검에 고발 송치하여 현재 미결중이라 함
4. 참고사항
장준하는 추정세 및 벌과금 도합 금 454,154원을 납부치 않아서 종로세무서는 압류대상물을 조사중 동 금액을 발견치 못하여 사상계 8월호를 압류코저 계획 중에 있다함
5. 소견
본건 범칙사실을 사상계 인물 성분표와 공히에 회신함이 가하겠습니다. 91)

또한 중앙정보부는 1973년 3월에 조선일보에 대해 광고탄압을 했던 적이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1972.10-1973.3 사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던 94개 업체 중 5회 이상 광고를 게재한 36개 업체와 2회 광고를 게재한 광일화직(光一化織)을 포함해 37개 업체에 대해서 1973년 3월 5일과 6일

91) 『사상계』에 대한 內查가 1965.7월에 이뤄지기 전, 같은 해 『사상계』 5월호에 함석헌의 ‘세 번째 국민에게 부르짖는 말’, 김진만의 ‘지식인의 사회의식’이라는 글들이 박정희 정권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비판했고, 6월호에서는 한일협정에 비판적인 글 ‘사라질 수 없는 평화선’, ‘반성 없는 세상 : 청구권 문제의 비판’이 실렸다. 그리고 6.22 결국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광고주 대표 또는 담당자를 중앙정보부로 불러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⁹²⁾

동아일보 광고탄압은 1974년 12월 16일에 시작되었다. 당시 광고국장 이었던 김인호의 증언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행정부의 기업관련 부처 당국자들을 불러 각 부처 소관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기업 대표들을 불러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동아투위 및 동아일보 노조 측에서는 동아일보의 광고탄압은 박정희가 지시를 내리고,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가 차장보 양두원에게 맡겨서 진행되었으며⁹³⁾ 이후 광고탄압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경영진이 나서서 중정측과 접촉하면서 점차 광고해약 사태는 해소되었다⁹⁴⁾고 증언하고 있다.

안기부는 언론사의 논조를 바꾸거나 유리한 여론조성에도 개입하였다. 안기부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장애인 단체를 배후에서 조정하여 동아일보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시도를 하였다. 1983년 2월 작성된 「동아일보 오보 제소사건 추진상황」 문건은 안기부가 원고의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동아일보 내부정보를 원고측에 전해 줘,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⁵⁾

1. 소송경과

82.11.4 이○○(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회장), 서울 민사지법에서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⁹⁶⁾

92)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광고업체 조정현황」

93) 동아일보사 노동조합, 앞 책, pp75-97.

94) 동아일보자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p234-237.

95) 안기부, 「동아일보 오보 제소사건 추진상황」

96) 이 결정은 이00가 동아일보 1982년 5월27일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 준다’ 제하의 기사가 허위날조된 불법기사이며,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재판은 법원이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앙의 대일간지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언론계에 상당한 충격을 준 재판이었다. (정진석, 「계간 언론중재 - 한국 언론의 법·윤리환경의 변천」, 1990 봄호)

- 12.10 서울민사지법 東亞에 정정보도 불이행시 강제집행 판시
- 12.11 東亞, 정정보도문 게재
- 12.14 이○○, 사과문 게재 공판에 대비, 김○○ 변호사 선임(當部 추천)코
동 공판 연기(사과문 소송은 정정보도소송과 함께 청구하였으나, 서울
민사지법은 양 소송 성격상이로 분리 심리)
- 83.1.26 이○○, 김○○ 변호사를 엄○○변호사(자유민족당 총재)로 교체
- 1.27 이○○, 사과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의 병합심리를 위한 재판재개신청
- 2. 2 서울민사지법, 재판재개결정(2.23부터 재개 예정)

2. 변호사 교체배경 및 東亞 동향

가. 변호사 교체배경

- 손해청구 금액에 대한 의견 상충

(중략)

※ 본건 소송의 목적이 對동아 견제 및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일대 경고에
있으므로 손해청구액 상충으로 인한 변호사 교체는 동건 추진에 문제점이
별무할 것으로 판단

나. 동아일보 동향

- 1.4 신○○ 편집국장은 편집간부회의 석상에서 금년도 자신이 국장직에서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도록 동건 조기 종결 지시
- 1.7 신국장은 김○○ 사회정화위원장과 접촉 간접적 협조 요청
- 동사 간부진들은 김○○ 변호사의 변론 포기 및 여타 변호사들도 동건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도 사기가 위축되어 조기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엄○○ 변호사가 수입하였다는 데 크게 당황하면서
이는 동명이 사과문 및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

(중략)

※ 이○○이 담당변호사를 교체, 사과문 및 손해배상소송을 강력 추진하려는 데
반해 東亞측에서도 社의 명예를 걸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 동 소송 사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바 동건에 대한 당국의 개입목표가
對동아 견제에 있는 만큼 이의 성과거양을 위해 직접 개입치 않는 대신
동 사건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곽에서 계속 측면 유도 조정
하겠음 97)

97) 동건 민사소송에서 이○○는 결국 패소하였다. 앞 글.

또한 안기부는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안기부는 단순히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조정 작업을 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1986과 1987년 작성한 일련의 문건들은 그러한 작업의 한 사례들이다.

동아, 조선 등 野傾紙의 야당개헌안 동조관련 대책 (86.9.10)

- 當部에서는 최근의 언론 논조 분석결과 동아, 조선 등 野傾紙에서 고정칼럼 등을 통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 측면 부각 및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긍정적 논조 전개 등 야당의 개헌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조
 - 동아, 조선 경영진 대상으로 칼럼 작성상 문제점 지적, 균형보도 유도
 - 칼럼 집필진에 대한 책임순화팀 구성 개별순화 및 집필진 교체유도 98)

1. 언론, 신한당 내분상 부각 보도 등 긍정적 논조 전개

-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 개헌정국관련 신한당의 내분상 확대보도와 함께 해·사설 및 특집 등을 통해 합법개헌의 불가피성 등 긍정적 논조 전개
- 그러나 동아 등 일부 野傾紙에서는 박종철 사망 및 부산복지원사건 등에 대해 부정적 논조와 기사 장기화를 획책함으로써 문제권 자극은 물론 사회 여론 오도 우려
- ※ 당부에서는 문공부와 협조 박종철 사망 등 일련의 사건 기사 조기 쿼다운 및 신한당 내분상 확대보도 지속 유도방침

<중앙일보 국민의식 조사 중 일부내용 삭제 조정 결과>

중앙일보에서는 9.22 동사 창간 22주년 기념특집의 일환으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정치의식 등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 당부에서는 이○○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문제 항목을 삭제, 불보토록 조정하였음

- 6.29 선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력(%)
 - 대학생(40.8), 시민(25.5), 야당(7.2), 재야(5.8), 노태우(4.9), 민정당(4.6), 미국(4.1), 대통령(2.1) 등
 - * 각하 이미지 손상 요인화
- 제5공화국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계층(%)
 - 고급장교(27), 공무원(25.5), 운동선수(21.7), 대기업가(16.4), 중소기업인(5.4), 언론인(2.1) 등
 - * 군에 대한 대국민 불신감 조장 99)

98) 「동아 조선 등 野傾紙의 야당 개헌안 동조관련대책」

이를 위해 때로는 문공부, 검찰, 군, 치안본부 등과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조치방안을 협의하였다.

언론분야 문제 관련 대책회의 결과 (87.5.15)

1. 개요

문공부에서는 동아 및 중앙일보사 발행 정기간행물의 발행 목적 위반 및 언론 활성화 협의회 운영방향 등 언론 현안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참석자

- 청와대 정무 1비서관, 문공부 홍보정책실장, 매체국장, 당부

2. 안건 및 토의결과

안 건	내 용	토 의 결 과
동아일보사 발행 월간 ‘뗏’ (의상전문지) 발행목적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이후 정치·사회 관련 기사 23회 게재 ○ 특히 '87.1.2 5월호에서 부천시 수사시비 사건(권인숙) 및 박종철 사망사건 관련기사, 김수환 추기경의 부활절 메시지 등 비판성향 기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지 공히 발행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 청문절차를 거쳐 규제하되 발행정지 등 조치는 일단 유보하고 각서징구 후 관망 - 청문절차는 현 시국 및 발행인 외유 (IPI총회참석) 등을 고려 5월 하순경 시행
중앙일보사 발행 ‘주간중앙’ 및 ‘영레이디’ (여성교양지) 발행목적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중앙은 음란, 저속 및 퇴폐적인 사진이나 기사를 다수 게재, 문공부에서 19회 시정 경고 ○ 영레이디는 87.4월호 ‘아들이 엄마하고 목욕탕에 안 들어가는 이유’ 제하 비윤리적 기사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데이서울’ 및 ‘주간경향’ 등 여타지는 강력 권고 조치로 객관적 균형 유지
동아일보 읍셀 운전기 수입 확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시설 확충을 위해 읍셀 운전기 3세트 (55.6억원 상당) 수입 확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확인 추천해 주되 홍보조정 차원에서 행정 기술적으로 지연처리

99) 「중앙일보 국민의식 조사중 일부내용 삭제조정 결과」

언론 활성화 협의회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지 증면발행 및 지가인상 ○ 지방주재 기자제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문제는 5월 말경 2차 회의를 개최 토의 하되 - 증면 및 지가인상 문제는 문공부에서 발행인과 협의 조치 - 주재기자 문제는 지방사 의견을 고려 신문협회에서 결정토록 유도
--------------------	--	---

* 조선일보에 이어 한국일보가 증권뉴스 특보 삽지 발행을 계획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의 자진 철회로 논의 유보

언론 현안문제 관련 실무 대책회의 개최 결과 (1987.11.13)

문공부에서는 11.13 15:30-17:00간 월간지 12.12 사건게재 등 언론현안문제 관련 관련기관(청와대, 보안사, 당부)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월간지 12.12 사건 게재 문제
 - 동 사건내용이 정승화의 통민당 입당을 계기로 각 일간지에 기 보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총재 관훈토론회에서 심층언급된 현시점에서 불게재 조정 명분 미약
 - 따라서 문공부 등 관계기관에서 양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보도토록 촉구
- 관훈 토론회 녹화 방영 문제
 - 풀 방영시 3김의 정부여당 비판내용이 여과없이 방영되는 문제점이 있고 재편집 방영시 시청자들로부터 편파보도라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녹화방영은 바람직하지 못함
 - 민정당에서 동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회의 내용을 통보 참고토록 의견 집약
- CBS의 뉴스시간 연장 요청 문제
 - 지난 10.19부터 뉴스보도를 실시한 CBS에서는 1일 4회 30분 뉴스보도 방송을 1일 5회 45분으로 15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 뉴스시간 연장 명분이 경제 및 수도권 생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 대선관련 정치뉴스 심층보도 저의가 다분하고
 - 뉴스보도 허용조치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동건 검토가치 별무
 - 따라서 동 문제는 88.1월 동 방송국 무선국 허가장 재교부시 재검토기로 결정¹⁰⁰⁾

100) 안기부, 「언론 현안문제 관련 대책회의 결과」

Ⅲ 中情·安企部에 의한 언론통제 및 개입실태

1 군사정권의 권력강화 및 안정에 이용된 사건

가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사건

두 사건은 국정원이 조사한 7대 사건 중 하나로 조사 발표된 사건으로,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두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최고 권력자와 중앙정보부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인 언론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었다.¹⁰¹⁾

2 필화(筆禍) 사건

가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

1) 시대적 배경

1967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신민당 윤보선 후보에게 승리, 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뒤이은 6월 8일 총선에서도 공화당이 1백17석을 획득, 신민당 44석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선결과에 대해 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공화당은 정국안정을 위해 소속의원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후계문제와 관련한 당 내분으로 김종필 당의장은 정계은퇴 의사를 표명하였다.

101) 두 사건 조사결과는 2005.7.22 발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발간된 해당사건 보고서를 참조.

한편 1968년 북한의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 및 1월 23일 ‘프에블로 납북사건’, 10월 30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승복 살해사건)은 남북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1966년부터 1973년간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외화획득 등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었으나 전사자 5천여명, 부상자가 1만 6천여명이 희생된 가운데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경부고속도로(68.2-70.7)가 완성되는 등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급격한 정치·경제·문화적 변화가 나타났다.

2) 사건 개요

1968년 월간 『신동아』는 12월호에 정부의 차관도입 실태·차관배정 과정·차관도입의 공과 등에 대해 심층취재하면서 차관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도하였다.

동 기사는 『신동아』 정치부 기자 김진배, 경제부 기자 박창래가 1968년 9월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특위’ 취재 및 국회의원 면담과정을 거쳐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차관의 국내기업 배정과정에서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성 차관이 배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은 차관배정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정치자금 ‘4인 공동관리설’, ‘5% 커미션설’ 등 당시 공화당 및 집권층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하였다.

< 『신동아』 차관기사 요지 >

- 정부지급 보증하에서 들어온 차관이 산업을 일으키고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 소득을 높인다는 점이 인정되나 거대한 정치자금 조성수단이 되고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현금 차관, 외화 대부, 연불 형식으로 들어온 차관은 20억불에 이르고 1963년부터 68년까지 6년간 도입된 상업차관 약 8억불의 5%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가정하면 4천만불(1백억원)로 추산됨

- 공화당이 중앙선관위 기탁금액의 61%를 가져갈 경우 1억 5천만원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돈으로 두 번의 선거를 치렀다고 보기 어려움
- 집권당의 위상으로 볼 때 일부 정치자금의 체제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간의 4인 공동관리설과 관련 정치 자금이 일사불란하게 수금·관리·배포된다는 설이 있음
- 이는 최근 도입된 외자가 특정 재벌에게만 배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권력과 재벌의 결합 심화 및 차관배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비난을 면키 어려움

이와 관련 중앙정보부는 동 기사 게재와 연관된 『신동아』 기자 5명을 연행¹⁰²⁾, 반공법 위반혐의를 두고 취재·집필·게재 경위에 대해 심층 조사하면서 동 기사가 기밀사항으로 당시 세간의 ‘차관망국론’¹⁰³⁾을 퍼뜨려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¹⁰⁴⁾하였다.

그러나 『신동아』 측은 동 차관기사 내용은 기밀사항이 아닌 당시 보도된 공개사항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차관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을 뿐 ‘차관망국론’을 전파한 적이 없으며 중정이 차관 기사의 긍정적인 요소를 무시한 채 기사내용 중 ‘차관과 정치자금과의 연관성’ 부분에 반공법을 적용한 것은 중정업무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한 월권임을 주장하며 반박하였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신동아』가 1968년 10월호에 영문 “북괴와 중·소분열”¹⁰⁵⁾을 번역 게재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의 위장선전내용을 편집없이 인용·보도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반공법 위반

102) 중앙정보부는 1968년 11월 23일 박창래(경제부 기자)를 최초로 김진배(정치부 기자), 손세일(부장), 홍승면(주간), 유혁인(차장)을 연행조사하고 이정윤·심재호 기자를 자진 출두형식으로 소환 조사하였음.

103) 차관경제가 미·일에 대한 경제적 예측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이론.

104) 국정원 보유자료(박창래, 김진배 기자 조사결과 처벌법규 미비 및 공개사안임을 들어 최종 훈방조치 의견-후술)

105) “북괴와 중·소분열”은 美 미주리대 교수 조순승이 1968년 3월 「아시아학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기고문임.

협(106)을 적용하였고 이후 12월 6일 『신동아』 주간 홍승면, 부장 손세일을 구속(107)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신동아』 측은 사건 수습을 위해 “북괴와 중·소분열” 오역관련 사과 기사를 게재(108)하고 천관우(12.10 사표수리), 홍승면, 손세일(12.9 의원해임)을 퇴사시키는 한편, 김상만을 발행인직에서 사퇴시켰다.

3) 조사 내용

가) 박정희 정권과 동아일보와의 관계

송건호(109)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과 동아일보와의 관계에 대해 “1964년 언론과동 때 전국 언론기관이 이미 박 정권에 굴복하고 다만 동아, 조선, 경향, 그리고 대구 매일신문만이 자유를 주장하여 저항을 해 왔는데 -중략- 동아일보만이 권력당국에게서 유일한 장애물이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장행훈(110)은 동아일보의 위상에 대해 “당시 동아방송을 가진 동아일보의 위상은 현재 조선일보나 여러 방송사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동아일보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언론사였다”면서 당시 동아일보가 박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지속 게재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박정희 정권의 대언론정책은 대동아일보정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106) 증정의견서- 증정수사관 ○○○은 “북괴와 중·소분열” 오역관련 반공법 등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피의자 손세일·홍승면은 반공법 제 4조 1항에 해당하나 改悛의 情이 현저하여 기소 유예, 천관우·김상만은 반공법 제 4조 1항에 해당하나 同 罪狀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에 각각 처분함이 가하다는 서울지검앞 의견서 송부(1969.4)

107) 중앙정보부, 「서울지검 『신동아』 필화사건 관련자(손세일·홍승면·천관우·김상만)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1969.4.19)

108) 『동아일보』 1면 사고, (1968년 12월 7일)

109)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pp158-160.

110) 장행훈(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면담(2007년 1월 5일)

따라서 차관 필화사건이 발생할 당시 동아일보의 정부비판적인 기사가 박정희 정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동아일보사사¹¹¹⁾에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동아일보가 취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기조는 여타 언론사보다 강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방송사를 소유한 동아일보의 반정부적 논조가 박정희 정권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나) 중앙정보부의 「차관 필화사건」 개입배경

손세일 당시 『신동아』 부장¹¹²⁾은 ‘차관기사’를 백서형식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는데 연행될 당시 동 기사가 반공법 7조¹¹³⁾를 위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시절 북한이 남한내 언론 기사를 이용, 대남 선전 선동을 한 사례는 많았고 그와 관련 경고 또는 연행조사를 받기는 했으나 차관기사의 경우, 구속기간 및 중정의 대응태도가 전과 달랐다¹¹⁴⁾면서 여당의 정치자금과 관계된 민감한 성격으로 인해 차관기사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111) “『신동아』 68년 1월호 「국가자본주의를 비판한다」 (김영선 저), 68년 3월호 「의회정치의 위기」 (김영삼 저) 등 야당정치인의 논문들은 당시 언론에서 다룰 수 없는 위험수위를 넘는 것이었다.” 『동아일보사사』 3권, 동아일보사, 1985, p326.

112) 손세일(전 『신동아』 편집국장) 면담(2006년 11월 9일)

113) 국보법 제 7조 1항(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보법 제 7조 2항(국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를 이롭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동 국보법은 1980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이며 同 조항은 반공법(61.7.3) 제 4조 1항에 해당하는 바, 진술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114) 손세일은 당시 경영진에서는 동아일보 계열사인 삼양社와 경방(주)에 대한 세무조사압력을 우려하는 동시에 동아일보 전직원에 대한 병역조사 실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 “당국은 이러한 직접적인 탄압 이외에도 本社 사원에 대한 갖은 압력을 간접적으로 가하였다. 本報와 전혀 관계없는 삼양사와 경방 등에 까지 물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 두 업체의 소유주가 본보 발행인과 친척관계였음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탄압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본사 발행인 소유의 주식 폐기를 요구하였다.” 『동아일보사사』 3권, 동아일보사, 1985, p343.

중정부장 김형욱¹¹⁵⁾도 사건개입 배경을 1968년 11월 22일 김성곤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신동아』의 차관 기사를 중정에서 조사하도록 사주한 정황을 설명하면서 동 기사의 문제점은 차관과 연계된 정치자금 부분이었으며 이는 차관 수혜를 부여받은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중정개입을 유도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박창래¹¹⁶⁾ 당시 동아일보 경제부기자는 『신동아』 차관 사건과 1968년 3월에 발생한 ‘한국은행 필화사건’¹¹⁷⁾과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당시 박 대통령이 동 기사가 외자유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한국은행 및 동아일보 관계자들을 조사토록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며 동 사건이후 중정이 적극 언론보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결국 1968년 11월 「차관필화사건」에도 큰 영향¹¹⁸⁾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동아일보 ‘청와대예산 삭감기사’(1968년 11월 23일) 및 차관도입시 공화당의 정치자금 조성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아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는 당시 장준하¹¹⁹⁾ 신민당 의원

115) 김형욱·박사월, 『김형욱 회고록』, 아침, 1985, pp295-301.

116) 박창래(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면담(2007.1.25)

117) “중앙정보부는 3월 8일자 본보 1면톱 「통화량 대폭 억제토록 한은, 정부에 긴축정책건의」 제하 기사와 관련 본사 이춘구 경제부장, 이체주 경제부 차장, 신동호 기자 등을 9일 오전부터 10일 오후 사이 각각 연행, 기사출처와 게재경위 및 취재기자의 행방 등에 관해 신문했으며 박창래 기자는 동 기사 취재 관련 10일 오후 5시부터 11일 정오 너머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동아일보사史』 3권, (동아일보사, 1985.3) p321.

동 기사는 당시 한국은행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통화량 긴축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입한 차관에 대한 상환능력 부재로 우리 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임. 박창래(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면담(2007년 1월 25일)

118) “중정에 기자가 연행될 경우 신문에 연행상황이 보도되던 관행이 ‘차관기사사건’ 이후에는 사라졌던 것은 사실임” 박창래(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면담(2007년 1월 25일)

119) “동아일보는 간단하게 추려서 ‘청와대 예산을 깎아라’ 하는 제하로 기사화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심히 대통령에게 노여움을 샀고 대통령 자신이 이번에 동아일보의 버릇을 고치라고 강력한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믿지 못할 소문도 퍼지고 있는데..... 공화당 정권은 차기 집권을 비롯한 영구 집권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눈의 가시로 보이는 언론기관을 완전히 어용화 내지 무력화 시켜야 하겠다는 계획 밑에서 가끔 뺨대는 동아일보마저 완전히 숨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에서 미리부터 버리고 있던 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제 67회 「국회 회의록 제 34호」, 1968년 12월 16일),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1』 동아일보사, 1992, p149.

및 동아일보¹²⁰⁾ 등 언론 관계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대목이다.

당시 차관사건 관련자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손세일¹²¹⁾은 조사과정에서 「차관기사」 게재경위 및 기사내용의 축소·수정과 관련 허위사실 게재여부에 대해서, 박창래¹²²⁾는 정치자금 부분의 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동 기사내용에 반공법을 적용하려 했으나 출처가 공개자료인 만큼 결국에는 문제 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진배¹²³⁾는 정치자금 부분 외에도 동 기사작성에 동아일보 간부의 지시가 개입되었는지를 집요하게 신문받았으며 모종의 정치적 목적이 설정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당시 중정이 동 사건에 개입한 직접적인 배경을 문서나 증언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아일보가 공화당 정치자금의 원천이었던 차관도입 과정을 기사화하여 촉발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점차 ‘동아일보 길들이기’ 단계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다) 차관사건과 ‘3선개헌 공작설’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을 통한 ‘동아일보 길들이기’ 목적이 ‘3선개헌을 위한 공작이었다’는 의혹¹²⁴⁾과 관련 손세일¹²⁵⁾은 처음에 공작적 차원이라고 생각지 않았으나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과 3선개헌이 결정된 후 결과적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120) “다만 분명한 것은 권력의 총공격으로 동아일보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완전히 거세함으로써 3선개헌 등 永久집권에의 길을 닦자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아일보사사』 3권, 동아일보사, 1985, p347.

121) 손세일(전 『신동아』 편집국장) 면담(2006년 11월 9일)

122) 박창래(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면담(2007년 1월 25일)

123) 『동아일보사사』 3권, 동아일보사, 1985, p332.

124) 『동아일보사사』 3권, 동아일보사, 1985, p318. p347. p355.

125) 손세일(전 『신동아』 편집국장) 면담(2006년 11월 9일)

제기¹²⁶⁾한 것처럼 영구집권을 위해 박정희의 3선 개헌안을 추진하던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민복지연구회」 사건〉

- 1968년 5월 24일 공화당내 김종필계 의원 김용태(회장), 최영두(부회장), 송상남(사무총장)이 조직한 「국민복지연구회」가 김종필을 1971년 차기 대선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비밀조직이었다 하여 박정희가 이들을 제명 조치¹²⁷⁾

〈윤치영 공화당의장 개헌시사 발언〉

- 1969년 1월 7일 윤치영 공화당의장 서리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조국근대화와 조국중흥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있으며 이러한 기본입장에서 현행헌법상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 연구될 수 있다”라고 선언¹²⁸⁾

그러나 김진배·박창래 기사를 조사한 국정원 보유자료¹²⁹⁾를 보면 ‘차관 기사’의 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후 소견내용에서 ‘일부 날조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법규 미비를 들어 훈방조치를 건의하고 있어 3선개헌을 위해 동아일보를 순치시킬 목적으로 중정이 ‘차관기사’를 이용했다고 보기에는 중정의 공작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 외신차장이었던 장행훈¹³⁰⁾은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3선출마를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줄 사람이나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동 사건이 시기적으로 박정희의 3선개헌 추진과 연계된 ‘복지회

126) 앞 글,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제 67회 「국회회의록 제 34호」, 1968년 12월 16일)

127) 당시 복지회가 김종필을 대선후보로 추대하려 했는지, 제명조치 배경이 박정희 3선개헌을 위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동 사건으로 차기 대선후보였던 김종필은 1968년 5월 30일 정계를 은퇴.

128) 이후 1969년 1월 8일 공화당은 정책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열어 “현행헌법에 걸려있는 대통령 연임금지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3월 진당대회를 전후하여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

129) 중앙정보부, 「『신동아』 기자 박창래·김진배 조사결과」(1968.12.7)

130) 장행훈(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면담(2007년 1월 5일)

사건' 등과 일치하면서 동 필화사건을 3선개헌을 위한 기반 조성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아일보사사」 역시 3선개헌 공작설과 관련 “차관필화사건은 영구 집권에의 길을 닦자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여 다분히 추측성으로 쓰고 있는 대목으로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이 ‘오역사건’으로 확대된 정황은 동 사건 발생시점이 공화당의 3선개헌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전후에 증폭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일련의 사건(「복지회사건」, 「공화당 개헌검토 발언」 등)들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동 사건에 대해 3선개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평소 동아일보의 정부비판적인 논조를 문제 삼았던 것은 사실이며 중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 ‘오역사건’으로 확대된 배경 및 관련자 해임배경

당시 중앙정보부는 차관기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관련자들을 연행 조사 후 훈방 조치하였는데 당시 중정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허위사실 및 기밀유출과 관련하여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결국 훈방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동아』 기자 박창래·김진배 조사결과」 (1968.12.7)

□ 김진배 기자 조사내용

- 외자 27억불의 정치자금설은 68.10 외자도입 특감자료와 정해영 의원 발언 인용
- 63-68년간 상업차관 8억여만불의 5% 정치자금설은 여러 야당의원들 추산
- 공화당 1백억원 정치자금설은 경제기획원 및 고흥문 의원 발언 인용
- 커미션 5%라는 말은 상업차관 동의안 심의시 고흥문 의원 등 발언 인용
- 선거자금의 출처관련 상업차관 커미션은 고흥문, 김대중 의원 발언 인용
- 정부구매물자 및 공사계약관련 커미션은 김재광 의원 발언 인용

- 산은 저리용자 커미션은 정해영, 고흥문, 김대중 의원 발언 인용
- 곡물도입관련 7억원 모측 전달설은 1968년 국회 대정부질의시 김원만, 정운갑, 정해영 의원 발언 인용
- 정치자금 4인(이후락, 김형욱, 김성곤, 장기영) 공동관리설은 1967년 국회 소문 인용

□ 박창래 기자 조사결과

- 차관정책은 특혜 운영되고 대신 정부는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신진」 등 일부업자의 특혜내용을 종합 추정
- ‘지휘받는 소비성 차관’(소제) 출처는 「대한전선」 전기기구 수입차관이 승인되었다가 청와대 방문 이후 보전된 점 등을 추정

□ 소견

일부 무근한 사실을 날조하에 보도한 사실이 있으나 처벌법규가 없으므로 훈방 처리함이 가하겠음

이후 1968년 『신동아』 10월호에 번역 게재된 “북괴와 중·소분열”¹³¹⁾(영문)을 재론하여 최종적으로 반공법 제 4조 1항 위반혐의¹³²⁾를 적용, 손세일·홍승면은 기소유예, 천관우·김상만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 송부 하였다.

동 사건은 이미 1968년 12월 차관사건이 발생되기전 종결된 사안¹³³⁾이었음에도 차관기사에 반공법 적용이 어렵자 내부 종결된 사안을 재거론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으로 당시 동아일보 주필 천관우¹³⁴⁾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을 당시 차관 기사나 오역기사에 대해 특별히 조사받은 바 없었다고 기술하여 “조사·연행의 목적이 기사내용에 있지

131) “북괴와 중·소분열”은 美 미주리대 교수 조순승이 1968년 3월 「아시아학회협의회」에서 발표한 기고문임.

132) 중정의견서 - 중정수사관 ○○○은 “북괴와 중·소분열” 오역관련 반공법 등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피의자 손세일·홍승면은 반공법 제 4조 1항에 해당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기소유예, 천관우·김상만은 반공법 제 4조 1항에 해당하나 동 논문내용을 검토하였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에 각각 처분함이 가하다는 서울지검의 의견서 송부(1969.4)

133) 신동아 사건이 나기전 중앙정보부 당사자와 신동아 사이에 일이 거론되어 신동아 11월호에 ‘빨치산 운동의 지도자라고 번역한 것은 “공비의 두목”이라는 말의 오역이었다, 라는 기사정정을 게재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이다. 『동아일보사史』 3권, 동아일보사, 1985, p339.

134) 『동아일보사史』 3권, 동아일보사, 1985, p342.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앞서 제기되었던 차관기사 사건이 ‘동아일보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경우 오역기사 사건은 중정이 동아일보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웠던 수단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동아일보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판단된다. 이후 동아일보는 1968년 12월 7일 조순승의 오역기사 게재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1968년 12월 10일 홍승면, 손세일을 의원면직시키는 한편 천관우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였다.

한편 차관기사 및 오역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의 동아일보 간부 해임요구 여부와 관련 1968년 12월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용희와 중정부장 김형욱간 대화내용¹³⁵⁾을 살펴보면 당시 문공부 장관 홍종철이 『신동아』 간부 해임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으나 손세일¹³⁶⁾은 고재욱 사장의 말을 빌려 『신동아』 간부 3인에 대한 해임요구는 중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추가증언 및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시 권력구조 관계에서 문공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건은 처음부터 중정 주도하에 전개된 사건인 바 동아일보 간부 해임에 중정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다고 추정된다.

4) 평 가

1968년 「신동아 차관 필화사건」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관련 언론학자 및 관계자들은 동 사건을 두고 언론기업이 권력에 굴복한 상징적 사건으로 소위 ‘권·언복합체’¹³⁷⁾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당시 최대 영향력을 가진

135) 김형욱은 자신을 찾아온 이용희에게 홍종철 당시 문공부 장관 또는 정일권 총리를 접촉을 주선하여 사건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홍종철 문공부 장관은 동아일보 사장 고재욱에게 관련기사 해임을 요구하고 동아일보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동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증언. 김형욱·박사월, 『김형욱 회고록 II』, 아침, 1985, pp298-301.

136) 손세일(전 『신동아』 편집국장) 면담 (2006년 11월 9일)

137) 언론기업은 권력과 결탁하여 사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권력기관은 언론기업을 이용하여 권력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언론기업과 권력기관간 유착관계를 지칭

동아일보를 순치시키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중정을 통해 『신동아』 게재 ‘차관기사’를 문제 삼고 동아일보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과거 게재했던 기고문 “북괴와 중·소분열”을 재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자 증언 및 자료에 근거하여 동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동아일보의 정부 비판기사 및 차관기사 내용과 관련 동아일보와 박정희 정권과의 갈등관계가 존재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 필화사건’이 중앙정보부가 사전계획에 의해 진행한 정황이나 사건 배경이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중앙정보부가 『신동아』 게재기사에 반공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면서 타당한 위법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내용조사와 관련없이 동아일보 기자·간부를 수시 구인하여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부분, 최초에는 차관기사의 반공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다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기고문 오역을 문제 삼는 등 수사의 일관성을 상실한 부분, 반공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해당 언론사 간부가 해직되는 선에서 편법적으로 해결된 정황 등은 수사 목적이 문제된 기사내용의 위법성에 있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는 동 사건이후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일부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당 언론인들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인 바 박정희 정권이 당시 『신동아』의 ‘차관기사’에 불만을 품고 언론에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

1) 시대적 배경

1969년 7월 미 대통령 닉슨의 ‘닉슨독트린’은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과 연계되어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였다. 한편 북한의 1970년 6월 5일 연평도 ‘해군함정 피랍사건’, 6월 22일 ‘현충문 폭발사건’ 및 일련의 간첩선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었다.

당시 국내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1969년 6월 19일 3선개헌 반대 학생 시위가 각 대학에 파급되어 서울대가 임시휴교하고 전국 29개 대학이 조기방학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1969년 10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3선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듬해 신민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출마 의사를 발표하였고 9월 후보지명대회에서 김대중이 신민당 대선후보로 최종 당선되었다.

한편 주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바라보면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주력해온 근대화를 상징적으로 대표하였던 반면, 같은 해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산업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베트남 파병기간 국내 유입된 각종 차관은 개발특수를 일으키면서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음에도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수반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2) 사건 개요

가) 「오적」 게재관련 사건 전개

김지하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오적」을 최초 게재하였으며, 신민당이 6월 1일자 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동 시를 다시 게재하면서

사회적·정치적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6월 2일 중앙정보부는 민주당 기관지 『민주전선』을 압수하고 편집국장 김용성,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편집자 김승균, 필자 김지하를 연행하였고, 당시 국회에서는 공화당측이 『민주전선』에 실린 「오적」이 사상적으로 불온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며 이적성을 거론하여 정치 문제화하였다. 이후 『사상계』 후원자였던 신민당 김세영 의원의 ‘영리단체겸직금지조항’ 위반문제¹³⁸⁾가 제기되는 등 여야간 정당갈등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한편 문공부는 1970년 9월 26일 『사상계』가 ‘신문통신 등 등록에 관한 법률’상 등록당시와 실제 인쇄인이 다르다는 이유(인쇄시설 未보유)로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1972년 4월 26일 등록취소 무효를 확정 판결하였다.

나) 「오적」에 대한 반공법 적용 논란

1970년 『사상계』 5월호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제 40호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 「오적」에 반공법 위반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중정은 1970년 6월 2일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사상계』 편집자 김승균, 『민주전선』 편집국장 김용성 및 「오적」 필자 김지하를 구속하였다. 비록 1970년 9월 9일 재판부가 전원 보석 석방하였으나 1972년 12월 9일 결심에서 부완혁, 김용성, 손주항¹³⁹⁾에 대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를 판결하고, 김지하에게는 12월 20일 결심에서 지병(결핵)을 이유로 선고유예¹⁴⁰⁾하였다.

138) 김세영 의원 겸직과동은 당시 함태광업 사장이었던 김세영 의원이 탈세혐의로 입건되고 가야산업주식회사와 근해상선 이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겸직과동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국회의원직과 영리단체 겸직의원이 여야간 12명으로 확대되자 김세영의 자진사퇴로 겸직과동은 종식되었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p179.

139) 손주항은 「민주전선」에 「五賊」을 게재한 혐의가 아닌 同名의 저작 「외로운 용자」에 「오적」을 전재한 혐의로 연행, 구속됨.

140) 김지하는 「오적」사건 관련 1974년 군법회의에서 민청학련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후 최종 유죄선고 받음.

당시 검찰은 김지하의 「오적」은 남한사회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집권층의 부정부패상을 통렬히 비판, 북한의 대남 선전자료에 인용됨으로써 이적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형사지법은 판결문에서 “당시 「오적」은 특권층 부정부패를 응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자의 도가 지나쳐 북한의 선전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요지를 밝혔다.

중정은 검찰에 보낸 의견서¹⁴¹⁾에서 「오적」에 대해 ‘지배층이 서민층을 착취 치부하고 있는 양 과장하여 독자를 선동하고 국가전복을 암시, 북괴의 대남선전노선에 동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민당 및 피해자들은 동 사건에 대해 「오적」의 내용은 사회주의적 폭력이나 혁명사상을 선동하거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비판을 가한 풍자문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오적」으로 언급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에 해당하는 집권층이 자신들의 부패상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낸 언론탄압이며, 정치적으로는 71년 대선·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3월 ‘정인숙 피살사건’¹⁴²⁾, 4월 ‘와우아파트 붕괴사건’¹⁴³⁾, ‘도둑촌 추문’¹⁴⁴⁾ 등 일련의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던 집권 공화당이 주도한 야당탄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41) 중앙정보부, 「사상계 및 민주전선에 대한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의견서)

142) 1970년 3월 17일 권총 피살된 정인숙과 당시 박정희, 정일권, 박종규 등 권력자와의 염문설 등이 국회·언론 등을 통해 확대 전파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음.

143)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전동 와우시민아파트(69년 12월 준공) 15동 5층 건물이 부실공사로 무너져 33명이 압사하고 19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당시 서울시장(김현옥)이 동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음.

144) 1969년 12월 동빙고·수유·장충동 등 부유층이 거주하는 호화 주택촌이 시민들 사이에 ‘도둑촌’이라 불리면서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70년 1월경 박정희 대통령은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기업인·공화당간부·고급공무원 등 330명을 대상으로 주의·경고하였음.

3) 조사 내용

가)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 관련

(1) 대선·총선 관련 1970년 정치상황

1969년 9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이 통과된 후 10월 17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격렬한 찬반논쟁이 가속화 되었으나 투표율 77%에 찬성 65%로 가결되었고 이후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1970년 9월 29일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 40대 국회의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사건이 발생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개통, 간첩선 사건, 주한미군 철수움직임¹⁴⁵⁾ 등과 정인숙 피살, 와우아파트 붕괴, 전태일 분신 등의 사회 부조리 사건 및 1969년 3선개헌 반대시위 이후 이어진 학원내 민주화 요구시위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김지하의 「오적」은 박정희 정권의 사회부조리와 연관된 치부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사건이었으며 박 정권 입장에서는 동 시가 『민주전선』에 게재된 이후 대선·총선 정국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처 및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2)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배경

당시 『민주전선』 위상에 대해 손주향¹⁴⁶⁾ 전 『민주전선』 편집위원은

145) '1970년 발생한 남파간첩선 사건만 9건에 이르렀다', '70년 6월 12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군 2만 명을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p86-87.

146) 손주향(전 『민주전선』 편집위원) 면담(2006년 11월 6일)

『민주전선』은 일반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민감한 정치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높은 파급력¹⁴⁷⁾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전선』이 「오적」을 게재한 배경에 대해 김지하의 「오적」이 박 정권의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오적」 전재배경에 대해 게재판단은 편집부에서 하였으나 신민당 당수 유진산이 최종 수정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김용성¹⁴⁸⁾ 『민주전선』주간도 “「오적」 전재결정은 유진산이 했으나 군장성 부분은 삭제시켰다”면서 “장성 삭제배경은 복귀가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진술¹⁴⁹⁾한 바 있다.

그러나 김승균¹⁵⁰⁾ 『사상계』 편집자는 신민당 의원 김세영이 『사상계』 후원자였고, 장준하가 전 사장이었던 관계로 부완혁 사장 양해 하에 『민주전선』에 「오적」 전재를 제안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김지하¹⁵¹⁾도 중정 조사과정에서 “1970년 5월 30일 부완혁 사무실에서 김세영으로부터 『민주전선』에 「오적」이 인쇄중이며 「오적」 원고료로 58,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했다”하여 김세영, 부완혁 등이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를 주도한 정황을 진술한 바 있다.

결국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 배경은 신민당내 『사상계』 인맥(장준하 김세영 등)이 「오적」 전재를 제안하였으나 동시의 내용이 갖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신민당 당수 유진산의 결심을 받아 최종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147) “「오적」을 전제한 『민주전선』(70.6.1)은 당시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1』, 동아일보사, 1992, p208.

‘당시 신민당의 『민주전선』 20만매 배포계획 비난’ 김진만(공화당 국회의원), 「제 73회 국회의원회(12호)」(1970.6.3)

148) 김충식, 앞 책, p209.

14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협의회, 1987, p178.

150)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151) 중앙정보부, 「사상계 및 민주전선에 대한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의견서」

(3) 「오적」 轉載사건 확대경과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이후 사건의 확대양상과 관련 김승균¹⁵²⁾은 중정이 필자 김지하를 연행, 관련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사상계』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국회에서는 『민주전선』의 「오적」 게재와 관련 부완혁, 김승균, 김용성, 김지하에 대한 연행 및 신민당내 『민주전선』과 인쇄동판 압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손주향¹⁵³⁾은 『민주전선』에 「오적」 내용중 준장성 부분이 삭제된 것에 분개하여 「외로운 勇者」에서 다시 전제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았다고 진술

이후 1970년 제 73회 국회(6-13차) 본회의에서 「오적」 게재 및 사건 관련자 연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사상계』 후원자였던 김세영 신민당 의원의 영리단체 겸직금지조항 위반문제로 확대되었다.

<국회의사발언 주요내용>

- 5월 18일 신민당 김응주 의원이 ‘도둑놈촌’을 거론하며 집권층의 부정 부패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을 비난
- 6월 2일 신민당 정해영 의원 등 33인은 『민주전선』 압수 및 관련자 구속과 관련 ‘언론자유방해’에 대한 질의를 위해 국무총리 및 내무·법무·문공부장관에게 국회출석 요구
- 6월 3일 공화당 김진만 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오적」을 『민주전선』에 게재하고 동 당보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예산심의를 거부한 신민당에 대해 비난
- 6월 4일 공화당 의원 김창근 의원은 ‘오적’이 선동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며 『민주전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비난하였으며 이에 신민당 김대중 의원은 공화당과 정부측 대응의 부당성에 대한 의사발언 제기

152)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153) 손주향(전 『민주전선』 편집위원) 면담(2006년 11월 6일)

- 한편 동 사건관련 국회에서는 『사상계』를 후원해온 신민당 김세영 의원의 영리단체 겸직관련 사퇴파동¹⁵⁴)으로 확산
 - 7월 15일 정운갑 신민당 의원은 6월 19일 이호 법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세영 의원의 영리단체 겸직과 관련 위법성¹⁵⁵)을 제기한 정황을 설명하며 김세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오적」사건에 이은 야당탄압이라고 비난
 - 7월 16일 김수환 신민당 의원¹⁵⁶)은 국회운영위에서 ‘신민당 당사침입 사건’ 및 ‘민주전선압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을, 김재광 의원은 ‘국회의원 겸직사실 유무에 대한 특별조사위’ 구성 등 5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
 - 7월 18일 국회운영위는 ‘의원겸직관련특별조사위’와 ‘한국알미늄회사의 부정유출 등에 대한 조사특위’ 설치를 결의하고 7월 21일 본회의 의결
 - 12월 24일 국회는 7차례의 특위 활동을 통해 1차 7명, 2차 6명에 대한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특별조사위’ 활동을 종료(10.6)후 12월 29일 보고서 제출

당시 김지하 등 「오적」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후 유진산은 박정희와의 독대(내용 미상)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관련자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종 선고는 유예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은 『민주전선』에 대한 압수행위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여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면서 국회에서는 정치문제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154) 7월 14일 예결특위에서 김현기 신민당 의원은 김세영 의원이 ‘국회의원겸직금지조항’ 위반 관련 사퇴했다며 공화당측 비난.

155) 정운갑 의원은 이호 법무부 장관이 김세영 의원이 헌법 39조, 국회법 30조, 128조를 위반했음을 제기했다고 언급했으나 김재광 의원은 ‘겸직관련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 헌법 제 40조(국가 또는 공동단체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 및 국회법 제 30조(국회의 영리단체 겸직금지 조항), 제 31조(이권 활동 배제의 원칙 규정)를 적용할 것을 주장.

156) 김수환 의원은 중앙정보부 5명과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등 20여명이 서울지법 유태홍 판사의 수색영장을 받아 『민주전선』 6월 1일자 10만 750부와 읍셀 아연판 4장을 압수했다고 비난.

(4) 『민주전선』 轉載관련 박 정권의 대응 배경

김용성¹⁵⁷⁾은 중앙정보부 조사과정에서 1970년 5월 18일 「한국문제 연구소」에서 『민주전선』 전문위원 홍영유에게 「오적」을 『민주전선』에 게재하도록 했으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급의식 선동문제가 제기될 경우 발생할 후환(국보법 위반 등) 등을 우려하여 1970년 5월 27일 신민당 당수 유진산에게 게재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당시 유진산은 「오적」 게재를 강행했다며 신민당도 「오적」 게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박정희 정권의 개입 가능성을 예견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균¹⁵⁸⁾은 당시 『사상계』의 하락한 위상으로 인해 중정이 「오적」 관련자 연행 및 『사상계』 압수 등의 조치에도 사법처리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만 신민당이 「오적」을 『민주전선』에 게재하고, 20만부 발행계획이 알려진 후에는 박 정권이 「오적」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려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손주향¹⁵⁹⁾도 「오적」 사건은 「오적」이 최초 게재될 당시보다 신민당 기관지에 전재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차단하려는 공화당의 급박한 조치였을 것이라면서 「오적」에 언급된 ‘정인숙 피살사건’,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등 부정 부패 사건에 대한 풍자성이 당시 공화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이 「오적」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1971년 대선·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계원¹⁶⁰⁾은 “자신은 「오적」 사건을 확대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박 대통령은 온건한 대응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박정희

157) 중앙정보부, 「사상계 및 민주전선에 대한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의견서)」

158)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159) 손주향(전 『민주전선』 편집위원) 면담(2006년 11월 6일)

160) “「오적」의 시인 김지하”, 『실록 민주화운동』, 경향신문, 2003.

“사상계필화사건”, 『민주화 발자취』, 한국일보, 2003.

김충식, 앞 책, p208.

대통령이 동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언론학자 강준만¹⁶¹⁾은 “「오적」이 『민주전선』에 전채되면서 정치문제로 비화되었고, 당시 『민주전선』은 10만부씩이나 찍어가두판매되는 등 대안언론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정권으로선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기술하고, 변호사 박원순¹⁶²⁾은 “1970년은 이듬해로 다가온 양대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이 일대 공세를 취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신랄히 꼬집은 「오적」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오적」 사건 관련자에 대해 강력 대응한 배경으로 제기돼온 ‘신민당 탄압설’을 살펴보면 박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오적」 필화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박정희 정권이 적어도 양대선거를 앞둔 당시의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며 『사상계』 및 『민주전선』 관계자 구속조치는 신민당이 「오적」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분명해진 후 이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급작스런 조치였다는 정황이 타당해 보인다.

나) 『사상계』의 「오적」 게재 관련

(1) 『사상계』와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

『사상계』는 5·16 군사정변이후 1961년 7월호 권두언에 “긴급을 요하는 혁명과업 완수와 민주정치에로의 복귀”라는 글을 실어 박정희 정권을 일부 긍정하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조속한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사상계』의 태도변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비판¹⁶³⁾ 및 ‘한일협정 반대투쟁’¹⁶⁴⁾ 등으로 『사상계』는 박 정권에 대한 대항 잡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161)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59.

16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p77.

163) “정부는 언론에 간섭 없기를 바란다” 『사상계』 (1964년 10월호, 권두언)

164) “한일협정 반대투쟁기간에 『사상계』는 투쟁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연구”,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p201.

그러나 한때 6만 5천부(63년 4월호)를 발행하기도 했던 『사상계』는 정부와의 대립 속에 경영악화¹⁶⁵⁾ 및 장준하의 연이은 구속과 정계진출 등으로 동 잡지의 위상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외에 60년대 대중문화 범람과 대중주간지 등장은 『사상계』와 같은 정론지의 침체현상¹⁶⁶⁾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바 어떤 연유이든 70년대 『사상계』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 당시 『사상계』 편집자 김승균¹⁶⁷⁾은 『사상계』를 장준하가 소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전 신민당 의원 부완혁에게 경영권을 넘겼고, 이후 재력가인 김세영 의원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해왔다면서 다행히 김세영 등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사상계』를 꾸려갈 수 있었음에도 『사상계』는 월 5,000부에서 10,000부 정도만 인쇄할 정도로 세가 기울어져 있었으며 간혹 잡지 페이지가 300매를 넘을 때도 있었지만 당시 ‘인쇄체로 50매를 넘어야 한다’는 최소 잡지간행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정도로 전략하여 1970년 『사상계』는 박정희 정권의 주요 관심대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계』는 소위 ‘5·16 혁명’ 명분에 일부 동조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권력의 민정이양 계획이 폐기되면서 박 정권과 대립하게 되었고 「오적」 게재 당시 『사상계』의 사회적 영향력은 급속히 기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5)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pp47-48.

166) 홍석률,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p215.

167)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2) 중앙정보부의 『사상계』 필화사건 개입

중앙정보부는 『사상계』·『민주전선』 편집진들을 연행 조사 후 반공법을 적용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한 사실은 이미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안으로 「오적」 필자 김지하도 회고록¹⁶⁸⁾에서 1970년 6월 중정 연행당시 당시 「오적」에서 표현한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관련 목요상¹⁶⁹⁾ 동 사건 담당판사는 재판기간 법원출입 중정요원 구○○(사망)과의 대화내용에서 “(보석을) 내주면 안 된다. 상부지시니 우리 입장을 살려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언급하여 중정이 적극 개입되었음을 증언¹⁷⁰⁾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균¹⁷¹⁾은 『사상계』에 「오적」이 게재된 후 중정이 김지하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사상계』 수거 및 관련자 미행이 있었음에도 당시 중정은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김지하¹⁷²⁾도 “『사상계』에 (오적이) 발표된 후 (중정에) 연행되어 조사받았으나 그 때는 이미 무마하기로 되었던 것 같은데 『민주전선』에 전재됨으로써 폭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중정 부장이었던 김계원¹⁷³⁾도 “중정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여 묻어두기를 바랐으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김지하를 구속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증언하여 중정과 청와대의 입장이 달랐음을 암시하고 있는 바 중정이 동 사건을 주도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적」 사건이 진행단계에 따라 청와대 직접지시 또는 중정

168) 김지하, 『흰 그들의 길 2』, 학고재, 2003, pp166-170.

169) 당시 「오적」 사건을 담당한 목요상 판사는 재판당시 반공법 위반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진술.

170) 김충식, 앞 책, p237.

171)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172)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pp348-349.

173) 김충식, 앞 글, p237.

내부공작이었던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중정이 사건발생 초기 「오적」이 『사상계』에 게재될 시점에는 은밀히 대응하였고 이후 『민주전선』 게재 이후 정치적 과장을 우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된다.

(3) 중앙정보부의 『사상계』 폐간 개입 여부

앞서 중앙정보부가 『사상계』 폐간을 사전 계획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동 사건을 계기로 『사상계』는 폐간의 길을 걷게 된다.

김승균¹⁷⁴⁾은 중정의 『사상계』 사찰여부에 대해 중정요원이 『사상계』사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오랫동안 광고를 주던 기업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며 광고를 갑자기 중단하는 등 중정개입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상계』 폐간사유에 대해서는 부완혁 사장과 장준하 의원으로부터 득문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중정이 장준하에게 「오적」 사건 직후 ‘사상계와는 관련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고, 부완혁에게는 3,000만원을 주고 ○○일보에 팔도록 요구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장준하는 중정 요구대로 각서를 썼으나 부완혁은 훗날 비난을 우려, 『사상계』를 자진 폐간하기로 결심했다고 증언함으로써 중정이 『사상계』 폐간에 개입했음을 진술한 바 있다.

이후 문공부가 1970년 9월 26일 인쇄시설 미보유를 이유로 『사상계』 등록을 취소조치(72.4 대법원 등록취소 무효판결 확정)한 바 있어 박정희 정권이 문공부와 중정을 통해 당시 『사상계』를 폐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70년경 『사상계』가 명맥만 유지되는 수준¹⁷⁵⁾이었다는

174) 김승균(전 『사상계』 편집자) 면담(2006년 11월 14일)

김승균의 진술을 재차 고려하면 「오적」의 사건과장이 발생되기 이전 박정희 정권이 『사상계』를 폐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평 가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둘러싼 사건 전개양상을 살펴보면 중정은 「오적」이 갖는 신랄한 정부비판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처음 동시가 게재된 『사상계』를 수거하고 김지하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신민당이 동시를 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전제하여 공화당 및 박정희 정권의 실책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이 분명해 보임에 따라 공화당 및 박정희 정권은 「오적」사건을 언론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인식하여 대처함으로써 여야간 정치갈등으로 비화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보부는 신민당을 압박하거나 『사상계』를 폐간하기 위해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사건화하기로 사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 사건이 정치쟁점화 된 후 박정희 정권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민주전선』 압수 및 신민당 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물리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

175) “『사상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과 비평」은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것은 『사상계』가 갖는 보수반공논리에 대한 거부감 및 문체가 갖는 고루함 때문이었음”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연구”,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p206.

1) 시대적 배경

1971년 4월 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970년 9월 29일 김대중은 신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김 후보는 ‘예비군 폐지’, ‘4대국부전보장론’, ‘남북화해교류’ 등 당시 민감한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1971년 2월 미 닉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는 등 정치적 위상은 강화되었다. 비록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630만표)가 김대중(540만표)을 누르고 당선되고, 5월 25일 8대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를 일구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의 국민적 지지기반은 급격히 강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으로 근로조건 개선추구 및 학생군사훈련·언론탄압반대 학생시위와 노동자 파업 확산 등으로 불안정이 확대되었고, 정부당국은 1971년 10월 위수령 발동 및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표하는 등 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2) 사건 개요

1971년 2월 12일 검찰은 월간지 『다리』¹⁷⁶⁾ 1970년 11월호에 실린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의 필자 임중빈과 동 잡지 발행인 윤재식, 주간 윤희두에 대해 반공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검찰은 기소이유와 관련 임중빈이 동 기고문에서 ‘프랑스 5월 학생 혁명’¹⁷⁷⁾과 미국 ‘뉴 레프트 운동’¹⁷⁸⁾을 거론하며 혁명을 통한 정권타도의

176) 『다리』誌는 신민당 국회의원 김상현이 70.7.29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첫 창간호를 발행한 월간지로 발행인이 윤재식, 윤희두, 박창근 등으로 바뀌었으며 74년 폐간되었음.

방향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학생운동 선동 및 은연중 정부타도를 유도하여 필자·발행인·편집인 모두가 국외 공산계열 및 반국가단체인 복귀를 이롭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정은 1971년 7월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연이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고법을 거쳐 1974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목요상 판사는 ‘정치권력의 입장에만 치우친 안목에서 현실에 대한 고발이나 또는 개혁의지를 모두 반정부적인 것 내지는 이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반공법을 발동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시하여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구속 기소된 『다리』 지 관계자들은 『다리』 지의 실질적인 발행인은 김대중 후보의 측근 김상현 의원이었으며 동 잡지 발행인 윤재식은 김대중 후보의 공보비서로 활동하였고 편집자 유형두는 김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간행하는 한편 임중빈은 김 후보 회고록을 집필하는 등 『다리』 지가 사실상 김 후보의 홍보기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이 신민당 대선후보로 급부상한 김대중에 대한 견제 필요성으로 김상현, 윤재식, 유형두가 관여중인 『다리』 지에 대해 탄압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동 재판을 담당한 서울형사지법 재판관 목요상에게 동 사건 피의자들을 유죄선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바 동 사건이 1971년 7월 사법과동179)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¹⁸⁰⁾하였다.

177) 「프랑스 5월혁명」은 1968년 5월 드골정부에 항의, 학생·근로자가 연합하여 벌인 대규모 사회변혁운동임.

178) 「뉴레프트」운동은 1950년대 후반 영국·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정치권력탈취 이상의 문화혁명을 포괄하는 사상운동으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 흑인시민권 보장 등을 주장.

179)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일컬으며 1971년, 1988년, 1993년 세 차례 있었는데 71년 사건은 이범열 판사 등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사표를 내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153명의 판사들이 동참한 바, 세간에는 朴正熙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조치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평가.

180) 강준만, 『1970년대권 한국현대사산책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151.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p263.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 돌베개, 1989, p229.

3) 조사 내용

가) 반공법 적용 관련 논란사항

당시 한승헌¹⁸¹⁾ 담당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 주장과 달리 임중빈은 기고문에서 한국 학생운동이 정권타도의 절대적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았고, 검찰은 임중빈 기고문에서 사용한 정치혁명과 문화혁명을 정권타도적인 용어로 과도하게 예단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콩방디) 학생운동 및 미국(뉴레프트) 무정부주의 행동양식을 과도하게 국내와 결부시켜 反정부 운동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작품이나 논문에 대해서는 규범적 평가에 귀착되어야 하는데 중립적인 관점(남재희, 구상, 송건호 등)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며, 소위 뉴레프트 및 콩방디 등을 국외 공산주의자로 보기도 어려워 임중빈이 이들을 동조했다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임중빈 기고문의 위법근거로 임중빈은 4.19 학생운동이 정권타도의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전제하고 학생운동이 정치혁명의 전단계로서 문화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고 했다. 또한 미국 정부타도를 주장하는 뉴레프트 운동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김일성 사상의 노선과 방법을 주조로 하는 한편 드골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을 인용하여 국내 운동권에게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고 동 기고문을 인쇄·발간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은 1971.2.16 공소장에서 임중빈, 윤형두, 윤재식에 대해 반공법 제 4조 1항, 제 9조 2항, 제 16조, 국가보안법 제 11조를 위반¹⁸²⁾했다고 기소¹⁸³⁾**

181)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 범우사, 2006, pp315-325.

182) 반공법 제 4조 1항(찬양·고무)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공법 제 9조 2항(재범자의 특수가중) : (약술) 국가보안법 등의 유죄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중,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후 5년내에 제4조 1항 등의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이에 목요상¹⁸⁴⁾ 당시 1심 재판관은 『다리』지 기고문에 반공법 적용 등 유죄법리의 부당성을 인정한 바 검찰의 반공법 4조 1항 적용 및 내란 음모 미수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동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중빈이 과거 반공법 위반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인 만큼 동종의 죄를 지으면 중형이 가능하다고 함의부 이송을 요구한 검찰에 대해 집행유예는 형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종 선고직전 검찰이 요구한 변론제기, 추가 증인신청, 재판부 이송 등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이를 각하한 후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목요상은 당시 사법부 내부분위기와 관련 서울형사지법 이범렬 부장판사 등 6명의 부장판사로부터 동 사건을 자문했을 때 모두로부터 소신판결을 주문받았는데 대법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당시 사법부는 『다리』지 사건에 반공법 위반죄 적용은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분위기를 추가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판사에 따라서는 해석을 달리하였으며 임중빈의 기고문을 선동적으로 판단하여, 반공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하였다.

『다리』지에 반공법 적용관련 위법성 논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사법적 논란은 종결되었으나 『다리』지 기소 배경에 대해서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었다.

그 죄에 대한 법정최고를 사형으로 한다(62.9.24 신설)

반공법 제 16조(자격정지) : 국가보안법 제 10조 내지 제 13조와 동법 제 2장의 규정은 이 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보법 제 11조(자격정지) :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62.9.24 개정)

183) 중앙정보부, 「월간다리지사건검찰추처리상황보고」

184) 목요상(前 민주당 의원) 증언(2006.11.2)

나) 『다리』 지 필화사건을 통한 김대중 견제의혹

(1) 『다리』 지와 김대중과의 관계

『다리』 지 발행목적에 대해 김상현¹⁸⁵⁾은 『사상계』 폐간 이후 새로운 진보성향의 정론지를 만들 생각으로 창간했다면서 동 잡지가 김대중 후보를 위한 잡지는 아니었으며 『다리』 지에 김대중 후보 홍보를 위한 지면 할애는 전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형두¹⁸⁶⁾도 당시 『다리』 지가 실질적으로 김 후보를 지원 또는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야당을 지원하는 정치색을 표방하지 않았으며, 다만 윤형두 자신은 김대중·김상현 의원 등과의 친분으로 김대중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김대중을 수시 접촉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상현, 윤형두 모두 김대중 후보의 선거홍보물 제작에 깊이 관여하는 등 김대중 후보와는 정치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다리』 지 관계자들이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로서 대통령 선거활동에 적극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다리』 지와 김대중과의 관계》

이름	직업	김대중 후보와의 관계	비고
김상현	『다리』 지 고문	신민당 국회의원	김대중 계열 국회의원
윤재식	『다리』 지 발행인	김대중 후보 공보비서	
윤형두	『다리』 지 주간	김대중 대선 선거용 홍보물 제작	「내가 걷는 70년대」 1·2부 「대중경제 100문 100답」 집필
	(주)범우사 대표		
임중빈	필자	김대중 전기 집필	「김대중 회고록」 집필

185) 김상현(전 민주당 의원) 증언(2006.10.11)

186) 윤형두(전 『다리』誌 주간) 증언(2006.9.26)

(2) 김대중 견제의혹 제기배경

『다리』지 관계자들은 앞서 김대중과의 관계증언을 통해 선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밝혀 박 정권이 『다리』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했다. 윤형두¹⁸⁷⁾는 김대중 후보가 부각된 배경과 관련 당시 누구도 김대중 후보가 유진산, 이철승, 김영삼을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며, 박정희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도 김대중 후보 홍보책자 ‘내가 걷는 70년대’ 1·2호판이 1970년 11월 효창운동장에서 지지자들에게 대거 판매되어 거액의 현금이 조성된 후에야 『다리』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진술했다.

한편, 목요상¹⁸⁸⁾은 『다리』지에 대해 당시 김상현 의원이 실질적 발행인으로 대선후보 김대중 당선을 위한 잡지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진술하고, 박창근¹⁸⁹⁾도 서울시경에서 조사받을 당시 김상현이 임중빈 기고문을 사전 인지했음을 진술토록 강요받았다면서 김대중 측근 김상현을 구속하려 한 정황이 분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다리』지 필화사건을 통해 김대중 야당 후보의 선거홍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다리』지 관계자 구속이후 이들에 의한 선거활동은 중단되었다.

(3) 중앙정보부의 『다리』지 필화사건 개입여부

중앙정보부의 개입설과 관련 윤형두¹⁹⁰⁾는 『다리』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구속(1971.2.11)되기 이틀 전 중정직원 문○○ 접촉사실을 진술하면서 문○○은 자신에게 김대중 후보의 선거홍보물 제작을 중단할 것을 수차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중정 고위간부와의 접촉을 주선하고 해외

187) 윤형두(전 『다리』誌 주간) 증언(2006.9.26)

188) 목요상(전 『다리』誌 담당 판사) 증언(2006.11.2)

189) 박창근(전 『다리』誌 편집장) 증언(2007.3.8)

190) 윤형두(전 『다리』誌 주간) 증언(2006.9.26)

출국과 이에 따른 자금지원을 제의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편집장 박창근, 기자 최의선, 윤길한 등이 남산¹⁹¹⁾에 연행되어 『다리』 지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음을 득문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상현¹⁹²⁾은 대통령 선거종료(71.4.27)시점 중정부장 이후락과의 대화내용에서 “주변에서 김상현 의원 구속의견이 강했으나 자신이 구속을 면하게 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중정 개입정황을 밝혔고 목요상¹⁹³⁾ 당시 재판관은 『다리』 지 사건과 관련 중정요원(명미상)이 판사실을 수시 방문하여 “높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사건 재판과정에서 각종 접대를 제의하는 한편, 판결내용을 사전 제보해 줄 것과 당시 피의자들의 보석신청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¹⁹⁴⁾를 살펴보면 동 사건관련 피의자(임중빈, 윤행두, 윤재식, 박창근, 최의선)들에 대한 의견서가 전무하고, 1971년 2월 12일 서울 시경국장의 대공분실장앞 문건은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다리』 지 사건)을 서울지검 김OO 및 이OO 검사가 시경 특별공작반에 의해 취급중임을 통보”하고 있어 중정이 동 사건 처리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으나 『다리』 지 사건을 담당했던 주체는 검찰과 서울시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다리』 지 폐간 정황

윤행두와 박창근¹⁹⁵⁾은 당시 박 정권이 『다리』 지 제작을 방해한 정황과

191) 당시 『다리』誌 편집장 박창근은 윤행두 등이 구속된 후 1971년 2월 11일 기자 윤길한, 최의선과 남산에 위치한 서울 시경에 연행되었으며 중정에 연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

192) 김상현(전 민주당 의원) 증언(2006.10.11)
한승헌선생화갑기념문집간행위원회編, 『분단시대의 피고들』, 범우사, 1994, p158.

193) 목요상(전 『다리』誌 담당 판사) 증언(2006.11.2)

194) 중앙정보부,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 취급상황 통보」

195) 「민주언론의 전열에 휴식없다」, 『다리』誌사건 1주년기념 좌담회(71.8.6), 『다리』, 1971년 9월호, pp200-227.

관련 『다리』 지를 문공부에 등록 신청 후 5개월이 지난 1970년 7월 관권을 취득한 후에도 인쇄소들이 수차에 걸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정부 압력으로 작업을 거부한 인쇄소들이 27곳에 달할 정도여서 동 잡지를 유량식으로 발간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정부 당국의 탄압이 극심했으며 세무사찰, 소방시설 점검, 회사앞 교통단속, 광고주 소환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윤형두¹⁹⁶⁾는 『다리』 지가 폐간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 인쇄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결정적으로 유신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정부 견제를 우려) 자진 폐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여 폐간사유가 반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¹⁹⁷⁾에는 1974년 당시 발행인이었던 박창근이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1월호를 결간하고 2·3월호를 발간했으나 3월호 권두언이 문제되어 문공부에 의해 배포중지(74.2.25) 되자 관권유지를 위해 1971년 9월호에 실었던 기고문(30매)을 4월호인 것처럼 문공부에 제출하고 종적을 감추었는데 휴업신고의무불이행 및 詐僞에 의한 출판으로 ‘신문통신등록취소사유’(8조 1항 2호)에 해당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다리』 지 폐간사유는 표면상으로는 당국의 검열과정에서 발간이 곤란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발행인 박창근의 도피로 더 이상 자생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평 가

검찰의 『다리』 지 기고문에 대한 반공법 적용문제, 동 기고문이 학생의 반정부 운동을 유도했다는 주장, 그리고 구속기소 등과 관련한 논란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통해 불식되었다고 본다.

196) 윤형두(전 『다리』誌 주간) 증언(2006.9.26)

197) 중앙정보부, 「“월간다리지불은권두언필자에 대한 수사보고”, 『다리』誌 1974년 3월호 권두언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현사회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자극·선동한 것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박창근 구속전까지 수사가 일시 중지될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고 있음, 1974.3.5)

다만 중앙정보부가 야당 대통령 후보 견제를 위해 『다리』 지를 탄압한 의혹과 관련 동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는 국정원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7대 대선 및 8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박정희의 대권 경쟁자로 등장한 김대중에 대해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대중 후보의 지지도 상승 저지방안으로 김대중의 홍보기구 역할을 해온 『다리』 지 관계자들을 구속했다는 주장은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

『다리』 지 사건을 주도한 담당기관과 관련 중정 직원이 윤형두 및 목요상을 접촉하여 동 사건에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한 정황을 고려할 때 중정이 동 필화사건에 관심을 가진 정황은 발견된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사건의 경우 중정에서 직접 연행·조사해온 전례 및 당시 중정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볼 때 동 사건은 검찰과 서울시경(특별공작반)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창조』 지 필화사건

1) 시대적 배경

1971년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었다. 학생들의 교련반대 시위, 대학교수들의 학원자율화 요구, 기자들의 언론자유화 선언, 사법부 파동 등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또 광주 대단지사건, KAL빌딩난동사건, 실미도사건도 이 해에 발생되었다.

1970년대 초반은 국제적으로 데탕트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중국과 미국의 화해, 중·일 수교 등이 이뤄졌고 남북한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던 강대국들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1970년 8월 15일 남북한간의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의하는 한편, 1971년 8월 12일

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북한의 수락을 받았고, 북한도 1971년 4월에 평화통일에 관한 8개항을 제시하고 1972년 1월 10일에는 남북 평화협정체결과 남북불가침조약체결 등을 제안하는 등 남북한간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에 위수령을,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일고 있던 민주화의 요구들을 회피하려고 했다.

2) 사건 개요

천주교 기관지 월간 『창조』 198) 1972년 4월호에 김지하의 시 「비어(蜚語)」 및 전 동아일보 이사 천관우와 서강대 길현모 교수의 4.19 대담 특집이 게재되자 중정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이미 배포된 잡지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중정이 직간접적인 관련자는 물론 이들의 지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 사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전개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3) 조사 내용¹⁹⁹⁾

중정은 이와 관련해 ‘국가총력 안보를 저해함은 물론 천주교인들을 親野的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순수한 가톨릭 기관지로 전환할

198) 『창조』 지는 천주교 기관지 「가톨릭 청년」의 후신으로서 1971년 9월호부터 발간되었다.

199) 이 내용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창조』 지 필화사건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내용은 모두 이 보고서의 내용임을 밝힌다.

것을 서약'받는 한편, 사죄와 향후 협조를 약속받기도 했다.

당시 조사받은 『창조』지 관련자는 김수환 추기경과 김철규 부주교, 카톨릭 출판사 사장 겸 창조지 편집책임자인 유봉준, 주간이었던 구중서, 가톨릭 출판사 전 부사장 양한모 그리고 천관우, 김지하였다.

김수환 추기경과 김철규 부주교에게는 해당 글의 게재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면서 ‘순수한 가톨릭 기관지로 전환할 것을 서약’ 받았고, 편집책임자인 유봉준을 해임한 후 김택구 신부를 사장대리로 임명토록 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과 김철규 부주교는 ‘대통령 각하께서 동 사실을 아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자신들이 편집에 소홀했음을 시인’했다고 보고했다.

유봉준 신부, 주간이었던 구중서, 가톨릭 출판사 전 부사장 양한모에 대해서는 3월 28일 연행하여 각각 10시간, 2일, 3일간에 걸쳐 해당 글의 게재 경위를 조사했다. 이때 유봉준은 ‘실책을 자인하고 진심으로 사죄’, 구중서는 ‘과오를 시인하면서 관용을 간청’, 양한모는 ‘野傾化 선동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앞으로의 협조를 확약’ 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양한모는 1971년 사퇴한 전직 간부로서 해당 글의 게재와는 관련 없는 인사였다. 이런 사실은 당시 중정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는 양한모에 대해 ‘1971.8.16 사퇴하였으며 재직기간 중 창조지 창간에 일시 관여하였으나 정치성이 개재된 투고 또는 同誌 편집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것은 중정이 양한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하여 조사함으로써 향후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하와 천관우에 대해서는 ‘입건(반공법 등)할 수 있는 구증(具證) 방법이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한 이후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음’이라고 보고 했다.²⁰⁰⁾

200) 중앙정보부, 「『창조』지 관계자와 김영일 및 그 주변인물 수사보고, 진술서 참조」

그런데 중정은 이 과정에서 당시 ‘오적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후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지하를 찾기 위해 김지하 주변인물 36명을 1972년 3월과 4월 사이에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중정에 소환되어 김지하와의 관계와 김지하의 지인 등에 관해 조사 받은 뒤 김지하의 소재를 파악해 연락하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풀려 날 수 있었다.

결국 김지하는 4월 13일, 16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중정의 조사를 받고 송치되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소환 및 환문이 불가하여 1973년 10월 8일 수사중지 결정되었다.

한편, 중정은 『창조』지 4월호의 회수에 나섰다. 관련 보고서는 ‘3.30 22:00 현재 전시 5,500부중 2,400부를 회수하였으며 잔여부수에 대하여는 김철규 부주교가 전국교구에 직접 지시, 강력 회수’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정은 전국 시도단위 경찰을 동원하였고 압수와 관련한 법적 조치는 사후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27일 중정 본부에서 서울분실장에게 보낸 아래 문건에서 확인된다. 최종적으로 중정은 발간된 5,500부(배포는 4,788부) 중 2,274부를 회수하고 3,226부는 회수하지 못했다.²⁰¹⁾

천주교 기관지 창조 4월호에 대하여 4.26 현재 아래와 같이 각 시, 도 경찰국에서 회수 보관중에 있다 하니 형소법 절차에 의한 압수조서를 작성 인수하여 4.30까지 참조 O국장으로 송부할 것(서울 회수건수 354건)

4) 평 가

이 사건은 유신체제 선포 이전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던 글을 게재하는 잡지에 대해 중정이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자 한 사례로서, 언론에 대한 통제는 물론 종교계까지도 통제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01) 회수 2,274부(전국 교회 32부, 서울 및 지방서점 1,530부, 잡지사 보관 712부) / 미회수 3,226부(전국 교회 2,443부, 서울 및 지방서점 493부, 각계 인사 기증 290부)

특히 김수환 추기경을 연행하면서 그 이유를 ‘천주교인들을 親野的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라고 밝힌 것은 이 사건이 반공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의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히려 반공법 위반혐의를 빌미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인사들에 대한 압력과 통제가 주요 목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과 김철규 부주교에게 ‘순수한 가톨릭 기관지로 전환할 것을 서약’받은 점과 양한모가 ‘野傾化 선동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앞으로의 협조를 확약’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중정의 수사목적이 반공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에 비중을 두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김수환 추기경과 김철규 부주교에게 ‘대통령 각하께서 동 사실을 아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심히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한 사실에 있어서는 국가정보기관인 중정이 당시 정권안보에 치중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전국의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해당 잡지를 압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관련자의 주변인물까지 중정에 소환해 조사한 것은 불법적 행위였다.

1) 시대적 배경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당은 1987년 대통령 간선제 하에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개헌투쟁에 나서게 됨에 따라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후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호헌(간선제 유지) 선언 및 6월 이한열군 시위중 부상(7.2 사망)에 따른 국민저항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를 근간으로 한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고, 10월 30일 김대중은 대선출마 선언 후 평화민주당을 분리하여 창당하였으며 통일민주당은 11월 9일 김영삼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6.29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선정국에 따른 혼란과 대학생들 시위²⁰²⁾는 지속되었으며 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사회분위기는 냉각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제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어 1988년 6월 27일 ‘5공비리조사를위한특위’가 국회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2) 사건 개요

1987년 9월 20일 안기부는 김대중 납치사건(73.8) 관련 전 중앙정보부장(70.12-73.12) 이후락의 증언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신동아』 및 『월간조선』 10월호 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쇄소를 점거²⁰³⁾하자

202) 1987년 8월 19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

『신동아』·『월간조선』출판국 기자들은 9월 21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편집국 기자들 역시 기자총회를 열고, 언론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응하였다.

9월 22일 동 사건이 AP, 마이니치 신문 등 해외 언론사를 통해 전파된 후 9월 25일 민주당, 민주협 등 정치권 및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아져가자, 9월 27일 민정당은 『신동아』 등 제작 중단사건 관련 정부의 공명정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9월 28일 문공부 장관 이용희는 “이후락씨 인터뷰 기사는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요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사건은 종료되었다.

동 사건은 정부측이 주장한 ‘국익’과 언론사가 주장한 ‘보도자유’가 상충한 대표적 사례로서 당시 정부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한일간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²⁰⁴⁾ 및 전 중앙정보부 부장의 재직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은 실정법 위반임을 주장하여 언론기본법(1987.11.11 폐지) 제 53조 “편집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신동아』, 『월간조선』 및 대한변협 등은 이후락의 증언내용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밝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 사건이 이미 공개된 사안임을 들어 국익에 반하는 내용도 아니며 언론사에 김대중 납치관련 이후락의 증언은 공직수행과 관련 없는 범법행위로 직무상 비밀 또는 국가이익과 무관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실정법 위반부분은 간행물 발행이후의 문제로 안기부의 인쇄소 접거는 강압적 사전검열로서 명백한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203) 1987년 9월20일 19:00경 안기부측은 수사관 10명을 『월간조선』 및 『신동아』 10월호가 인쇄중인 서울 「동아인쇄공업」에 파견, 인쇄와 제본을 중단시켰음(조선일보 11면, 1987년 9월 25일자) 1987년 9월 20일 21시 30분경 수사요원 7명이 「동아인쇄공업」 운전실을 점거, 「동아일보사사」 5권(동아일보사, 1996.3), p317

204) “73년말 소위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하여 14년전 일어났던 이 사건은 韓·日 양국이 상당기간의 수사결과 공권력의 개입은 없었고 사법적 외교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은 국민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이같은 韓·日 양국의 결론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다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며 불투명한 발설을 토대로 동 사건을 재론하는 것이 국제외교상 중대한 국익손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문공부 성명, 동아일보 1면, 1987년 9월 24일자)

3) 조사 내용

가) 『신동아』 등 제작중단사건 관련 위법성 논란

(1) ‘국익’과 ‘언론의 자유’ 상충시 판단기준에 대한 이해

정보기관의 『신동아』·『월간조선』 제작방해 사건은 국익과 언론보도의 자유가 상충한 사건으로 국익의 개념²⁰⁵⁾은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이익이 정부이익 및 국민적 이익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특정사건에 대한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가 국가발전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 대립되기보다 방법상의 갈등이며 상호 경쟁적인 개념²⁰⁶⁾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당시 사건을 판단할 특정 원칙은 없으며 정부 및 언론사측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균형적 시각이 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아울러 앞서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공표주의(언론보도) 또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정부측이 주장한 대일외교와 관련된 국익손상 측면과 언론사가 주장한 사회정의 및 공공복리 측면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 사안은 사법적 판단없이 정치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시 안기부나 정부가 출판물 제작을 중단시킨 객관적이고 진정한 동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또한 동 사건이 국익과 언론 자유의 상충부분 외에 정보기관의 출판물 제작방해가 사전 언론검열이라는 절차적 측면과 전 정보기관장의 직무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이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205) 팽원순, 「언론의 자유와 국익」, 『계간언론중재』, 1991, 여름호

206) 서정우, 「기밀주의와 공표주의」, 『계간언론중재』, 1991, 여름호

(2)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한일 정부의 외교적 문제점 검토

‘김대중 납치사건’ 발생(1973.8.8) 당시 다나카 가꾸에이(田中角榮) 일본 수상²⁰⁷⁾은 1973년 9월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측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권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한국정보기관의 조직적 범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과의 우호관계는 불가결한 것으로 대한국 기본 방침은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동 사건으로 한국과의 관계손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1월 1일 오오히라(大平)²⁰⁸⁾ 외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한·일간에 일어난 불행한 국제적 형사사건이며..... 한·일 양국으로서 수사는 계속하지만 한·일간의 갈등이 더 이상 계속되면 양국관계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평가하고 외교적 결착²⁰⁹⁾을 보기로 했다”면서 “이 사건은 주권 침해가 최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측에는 결정적 단서가 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국 측도 공권력 개입은 없다고 한다”면서 사건의 외교적 봉합을 희망하였다.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재일한국인 문세광의 육영수 저격사건 발생이후 한국은 1975년 7월 22일 일본 측에 김동운²¹⁰⁾을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후 면직했음을 통보하고 아울러 문세광 저격사건과 관련 일본의 테러방지노력 및 수사결과를 요청하였고, 1975년 7월 22-23일간 한·일외상회담(서울)에 참가했던 미야자와(宮澤) 外相은²¹¹⁾ “한국은

207) 김대중납치사건진상조사위원회, 『김대중사건의진상』, 삼민사, 1987, pp192-195.

208) 마이니치(毎日)신문사 편(녹두사편집부 역), 『김대중납치사건의 전모』, 녹두, 1985, p243.

209) 1973년 11월 2일 김종필 총리는 일본을 방문하여 「김동운에 관한 구상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김동운을 직위해제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불기소 처분 하고 다만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손상 부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여 더 이상 일본 경찰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일본정부가 同 구상서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임.

210) 김대중 납치사건 당시 일본주재 1등서기관이었던 본명은 中情직원으로 金大中 납치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국내소환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211) 마이니치(毎日)신문사 편(녹두사편집부 역), 앞 책, pp251-252.

김대중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대중 사건은 완결했다”고 선언하였으며, 1977년과 1979년 후쿠다(福田)·오오히라(大平) 수상은 ‘김대중 납치’와 관련 각각 중의원에서 한국 정부의 공권력 개입은 없었다고 재차 증언²¹²⁾하여 더 이상 양국간 외교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1987년 당시 전 중앙정보부 부장 이후락이 1973년 한국정부의 ‘김대중 납치’를 인정할 경우 일본정부가 동 증언을 외교문제로 인식하여 일본은 ‘김대중 납치’사건 재조사 및 자국에서 발생한 납치행위가 일본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임을 들어 한국의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김대중 납치행위를 인정한 한국정부는 국가의 도덕적 위신하락 및 그에 따른 국가사죄와 배상을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락은 1987년 9월 28일 외교구락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의 공권력 개입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전 인터뷰 기사를 전면 부인하였다.

결국 1987년 당시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 사건진상이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외교문제 발생 및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공식화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사안이었다.

(3) 기타 위법제기 사항 및 사태추이

동 사건 발생당시 『신동아』 및 『월간조선』 출판국 기자²¹³⁾들은 ‘『신동아』 제작탄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무총리·문공부 장관·안기부장·민정당 총재 앞으로 발송하여 정보기관이 인쇄소를 점거해 『신동아』

212) “이것은(각각의 증언)은 韓·日양국의 김씨 사건에 대한 기본이며 양국정부의 수사결과 공권력의 개입이 없었음을 확인한 것이다”(「최창윤 문공부 차관 기자회견내용」, 조선일보 2면, 1987년 9월 25일자)

213) 『동아일보사史』 5권, 동아일보사, 1996, p321.

보도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검열로서 위헌이며, 아직 보도되지 않은 기사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저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한변협 인권위²¹⁴⁾도 ‘이후락 증언’ 기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위헌으로 폐지될 운명인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53조)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기본법(87년 11월 11일 폐지) 제 53조 “편집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 위배된다고 지속 주장하였다.

이에 「동아일보」·「조선일보」 측은 사설에서 동건 관련 ‘비록 언론 보도가 법에 어긋난다 해도 사후의 사법적 대응을 강구하거나 사전억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도 법적절차(가처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사실상 공개사안이라는 점에서 비밀에 해당하는가, 3공화국 당시 발생한 내용을 5공화국이 책임질 사안인가, 납치와 같은 범죄사실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나 앞서 이후락이 『신동아』와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하고 당시 공권력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정부가 ‘인쇄저지 방침’을 철회하면서 상기 논란도 종료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출판국장 장행훈²¹⁵⁾은 同 사건에 대해 ‘이후락 증언’ 게재경위를 설명(후술)하며 “당시 『신동아』 입장에서 동 기사와 관련하여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고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인 바 주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게재이후 사회·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증언내용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214) 「동아일보」 1면(1987년 9월 25일자), 『동아일보사史』 5권, p322.

215) 장행훈(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면담(2007년 1월 5일)

제기되었다”며 동 사안 해결을 위해 정부측 타협안(후술)이 제시되었으나 타협안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후락이 기자회견을 통해 납치관련 자신의 증언을 번복함에 따라 일본정부도 우려와 달리 외교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언급한 바 결국 상기 위법사안 들은 여러 논란이 가중되면서 사법적 판단 등이 요구되었음에도 이후락이 인터뷰 내용을 부인하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정치적인 양보 조치를 취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후락의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증언 게재과문은 납치사건이 현재까지도 국익측면에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외교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체적(사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으며 단지 인쇄소 강제점거로 인한 절차적 불법성으로 정부의 언론정책이 여전히 강압적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음은 물론, 정보기관이 「6.29 선언」 이후에도 불법적 언론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하였다.

나) 안기부의 김대중 견제 의혹

(1) 1987년 大選관련 정치상황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1986년 11월 5일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수락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대중은 1987년 5월 1일 김영삼을 총재로 한 통일민주당 창당에 동참하였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발생 및 6월 이한열 시위중 부상사건(사망) 등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 속에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10.27 개정) 수용 및 김대중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였다. 이후 1987년 8월 5일 노태우가 민정당 총재가 되고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간 후보

단일화 노력이 실패하게 되자 김대중은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후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미 해금직후인 7월 17일,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대선출마 의사²¹⁶⁾를 밝혀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대통령 선거후보로 활동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1987년 『신동아』·『월간조선』 10월호의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기사게재 저지는 김대중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이전 김대중 견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이후락 증언’ 게재경위 및 저지배경

당시 ‘이후락 증언’ 보도게재를 처음 기획한 동아일보 출판국장 장행훈²¹⁷⁾은 안기부가 ‘이후락 증언’ 게재저지를 위해 『신동아』 발간 중단조치 이전부터 개입조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락 증언’ 게재 금지가 김대중에 대한 견제조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이 대선출마 공식화²¹⁸⁾이전이었음을 고려하면 동 주장이 다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당시 안기부가 『신동아』 측에 동 기사게재와 관련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후락 증언’ 기사게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기사 게재는 허용하되 증언 내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완화할 부분은 납치사실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고 외교문제 발생과 관련 전직 중앙정보부 부장 이후락의 지시부분으로 이에 대한 기사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16) 민권회(민주인권 연구회)는 1987년 7월 17일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에서.....“지난해 11월 5일 김 의장의 직선제 수락을 전제한 불출마 선언은 정부 여당의 4.13호헌조치 시점에서 이미 구속력을 상실, 백지화·무효화 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권회의 이같은 결정은 각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이태호, 『영웅의 최후』, 한빛, 1992, pp404-405.
이만섭, 『나의 정치인생 반세기』, 문학사상사, 2004, p342.

217) 장행훈(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면담(2007년 1월 5일)

218) 김대중 민주당 고문은 1987년 10월 28일 신당(평화민주당) 창당과 대통령 선거출마 의사를 공식선언.

< 「이후락 증언」 게재 경위(장행훈 증언내용) >

- 1987년 6.29선언 이후 8월 김대중 납치(1973년 8월 8일)사건에 즈음하여 이후락과 친분있는 강성재(02.3, 사망) 기사를 통해 이후락 면담을 기획하고 이종각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후락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였는데
- 이종각 기자가 2차례 이후락을 면담한 결과 1973년 당시 김대중 납치 지시를 시인하고 있어 동 진술내용을 게재하기로 결심
- 당시 정부의 동 기사게재를 사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
 - 출판국 담당 안기부 직원 「신○○」이 ‘이후락 증언’ 기사를 수차에 걸쳐 게재중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 이후락측에서도 前국회의원 이병희(수원시 지역구)씨를 통해 강성재 기자에게 ‘이후락 증언’을 게재하지 않도록 만류하였고
 - 동아일보 경영진측 입장에서는 동 기사와 관련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관이었던 신○○ 상무가 게재를 자제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음
- 사건발생 전날(9월 19일) 마지막으로 안기부측이 요청한 기사게재 중지요구를 거절하자 9월 20일 안기부측은 기사게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음
- 이후 당시 안기부 국장 용○○와 전 문공부 홍조실 실장 이○○(당시 안기부 특보), 김종심 동아일보 기자와 자신은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기사내용을 완화하자는데 합의했으나 이후락의 ‘김대중 납치’ 지시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수정본(홍조실 작성)을 받아본 후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음
- 이후 『신동아』의 ‘이후락 증언’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 게재중지 요청이 다시 안기부에 의해 요구되자 동아일보측은 ‘이후락 증언’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한편 同 사건 발생당시 김대중²¹⁹⁾은 ‘이후락 증언’과 관련 언론을 통해 ‘납치 재조사’를 요구하고 한일 양국이 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점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출마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이었던 이유로 안기부가 동 기사제작 방해사건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19) 조선일보 1면(1987년 9월 27일자)

따라서 이후락 증언게재 저지가 당시 대통령 선거와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단지 의혹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후락 증언’ 게재 저지시도가 김대중 견제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김대중과 정부여당간 오랜 갈등관계를 표면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4) 평 가

당시 언론사의 ‘이후락 증언’ 보도가 폭로저널리즘²²⁰⁾으로 공공성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과 국익을 위해 정부가 언론의 상업적 폭로주의를 견제하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타당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울러 당시 안기부가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이후락 증언’ 기사게재 저지가 김대중 견제를 위한 정략적 공작이었다는 의혹도 다소 현실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안기부의 사건대응과정을 살펴보면 『신동아』와 『월간조선』의 ‘이후락 증언’ 게재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킨 절차적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당시 안기부가 관행적으로 언론에 개입하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하였다.

당시 집권당 대표 노태우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6.29 선언」²²¹⁾을 천명한 바 정부는 문제기사에 대한 법원의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음은 명백해 보인다.

220) “폭로저널리즘의 상업성-신동아·월간조선 10월호 제작방해사태를 보고”, 『말』 15호 (1987.10.15)

221) “다섯째, 언론자유와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 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아니 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6.29 선언」 전문 일부)

3 언론자유실천 및 언론노조결성

가 동아일보 광고탄압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긴급조치 1·2호 발동으로 개헌논의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이어 4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1974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대학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민주회복을 요구하며 정치범의 석방, 고문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동 조치로 상당수 학생, 종교인, 지식인들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

1) 자유언론 실천운동

상기 시위를 통해 동아일보 기자협회 분회는 1971년과 1973년 언론자유운동 이후 자유언론실천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당시 이러한 언론운동을 가속화시키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10월 23일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 농대생 데모’ 기사와 관련해 송건호 편집국장과 방송 뉴스부장, 지방부장 등 3명을 연행한 사건이었다. 1974년 10월 26일 중정이 작성한 「동아일보 학생 데모기사 보도경위 조사 결과 보고」 문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관계자 연행목적 및 보도조정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1. 인적사항

2. 문제기사 보도경위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은 1974.10.18 문공부장관으로부터

- 학원 내에서의 데모, 휴강 등 사태는 1단 정도로 축소 보도하고
- 연탄 관계 기사는 자극적인 면을 피하고
- 월남사태 관계보도는 자극적인 기사는 보도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동사 편집국장 송건호를 대리한 부국장 신용순은 74.10.19 19:30경 시내 청진동 소재 莊園에서 문공부 주관으로 개최된 편집국장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공부 차관으로부터 前示 보도한계지침과 동일한 내용의 보도

협조요청을 받아 문공부 당국의 보도지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1974.10.21 초판에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19일 학생 데모와 관련 경희 대학생 3명을 즉심에 넘겨 5일 동안의 구류처분을 받게 했다”
- 74.10.23 초판에 “서울 농대생들 300여명 데모-수원시내에서 산발로-”의 제목으로-중략-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임.

3. 조사결과

편집국장 송건호 및 지방부장 한우석 등은 문공부 당국의 방침에 따라 1974.10.21부터 교내의 학생데모 관계는 보도하지 않고 교문밖 데모는 1단 정도로 축소 보도하며 현안관계 및 월남사태는 순화 보도하라는 정부방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중략-초판은 그대로 인쇄발간하고 2판에서 동 기사를 삭제한 사실임.

4. 조치의견

본건 조사결과 본명 등은 문공부의 보도한계지침이 모호함을 악용하여 그 허점을 찢러 사실 보도라는 명분으로 의식적으로 학생데모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음으로 74.10.24 신문편집인협회 주최 연례세미나에 배석하는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도한계지침을 명확히 시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본명 등은 차후 문공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편집을 지양,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 훈계 방면함이 가하겠습니다.²²²⁾

결국 당시 중앙정보부의 언론인 연행은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준비중이던 동아일보 기자들의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촉발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협회 분회 집행부는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 개시를 선포했으며 동 대회에는 동아일보사 편집국·출판국·방송국 소속 기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주요 선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222) 동 보고문건 이후 소환조사 받았던 송○○, 한○○이 1974.10.23 작성한 진술서, 각서, 출석 요구서, 그리고 보도된 신문 복사본이 첩해져 있음.

1.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 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²²³⁾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은 곧 전국의 신문·방송·통신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확대되고 동 실천선언은 ‘기관원 출입의 거부’라는 정부 당국의 언론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자들의 선언실천은 경영진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기자들과 회사 측의 갈등으로 11월 22일자 동아일보는 제작 거부로 휴간되었다. 그럼에도 양측의 갈등은 그 동안 금기시되어 있던 개혁 문제를 사설로 다루는 등 상호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 동아일보 노조 결성추진

이러한 동아일보 기자들의 단체행동은 처음 1974년 3월 7일 ‘전국노조 동아일보지부’ 결성에서 비롯되었다. 기자노조 결성은 서울시 당국에 대한 신고만으로 노조설립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기자들과 달리 사측과 서울시 당국은 노조설립을 거부했으며 기자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²²⁴⁾

자유언론실천운동 참여 기자들은 정부 당국의 보도지침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는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방식의 변경과 외부지시에 의해 기사가 바뀌거나 축소되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알림’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했다.

22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1975-2005 동아투위 30년 발자취』, 해담술, 2005, pp115-116.

224) 박지동, 1970년대 유신독제와 민주언론의 말살, 『한국언론 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pp326-327.

- 1974년 11월 6일자 ‘기사나 제목에 금기된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씁시다’라는 제목하 “학생데모를 학원사태로, 인상을 재조정 현실화로, 대학을 학원으로, 임금동결을 임금안정으로, 담화를 훈시로, KCIA 보안사를 모 기관으로, 차입을 도입으로, 부정부패를 사회 부조리로, 예방을 접견으로, 허가를 양성화로, 특정인에 대한 정부재산 불하를 민영화로, 세법 개정을 세제 개혁으로 등등 언제부터인지 버릇이 돼 있는 용어의 왜곡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맙시다.”²²⁵⁾
- 11월 9일자 10.24 실천 이전 당국으로부터 특정 기사를 어느 면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다루라고 지정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타성이 아직도 완전히 가셔진 것 같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같은 타성이 있다면 이는 10.24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 이 점을 국장단에 전하기로 했다.²²⁶⁾
- 12월 18일자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자칭 ‘수도경비사령부의 대위’라는 30대 청년이 신동아 사무실에 나타나 1월호 신동아에 실릴 정국에 관한 좌담회 기사를 미리 보자고 요청해 왔으나 ‘그럴 수 없다. 꼭 보겠다면 영장을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복차림에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으나 만약 그 청년이 기관원이었다면, 그것은 자유언론실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의 조짐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철저한 신념의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²²⁷⁾
- 1975년 2월 26일자 대통령의 동정을 고정적으로 신는 로열박스와 인혁당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 동정거리에 불과한 기사가 중요기사를 압도하면서 까지 로열박스를 여전히 메우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 시정 건의를 했으나 아랑곳 않고 계속 구태를 지키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소위 인혁당 관계기사와 관련하여 국장단은 ‘크게 취급 말라, 반공신문이니 이들 가족의 무죄주장을 보도 말라, 제목에 인혁당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²²⁸⁾

225)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74-1987 자료 동아투위 자유언론운동 13년사』, 1987, p38.

226) 윗 책, p40.

227) 윗 책, p51.

228) 윗 책, p80.

2) 동아일보 대량 광고해약 사태

동아일보 기자들의 노조설립 운동은 1974년 12월 16일 동아일보광고 해약 사태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동아일보와 주거래 광고계약을 맺고 있던 모회사 홍보담당 간부는 동아일보사에 광고중단을 통보하고 인쇄동판을 회수했으며 12월 20일 이후 대량 광고 해약 사태로 이어졌다.

12월 20일 한일약품의 광고담당 책임자가 회사로 찾아와 광고 동판을 회수한 이후 대한생명보험과 기아산업도 광고 취소를 알려왔다. 나흘 뒤인 12월 24일에는 럭키그룹, 롯데그룹, 오리엔트 시계, 미도파 백화점, 일동제약, 종근당 제약, 한국바이엘, 태평양화학 등 10여개 대광고주가 일제히 광고계약을 취소했으며 25일부터는 극장광고도 일제히 끊겼다. 당시 광고해약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평상시 하루 8면에 총 48단의 광고를 게재해 왔다. 그러나 26일 이후 광고량은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후에도 광고 취소가 계속되어, 1975년 신년호의 8쪽은 동아일보 사가(社歌)와 정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의견광고 등으로 메워졌다. 몇몇 기업들이 조금 버티기는 하였지만 결국 연말까지 대광고주들의 거래는 완전히 끊기고, 동아일보 자체광고나 의견광고, 안내광고, 대학신입생 모집광고와 같은 소액광고들만 명맥을 유지했다. 광고탄압이 본격화한 지 한 달 만인 1975년 1월 25일 현재 동아일보 광고는 평상시 상품광고의 98%가 줄어 격려광고를 제외한 광고수입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격감하고 2월 25일에는 70%가 감소했다.²²⁹⁾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탄압도 1974년 12월 20일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25일까지 13개 광고주들이 해약을 통고했다. 방송의 경우 신문과 달리 1975년 1월 6일까지는 이미 계약된 광고의 대부분이 송출됐다.

229) 동아투위, 앞 책, p145.

그러나 1월 7일부터는 대부분 광고가 중단되었다. 1월 8일 오후 27개 업체가 광고 해약을 통고해 왔으며 1월 10일까지 광고 해약기업은 44개로 늘어나고, 1월 11일 ‘오후 1시 뉴스’에 붙어 있던 삼양식품 광고가 해약되면서 보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모든 송출광고가 해약됐다.

광고해약 사태 발생 전 동아방송의 하루 광고량은 프로그램 91건, 스포츠 145건 등 모두 236건 정도였다. 그러나 광고해약이 본격화한 지 한 달만인 1975년 2월 7일의 광고량은 프로그램 광고 3개, 스포츠 광고 22개 등 모두 25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건수로 88.7%, 금액으로 91.7%가 평상시보다 감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평상시에 비해 프로그램 광고 97.9%, 스포츠 광고 94%가 떨어져 나가 금액으로 97.7%가 감소했다.

신동아와 여성동아의 경우도 2월초부터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하여 2월 20일 경에는 거의 모든 광고주들이 광고 동판을 회수해갔다. 그 결과 신동아 3월호와 여성동아 4월호의 광고금액은 평상시보다 90%나 줄어들었다.²³⁰⁾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에 대한 국내외 비판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격려성 의견광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로 언론인 홍종인이 1974년 12월 19일 동아일보를 찾아가 후배 언론인들을 격려하고 당일 동아일보 2판 1면에 광고를 냈다. 개인이름으로 낸 첫 번째 광고였다. 홍종인은 ‘언론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제목의 4단짜리 광고를 통해 “동아일보에 실려야 할 신문광고에 대한 강제 해약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힘의 작용으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감히 해서도 아니 될 심히 위험한 권력자신의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²³¹⁾

이 광고의 위쪽엔 동아일보 광고국장 김인호 명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돌출광고가 나갔다.

230) 앞 책, p146.

231) 앞 책, p159.

“대광고주들의 면적이 큰 광고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광고인으로서 직책에 충실코자 부득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당, 사회단체의 의견광고, 그리고 보도를 격려하는 협찬 광고와 연하광고를 전국적으로 모집하오니 전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²³²⁾

성금 기탁, 독자 확장, 구독료 선납과 같은 ‘동아돕기 운동’은 1975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신문에 자유언론운동을 격려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 사회정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개인의견을 싣는 격려광고 형태로 바뀌었다.

1974년 말 광고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성명서와 결의문이 쏟아져 나왔다.²³³⁾ 한국기자협회, 야당,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수호국민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진상조사 요구나 규탄성명이 이어졌다.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는 1975년 새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고, 동아일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의 활동도 한층 조직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 사태는 다른 신문, 방송들에 의해 보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타 언론사에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사 기자들은 경영진의 비겁한 자세에 항의하면서 잇달아 결의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월 15일 모임을 갖고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즉각 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는 즉각 국제뉴스의 초점이 되었다.²³⁴⁾ 세계적인 통신사들의 텔레타이프는 대량 광고해약 사태를 타전하는 데 열을 냈고, 서울지국이 없는 외국의 신문사들은 동아일보 사태의 취재를 위해 특파원을 파견했다.

232) 앞 책, p159.

233) 동아투위, 앞 책, pp149-154.

234) 앞 책, pp154-158.

1974년 12월 27일 아침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3쪽에 사진을 곁들여 4단으로 보도하고 7쪽 머리에 또 해설을 곁한 기사를 실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가 반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는 것과 대광고주들이 잇달아 광고계약을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26일자 지면의 2개면에 걸쳐 광고란을 백지로 내보냈다는 것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광고주들의 이 같은 조치엔 중앙정보부 등 치안당국의 개입이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민족지로서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일보가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2월 27일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동아일보가 이 신문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작용으로 보이는 갑작스런 광고계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보기관의 작용임을 알고 있다”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해외 언론과 언론인단체들의 광고탄압에 대한 비판과 동아일보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영국의 더타임스나 프랑스 르몽드와 같은 신문들은 정부의 광고탄압을 비판하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나 국제신문편집인협회 등은 동아일보의 언론자유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3) 중앙정보부의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 개입의혹

가) ‘동아일보 광고사태’관련 정부측 입장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와 관련 1975년 1월 4일 이원경 문공부장관은 “동아일보 무더기 광고해약 사건은 신문사와 광고주와의 업무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관계를 깊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의 자유가 언론의 기조이기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그 중에서 어느 한 쪽만이 강요되면 말썽이 남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상 공화당 당의장서리는 1975년 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가 정부 비위를 거스른 점이 있었지 않나 추측된다.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았으나 광고탄압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쏟아지자 “광고문제는 광고를 내리는 기업과 신문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UPI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동아일보 광고사태는 광고주와 신문사간의 문제”라고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동아일보는 지금 기자들의 지배아래 놓여 있다. 동아가 다시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면 사태해결은 손쉽게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통해 동아일보의 광고해약 사태가 말 그대로 ‘광고주와 신문사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홍승면 논설주간은 1975년 1월 10일 일본 NHK 서울 지사장 나가노(中野正一)와 동아방송 C스튜디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광고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의 취재결과와 심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편집방침이 흔들 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정부측과 광고사태 문제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동아일보 사태관련 ‘중앙정보부 개입’의혹

동아일보는 1월 25일 머리기사에 ‘동아광고 전면탄압 한 달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DBS)에 대한 광고 탄압은 지난 1974년 12월 중순께 모 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관련부처 당국자들이 각 부처 소관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 기업체 책임자들을 불러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에 광고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시작 됐다”고 밝혔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모 기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관련있는 P, Q기업 등이 지난 1월 초순까지 계속 광고를 내자 모 기관은 그 기업 대표들을 사무실로 소환, 광고게재 중지 지시를 어겼다고 힐난한 다음 다시는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동아방송 및 신동아, 여성동아, 동아연감에까지 광고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 관련부처 및 모 기관의 관권이 깊숙이 관여한 많은 케이스가 본사 취재진에 의해 그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A기업의 경우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가 있기 며칠 전 모 부(部)의 어떤 국장이 사(社) 간부를 불러 ‘모처에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하니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거듭 종용했다. 그러면서 ‘나도 자리에 있으려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B기업 대표는 지난 12월 21일경 직접 모 기관에 불려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모 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C사의 경우는 12월 20일경 모 기관으로부터 업무상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니 출두할 것을 요청받고 광고 실무자를 보냈으며 모 기관은 그 자리에서 그 기업이 며칠 전 동아일보에 냈던 광고문을 제시, ‘이러면 곤란하다. 더 이상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듯한 각서 문안을 읽어주면서 그대로 받아쓰도록 강요하고 서명시켰다. D사의 경우 선전책임자가 모 기관에 불려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않도록 거듭 압력을 받고 ‘광고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다시 광고를 낼 때는 각오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²³⁵⁾

동아일보는 이어 2월 26일에도 1면 머리기사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및 신동아, 여성동아에 가해지고 있는 광고탄압은 26일로 만 두 달을 넘겨 3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해결될 기미도 없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면서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압력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으나 광고 탄압의 배후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앓고 있다”고

235) 동아일보 1면(1975년 1월 25일자)

보도하여 광고주에 대한 압력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가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이보다 앞서 1월 20일 사설에서 ‘한국 신문의 유령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사태에 관해 “동아일보는 남한의 비밀경찰이라는 ‘유령의 적’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주요 광고주들은 하나 둘씩 예정된 광고를 돌연 취소 하더니 마침내 광고 취소 통고가 밀려들기 시작했다.”²³⁶⁾는 기사를 통해 정보기관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기관 개입의혹은 1975년 3월 17일 제 91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송원영 의원이 “동아일보 광고탄압은 중앙 정보부가 주동이 되고 관계부처가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민주 행위요 분명히 불법이요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을 관권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하나를 선택하여 본보기로 응징하려는 것입니다”라며 중정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김인호 당시 동아일보 광고국장은 광고해약사태와 관련, 주거래 광고 기업체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 국장은 중앙정보부는 행정부 기업관련 부처 당국자들을 불러 각 부처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기업체 대표들을 불러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²³⁷⁾

이 같은 주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이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미 로비스트로 활약했던 김한조는 1987년 당시 동아일보사이경재 정치부장과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1974년 12월 중순 중앙정보

236) 동아투위, 앞 책 p157.

237) 앞 책, p77.

부장 신직수에게 “동아일보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직수는 그 임무를 보안담당 차장보 양두원에게 명령했고 양 차장은 이 때부터 ‘광고탄압을 지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²³⁸⁾

당시 양두원은 1975년 6월 22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동아의 결의와 진로’라는 문서를 이동욱 주필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동 문서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현행 헌법을 철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유신 체제를 계속 수호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체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지지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태우 정권당시 발간된 사사에서 동아일보사 이동욱 주필에 이어 김상만 사장이 중정 양두원 차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보부 당국이 처음으로 접근해온 것은 (1975년) 6월 중순경이었다. 당시 양두원 중앙정보부 차장이 이동욱 주필에게 면담을 요청해왔다. 양씨는 ‘동아의 결의와 진로’라는 사설을 게재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물론 본사에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광고탄압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경영상의 타격을 받고 있었지만 정부쪽도 대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세계 여론의 압력으로 국가적 손실이 막심하다는 얘기들이 정부 주변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다. 실제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 해제 필요성을 공공연히 발설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외교관계의 고위직 관리들이 적극적이었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의 발동이후 격려광고가 자취를 감추고 난 동아일보의 지면은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다. 중앙정보부 양두원 차장은 그 뒤에도 이동욱 주필에게 동아일보가 정부에 사과하는 내용의 ‘동아의 결의와 진로’를 사설이나 성명서로 지면에 반영할 것을 끈질기게 거듭 요구해왔으나 끝끝내 거절했다. 정보부에서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담은 글을 어떤 형식이라도 좋으니 실으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거절했다. ‘헤라’ ‘못 한다’로 한 달 동안 실랑이 끝에 정보부의 사과사설 게재요구를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7월 11일 오후 6시경에 본사 김상만 사장과 양 정보부 차장이 만나 담판을 벌였다. 밤을 새우면서 얘기가 오고간 끝에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는 선에서 타협이

238) 김충식, 『정치공작 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동아일보사, 1992, p180.

되었다. 광고탄압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해제되었던 것이다. 광고
계재는 7월 16일부터 개시되었다.”²³⁹⁾

또한 1975년 5월 21일의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의
회담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동아일보 사태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동아일보 광고사태는 1975년의 최대 사건이었다. 박정희는 언론자유를 주장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기업인들을 협박했다. 1974년 12월 26일
광고주들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무더기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상
유례없는 ‘광고탄압’이었다. 광고가 완전히 중단된 동아일보는 신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박정희와의 회담을 앞둔 어느 날 김상만 회장이 나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요구해온 일이 있었다. 만나보니 몇 달째 계속되는 광고탄압으로 인해 신문사가
쓰러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 통로로 박정희에게 사정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다면서, 내가 박정희에게 얘기해서 좀 살려달라는 것이
였다. 나는 이미 동아일보 광고사태에 대해 박정희와의 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영수회담에서 박정희에게 동아일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박정희는
그때 나에게 ‘동아일보 광고사태를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김총재뿐입
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동아일보가 꽤 씩하다
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동아일보를 비난하는 얘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동아일보는 일제 때 여러 차례 정간과 폐간을 당하면서도 끌고 나온
민족지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해 무기 정간을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박정희가 이런 오랜 민족지를
문 닫게 하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또 ‘국민들이
동아일보 광고사태를 언론탄압이라고 보고 있으며, 공화당 정권에도 득이 될
것이 없으니 반드시 동아일보 광고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길게 설득했다.
박정희는 동아일보에 대한 험담을 길게 하고 나서야, ‘뜻을 잘 알겠으니 내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조만간 동아일보 광고사태가 풀릴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239) 김진홍,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과 동아광고 통제’ ‘너마저 배신하면 이민 갈 거야’, 월간
『말』, pp135-136.

나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김상만 회장을 만나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주었다. 김 회장은 ‘정말 고맙습니다. 내 대는 물론 자손들까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 했다. 결국 사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1975년 7월 16일부터는 광고게재가 정상화되었다.”²⁴⁰⁾

한편 익명으로 국민의 백지광고가 쇄도하자 중앙정보부 등에서 익명 광고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동아일보 1975년 1월 25일자 기사는 “F대학의 경우 동아일보 격려광고란에 동 대학 교수의 익명 광고가 게재되자 정부 모 관련부처 담당관으로부터 힐난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에 ‘육군 중위’의 격려광고 사건과 관련, 광고국장 등 3명의 사원이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다. 이들이 보안사에 연행되자 동아일보 사원들은 이에 항의,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기자들은 보안사의 불법연행에 엄중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기사 보도했다.

동아일보측은 연행된 세 사람은 보안사로부터 격려광고를 의뢰한 육군 중위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익명의 광고를 내는 사람이 워낙 많은 데다 광고를 내러 오는 사람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확인할 필요도 없어 육군중위라는 사실만 알 뿐 자세한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²⁴¹⁾

특히 중앙정보부는 1975년 2월 5일 1단짜리로 ‘자유언론’이라는 격려광고를 게재한 ‘한양대 신문학과 3회 출신의 ROTC 7기 장교’ 색출작업을 벌였다. 중앙정보부는 한양대학 ROTC 7기 임관자가 총 169명이고, 그 중 신문학과 출신이 7명임을 파악한 뒤, 광고게재 3일 뒤인 2월 8일 각자의 본적지(서울, 경기, 경남, 전북, 충남)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240) 김영삼, 『김영삼 회고록』, 제2권 백산서당, 2000, pp85-87.

241)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172.

제목 : 긴급 신원 내사 지시

1. 다음 명은 1975.2.5자 동아일보 2면 광고란에 “자유언론” 한양대 신문학과 3회 ROTC 7기라는 격려 광고를 게재한 용의자인 바 아래 사항을 내사 보고할 것
2. 인적사항
3. 내사사항
 - 가. 본명의 현거주지 및 현직업
 - 나. 접촉인물 및 교우관계
 - 다. 비위관계
 - 라. 기타 참고 사항」 242)

이후 해당 중정 지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해 3.3 광고게재자로 추정되는 해당자에 대한 보고를 한다.

「(전략)

○ 광고게재 여부

본명의 부 최○○(62세)는 1958-1974.11까지 동아일보 천안 지국장을 재직하다 1974.11말 장남인 본명에게 同職을 물려주었고, 전 동아일보 사장 고재욱(현 동아일보 회장)과 친근함. 본명은 한양대 신문학과 3회 ROTC 7기 출신으로써 현 동아일보 천안지국장이며

- 성격은 강직하나 불량성이 다분하고, 평소 신민당 충남 제 2지구당원들과 접촉하며 신민당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며
- 동아일보 광고 ○○적 사태를 정부시책과 ○○, 비판하고
- 동아일보 지국운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명이 1975.2.5 한양대 신문학과 3회 ROTC 7기 명의로 동아일보 격려광고를 임의 게재한 것으로 인정됨

3. 의견

1975.2.5 한양대 신문학과 3회 ROTC 7기 명의로 동아일보 격려광고 게재자는 동아일보 천안지국장 최○○로 인정됨으로 본건 동아일보 조사시 ROTC 7기 명의로 광고 게재한 저의를 규명함이 가하겠습니니다.²⁴³⁾

242) 중앙정보부, 「긴급신원내사 지시」

243) 수사자료는 병적조회서, 학적부,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이 포함돼 철해져있음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 격려광고 게재자를 찾으려 했다는 점은 동아일보 광고해약 사태에 중앙정보부가 어느정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동 보고관련 추가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동아일보 기자 대량해직

동아일보사는 1975년 2월 28일 제 49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주총은 일부 사원들의 사규문란행동을 주시하여 사내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할 것, 경영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경영을 합리화할 것을 결의했다. 새로 선임된 이동욱 주필은 취임사를 통해 “회사내 무허가 집회와 유인물 배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개정해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허가없는 사내 집회를 금지시켰다.

1) 동아일보 기자 대량해직 사건 추이

광고중단이 장기화하자 경영진은 1975년 3월 8일 경영난을 이유로 기구 축소를 단행, 심의실, 기획부, 과학부, 출판부를 없애고 사원 18명을 전격 해임했다. 해임된 기자 중에는 자유언론운동에 핵심역할을 해온 안성열 기자와 동아일보 노조지부장 조학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기협 분회는 해임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어 3월 10일 장윤환 기자와 박지동 기자 2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에 맞서 해임된 기자들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기자들의 제작거부 농성으로 신문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타 신문사의 인쇄시설을 빌려 신문을 제작했다. 경영진은 같은 날 새로 분회장에 취임한 권영자 기자 및 김명걸 기자 등 17명을 추가 해임하는 것으로 제작거부에 대응했다. 이에 150여명의 사원들이 3층 편집국과 4층 방송국에서 농성했고 특히 23명의 기자들은 2층 공무국을 점거함으로써 사측과 기자간 대립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시 재야인사, 성직자, 정치인 등은 동아일보 경영진에게 대량 해임 즉시 철회와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했으며 동아일보 송건호 편집국장은 해임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해임문제는 3월 17일 사측의 농성기자 강제해산 조치로 이어졌으며²⁴⁴⁾ 같은 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사 사원일동 이름으로 ‘소수 과격분자들의 행위를 묵과하고 비정상적인 제작을 계속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 본사 공무, 광고, 판매국 사원 200명이 접거 농성사원을 해산시켰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사는 3월 27일 12명을 추가 해임하고 7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회사 측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3.18 결성)에 남아 투쟁을 계속할 사람과 회사로 복귀할 사람의 윤곽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자 4월 11일 다시 75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3월 8일 이후 동아일보사로부터 해직 또는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31명에 이르게 되었다.

2) 정부당국의 ‘동아일보기자 해직’ 개입의혹

동아일보 이동욱 주필은 1975년 3월 18일 오후 외신기자회견을 자청해 30여명의 외신기자들에게 최근 동아사태에 관한 회사 측 견해를 피력했다. 이 주필은 “3월 8일의 해고조치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관련개입은 없었다”며 동아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명분은 언론자유라고 하지만 쟁점은 절대로 언론자유가 아니다. 사내의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해임이란 방법 밖에는 없었다”고 말했다.²⁴⁵⁾

244)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440.

245)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204.

그러나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측은 기자들이 농성 중이던 3월 15일경 이동욱 주필이 기자들의 복직을 호소하러 회사를 방문한 야당 및 재야인사들에게 ‘자신이 관권과 무관함을 역설하는 가운데 사내 인사문제는 3월 6일 사장과 단 둘이서 최종결정을 본 것인데 이튿날인 7일 공화당 박 정책위원장이 이 사실을 외신기자에게 말했다’고 하여 동아일보 해직사태가 공화당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했으며 또 3월 18일 외신기자 회견에서는 동아일보와 정부 간에 광고 문제에 관한 얘기가 오갔음을 시인한 바 있다며 정부 여당의 개입의혹을 재차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 기자해직에 관여한 의혹에 대한 국정원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동아일보 기자들의 노조결성 직후 참여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음이 확인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경기지부에 1974년 3월 23일 노조결성에 참여한 33인중 본적지가 경기지역인 동아방송 기자 고준환과 동아일보 기자 최학래, 박순철에 대한 긴급 신원내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목 : 본적지 긴급 신원 내사 지시

1. 아래 언론인들에 대하여 본적지 긴급 신원 내사를 지시하니 보안유의 엄밀 내사 74.3.28한 전문 보고할 것

가. 내사내용

- (1) 인적사항
- (2) 가정환경
- (3) 친인척중 부역 및 월북 행불 사실
- (4) 학생운동 및 병역관계
- (5) 형사사건
- (6) 불온분자의 접촉혐의 및 국보법 반공법 위반여부
- (7) 개헌서명 청원운동 및 언론자유선언 게재여부
- (8) 필화사건 여부

나. 대상자

- (1) 경기지역 (하략) 246)

246) 중앙정보부, 「본적지 긴급신원내사 지시」

상기 지시에 대해 중앙정보부 경기지부는 3.30 「신원내사 결과 보고」를 하였다. 이후 이때 조사받은 고준환과 최학래는 1975년 3월 12일 해임됐으며, 박순철은 무기정직 후 해임되었다.²⁴⁷⁾ 이보다 앞선 1973년 12월 18일 작성한 「불순언론인 파악보고 문건」을 통해서도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을 ‘불순언론인’으로 분류해 등급을 매겨 내사했음을 확인하였다.

1. 언론인 중 打倒紙²⁴⁸⁾ 발간용의점 있는 불순극렬분자를 별첨과 같이 파악 보고합니다.
2. 조치의견
 - 가. 別添名에 대하여 타도지 관련 여부를 嚴密裡에 동향내사하는 한편
 - 나. 其 인적사항을 치안국에 통보, 존안된 지문과 대조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有添 불순언론인명단 4매. 끝.

<불순언론인 명단²⁴⁹⁾>

성명	소속 직책	불순동향	편집사유
안OO	동아 외신부차장대우	민주수호협외 연결책	AR A급
심OO	동아 지방부기자	71.4.15 언론자유수호선언 주동, 천OO의 하수역	AR A급
박OO	조선 정치부기자	인혁당사건 관련구속, 73.11.27 언론자유수호 연설문 채택 주동	AR A급
김OO	경향 정치부기자	KT관련기사 일방적 취재, 처가 KT가족과 친교	AR A급
구OO	전 ‘창조’지 주간	72.3 김지하의 비어 게재	AR A급
한OO	중앙 편집부차장	언론자유수호선언 가담 및 동 연설문 초안	AR B급
이OO	서울 정치부기자	KT추종자로 71.4.3 KT 선거 적극 지원, 정부 비판	AR B급

247)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 앞 책, p188.

248) <타도>지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받던 도중 사망한 최종길 교수가 1973.10.19 숨진 이틀 후 재야를 중심으로 배포된 지하 유인물로서 그 내용은 ‘중앙정보부가 최종길의 죽음을 추락사로 위장·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70년대 유신치하에서 비정기유인물로 1천여장씩 뿌려지곤 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p94-95.

249) 중앙정보부, 「불순언론인 파악보고 문건」

김OO	동아 외신부기자	71.11.8 김OO 의원에게 관광연수에 관한 국감자료 제공	AR C급
채OO	한국 사회부기자	71.4.15 언론자유수호선언 주동, 기자는 야당성 기질이 있어야 한다 언동	AR C급
임OO	합동통신 사회부기자	71.9.26 이OO 의원에게 대정부질의 자료 제공 자청	AR C급
권OO	동아 사회부기자	동아일보 보도보류조치 항의, 편집국장에게 건의서 냄	서울대 재학시 民比 회원, 左同
이OO	동아 정치부기자	”	左同
노OO	동아 방송취재부기자	”	”
김OO	동아 편집부기자	”	”
함OO	동아 편집부기자	”	”
최OO	동아 과학부기자	”	”
임OO	동아 사회부기자	”	”
전OO	동아사회부기자(법원)	”	”
조OO	동아 사회부기자	”	”
박OO	동아 정치부기자	”	”

1973년 12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분류한 소위 ‘불순언론인’ 20명 중에 13명이 동아일보 기자였고, 그 중 9명이 1975년 3월 해임되거나 무기 정직 후 해임되었다.

다 | 조선일보 기자 대량해직(250)

조선일보사는 1974년 12월 18일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기자협회 부회장인 외신부 백기범 기자와 문화부 신흥범 기사를 전격 해임했다. 두 기자는 17일자 4면에 실린 유정희 소속 전재구 의원이 집필한 ‘허점을

250) 조선일보 기자해직 관련 중앙정보부 개입 의혹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직 당사자인 신흥범 등 조선투위 관계자의 회고 및 증언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보이지 말자' 제하의 기사가 외부 청탁에 의해 실렸으며, 특히 결론 부분은 현 사회를 일방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뜻을 편집국장에게 전달한 것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두 기자는 동 기사가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 및 논설위원실의 가필을 거쳐 실리게 된 경위와 관련 조선일보가 지녀야 할 공정성과 균형성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했는데, 사측은 두 기자의 행동을 위계질서를 무시한 하극상 행위로 몰아 해고하였다.²⁵¹⁾

조선일보사에서 해고당한 신홍범 기자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권력의 언론통제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노골적인 탄압으로 치닫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편집국에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기사를 빼라, 넣어라, 줄여라, 키워라 하며 간섭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저런 구실을 잡아 사건을 만들고는 기자나 신문사의 간부를 연행하여 공포 분위기 속에서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신문사의 편집국은 질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 속에 휩싸였으며 기자들은 좌절감과 무력함 속에서 타율적인 신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4년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이 발표되기에 이르는데, 이 선언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기자들의 운동은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선언' 대회를 갖는 것에 머물지 않고 1단 기사라도 보도하는 실천운동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은 편집국 내에 '언론자유수호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그날그날 제작된 지면을 검토하고 보도해야 할 뉴스를 어떻게든 실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보도해야 할 기사가 빠졌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이를 기어코 독자에게 알려 보려고 하였다.”

이 대책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신홍범 기자와 백기범 기자는 1974년 12월 16일 지방판 신문에 실린 한 글을 보며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당시 유정희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전재구가 기고한 기고문은 우선 실린 계기가

251)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두레, 1993, p116.

분명치 않다는 점, 내용이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 형식상의 균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글이 실리려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글이 함께 실려야 균형을 이룬다는 점, 이 글은 사내외의 어떤 압력에 의해 실린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동 기고문은 당시 선우회 주필을 통해 내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런 글을 실는 것은 언론자유를 지향하는 조선일보를 만들려는 기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 같은 논의를 거부하고 12월 17일 회사는 두 사람에게 징계회의를 거쳐 견책을 통고했다.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편집권을 침해했으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행동이 있을 때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는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통고받았으나 두 기자는 이의 부당함을 항변하며 시말서 쓰기를 거부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²⁵²⁾

백기범 기자와 신흥범 기자가 해고된 다음날 12월 19일 편집국 기자 100여명은 정태기, 주돈식, 강인원, 최규영 등의 주도로 편집국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백기범, 신흥범 양기자의 해임은 10.24선언과 이에 따른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했다.

이후 사측은 두 사람을 3개월 안에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백기범, 신흥범 기자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 집행부는 1975년 3월 6일 기자총회를 개최하여 10.24선언에 따라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외부권력과의 투쟁은 물론 언론내부의 안이한 패배주의와 감연히 싸우려 한다”는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두 기자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신문제작 거부 및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방우영 사장은 “제작거부를 계속할 경우 전원 파면시킬

252) 신흥범, ‘증언 : 목 잘린 자의 아직도 아픈 추억’, 『기자협회 30년사』, 한국기자협회, 1994, pp226-227.

것이며, 부차장들 만으로 신문을 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농성 이틀째인 7일 회사 측은 분회장 정태기 기자를 비롯한 집행부 5명 전원을 파면했다.

기자들은 김명규를 분회장으로 하는 제 1차 임시분회 집행부를 구성, ‘조선일보의 지령은 1975년 3월 7일로 정지되었음을 선언한다’는 제 2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²⁵³⁾

그러나 사측은 농성에 참여한 이종구 차장을 비롯, 박범진, 최장학, 유장홍 등 4명의 기자를 다시 파면시켰다.²⁵⁴⁾ 이로써 11일 현재 조선일보에서는 파면 16명, 무기정직 37명의 인사조치가 시행되었다. 경영진은 인사 조치를 발표한 뒤 11일 오후 편집국에서 농성중이던 기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이후 해고된 조선일보 기자들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를 구성하였다.²⁵⁵⁾

라 | 동아·조선 투위관련 주요 사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해임된 160여명의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1975년 3월 17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고된 조선일보 기자들은 3월 12일 조선일보 자유언론대책 12인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3월 21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두 회사측이 양 투위를 ‘일부 극소수 난동분자’ 등으로 왜곡, 선전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과 사태의 진상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종교계와 지식인 사회에 배포했다.

253) 박지동, ‘1970년대 유신독재와 민주언론의 말살’, 『한국 언론 바로 보기』, 다섯수레, 2000 p426.

254) 박지동, 앞 책, p428.

255) 김민남 외,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아침, 1993, pp363-364.

이후 동아투위는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모두 17명이 구속됐고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80여명이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1) ‘민주민권일지’ 사건²⁵⁶⁾

1978년 10월 24일 명동 한일회관에서 발표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특집 가운데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 않은 민주민권일지’(1977년 10월-1978년 10월)가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어 관련자들이 대량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 즉 일련의 대학생 데모사건, 동일방직 사건, 수많은 양심범 투옥 등을 제도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이며 민중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재야 언론인인 자신들은 ‘진정한 민주민족 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와 사실보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했다.²⁵⁷⁾

바로 이런 근거에서 당시 1년간 제도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나 보도했더라도 집권층 의견을 홍보하거나 체제를 비호하는 등 왜곡 보도한 사건들, 특히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종교계, 노동자, 그리고 여러 민권단체의 인권운동 등 모두 250여건을 기사화한 것이 ‘보도되지 않은 민권일지’였다.

10월 24일 저녁 귀가하던 투위 총무 홍종민이 경찰에 연행된 데 이어, 이틀 뒤인 26일에는 위원장 안종필과 안성열, 박종만이 연행됐다. 동아투위는 10월 30일 ‘현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여 “비민주적인 헌법은 철폐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긴급조치는 해제되어야

256) 동 사건은 중정개입과 무관하나 자유언론 투쟁사적인 의미로 게재하였다.

257)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화운동25년』, 다섯수레, 2000, p52.

한다고 부르짖던 학생과 시민들이 차디찬 감방에 던져지고 있는 등 언론이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도언론은 민중이 당연히 알아야 할 진실을 고의로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글로 인해 10월 30일 오후 장운환 위원장 대리, 이기중 총무대리, 그리고 이규만, 임채정, 정연주, 김종철 등 6명이 연행되고 두 차례에 걸쳐 연행된 위원 중 안종필, 장운환, 안성열, 홍종민, 박종만, 김종철 등 6명이 11월 10일 구속되었다. 대법원은 10명 위원 중 안종필 위원장 등 8명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윤활식 위원장대리에게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기중 위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청우회 사건’ 258)

동아투위 위원들은 동아투위 소식을 대학가에 배포하거나 재야 활동으로 중앙정보부 등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대부분 위원들은 재야 민주인사들과 연계하여 반독재투쟁을 한 혐의로 수시로 연금되거나 미행당했으며, 예비검속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경찰서나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1-5일씩 조사받았다.

이부영, 성유보는 1975년 ‘청우회’를 조직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국가보안법, 국가모독죄, 긴급조치 9호 등 위반으로 서울 고법에서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성유보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청우회 사건이란 수사당국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온 한 사람의 발언을 두고 과거 친분관계를 가진 사람을 엮어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동아투위 핵심인사를 겨냥하여 처벌한 사건이다.

258) 동아투위 발간책자 및 성유보 저서 등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동창이자 동아일보 견습기자 동기생으로, 1973년 5월 동아방송 프로듀서로 있다가 퇴사한 대학교 1년 선배인이○○로부터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단체인 ‘청우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그해 10월까지 정○○라는 또 다른 대학 동창생을 포함한 4명이 4-5차례 만나 민주화운동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다 그해 10월부터 동아일보 내에서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재연되자 두 위원은 더 이상 4인 모임을 갖지 않고 언론운동에 전념했다. ‘국가전복’관련 죄목이 붙은 청우회의 시작과 끝은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여한 4명 가운데 최초 청우회 결성을 제안한 사람이 이○○였음에도 동명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1974년 가을 정신이상으로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인에게 “정보부에 가서 자수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었다.²⁵⁹⁾

성유보는 청우회 사건에 대해 ‘나는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1주일 이상 진을 빼고 나더니 어느 날 진짜 비수를 들이댔다. ‘너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너는 공산주의에 관한 어떤 책을 읽었는가?’에 대해 자술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무슨 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청우회에 공산주의자 아닌 놈이 왜 끼어 있냐’고 욕박질렀다. ‘다른 놈들은 다 실토했는데 네놈만 부인한다고 통할 것 같냐?’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말했다. ‘고생 좀 하고 쓰느냐? 고생 덜하고 쓰느냐? 그것만 선택하라’고. 나는 정말 고민에 빠졌다. ‘아무개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술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쓸 수밖에’ 끝내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졸지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²⁶⁰⁾

259)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 책, pp266-277.

260) 성유보, ‘나는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되었다’(청우회 사건), 앞 책, pp226-227.

3) 매스컴 관련 재취업 방해 의혹

군사정권은 언론현장에서 축출한 해직언론인들의 매스컴 관련 업체의 재취업을 막았다. 김학천은 “당시에 군사정부가 주장한 대로 동아의 사태가 단순히 회사와 직원간의 마찰관계였다면 왜 집권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해직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방편조차 봉쇄했단 말인가. 여기서 생계방편이란 투위 위원들이 보고 배운 생계를 이을 매스미디어 관련기구에 취업함을 뜻한다”고 밝히며 특히 해직기자들의 재취업을 막는 데 중앙정보부가 앞장을 섰다고 주장했다.

김학천은 “다른 투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경우도 1975년말에는 학교방송(교육개발원 소속)의 편성실 일자리를 중앙정보부에서 완강하게 막았으며 기독교방송 강대인 기획실장이 공분을 느끼며 주선해준 CBS의 프로듀서 자리도 온갖 위협을 하며 결국 못하게 막았다”고 폭로했다. 김학천은 “세월이 흐른 뒤, 당시 공보처에서 동아투위를 담당했던 고위직 인사인 K씨는 ‘그때 해직시킨 언론인들을 매스컴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고 회고했다.²⁶¹⁾

또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관련 기자들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전직기자의 생업활동을 막은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대한일보 기자 출신인 김한수(金漢洙)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중앙정보부는 1975.5.23 가석방된 김한수의 동향을 내사하고 1975.6.6 다음과 같은 첩보보고를 하였다.²⁶²⁾

261) 김학천, ‘유신기 동아방송과 저항’ ‘한국방송의 성찰과 개혁’, 한국학술정보(주), 2007, p527.

262) 신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한수는 1971.10.2 공화당 항명 파동 때 고문받은 공화당 의원들을 취재해 국회에서 폭로한 것을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진, 『청와대 비서실1』, 중앙일보사, 1992, p189,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70년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p227-228.

제목 : 김한수 동향

1. 신동아 김영일 기자는 75.6.6 시내 무교동 소재 선일장에서 김한수에게 7월초에 김의원의 옥중 수기를 실으려고 한다면서 정치 얘기는 그만두고, 옥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주로 하여 60매 정도를 14일까지 써 달라고 한 바 김한수는 알겠다고 하였음
2. 조치
김한수에게 수기를 투고치 못하게 경고하여 저지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한 뒤 열흘 뒤인 6.16 작성된 「김한수 “옥중수기” 신동아 투고저지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투고내용

75.5.23 석방된 김한수는 신동아 김영일 기자로부터 “옥중수기”를 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 75.5.30부터 원고를 작성 75.6.13 탈고와 동시 동 원고의 사본 1부를 전시 신동아 김영일 기자에게 수교한 사실이 있음

3. 수기내용 (생략)

4. 저지내용

상기 김한수에게 작금의 印支사태와 북괴의 남침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노골화 되고 있어 전국민의 관심이 국가안보에 집결되어 총화체제가 성숙 되어가고 있는 이 때 옥중의 제문제와 정치문제 등을 신동아에 투고함은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총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취소하도록 경고한 바

김한수는 옥중에서는 현 시국을 잘 몰랐으나 석방된 후 우리나라 국가안보 문제가 중차대함을 느꼈고 국민총화는 여야 구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재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옥중수기가 국민총화에 저해된다는 것을 느끼고 신동아의 투고를 즉시 취소하겠다고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하였음

5. 조치

김한수를 계속 순화하면서 동향을 감시하겠습니다.

전직기자 출신으로서 월간지에 투고하려는 김한수의 직업적인 생계 활동을 저지하고, ‘계속 순화’, ‘동향 감시’한 중앙정보부의 활동이 동아

일보 광고탄압 시기였던 1975년 6월에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동아·조선 해직기자들의 재취업을 막는 데 중앙정보부가 개입돼 있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위원들은 물론,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과정에서 쫓겨난 언론인들도 재취업이 금지됐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공보부장관이 1980년 9월 11일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보낸 대외비 문서 「정화 언론인 취업문제」에서 해직자들의 언론 이외 분야의 취업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서도 알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취업 제한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이 의식분자이며 부유하지 않은 실정으로 (취업)제한시 반정부 불평 집단화할 것이고 동아·조선투위의 경우와 같이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안정되고 있는 기존 언론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내외 여론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공보부는 이 문서에서 “소수의 악질적인 반정부 반체제 분자 이외의 해임자들에 대해서는 언론이외 타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되 “취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반시국적 언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 새 시대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자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²⁶³⁾

마 한국일보 노조운동

1) 중앙정보부의 ‘베트남 기사’ 관련자 연행

1974년 6월 9일 창간 2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는 도약을 위한 변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논설위원 홍순일을 순회특파원으로 임명하고 동남아 취재를 맡겼다. 그는 그해 9월 22일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베트남의 구옌 반 티우 대통령, 캄보디아의 론놀 수상과 일본의 사토 전 수상을 만났다.

263) 문화공보부 대외비 문서(「정화언론인 취업문제」 1980년 9월 10일)·‘80년 5월의 민주언론’, 나남 출판, 1997, pp710-714.

홍 특파원의 인터뷰기사는 거의 1면을 장식했다. 한국일보 10월 22일자 3면에는 ‘반정 절정… 티우의 고민’이라는 사이공발 홍순일 특파원의 해설기사가 실렸다. 중앙정보부가 이 기사를 문제삼고 나섰다. 홍 특파원의 베트남 티우 대통령 인터뷰 기사는 외국기자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티우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기사로 10월 1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나갔다. 문제 기사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다음 나흘 뒤에 베트남의 정치상황을 다룬 해설기사였다.

해설기사는 ‘계속 번지는 데모 … 장단기 모색’이라는 부제와 함께 ‘디엠 정권 교훈 … 수습 자신’이라는 티우의 답변을 인용하는 제목이 붙었다. 그런데 ‘보좌관들 부패는 바로 티우의 부패’, ‘광범위한 개혁요구에 체제 위협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신문, 방송, 통신사에 학생데모, 연탄문제, 그리고 월남사태 보도에 대해서 보도지침을 내렸었다.²⁶⁴⁾ 마침 이 시기에 보도된 월남사태 보도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정부의 방침을 어겼다며 문제를 삼았다.

10월 22일 오후 1시 중앙정보부는 편집국장 김경환에게 환문한다고 통지했고 그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불려갔다. 환문이유는 특파원의 기사가 국내 정세를 빗댄 것이 아니냐며 기사 취재, 송고, 편집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김 국장의 소환과 진술 등과 관련 국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중정이 어떻게 보도조정 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264) 10.18 이원경 문공부장관 주최로 신문, 통신, 방송사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10.19 이규현 문공부 차관은 신문사 등 편집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① 학원사태에 관하여는 74년 10월 21일부터 학원 내에서의 데모, 휴강, 개강 기사는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을 뛰쳐나온 데모기사는 1단으로 보도 ② 연탄관계 기사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는 못하겠으나 되도록이면 자극적인 기사는 피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③ 월남 등 외국 기사에 대하여는 역시 자극적인 것은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보도 지침을 요청(국정원 보유자료, 한국일보 장강재 사장 진술서 중)

(전략)

15. KCIA에서 정정보도를 중용받은 사실과 동 처리상황

- ㄱ. 정정보청 = 22일자 3판이 인쇄된 뒤(8시경) 중정 0국 한국일보 출입담당 김씨로부터 편집국장에게 전화로 ① 3면 홍순일 특과원 기사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이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사진은 빼주면 좋겠는데요...’라는 의견과 요청이 있었음
- ㄴ. 동 기사처리 = 상기 요청에 따라 편집부장을 불러 동 사진을 빼도록 지시함. (8시반경) 동 사진을 빼면 지면이 침침하니 인물사진을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함. 이에 따라 티우 대통령과 민 장군, ○○의 3명의 1단 인물사진으로 대체함. 기사도 약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편집부장에게 전하고 다른 기사를 보완하라 함(하락)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의 요청에 따라 기사를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을 문제 삼아 편집국장을 연행하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초판 제작을 마친 편집국 기자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2) 한국일보 기자 농성대응²⁶⁵⁾

기자들은 긴급총회를 열어 환문사실을 23일자 지면에 보도하기로 결의하고 야간국장에게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날 10월 23일 낮 12시 장강재 발행인과 이상우 편집부장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홍 특과원의 영문원고 텔렉스 원본과 번역문을 참고자료라는 명분으로 압류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기자들은 더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압류했던 영문 원고와 번역문 그리고 장강재 사장과 이상우 편집부장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자필 진술서 등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상우 부장의 진술서에는 중앙정보부 보도조정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265) 한국일보 ‘74노조출판위원회’,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1974년 겨울』 (발췌 요약), 미디어집, 2005, pp31-35.

10. 문제기사에 대한 순화 보도 등을 요청받은 상황

- ① 문공부로부터는 요청받은 사실 없음
- ② 10월21일 아침 OO과 김OO씨가 찾아와 월남기사는 1면에 내지말고 외신면 같은 데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받음. 특집 해설을 쓰지 말라는 요청은 없었음

11. 10.22 조간 3면서 월남사태 특집해설 기사내용과 게재보도한 목적과 경위

10.22 간부회의에서 외신부장으로부터 홍순일특과원 기사게재를 OO회의에서 신기로 함. 동일 하오 3시경 동 기사를 외신부장으로부터 받음. 외신부장은 홍순일 특과원이 특별히 잘 취급해 달라는 연락이 왔을 뿐 아니라 홍특과원이 티우와 회견해준 데 대한 보답을 하기위해, 티우 대통령의 입장을 잘 옹호해준 기사이니 꼭 취급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

기사를 당일 외신면 편집기자인 맹OO기자에게 넘기고 사진이 있으면 석간에 난 것을 한 장 골라 넣으라고 지시. 맹OO기자는 하오 6시50분경 동면을 조판 완료하여 가져왔으므로 판 모양과 제목 등을 시간에 쫓겨 급히 훑어 보고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티우 대통령의 입장을 살려준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지시. 맹OO기자는 당시 假刷를 편집국장에게 가져가 O.K를 받고 나옴

하오 8시경 편집국장이 사진을 빼고 기사를 좀 줄이자고 지시. 즉시 외신부에 기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야간 당번 편집자에게 사진을 빼고 기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음²⁶⁶⁾

장강재 사장 진술서 내용 중에서는 당시 보도내용 수정과 관련해 정부, 발행인, 편집국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8. 신문편집에 있어서 한국일보의 운영상황

한국일보사에서는 취재한 기사에 대한 편집보도 등 일체의 신문편집에 속하는 업무는 편집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행인은 개개의 기사 보도 및 편집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요구하는 보도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편집국장에게 지시하여 당국의 방침에 호응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행인과 편집국의 분리운영현상은 우리사 뿐아니라 타 신문사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²⁶⁷⁾

266) 중앙정보부, 「이상우 작성진술서」(1974.10.23)

267) 중앙정보부, 「장강재 작성진술서」(1974.10.23)

또한 10.22 진술한 김경환 편집국장은 진술 과정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보도통제 내용을 기술하였다

지난 9월초부터 문공부(차관, 보도국장, 보도담당관) 및 중정O국 직원, 수사관들로부터 학원관계, 외신 중 월남, 그리스 사태, 미국내 대한 여론 등에 관해 신중히 보도하되, 과대한 보도, 자극적인 보도를 피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연락받음. 이러한 요청에 따라 신문제작에 이를 적극 반영시켜 왔음.²⁶⁸⁾

이러한 언론통제 상황 속에서 10월 22일 한국일보 기사도 중앙정보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편집국장, 부장이 연행되었다. 중앙정보부는 3인에 대한 소환조사 후 10월 26일 「한국일보 월남사태 특집해설기사 보도경위조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의 ‘조치의견’은 다음과 같다.

4. 조치의견

본건 조사결과

- 가. 한국일보의 문제기사가 나오게 된 경위는 문공부의 미온적인 보도관계 지침 전달과 신문발행인 및 편집책임간부들의 ○○○에 기인되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70.10.24 신문편집인협회주최 연례 세미나에 배석하는 문공부 장관으로 하여금 강력히 시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나. 발행인 장강재, 편집국장 김경환 및 ○○편집부장 이상우 등은 문공부 당국의 보도한계지침 내용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반정부적 학생 및 종교인 등을 자극 선동하는 보도를 한 데 대하여 본 조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보도가 국내 사태를 더욱 혼란케 하여 결과적으로 복귀를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엄중경고 후 훈방 처리함이 가하겠습니다.²⁶⁹⁾

한편 한국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장에 이어 발행인과 편집부장이 연행된 23일 오후 기자총회를 열고 발행인과 편집국장, 편집부장이 연행된 사실을

268) 중앙정보부, 「이상우 작성진술서」(1974.10.23)

269) 중앙정보부, 「한국일보 월남사태 특집해설기사 보도경위 조사보고」

다음판 신문부터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거부되었으며, 기자총회는 ‘민주언론수호 결의문’과 4개항의 행동지침을 채택했다. 이는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실천선언보다 하루 앞선 시점이었다.

편집국 기자들은 총회 결의에 따라 즉각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중앙정보부가 발행인 등을 연행한 사실과 기자들의 철야농성 사태를 보도하도록 재차 요구했다.

제작 거부에도 불구하고 편집 간부진에 의해 결의사항을 보도하지 않은 채 초판이 발행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기자들은 인쇄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하의 운전실로 내려가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사측은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기자들은 ‘민주언론수호결의’를 선언했다.

우리는 또한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채택, 이를 확인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 ① 지난 22, 23일 이틀에 걸쳐 신문 제작과 관련 발행인·편집국장·편집부장이 중앙정보부에 출두, 조사를 받은 사태를 언론자유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 ② 우리 사회의 종교인·지식인·학생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것과 자유언론에 대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③ 앞으로 신문 제작에 관련되어 언론인 누구라도 부당하게 연행, 구금될 경우 이를 사실대로 보도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귀사할 때까지 편집국에서 기다리며 투쟁한다.
- ④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기관원의 신문사 출입을 일체 거부한다.²⁷⁰⁾

270) 한국일보 1면(1974년 10월 25일자).

이 사건이 보도됨으로써 중정의 한국일보 언론인 연행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동 성명서는 언론계에도 충격을 주었다.

3) 한국일보 노조결성²⁷¹⁾

1971년 4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1974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의 잇따른 선언 집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이런 행동은 보도되지 못했다.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기자들은 노조를 조직했다. 1974년 3월 6일 설립된 동아일보 노조와 1974년 12월 10일 설립된 한국일보 노조도 이런 실천과정에서 결성 되었다. 노조 설립운동의 바탕에는 조직적인 단결을 통해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한국일보 노조는 10.24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설립되었고 조직적인 언론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회사 측이 언론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자 이들은 신분보장을 위한 자구책으로 노조를 결성, 법의 울타리 안에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섰다.

젊은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10.24선언 이후 자연스럽게 편집국 내의 공정보도 분위기를 주도했다. 때로는 특정기사가 보도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축소 보도될 경우 편집국장, 편집부장, 담당 데스크에 항의, 지방판에 나온 기사는 시정을 하고 시내판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가 젊은 기자들과 짜고 정부를 비판한다며 사주 측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²⁷²⁾

이후 정부 당국의 압력을 수용한 회사 측은 언론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젊은 기자들을 편집국 밖으로 축출, 신문 제작에 대한

271) 한국일보 ‘74노조출판위원회, 『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1974년 겨울』을 발췌 요약하였다.

272)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앞 책, p54.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다. 그해 12월 6일 언론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20여명의 젊은 기자들은 인사 조치됐다.

12월 7일 기자 30여명은 6일자 인사이동은 보복인사라고 규정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 외신부 기자 9명은 6일 보복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제작 거부를 결의했다. 이 사건 이후 조직원의 결속력은 강화되고 기자노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창숙 기자로 노조 대표가 정해지자 12월 8일 12명으로 발기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규약 초안을 작성한 후 간부를 인선하는 등 창립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노조규약이 최종 완성되었으며 간부 인선이 완료되었다.

당시 노동조합법에는 한국일보 노조는 전국출판노조 한국일보사 지부로 설립되어야만 했고, 또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단체인 출판노조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다. 출판노조는 그해 3월 7일 동아일보 노조설립을 인준하였고 이후 중앙정보부로부터 수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⁷³⁾

1974년 12월 10일 오후 1시 발기인 31명이 참석, 창립총회를 갖고 지부 운영세칙 채택과 간부진을 선임한 뒤 발기문을 채택했다.

4) 노조설립과 정부측 갈등

당시 언론노조는 여러 정보기관이 주목하는 감찰의 대상이었다. 중앙정보부는 등 언론사 노조의 동향을 주시했다.

당시 사례를 살펴보면 1975년 1월 13일 오후 6시경 노조 섭외부장인 김영백 기자(사회 1부)가 중앙정보부에 진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 기자는 '제 3선언'을 주도한 경찰기자 일원으로 선언문을 찾으러 갔다가 정보부로 연행됐다. 그러나 그 시간 편집국에서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

273)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앞 책, pp48-50.

실천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기자들 중 50여명은 제 3선언문을 사진과 함께 1면 4단으로 보도할 것과 이 유인물을 찾으러 갔다가 연행된 김 기자 복귀시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²⁷⁴⁾

한편 김 기자가 연행된 뒤 13일 밤 10시경에는 한국일보 3층 편집국에서 종로서 정보과 형사가 나타나 노조쟁의부장인 박정수 기자(사회1부)를 연행하려 했다. 노조설립과 관련 이러한 갈등은 수차 발생되었다.

바 | 중정의 기자협회 견제

한국기자협회는 1973-1975년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 교량 역할을 해왔다. 기자들의 성명서 발표나 노조 결성, 기자 해고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당시 언론상황에 대한 외부 기고를 통해 언론통제 실상을 고발해 왔다.

1973년 6월 22일자 3면에 실린 이영희 한양대 신방과 교수의 기고 ‘신문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 때문에 박기병 회장과 편집장 정진석, 그리고 이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가 1973년 7월 19일 작성한 「불온논단 “신문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제하 문건에 기술된 세 사람의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3.6.22자 기자협회보 3면에 이영희 명의로 게재된 “신문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 제하의 논단내용이

- 가. 정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언론기관이 국민의 규탄대상이 되고 있는 듯이 표현함으로써 한국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
- 나. 반공을 권력부패와 결부시켜 반공정책을 비난
- 다. 국가권력 행사가 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시사하고 주권을 모독하는 등 북괴의 선전과 유사한 논조로 극히 불순하다는 것임

274)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앞 책, pp81-82.

동 보고서는 이어서 이영희의 신원 성분과 논란기고 게재경위 및 논란 중 불온내용을 보고하였다.

다. 논란 중 불온내용

- 1) 「우리의 언론기관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 소식은 정부가 법률로써 금하고 있는 유언비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다. 체제화된 미디어는 민중과 유리된 상태이고 규탄과 원성의 대상이 된다」고 표현함으로써 정부 권력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현재의 언론은 그 기능발휘에 있어 유언비어보다도 부정확하여 국민의 규탄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한국의 언론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였고
- 2) 「언론기관의 재정적 부실은 역대정권의 정치적 책임이기도 하다. 해방 후 한국의 국가적, 권력적 후견자격인 동맹 강대국의 정책적 액센트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청○ 보다 반공에 두어 왔음으로 반공을 내세우는 한 온갖 부정적 현실과 경향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고 권력의 부패는 논리적이고도 현실적인 귀결이다」라고 표현하여 반공을 권력부패와 결부시켜 비판함으로써, 국가의 반공시책이 권력의 부패를 초래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 3) 「부패한 권력은 부패한 언론기관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언론업자와 부정 부패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속에서 상호부조 공존해 왔으므로 언론의 본질적 존재 양식은 반민중적 성격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정권과 언론기관이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한 것처럼 비판하였으며
- 4) 「외국정부는 정부에 대한 도매 施主가 되고 권력은 신문업자에 대한 중간 施主가 되고 신문업자는 언론인들에 대한 말단 施主가 되었고, 언론인은 그 부족한 施物을 취재대상에서 보충한다」라고 표현하여 국가권력 행사가 외국의 간섭에 좌우되는 듯이 시사함으로써 독립국가의 주권을 흐리게 하였고
- 5) 신문사 밖에 있던 정보원이 현관에 들어오고 현관에서 편집국장 옆에 들어와 앉고 마침내 평기자 책상 앞에 서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이 부패와 자기 ○○의 대가였다」고 표현하여 정보부가 언론에 개입권력으로써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이 비판하는 일방 언론의 약화를 부패와 관련시켜 규탄하고 언론자체의 맹성을 촉구하는 반정부적 내용임²⁷⁵⁾

275) 중앙정보부, 「불온논단 “신문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중앙정보부는 연행한 박기병 기자협회장과 정진석 기자협회보 편집실장으로부터 향후 회보발간시 사전검열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고 훈방함으로써 이 사건이 기자협회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사전검열이 시작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진다.

- 가. 필자 이영희의 행위는 정부의 대 언론정책과 현 언론기관의 부패 무력화를 반정부적 표현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하기에는 그 범증이 미흡하며
- 나. 1973.6.24 日本共同通信 기자인 中田協에게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선언에 대한 김일성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을 圍繞 붙은논평기사 재료를 제공한 혐의 농후하므로 계속 수사후 처리 위계이며
- 다. 기자협회장 박기병 등 편집실장 정진석은 기자 협회보에 게재하는 원고 내용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인쇄에 회부한 과실이 있으나 본명 등은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회보 발간 시에는 당부 홍보실과 사전 협조하여 물의를 야기치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 조치함이 가하겠읍니다.

1) 문공부의 기자협회보 폐간

한국기자협회는 1974년 10월 25일 전 언론계로 변진 민주언론수호 결의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각사 기자들이 벌인 언론자유수호선언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각 언론기관의 일선기자들이 이번 선언에서 천명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밝힌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문공부는 1975년 3월 10일 기자협회 기관지 기자협회보를 폐간 조치했다. 폐간이유는 기자협회보가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3호에 정하고 있는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기자협회보 제 351호의 증면호를 발행했다’는 것이었다.²⁷⁶⁾ 상기 이유 가운데

276)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 30년사』, 1994, pp232-233.

전자는 그 때까지 정부가 묵인해왔던 사항이며 정작 이유는 증면호를 발행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당시 기자협회 회장이었던 김병익은 “기자협회보의 시설미비는 처음부터 정부가 묵인해온 것이고 증면호 발행에 대해서는 당국이 근거로 제시한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전혀 규정이 없는 것이다”고 회고했다.²⁷⁷⁾ 351호 증면호는 조선일보 경영진 측이 기자들을 무더기로 파면한 조치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보다 앞서 박기병 회장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됐을 당시 월간으로 등록된 기자협회보가 주간으로 발행된 것과 관련해 관리책임자인 문공부 신문과장 김○○를 1973년 7월 2일 연행, 월간지로 등록한 기자협회보가 왜 주간으로 발간하게 됐는지를 조사하고, 다시 월간지로 전환시킨 바 있다.

4. 조치 및 의견

본건 기자협회주보 발행시는 인쇄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간되고 있으므로 신문통신 등의 등록 등 법률 4조 위반이 확실함이 판단되어, 월간으로 환원시키도록 문공부에 조정하였으므로 일괄사건 처리함이 가하겠읍니다²⁷⁸⁾

2) 중앙정보부의 기자협회회장 사퇴압력

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가 폐간 조치되자 IFJ(국제기자연맹)에 보고서를 보냈다. 기협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와 경영주의 언론탄압실상을 상세히 밝히고 언론인 대량파면은 ‘언론자유운동을 좌절시키려는 언론외부의 작용과 신문 경영주가 야합한 책동’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국기자정신의 상징이었던 기자협회보의 폐간은 한국 언론을 완전 무력화시키려는 무자비한 술책’이라고 밝혔다. 기협 보고서를 받은 IFJ는 3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의 언론탄압을 비판하고 기자협회보 복간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²⁷⁹⁾

277) 김병익, ‘폐간... 투쟁... 그 아픈 상흔들’, 기자협회보·한국기자협회, 1990년 7월 6일.

278) 중앙정보부, 「기자협회 주보발간에 대한 경위 조사결과보고」 (1973.7)

제 13대 기협 집행부가 들어선 지 20여일만인 1975년 4월 24일 중앙정보부는 김병익 회장, 백기범 부회장 등 3명을 연행, 기협이 IFJ에 보낸 보고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국가모독죄를 적용, 구속위협 속에서 기협 회장단은 4월 29일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풀려났다.²⁸⁰⁾

기자협회보가 폐간 조치된 데 이어 기협 집행부가 사퇴하게 됨에 따라 소식지 발행도 중단되었으며 기협을 축으로 전개되어 오던 언론자유실천운동의 맥은 중단되었다.

3) 밀수혐의로 기협회장 사퇴

기자협회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 중에는 1979년 9월 21일 기협 회장 정성진 회장이 밀수혐의로 사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동 사건에 대한 의혹점이 제기되었는데 기자협회보에 실린 김병익 기고문 ‘폐간...투쟁... 그 아픈 상흔들’에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정 회장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9월 15일 귀국 길에 김포공항에서 밀수혐의로 연행됐다. 정 회장은 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0.5캐럿 다이아반지를 사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는데 이 사건은 정 회장이 미국에서 반지를 구매한 경위가 귀국 전 이미 국내 중앙정보부에 전달되었고 세관에서의 검색과정도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다. 결국 정 회장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기협은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표를 수리했다.²⁸¹⁾

이와관련 1979년 11월 7일 작성된 「문제기자 동아일보 000 등 12명에 대한 성분 및 비위내사 결과 보고」 국정원 보유 문건을 확인하였는데 소위 ‘문제기자’들은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영삼을 취재하던 親野 성향의 정치부 기자들이었으며 여기에 정OO에 대한 내사결과도 포함돼 있었다.²⁸²⁾

279) 김병익, ‘폐간... 투쟁... 그 아픈 상흔들’, 기자협회보·한국기자협회, 1990년 7월 6일, p237.

280) 앞 책, p238.

281) 앞 책, p243.

동 보고서 ‘조치의견’에 의하면 정OO을 포함 12명 기자들에 대한 보직변경, 사퇴 등이 9.19-21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동 년 8월 경찰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여공을 강제 진압 해산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이 9.10 국내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정권 타도’를 선언한 직후이자, 박정희 정권이 10.4 김영삼을 제명시킨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동 보고서에는 12명 기자들의 성장환경, 학·경력, 병역관계, 가족사항, 재산 및 생활정도, 종교, 해외여행 관계, 정치활동 사항, 교우 및 배우, 비위 및 특이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정OO에 대한 ‘최근동향’과 ‘비위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 혐의내용

상기명 등은 공화, 신민당 출입기자로서 김영삼 등과 밀접히 제휴, 동인의 지원 보도에 주력 편중 기사 취재에 일관하여 왔으며,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 당선 후 민주회복 투쟁노선에 적극 가담, 자유언론 실천 주장 등 반정부 성향이 농후하므로 철저한 견제 대책이 긴급요 283)

⑨ 최근 동향

74.9.27 기독교방송국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가담

78.7.12 현대아파트 등 각종 아파트 특혜분양에 여야의원 60명 관련 등 비위 보도

79.4.19 기협회장 피선후 언론자유기자 처우개선 노골적 주창

79.5.15 기협분회장회의 개최코 신문협회의 신문 휴간일 축소 결정에 전면 취소 결의문 채택

79.5.19 제8회 일선기자 친선축구대회에서 “오늘날 신문이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으며 이 책임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져야한다. 일부

282) 해당 언론인 12명의 당시 직책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정치부 기자 2명 (신민당 출입),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신민당 출입), 기독교 방송 정치부 기자 (신민당 출입), 동양방송 정치부 기자 (신민당 출입), 기독교 방송 정치부 차장 (공화, 유정희 출입 / 기자협회 회장), 동아방송 정치부 기자(신민당 출입),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공화, 유정희 출입), 정치부 기자(공화 유정희 출입),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신민당 출입), 경향신문 편집국장

283) 중정, 「문제기자 동아일보 ○○○ 등 12명에 대한 성분 및 비위내사 결과 보고」 (1979.11.7)

- 발행인 중 호텔이나 짓고 골프나 치고 주색잡기에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문기업을 미끼로 돈을 벌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기자에 대한 서비스나 신문의 사명감 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등 현하 언론계 발행인, 편집인 비난
- 79.6. 6 기협회보 제400호 기념 특집에 문제인물 한완상, 송건호, 김병익 등에 언론자유촉구 기고문 게재(당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재 주장)
- 79.6.21 태○○ 유정희 회장 면담 취재 중 김영삼 총재가 남북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괴 김일성과 면담 제의한 것을 지지 발언
- 79.7. 9 기자협회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소집 최근 경향, 조선, 중앙 등 일련의 언론계 소요사태를 기협회보에 게재함에 있어 외부는 물론 해당 신문사 회원들까지도 삭제하라는 압력이 가중되는 것에 반발, 사의표명
- 79.8.11 YH 여공 신민당 농성 사건시 일부 기자들의 부상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폭행은 보도자유에 대한 부인이므로 집단폭행 주모자를 색출, 엄단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

⑩ 비위 및 특이사항

79.8.26 국회 출입 기자단 해외취재차 미주지역으로 출국 미국에서 체재 중 동년 9.11 뉴욕 「파라무스파크」 소재 「마크스」 보석상에서 다이아 0.48 카라트(시가 100만원 상당) 1개를 미화 1,500불에 구입보관타가 동년 9.13 뉴욕 출발시 하의 우측 새끼 주머니에 은닉소지하고 동년 9.15 07:40 KAL007기편으로 김포에 밀수입 기도타가 세관에 적발되어 동년 9.16 02:30 관세법 제180조 위반으로(관세포탈) 구속 중 (영등포 지청 김○○ 검사) 기독교방송국과 기협이 당부 부장님, 법무, 문공부 장관 등에 불구속 벌금형으로 ○○조치요망의 청원서 제출 등으로 동년 9.21자로 기협회장직 및 기독교방송국에 사직서를 제출 수리됨으로써 동년 9.24 15:10경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벌금 60만원) 은전을 받고 석방되었음 284)

鄭○○(기협회장)은 79.9.16 보석밀수사건으로 (벌금 60만원) 9.21 기독교방송국과 한국 기협에 사직 및 사퇴서를 제출 수리되는 등 위해요인이 제거되었고285)

284) 앞 문건

285) 앞 문건

1) 시대 상황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김대중과 대결하여 근소한 차로 승리를 거둔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후 1972년 10월 17일 소위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후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종신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73년 2월 27일 1구 2인제의 중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총선이 치러졌으며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 조사 내용

가) 조사 배경

1973년 3월 6일 작성된 「조선일보 광고계재 조정보고」 문건에서 1973년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 광고 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 문건을 토대로 정보기관의 광고주를 통한 언론통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조선일보 광고탄압 개요

(1) 조선일보 광고통제 개입내용²⁸⁶⁾

중정은 1972년 10월 1일부터 1973년 3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94개 업체의 광고게재 회수를 조사해 ‘조선일보 광고업체 일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5회 이상 광고를 게재한 36개 업체와 2회 광고를 게재한 광일화직을 포함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1973.3.5 15:00 현재 조정완료”했다고 보고했다.

3월 5일에는 우선 3월 6일자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되어 있던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정했는데, 중정은 해당 업체 광고담당자 및 회사대표 등에게 3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기로 되어있던 광고를 전면 취소토록 조정했다. 특히 3월 6일자 광고주 9명 중 6개사 대표에 대해서는 3월 5일 직접 중정으로 소환하여 3월 6일자 광고를 취소함은 물론 이후 중정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선일보에 광고게재를 중지토록 조정한 후보안각서도 징구하였다. 이 중 국제극장 전무이사 박OO와 을지극장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정사항

1973.3.5 20:00~3.6 00:30까지 上記 박OO로 하여금 조선일보사 광고부에 임하게 하여 회사에서 조선일보 4면 4단 25행으로 광고(에덴의 동쪽)하던 것을 1973.3.6 지방관 및 가관을 제외하고 시내관 광고는 취소 삭제하였으며, 3.6 이후는 당부 지시가 있을 시까지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치 않도록 하였음

(나) 억제 상황

- 본명은 을지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五百花의 광고를 7만원에 조선일보사 광고란에 게재 의뢰한 바 있는 자로서 동 광고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1973.3.5 20:30부터 동일

286) 중앙정보부, 「조선일보 광고게재 조정보고」(1973.3.6)

24시간에 조선일보사에 임하여 의뢰한 광고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억제 조치를 한 바 있고

- 본명은 향후 當局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앞으로 일체 광고 의뢰치 않을 것을 별지와 같이 제출한 바 있음

한편, 중정은 OO국 OO과를 통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취소된 광고면에 무료광고 및 다른 기사로 대체 게재하도록 조정했다.

OO국 언론과에서는 전시 업자들의 광고계약취소와 병행하여 그중 1면 주부생활 광고란은 “뎃보”(광고료 없는 다른 광고)로, 7면 아도홈 소화제 선전광고란은 전면기사로 대체하고, 8면 해외여행 영어회화책 광고란은 스포츠 기사와 다른 “뎃보” 광고를 게재토록 지면 조정을 하였다고 함

(2) 당시 조선일보의 광고게재 현황

당시 신문이 가판, 지방판, 시내판 등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정의 조정사항과 조선일보의 실제 광고현황을 현재 온라인에 제공되어 있는 PDF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비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중정의 조정으로 광고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해보면, 중정이 3월 6일자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9개 기업의 광고로 이중 OO국 언론과에서 조치를 취한 3개 광고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1면 게재예정인 「학원사」 광고는 「유유산업」 광고로 대체되었고, 8면 게재예정인 「대양출판사」 광고는 「삼일제약」 광고로, 7면 「일성신약(주)」 광고는 일반기사로 대체되었으며, 2면 「한일증권(주)」 광고, 3면 「금강제화(주)」, 4면 「을지극장」, 「국제극장」 광고, 5면 「중앙TV사」 광고는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정의 조정사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조선일보 60년사』에서는 중정의 광고탄압에 의하여 3월 7일자

3·4면에 광고가 없어지고, 3월 8일자 3·4·5·6면이 기사로만 채워졌다면서 이런 광고 해약의 배경이 조선일보의 부정선거 등 정부 비판적 보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同 사건관련 ‘조선일보사 60·70년사’ 기록》

- 조선일보 1973년 3월 6일자 부산의 선거관계 기사(투표용지 위조 등 시인/부산 중앙동 선거관리위원장/선거인 명부도 거짓, 5판 7면 5단 제목)가 문제가 되며, 조선일보 광고계재량이 3월 7일자 36단(3, 4면 광고 없음), 8일자 32단(3, 4, 5, 6면 광고 없음. 통상계재 단수는 매일 50단)으로 줄었다.²⁸⁷⁾.
- 조선일보는 창간 53주년 기념호인 3월 4일자에 가정의례법을 제 1면 머리 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제 7면에는 ‘법으로 묶지 말고 계몽으로 선도했어야’라는 각계 의견을 실는다.
- 3월 4일자에 정부시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편집이 유신체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선거 뒤에 쏟아진 법률’이라는 제목 아래 주민세, 전화세, 가정의례법에 대한 비판적 해설 기사를 제 3면의 4분의 3의 크기로 다루면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납득할 수 없다’는 10단 길이의 커트를 사용하여 여론을 대변한다.
- 조선일보는 1973년 3월 6일자에 실린 기사가 문제가 되어 광고가 줄어드는 수난을 며칠동안 겪는다.
- 이 날짜 제 5판의 제 7면에 ‘투표용지위조 등 시인/부산 중앙동 선거관리위원장/선거인 명부도 거짓’이라는 5단 제목의 폭로 고발기사가 실린 것이 문제가 된다.
- 통상 50단이던 광고량이 정부의 압력으로 3월 7일자엔 36단으로 줄어 3, 4면엔 광고가 없어지고, 3월 8일자에는 더 줄어서 광고가 32단 밖에 되지 않아 3, 4, 5, 6면이 기사로만 채워진다.²⁸⁸⁾.

287) 조선일보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조선일보 60년사』, 조선일보사, 1980, pp345-346.

288) 조선일보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조선일보 70년사』, 조선일보사, 1990, pp141-142.

그런데 실제 광고게재내용을 살펴보면, 3월 7일자 신문은 3, 4면이 광고 없이 기사로 채워졌으며, 다른 광고란은 학원·구인광고 등이 게재되었고, 3월 8일자 신문은 조선일보사 기술내용과 다르게 3면에만 광고가 없을 뿐 다른 면들은 모두 광고로 채워져 있었으며 1면은 「동양고속」, 7면은 「한일약품」 광고가 게재돼 있다.

또한 광고게재 시점과 관련하여 중정이 3월 6일자부터 이미 광고게재 중단을 시도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조선일보 60년사」는 3월 7일자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정의 조정에 의해 조선일보의 광고가 취소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선일보 광고탄압의 배경

조선일보측은 『조선일보 60년사』에서 중정의 광고탄압이 정부 비판적 보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시비가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총선거일인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조선일보 기사(73.2.28-3.13간)내용 분석》

게재날짜	게재면	조선일보 기사 내용
73.2.28	1면	‘서울 동대문, 목포서 사전투표’ 제목으로 여당의 부정선거를 5단 기사로 보도
	팔면봉	“투표일에 추문 공명을 더럽힌 자는 네 거리에서 극형에 처함이 어떨까”라고 하여 여당의 부정선거를 강력 규탄
	7면	종로·중구 선거구에서 866표의 무더기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
73.3.1	1면	‘선관위장 등 종사원 22명을 구속’ 제목으로 부산시 부정선거 관련 기사 보도
	팔면봉	“사전 무더기표의 두 선거구, 바닷물로도 못다 씻을 오욕의 본보기”라며 비난

	사회만평	선거법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였다며 우회비판
	사설	‘2.27총선의 결산’ 제목으로 선거결과 의의를 논하면서 서울 동대문과 목포 선거구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해 논평
	4면	정치부 기자간 좌담에서 서울 동대문, 목포 등에서 개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 하면서 “당선 무효소송 가능성”에 대해 언급
	7면	청주에서 대리투표로 3명이 구속되었음을 보도
73.3.2	1면	공화당 길전식 사무총장의 동대문, 목포 선거구의 부정과 관련된 담화내용을 싣고 있음
	3면	‘2.27 총선과 민주주의’ 제목으로 실린 고려대학교李文永 교수의 글은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소재목은 ‘견제 참여기능 개발’, ‘국민의 정치관심 활용과제 남아’, ‘1선거구서 1명 뽑았다면 야 압승’이라며 선거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
	7면	부정선거로 31명이 구속되었음을 보도
73.3.3	1면	朴正熙 대통령의 ‘선거부정 일소토록’하라는 국무회의 발언 소개
	1·7면	신설되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기사
73.3.4	1면	신민당 의장단 회의에서 ‘선거부정’과 관련하여 여야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는 제의 기사 게재
	3면	「조선일보 70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거후에 쏟아지는 법률, 주민세, 전화세, 가정의례법’ 등과 관련된 기사 게재, ‘주민이란 이유만으로 과세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주민 반응을 기사화
73.3.8	1면	동대문, 목포선거구의 공화당 당선자인 강상욱, 강기천에 대하여 공화당의 제명의결 보도하고 선거관련 기사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유정회 의원 73명에 관한 기사 게재
73.3.8	2면	‘메리고 라운드’란에 ‘주민개(皆)세주의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차병권교수의 기고형식을 빌린 글을 실어, 정부의 주민세 신설 옹호기사 게재
73.3.9	7면	2.27 총선사범으로 17명이 추가 구속되었음을 1단 기사로 짚막하게 보도 하였고, 이후에는 3월 13일까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도가 없음

위 표에서 보듯이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들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정부비판적 기사가 중정의 조선일보 광고탄압 배경의 하나일 수는 있으나 전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특정한 기사의 게재가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왜냐하면 당시 동아일보도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동아일보의 정부 비판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동아일보 기사(73,2.28-3.8간)내용 분석》

게재날짜	게재면	동아일보 기사 내용
73.2.28	1면	‘동대문, 목포 사전투표’라는 제목의 기사
	3면	투개표 중에 잡음이 있었음을 보도
	7면	3분의 1이 개표중 무더기표가 발견되었음을 보도
73.3.1	1면	공화당 길전식 사무총장 담화내용 및 김영삼 신민당 정부 부의장 부정선거 관련자를 엄단하라는 성명 보도
	7면	부산의 부정선거 등 선거사범 구속내용 기사화
73.3.2	2면	신민당이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겠다는 기사 보도
	3면	‘타락은 막았지만 발 묶은 공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7면	‘고바우영감’에서 부정선거 관련 여당 비판여론이 행정구역 개편뉴스에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평게재
73.3.3	1면	대통령 ‘선거사범 엄단지시’ 기사 및 주민세 신설기사 게재
	사설	‘선거사범 엄단하라’는 제목의 사설 게재
73.3.5	1면	부정선거 관련 13개 선거구의 당선무효소송 제기 기사 보도
	장침단침	주민세 신설에 대한 가십 기사 게재
	6면	주민세 부담에 대한 기사 보도
	7면	부정선거 증거보강 위해 검찰이 투표함 압수영장 신청 보도
73.3.8	1면	강상욱, 강기천씨가 공화당에서 제명 처리 보도
	2면	공화당 의원 제명이 박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기사 보도

이상에서 보듯이 동아일보 역시 부정선거 및 주민세 문제 등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

따라서 중정이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을 가한 배경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조건과 조선일보의 보도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종신 집권의 틀을 갖추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적 저항을 막고 정치적으로는 의회의 장악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지만 결국 박정희 정권은 1973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중정이 1972년 10월 1일부터 조선일보 광고업체와 광고계재 회수를 조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정의 조선일보 광고통제는 특정 기사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유신선포 이후 언론통제 수단으로 강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평 가

중정의 조선일보 광고탄압은 유신선포 이후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한 통제와 권력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 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1973년 총선승리라는 유리한 정치적 상황 조성 등 복합적인 배경아래 발생한 사건이다.

동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해약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그 결과 신문경영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언론사주를 굴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통제 방식이었다.

4 보도지침

가 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보도지침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다. 그간 각종 매체를 통해 중앙의 언론사나 지방일간지에 근무하던 기자들이 주장해 왔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도지침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1) 박 정권하 보도지침의 의미²⁸⁹⁾

박정희 정권은 18년의 집권기간 동안 언론통제에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히 구사했다. 3선 개헌 이후에는 공안 또는 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원’이 편집국(보도국)에 상주하면서 의도하는 기사의 삭제, 보류, 부각, 축소를 ‘부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지시했다.²⁹⁰⁾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갈수록 민주화바람이 거세지자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에 이른바 ‘유신체제’를 선포,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가 선포된 후 1인 종신독재가 완결되면서 언론자유는 조락하게 된다. 박 정권은 신문제작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정권 유지에 별로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문제 등도 ‘크게 보도하라’, 기사를 ‘통째로 빼라’ 등의 보도지침을 하달하였다. 언론기관은 유신독재 정권의 강력한 위력에 저항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 개정 청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수많은 양심인사들이 여러 죄목으로 구속돼 사형, 무기 등 5년

289) 김종철, 「6공화국의 언론통제 실상」에서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인용하였다.

290) 김종철, 「6공화국의 언론통제 실상」, 『세계와 나』, 1992년 2월호, 세계일보사, p232.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언론은 군사독재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외는 일체 보도하지 못했다. 중앙정보부 등 기관원들의 언론기관 출입도 잦았으며 정권이 강력한 보도지침을 내려 단 한 줄도 마음대로 보도할 수 없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이어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저항 기미를 보이자 박 정권은 언론통제 강도를 높였다. 1975년 5월 13일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자 박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선포,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여 시시비비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기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졌다. 유신정권은 10·26이라는 종말을 고하기 직전까지 언론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다.

이와관련 조선일보 기자출신인 신흥범(조선일보 사태로 해고)의 주장²⁹¹⁾은 다음과 같다.

“유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기관원의 출입은 분명히 있었다. 한국 언론의 암흑시대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원들이 언론사를 출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드나들더니 나중엔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내가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들을 보게 되었으니 이른바 ‘기관원’들이 신문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을 전후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언론사에 드나들면서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갈수록 강화해 나갔다.”

특히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신문사에서 받는 외국 4대 통신(AP, UPI, AFP, 로이터통신)의 뉴스를 정보부에서도 똑같이 받고 있었으므로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안보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나 베트남전쟁을 비판하는 뉴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외신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대상인 데다가, 통신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쉽게 빨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다.

291) 신흥범, 「한국일보 노조의 고난을 돌아보며」, 『1974년 겨울』, 미디어집, 2005, p249.

박 정권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상류층 보석밀수 사건을 보도지침으로 통제된 사례도 있다. 1974년 9월초 특권 상류층 여성들 다수가 보석밀수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박 정권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집권세력과 특권 부유층의 부정부패와 타락까지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은폐되고 보호되었던 것이다.²⁹²⁾

군사 정권의 ‘보도지침’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언론통제 행위였다. 내용을 보면 ‘보도지침’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²⁹³⁾

2) 보도지침의 작동방식

가) 방송사에 대한 보도지침 작동방식

미디어전문 주간지 「미디어오늘」은 1996년 1월 3일자 및 10일자 구 동양방송(TBC) 관계자가 보관해 왔던 보도지침을 공개했다. 이 보도지침은 1975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1월 20일까지 4년 6개월여 동안 중앙정보부 등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것으로 당시 보도지침을 전달받은 TBC 당직기자들이 작성한 기록장부이다.

유신정권하의 보도지침들은 박 정권이 어느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재야, 야당, 노동, 학생, 인권, 통일, 대북관련 기사는 예외 없이 보도지침이 적용돼 보도되지 못했다. 또 박 전대통령이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외신기사, 이후락씨의 거액 빌딩 매수에서부터 육군 일병 무장탈영, 예비군 차량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당시 정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내용까지 모두 통제됐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보도지침을 내린 주체들이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방부,

292) 송건호, 『한국 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p177.

293) 이수기, 『보도지침과 신문의 이해』, 금호출판사, 2002, p27.

문공부, 검찰, 육군본부, 해군본부 등 광범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당시 동양방송의 한 관계자는 “각 기관과 군은 중정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권력을 휘두르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그 권력은 언제나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²⁹⁴⁾

보도지침 접수대장을 보관하고 있던 노계원은 1999년 성균관대에서 ‘제3공화국 말기 언론통제에 관한 분석적 연구-구 동양방송 ‘보도통제 연락접수대장’을 중심으로’ 제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동 논문을 발췌 인용하여 3공화국 시절 보도지침의 윤곽을 기술하였다.

(1) 보도지침 시달기관²⁹⁵⁾

보도지침의 시달에는 중앙정보부가 전권을 행사했고, 문화공보부와 각 부처의 공보관 등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중앙정보부는 각 언론사 별로 통제담당자를 두고, 이들을 직접 해당 언론사에 파견해서 상주시키 다시피 하면서 기사의 보도통제는 물론, 기사의 방향설정, 기사의 편집, 기사의 크기 등을 조정했으며, 기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회유, 협박, 폭행, 연행, 기소하는 거의 모든 역할을 담당했다.

<보도통제 기관과 통제 건수>

통제기관	중앙정보부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통제건수(%)	735(83.6)	27(3.1)	58(6.6)	2(0.2)	9(1)

통제기관	보안사령부	계엄사령부	문공부	치안국	청와대
통제건수(%)	3(0.3)	7(0.8)	19(2.2)	5(0.6)	2(0.2)

통제기관	기타	통신취소	총계
통제건수(%)	7(0.8)	5(0.6)	879(100)

294) 『미디어오늘』, 1993년 1월 3일.

295) 보도지침 시달기관, 전달창구, 내용분석 등은 노계원의 앞 논문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전국적인 방대한 조직망을 통해 정가와 재야 및 학원가의 동태는 물론 각종 사건과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경우 언론사 간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자들의 취재에 의한 보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약간이라도 이의를 표명하거나 저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갖은 협박과 회유, 연행, 폭행 등으로 자신들의 통제 목적을 관철했다.²⁹⁶⁾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 외에도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보안사령부, 치안국, 청와대 등이 보도통제를 했으며, 기타 외무부, 문교부, 동자부, 농수산부, 건설부 등도 건수로는 미미하지만 보도통제에 가담했다.

예컨대 국방부가 국방관계 일반의 기사를 통제할 반면, 각 군별로 통제를 요청한 기사는 군부대 내부의 안전사고나 장병들의 대민 비행사건 등에 관련된 기사가 통제의 주류를 이루었다. 군 기관의 통제는 주로 각 군 본부에 두고 있는 공보실 정훈장교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부처는 부처 대변인실에서 담당했다.²⁹⁷⁾

(2) 보도지침 전달 창구²⁹⁸⁾

당국은 보도통제 연락을 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신, 편집 등 각 부서의 담당 데스크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했으나, 당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차상급자인 보도국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그밖에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중역들을 통해 하부조직으로 하달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언론사에 대한 보도통제는 주로 통제기관의 해당 매체 담당자와 매체사의 담당데스크 사이에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296) 김민남, 「유신체제하의 언론연구」, 『사회과학 논집』 제6집, 경북대, 1988, p23.

297) 김재홍, 「국가 정보기관과 언론」, 『98 언론연구』, 삼성언론재단, 1988, p72.

298) 보도지침 전달창구는 노계원의 앞 논문에서 요약한 것이다.

중앙정보부 소속의 각 언론사별 전담자는 보도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전면적 금지 또는 부분적 제한을 통보하고, 언론사를 직접 방문했을 때는 주로 통제의 배경이나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는 수순을 밟았다. 전담요원은 수시로(1일 1-2회) 언론사를 방문하여 언론인과의 친면을 다지고 회유책을 구사하여 친밀감을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통제절차와 효과를 얻으려고 했다.

통제하는 기관의 ‘협조 요청’ 태도는 중앙정보부와 계엄사령부의 경우는 매우 권위적이며 위압적으로 ‘지시’에 가까웠다. 나머지 군기관이나 행정부서는 ‘부탁’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언론사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안이 중요한 내용일 경우는 중앙정보부나 문화공보부를 통해 다시 압력을 추가하는 2중, 3중의 통제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3) 보도내용의 통제 유형²⁹⁹⁾

보도내용의 통제는 기사내용 전체의 보도를 금지하는 전면통제와 기사 중 일부 또는 특정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통제로 행해졌다. 또한 기사가 언론사에 의해 취재되기 전에 기사화 자체를 봉쇄하는 사전 통제와, 특정 사안에 대해 통제기관이 기사화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도된 후에야 뒤늦게 인지하고 더 이상의 보도를 금지하는 방법, 그리고 보도는 하되 용어의 선택에 유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순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기준에 따라 5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각 분류를 간략히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통제와 부분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지침 기록대장에 기록된 통제요청 연락은 보도의 전면통제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중앙정보부는 정보에 대한 기사화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고, 통제를 가할 내용을 결정하여 언론사에 통보해주면서 사전에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299) 보도내용 통제유형 부분은 노계원의 앞 논문에서 요약 발췌한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내용통제는 전면 또는 부분통제에 속했으나 그 중에는 통제 의도는 분명하나 구체적인 통제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막연하게 ‘주의 요망’ 또는 ‘순화하라’, ‘약화하라’,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화’, ‘너무 부각’, ‘작문’, ‘억제’, ‘자극적’, ‘작계’와 같은 표현의 의미와 한계는 매우 모호한 것이어서 판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아예 취급을 피하는 쪽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위의 분류 외에도 방송이기 때문에 가지는 통제의 특성도 있었다.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더 강한 통제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록대장에 나타난 보도의 형식 통제를 보면 기사의 길이는 물론 화면의 구성과 기자의 보도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세밀한 부분에 이르는 간섭의 실상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방송보도의 형식상의 통제는 주로 동화상(필름) 사용여부나, 특파원의 현지 리포트 및 해설방송의 가부에 집중됐다.

정부의 보도통제는 대부분 언론매체나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것이었으나 통제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매체별로 차별화를 기도하였으며, 주로 방송매체에 더 많은 통제를 가하는 경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파가 갖는 동시성과 확산성, 광역성 등 민감한 매체의 특성 때문에 방송, 특히 텔레비전방송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우려한 나머지 보도내용 보다는 그 기사에 부수되어 방영되는 화면에 대한 통제가 심했다. 반체제 인사들과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이들의 시위, 구속, 재판에 관한 현장화면은 동사진이나 정사진을 불문하고 일체 방송할 수 없었다.

또한 전파매체를 통한 보도는 북한에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들에게 대응의 여유를 준다는 이적성을 우려한 조치였으므로 방송사에서도 매우 민감한 수용자세를 갖게 됐다. 예컨대 청와대 주변에 설치된 대공포대가 비행금지구역을 실수로 비행한 여객기를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한 사건(1976년 9월 6일)은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면서도 방송매체는 ‘북괴가 즉각 인용 보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체 보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 등이다.

6명의 딸을 가진 가장이 아내가 다시 일곱 번째 딸을 출산하자 이 딸을 살해한 사건(1976년 2월 26일)은 내용이 너무 참혹하다는 이유로 방송에서는 뉴스로 취급하지 못하게 했으나 다음날 조간신문들은 화제기사로 박스처리한 것도 한 사례이다.

(4) 보도통제 내용의 분석(300)

<통제된 기사의 내용별 분류>

분 류 별 내 용	건수	비율
1)반체제활동에 관한 사항	275	31.3
(1)야당, 재야인사의 반체제 활동	(109)	(39.6)
(2)학원의 반체제 운동	(48)	(17.5)
(3)시민, 종교계, 노동계, 농민 등의 반체제 활동	(46)	(16.7)
(4)외국인의 정치인, 언론인의 한국정정에 관한 언급	(62)	(22.6)
(5)타국가 내부의 반체제 활동에 관한 사항	(10)	(3.6)
2)언론통제 및 언론인 탄압에 관한 사항	13	1.5
3)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및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	54	6.1
4)공직자의 비리 부정에 관한 사항	43	4.9
5)군 관련 사항	143	16.3
(1)군사작전, 훈련, 무기 및 장비의 수급에 관한 사항	(18)	(12.6)
(2)주한미군, 군사원조 및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	(19)	(13.3)
(3)군의 안전사고, 총기사건, 탈영 및 대민 비행	(106)	(74.1)
6)남북한 문제에 관한 사항	72	8.2
(1)남북한의 대북 대남 정책에 관한 사항	(19)	(26.4)
(2)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외국인의 활동 사항	(8)	(11.1)
(3)국내 인사의 남·월북 및 방북에 관한 사항	(16)	(22.2)
(4)국제외교에서의 북한의 성과	(3)	(4.2)

300) 보도통제 내용의 분석 부분은 노계원의 앞 논문에서 요약 발췌한 것이다.

(5)북한 요인의 동정	(2)	(2.8)
(6)북한의 도발, 귀순	(24)	(33.3)
7)외교 관련 사항	153	17.4
(1)외교활동 및 미수교국과의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9)	(38.6)
(2)정부의 외교 정책 부진 및 실패에 관한 사항	(50)	(32.7)
(3)국내 요인의 외국 망명에 관한 사항	(8)	(5.2)
(4)외국 주요인사의 방한 및 국내 동정	(36)	(23.5)
8)기타 사항	126	14.3
(1)국내외의 특정 사건·사고	(22)	(17.5)
(2)특정 요인의 동정, 발언, 경력, 불명예 사항	(49)	(38.9)
(3)미수교국과의 스포츠 교류	(6)	(4.7)
(4)주요 해외 경제사업	(21)	(16.7)
(5)기타	(28)	(22.2)
총계	879	100

(가) 반체제 활동에 관한 사항 : 유신체제 및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언사나 행동은 그것이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일체 보도를 금지했다.

- 야당 및 재야인사들의 반체제 활동 : 야당의원들의 원내외 발언이나 동정, 재야인사들의 단순한 동정은 물론 반체제 발언, 이에 대한 법적 제재 및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연행, 구속, 재판 등에 대한 보도는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에게 관한 내용은 내외신을 막론하고 일체 보도할 수 없었으며, 이들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다.

유신체제에 반기를 드는 행위와 동태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국회의원이든 재야 지도자이든 가리지 않고 철저히 통제했다. 야당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체제비판이나

이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거론하는 내용은 언론보도단계에서 통제됐으며, 재야인사들의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내용도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은 봉쇄했다. 반체제인사들의 연행과 구금, 고문, 재판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들의 변론내용도 통제의 대상이었다.

정부가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 반대, 개정, 주장을 금지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자 학원은 유인물 살포와 집단 가두시위로 거세게 반발했다. 학원가의 반정부 운동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원관련 보도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야당이나 재야의 움직임 못지않게 민감한 사안이었다. 반면에 그 소요가 초래하는 교통 혼잡, 거리질서의 혼란, 사회불안 등은 언론이 크게 부각하도록 함으로써 민심을 사회혼란에 대한 혐오와 염증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 반체제운동에서 학생들 다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가톨릭을 선두로 한 기독교계와 노동계의 움직임에 관한 보도는 모두 통제됐다. 통제의 구실은 근로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사회불안을 야기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였으며, 근로자들의 소요에는 ‘불순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 외국의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 모든 매체의 한국에 대한 보도에도 당국은 통제의 칼을 휘둘렀다. 한국정정을 부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보는 일체의 기사가 국내 매체에서는 ‘인용보도 불가’였다.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신문과 잡지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통제대상 내용이 기술된 부분을 먹칠해서 읽을 수 없도록 하거나 가위로 절제한 뒤에 국내 독자에게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영구히 보존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 언론통제 및 언론인 탄압에 관한 사항 : 정부와 언론의 대결구도는

기자들에 대한 집단해직으로 결말이 나면서 당국의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언론의 자유수호 투쟁 움직임은 일절 보도할 수 없었으며 동아일보 광고탄압에 대한 국민의 격려광고에 의한 성원도 떠도는 소문에 의한 것이지 기사나 社告에 보도될 수 없었다.

유신정권은 보도를 통제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통제 지시를 어기거나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언론인에 대한 폭언과 연행, 폭행, 구속 및 재판을 감행했다.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나 정부가 지시한 금기사항을 위반한 언론인은 여지 없이 제재했다.

- (다)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 및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정부의 언론통제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이유로 반체제운동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주의를 유지하려 했고,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보도를 통제했다. 특히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국의 비판에는 민감한 통제를 가했다.
- (라) 공직자의 비리 부정에 관한 사항 : 유신정권의 언론통제가 사회 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대외적 명분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권력자들의 부패와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점이다.
- (마) 군 관련 사항 : 군에 관한 기사는 공보관실의 보도 자료를 제외하고는 취재가 거의 불가능했다. 베일에 가려진 영역의 내부에는 엄청난 부패와 기강의 해이가 온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국내 군사관련 사항은 물론 언론인과 군사소식통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일일이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병영내외의 안전사고 내지는 대민접촉에서 생기는 충돌사건 등은 사전 봉쇄가 어려웠으므로 결국 당국을 통한 사후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장비나 무기의 수급에 관계되는 보도는 군의 전력을 외부에 누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훈련에 관한 사항은 군 작전이나 병력의 이동을 적에게 노출시킨다는 우려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엄격한 통제가 가해졌다.

한미간의 정치적 불협화음이 외신에 의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당국의 철저한 통제로 보도되지 못했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 안정에 해악을 미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통제는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마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당시 정권의 곤혹스런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군인들의 안전사고와 총기사고, 대민비행, 탈영사고 등에 관한 보도 통제 조치는 반체제활동 기사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장병들이 민간의 고기잡이배를 납치하고 물고기를 탈취하여 부식으로 사용했고, 무인도에 방목하는 민간인의 염소 수십 마리를 잡아먹다가 산불까지 내는 사건도 있었으나 모두 보도금지였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군 내부의 안전사고나 병사들의 패싸움, 총기오발 내지는 대민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훼손과 군의 대외적 이미지의 실추를 막아보려고 했다.

- (바) 남북한 문제에 관련된 사항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당국의 발표나 내외통신의 전제 외에는 언론사의 자율적 취재나 보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주변의 우방국 정치지도자들이 남북한 간의 긴장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에 관한 기사도 보도통제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우방국들의 노력과 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동향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제하는 한편, 북한의 남침 우려 등 부정적인 내용은 역점을 두어 보도하도록 요구했다.

북한의 위협을 사실 이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유보 및 강력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위한 전술이었다.

- (사) 외교 관련 사항 : 한국은 중립국 내지는 공산국가와의 교류에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공산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나 이에 관한 사전 예고기사의 보도는 언제나 금기사항이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방국들의 압력은 가중되고 있었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박동선 로비사건 조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협조를 빌미로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세워 위협하는 정도였다. 일본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이유로 한일외상회의 개최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라오스,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등). 독재정권이 국제적인 여론의 협공을 당하고 있었으나 당국의 철저한 언론통제로 국민은 이러한 외국의 동향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정권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려고 했다. (중앙정보부 요원의 미국 망명, 최덕신 전외무장관의 미국망명, 박동선의 워싱턴 거주 희망 등)

- (아) 기타 사항 :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발언, 동정, 행적, 경력 등에 대한 보도의 통제에 자의적 재량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사적인 동정이나 장관들의 국회 답변도 정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보도를 통제하고 그들의 행적이나 경력에 몇몇치 못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외신 기자에게는 보도를 허용하고 內信은 통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국민에게만 정보봉쇄정책을 철저히 시행한 것이다.

생활고를 비판한 자살이나 참혹한 내용의 사건과 사고, 국내에서의 외국인 사고, 해외에서의 내국인 피해사건, 외국에서의 대형 참사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했다. 국내의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원성이 치안의 부재나 사전 대비책의 부족, 빈부의 격차, 인륜의 타락 등 정권의 책임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대상이었다.

나) 지방일간신문에 대한 보도지침 방식³⁰¹⁾

유신정권 말기에 지역에서 경남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이수기는 2002년 『보도지침과 신문의 이해』라는 책을 통해 1979년 10·26 사태를 전후로 1년 8개월간 메모형태로 기록돼 있는 283개항의 ‘보도지침’을 공개했다. 이씨는 당시 보도지침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보도지침은 당시 거의 매일 통보되는 것으로 언제, 무엇을 통보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해 보도에 문제가 생기자 먼저 전화를 받는 직원이 ‘보도지침 메모장’에 기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록돼 있는 내용으로 편집국의 국장, 부장, 차장, 기자 등 10여명의 국원들이 전화로 통보받은 내용을 적은 것이다. 지방 언론사에는 중앙정보부 지방사무소가 서울 본부에서 내린 것을 받아 시달했다.³⁰²⁾

301) 지방일간지에 대한 보도지침 방식은 이수기 저서 『보도지침과 신문의 이해』를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302) 이수기, 위 책, p32.

(1) 보도지침 시달방식

보도지침은 한국 언론이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 왔는가를 밝혀 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보도지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가, 불가, 절대 불가 등 사실상의 지시로써 사건이나 사태의 보도 여부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했다.

보도지침의 용어는 보도조정 지시, 확대보도 지시, 홍보지침 시달, 보도 관제, 보도불가 등 통제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다. ‘단순 보도지침’ 이라기보다 산하기관에 하달하는 지시사항 형식이였다. 이것은 당시 독재정권이 언론기관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보도지침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군인 1-2명의 사상자가 난 교통 사고도 보도를 제한했다. 지방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까지 관여한 것은 지방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부가 본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에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는 소식까지 언론통제로 확인할 수 없자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언론의 통제가 심해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간의 유언비어가 사실로 확인되자 ‘유비통신’ 또는 ‘카더라 방송’ 소식을 전하느라 지식층 2-3명만 모여도 얘깃거리가 됐을 때도 있었다.

(2) 보도지침의 방향

제 3공화국 및 유신정권이 언론기관에 통보한 ‘보도지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됐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어 보도를 하지 않을 때는 유언비어로 확산되어 불신심화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특정사건 및 행사는 보도내용과 형식을 사전에 결정, 집권세력에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했다. 꼭 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1단 또는 내용을 모호하게 하여 과장을 최소화시켰다. 둘째, 사안은 중요하지만 보도만 막으면 국민이 알 수 없을 때는 ‘보도불가’를 지시, 보도를 못하도록 했다.

보도지침은 ‘가’, ‘불가’, ‘절대불가’, ‘과대선전 보도’, ‘용어사용 불가’, ‘이행 안 하면 엄중문책’ 등과 함께 어느 면에 몇 단 등 제목, 단수의 크기, 활자의 크기, 사진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수기는 “어떤 때는 몇 단 이하로 게재하라고 하자 옆으로 벌리는 제목을 달아 게재했다가 혼이 난 일도 있다”며 “이런 사태가 있는 이후는 활자크기도 정해 줄 때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3) 보도지침의 내용

이수기가 명시한 보도지침 283개항의 내용을 보면 정치관련 44개항, 야당관련 9개항, 김대중 관련 9개항, 김영삼 관련 20개항, 김옥선 관련 1개항, 이철승 관련 1개항, 국보위 관련 1개항, 입법회의 관련 5개항, 대통령 관련 5개항, 국민투표 관련 9개항 등 정치문제가 95개항(30%)으로 가장 많다.³⁰³⁾

10·26사태 이전은 YH농성사건, 야당사건, 김대중 관련, 김영삼 관련 등 야당의 탄압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개인별로는 야당총재를 할 때 많은 탄압을 받은 김영삼 사건이 가장 많았다. 10·26이후에는 계엄관련, 대통령 시해사건, 김대중재판 관련, 국민투표 관련, 정치인규제 관련 등으로 정치적인 뿌리가 전혀 없는 새로운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정권을 탈취, 기반을 굳히기 위한 신당창당을 비롯한 신 군부정권 창출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콜레라 발생 등 사회문제 3개항, 교육 및 학원 관련 19개항, 공직자비리 관련 10개항 등 모두 64개항(22%)이다. 세 번째로 북한문제 및 안보 관련 36개항, 군사 관련 7개항, 외교 관련 11개항 등 통일과 안보문제가 54개항이다. 경제문제 34개항, 농사 및 식량 관련 16개항 등 경제 분야가 50개항이다. 제일 적은 것은 문화 분야로 11개항에 불과했다.

303) 이수기, 앞 책, p34.

다) 중앙 일간신문(신아일보)에 내린 보도지침³⁰⁴⁾

1973년 4월부터 중앙일간지인 신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희진은 1975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중앙정보부 등 유신정권으로부터 시달된 보도지침 메모장을 엮어 『유신체제와 언론통제-암울했던 시대 중앙일간지 정치부장의 육필메모 분석』(1995, 아이엔)이란 책을 펴냈다. 3공화국 시절 중앙 일간신문에 시행된 보도지침의 단면으로서 김희진의 증언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신문사 편집국에 중앙정보부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었고 육군 보안사 요원이 자주 들리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선까지 들어주느냐 하는 신문사 체질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었고 기사의 행간으로나마 어떻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는 기술적인 측면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³⁰⁵⁾

중앙정보부는 기자들을 연행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의 수호 여부를 묻기 위한 1975년 2월 12일 제 3차 국민투표를 앞두고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각 언론사 사장을 중앙정보부로 소집했고 각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은 아침 일찍 중앙청에서 국민투표의 배경설명을 들어야 하기도 했다. 또 김○○ 중앙정보부 O국장이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오찬에 초대하여 “인혁당 사건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면 반공법으로 다스리겠으며 학원사태에서 제 2의 김주열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도하면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즉 중앙정보부가 거의 공개적으로 언론 내용에 대한 통제를 요구한 것이다. 일선기자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중정요원 김○○은 김희진에게 세 번이나 전화를 걸어 ‘고문’, ‘조작’, ‘중앙정보부’란 용어는 한글자도 보도되어서는 안 되며 기사도 2단 이하로 축소하라고 요구하였다.

304) 중앙 일간신문에 내린 보도지침 부분은 김희진 저서 『유신체제와 언론통제』를 발췌 정리하였다.

305) 김희진, 『유신체제와 언론통제』, 아이엔, 1999, pp25-26.

중앙정보부는 보도통제를 넘어서 유인물 압수와 같은 수단도 사용하였다. 긴급조치 9호를 발한 이후에도 야당의 대정부 공세는 강도가 더해졌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언론통제도 강화되었다.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야권의 성명 유인물 등을 언론사에서 압수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8월 16일 김대중 신민당 전 대통령후보가 ‘8.15성명’을 유인물로 발표하자 중앙정보부에서 일체 보도를 관제하라고 지시하고, 일본 민사당 의원과 환담한 내용 등을 담은 통사당의 보도자료도 게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중앙정보부 담당관이 신문사에 와서 2건의 유인물을 모두 압수하여 갔다. 이어 18일에는 김대중관련 유인물을 개인이나 신문사에서 소지하고 있으면 긴급조치 위반이므로 정부 당국에 신고하라고 연락한 뒤 중앙정보부 O국에서 오후 3시께 신문사에 와서 유인물 압수경위 확인서를 받아 가져갔다.³⁰⁶⁾

신문에 대한 중정개입은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기사내용을 만들어 요구하기도 했다. ‘김옥선 파동’의 발단은 1975년 10월 8일 오후 신민당 김옥선 의원이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정치학자 노이만과 브레진스키의 이론인 강권통치의 6가지 특징을 인용하면서 강경 비판 발언을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신민당은 김영삼 총재의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심한 진통을 겪게 된다.

다음 날인 9일 중앙정보부 담당관은 전날 밤 김 의원의 문제된 발언내용을 중앙정보부가 불러준 범위 내에서만 보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즉 중앙정보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면서 기사 작성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북한과 유엔 대책을 위하여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김의원 발언은 신민당 전체의사가 아니다. ③ 안보궐기대회 때 야당인사도 참석하였다. ④ 제 92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안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 ‘관제 안보궐기대회’라는 용어는 절대로 쓰지 말라는 조건이었다.³⁰⁷⁾

306) 앞 책, p93.

307) 앞 책, pp103-104.

중정의 개입은 직·간접적인 요청, 보도 통제, 압수, 보도 내용 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라) 만평 등에 대한 보도지침

중앙정보부에서 만평을 신문에 게재하던 화백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경고를 하였던 자료가 확인되었는데 사건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한국일보 편집위원(만화가) 안의섭 ○○세(6.15, 14:00-21:30 소환)

2. 조사결과

79.6.10-14 동아일보 등 都下 각지에 수입고추 변질기사 내용을 보고 농수산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6.14 14:00-17:00간 「돈 좀 생겼다고...쯔쯔...」 제하 만화를 제작 6.15 보도

3. 조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여사한 일 없을 것을 다짐하므로 엄중경고 각서 징구후 방면하였음³⁰⁸⁾

또한 중앙정보부는 만평을 분석 평가한 뒤 만평내용에 문제가 많다면 만평에 대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화백들에게 산업시찰과 안보시찰을 하도록 당근정책을 쓰기도 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1973.10.1-11.15 사이의 중앙일간지 만화만평의 내용을 분석하고 만화가들의 ‘순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중앙일간지 만화만평 내용분석」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 10월 유신 이후 관계당국의 계속적인 계도와 언론의 자숙경향으로 그간 건실한 논조를 취해 오던 각 중앙언론기관의 만화, 만평 등이 금번 학원 소요사태를 계기로 각계에서 일기 시작한 자유화 추구경향에 따라 점차 정부시책을 노골적으로 풍자, 비판하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음

308) 중앙정보부, 「한국일보 사회만평 작가 안의섭 조사결과보고」

- 10.1-11.15간 각 중앙일간지의 만화, 만평을 분석한 결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국민복지연금, 어린이저축방안, 조세정책, 공중전화 수도료 인상 등의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감기약 사건, 공무원 시험부정응시사건, 관세청 부산심리분실 상납사건 등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에 있으나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해설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중략-
- 이와 같은 언론의 만화, 만평을 통한 대정부시책 비판현상은 지식인의 자유 추구경향에 영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국민의 불만을 자극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요소가 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임

이 밖에도 동아일보의 고바우를 그린 김성환 화백과 관련해 1974.2.8 작성된 「불온만화 배포자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제하의 국정원 문건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건 발단은 김 화백이 1973년 9월 하순 주한영국대사의 요구를 받고, 미계재분 만화 6편과 발표분 2편을 합해 8편을 골라 화첩을 만들어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서울시장 부인 등에게 증정하였다가, 이 사실이 1974.2.2 중앙정보부에 보고되면서 중앙정보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 내용이다.³⁰⁹⁾ 당시 김성환은 물론 미 계재분 만평을 보관하고 있다가 화첩 제작당시 제공해준 동아일보 정치부장 대우 조OO와 화첩을 만든 표구사 직원 2명도 함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화첩에 실렸던 만평 8편 중 6편은 계엄시절 검열에 걸려 보도되지 않던 것들로서, 만평에 대한 검열과 보도통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문건에서 중정이 언론인의 사퇴를 문공부를 통해 언론사에 종용했음이 확인된다.

본건 조사결과 계엄령 하 검열에 걸려 게재보도하지 못한 만화를 화첩으로 만들어 영국대사에게 기증하고, 동종 만화 19편을 동아일보 정치부장인 조OO에게 제공한 행위 등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몰지각한

309) 1974.1.31 영국대사관에서 서울 시장부인과 국내 저명인사들의 부인 10명이 오찬을 하던 중, 김성환 화백이 증정한 화첩을 보고 이를 유정희의 서OO의원에게 전인. 이 첩보를 중앙정보부가 2.2 보고받았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의 1974.2.7 중앙정보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화첩을 제작, 증정하기전 김성환은 동아일보 출입하던 중앙정보부 OO실 직원 방OO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방씨는 농담조로 “원고료나 두둑히 달라고 하시오”라며 묵인을 해줬다고 한다.

행위이기는 하나 73.9월 이전의 행위로서 긴급조치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영국대사에게 기증한 화첩에 대하여는 문제화될 경우 韓英 우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문하되, 내국인인 조OO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는 유신과업에 역행하는 불순한 행위로 사료되므로 OO部인 문공부를 통제하여 동아일보사에서 사퇴토록 조치하고 사장 김OO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추궁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나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80년대 보도지침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기관지인 『말』 지 특집호를 통해 폭로(86.9)함으로써 그 존재가 일반에 알려졌다. 해직기자들로 구성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86년 9월 6일 기관지였던 『말』 지 특집호에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이라는 제목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보도지침 내용을 게재했다.

그후 1988년 12월 12-13일간 개최된 5공화국의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언론청문회에서 보도지침의 실체가 좀 더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언론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언론기본법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느냐”를 따지고 문공부 홍보조정실의 설치 경위와 역할, 보도지침 작성자와 기준 및 시행과정을 추궁했다. 5공의 보도지침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정부측은 국익을 빙자, ‘협조요청’이라고 강변해 왔지만, 그 내용은 정부 여당관련 홍보기사의 확대보도와 3김씨 등 야권기사의 축소보도가 대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사 크기와 용어까지 제한한 명백한 언론말살 정책이자 위헌행위”라고 주장³¹⁰⁾했다.

310) 김주언, 「왜 보도지침을 폭로했나」, 『저널리즘』, 한국기자협회, 1988년 가을 복간호, p74.

같은 해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 5공화국 정권의 언론통제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당시 국회 문공위의 문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공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의 물증을 찾아내기도 했다. 또한 문공부로부터 보도지침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보도지침을 하달한 책임자가 이광표, 이진희, 이원홍, 이웅희 등 4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관계기관의 압력으로 증인이 취소된 바 있는 이정배 당시 홍보정책실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보도지침 시달을 시인했다. 이정배 실장은 끈질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보도협조요청 결정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협조관계로 안전기획부로 수시연락을 취했으며 전화나 면담 등을 통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광표 전 문공부 장관은 언론청문회에서 “군인 난동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군 당국에서는 사건을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보도되는 것을 바라고,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체보도를 전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량으로의 보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대립이 흔히 있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³¹¹⁾

1)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주요내용³¹²⁾

전두환 정권은 언론기본법까지 제정해 언론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장악했으나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매일 매일의 보도를 일상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보도지침은 홍보조정실이 매일 각 언론기관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었다.

311) 이광표, 「제 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14호, p31.

312) 86년 9월호, 『말』 지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홍조실은 이 보도지침을 통해 특정사안에 대해 ‘보도해도 좋음’ ‘보도하면 안 됨’ ‘보도하면 절대 안 됨’ 등의 지침을 내려 보도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 여당 관련기사나 대통령 동정 기사는 ‘크게, 눈에 띄게, 적절히, 강조해서’ 등으로 보도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심지어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할 때 전용기 안의 집무실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놓아두고 ‘집무실 안의 『목민심서』가 눈에 띈다’는 스케치 기사를 쓰라고 지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재야나 학생운동에 관한 것도 크게 보도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는 재야에 비판적인 기사를 키우고 학생들의 폭력성을 강조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학생들의 시위동기와 구호는 묵살한 채 시위 중 일어난 폭력사태에만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보도를 일삼았다.

축소보도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조용히, 단순히, 추측하지 말고’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주로 야권 관련 보도와 개헌 주장 등 반정부 투쟁이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보도 불가의 경우는 ‘불가, 절대 불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불가’ 등으로 구분해서 보도금지의 강도와 시기를 지시했다. 고문 주장과 분신자살, 재야단체의 연합시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단골 메뉴였다.

보도지침은 단순히 보도여부나 크기에 대해서만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사진 게재 여부, 컷이나 제목의 크기와 방향을 지시하는 등 신문 제작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했다. 예를 들면 공권력의 ‘성폭행 사건’을 ‘폭행주장 관련’ 또는 ‘성 모욕 행위’로 제목을 뽑으라고 지시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권인숙 양의 부천서 성 고문사건 폭로’는 ‘폭행 주장’으로 왜곡되고 심지어 ‘운동권이 성을 투쟁 도구화하고 있다’는 공작적 보도까지 하였다.

보도지침은 형식상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내렸지만, 실제로 그 골격은 청와대 정무비서실과 공보비서실, 안기부, 보안사 등에서 만들어졌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이른바 ‘협조사항’을 홍조실로 보내면, 홍조실에서

그것을 취합해 언론사에 내려 보내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러나 보도 지침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안기부, 보안사의 실력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때로는 이런 보도지침을 개인 홍보를 위해서 이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85년 당시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자신의 치사를 1면에 돋보이게 실으라고 각 언론사에 주문성 지침을 내렸다. 한편 기관원들은 단순히 보도의 방향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언론사 내부의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예가 상당수 증언되었다.

2) 5공의 언론조정 계획³¹³⁾

1988년 12월 12일 열린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이철 의원은 「해엄(解嚴)후의 언론종교 대책」 제하의 문건을 폭로³¹⁴⁾했다. 이 의원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열의 해제 때문에 언론이 선동, 비판, 부정확 기사 등의 사전통제기능을 상실한다. 둘째는 언론의 경쟁적 보도 때문에 사소한 문제의 비판부터 시작해 언론 미디어간의 경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한다. 셋째 언론인의 잠재적 불만과 비판이 가세된다. 특히 언론조정기능을 유신체제 아래서는 주로 중앙정보부가 조정하였으며 계엄 아래서는 보안사가 조정했다. 향후 계엄해제시 문공부가 전면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중앙정보부 등은 측면 지원해야 한다.」 동 문건은 1980년 10월 7일 문공부 업무보고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문건에는 “앞으로 국내 언론문제는 중정에서 말지 말고 문공부가 전담해서 추진하라. 중앙정보부 언론관계 예산을 이관하라”고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언론자세의 확립,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기사화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떠난 선동적 기사를 쓰는 것은 적대국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문공부는 고도의 정치감각을 갖고 각 분야에 조예있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요원들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13) 제 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314) 이철, 「제 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14호, 1988, pp32-33.

이날 청문회에서 이광표 전 문공부장관은 “계엄 해제 후에 언론조정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계엄해제 후에 정부의 대언론 창구를 문공부로 일원화 하고, 언론협조 체제 구축을 기한다는 배경 아래 1981년 1월 6일 직제개정안을 성안하여 총무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81년 1월 19일 홍조실을 발족했다”고 발언했다.³¹⁵⁾

다) 문공부 산하 홍보조정실³¹⁶⁾

홍조실이 신설된 것은 1981년 1월 계엄령이 해제되기 16일 전이었다. 유신시절부터 언론조정업무를 관장해 왔던 문공부내 보도담당관실과 홍보조사연구소는 폐지되었다. 신설된 홍조실의 주요업무는 대통령령 제 10호, 제 161호에 의거, 공식적으로 ‘정부가 외교·안보 등 국가이익과 직결된 사안 또는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시책을 언론사에 배경설명과 함께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조실의 실질적인 기능은 방송·보도의 기본방향은 물론 ‘이 기사는 몇 단 크기로’ 등 세세한 사항에 관여하는 등 실상은 언론의 완전장악에 있었다.

보통 3-6개월 주기로 담당 언론사를 바꿔가며 출입하는 홍보담당관은 흔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보조정관 또는 언론사 출입기자로 불릴 정도로 활동이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었다. 이들은 홍보정책실의 보도지침을 신문사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문사에 출입하는 안기부, 보안사 직원들과 모여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보도지침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 점검이나 사내 기자들의 동태파악 등 신문사내 정보를 홍보정책실에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315) 이광표, 「제 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14호, 1988, p30.

316) 김진룡, 「허문도와 홍보조정실」, 『월간중앙』, 1988년 12월호에서 요약 발췌하였다.

홍보조정실에 의한 언론통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 보다 여론 조작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었다. 홍보협력관들은 내로라 하는 대신문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출신이어서 신문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았다. 그만큼 보도를 조정하는 데 능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보도지침을 따른 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³¹⁷⁾ 초판 신문을 면밀히 읽고 ‘단어 하나, 조사 하나만’이라고 요청하는 등 세세한 보도지침을 하달하였다.

6월 항쟁이후 1987년 12월에 홍보정책실은 폐지됐지만 홍정실 실장과 홍보담당관 그리고 상부기관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의 홍보담당 비서관들이 언론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언론의 권력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³¹⁸⁾

전두환 정권 당시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활약한 언론인 출신은 총 47명중 17명이었고 실장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었다. 아울러 1988년 국정감사에서 문공부로부터 ‘보도지침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이광표, 이진희, 이웅희 등 4명의 언론인 출신 문공부장관이 보도지침을 하달한 책임자였다는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³¹⁹⁾

라) 청와대 정무비서실

홍조실이 누구의 기획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무비서실과의 관계, 사후 홍조실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아 언론통폐합의 주역인 허문도씨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³²⁰⁾

홍조실은 계엄하의 보도 검열단에 버금가는 ‘언론통제와 조작’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홍조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보도지침을 포함, 모든 언론통제 정책이 정무비서실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하에 있었다.

317) 김강석, 『언론인의 권력이동』, (주)새로운 사람들,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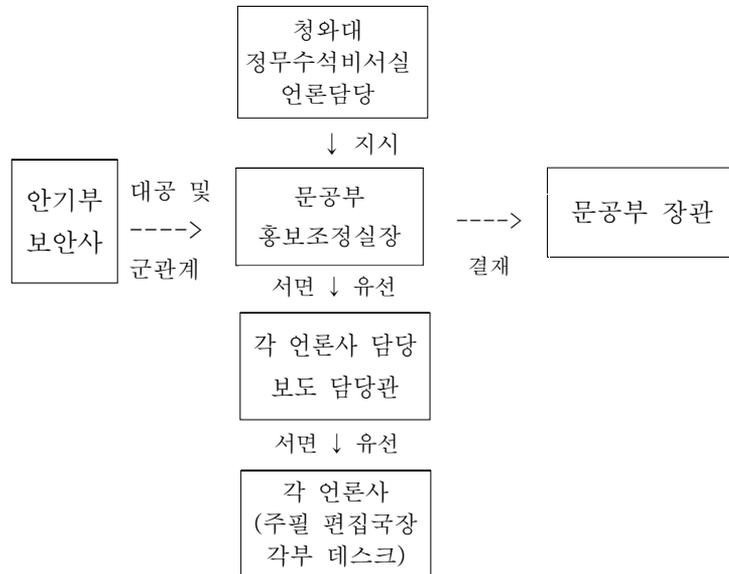
318) 이효성, 『정치언론』, 이론과 실천, 1989, p10.

319) 김주언, 「왜 보도지침을 폭로했나」, 『저널리즘』 가을 복간호, 한국기자협회, 1988, p73.

320) 김진룡, 앞 기사.

1982년부터 1988년까지 근 7년여 동안 청와대 정무비서실 언론담당 비서관을 지냈던 김OO도 정무비서실의 개입여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보도지침 지시 체계도



2) 보도지침 지시내용 분석

보도지침은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였는가. 보도지침 내용 가운데 집중적인 통제대상이 된 것은 어떠한 내용이며 집중적 통제 대상이 된 정치적 행위체들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형식의 통제가 행해졌는가. 또한 보도지침 내용 가운데 중요한 정치적 행위체들에 대한 언어상 통제는 어떻게 행해졌는가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김춘식 교수의 「언론통제 요인으로서의 보도지침에 관한 연구-제 5공화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하 석사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³²¹⁾

321) 김춘식, 「언론통제 요인으로서의 보도지침에 관한 연구-제5공화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8.

보도지침 지시 관련 대상

보도지침 관련 대상	건 수	(%)
대통령 동정	7	(3.7)
행정부 관련 사항	13	(6.9)
여당 관련 사항	6	(3.2)
야당 관련 사항	22	(11.7)
재야 인사	14	(7.4)
학생 운동	14	(7.4)
인권 침해	9	(4.8)
개헌 관련 사항	9	(4.8)
국내 언론 관계	7	(3.7)
외신 통제	16	(8.5)
경제 관계	2	(1.1)
사회 관계	3	(1.6)
문화 관계	6	(3.2)
대 북한 관계	22	(11.7)
대 미국 관계	2	(1.1)
대 공산권 관계	14	(7.4)
그 외 국가와의 관계	7	(3.7)
기타	15	(8.0)
합 계	188	(100)

지시 관련 대상별 내용 통제

건수(%)

통제유형	진반적 편집 통제				사진 통제					방향 통제		
	절대 불가	불가	사전 검열	조건형	축소형	확대 요구형	게재 불가	조건부 게재	확대 요구	공정적	중립적	부정적
대통령 동정						4 (14.3)						
행정부 관련사항	2 (16.7)	2 (3.2)				9 (32.1)			1 (100)	1 (25.0)		
여당 관련사항		1 (1.6)				2 (7.1)		1 (25.0)		1 (25.0)		
야당 관련사항	1 (8.3)	7 (11.1)		1 (5.9)	9 (23.1)		1 (9.1)	1 (25.0)		1 (25.0)		1 (25.0)
재야인사		10 (15.9)			3 (7.7)		1 (9.1)					
학생운동		3 (4.7)			6 (15.3)	6 (15.3)	4 (36.3)	2 (50.0)				2 (50.0)
인권침해	3 (25.1)	1 (1.6)			4 (10.1)		1 (9.1)					
개헌 관련사항	1 (8.3)	2 (3.2)			3 (7.7)							1 (25.0)
국내인론 관계		1 (1.6)				2 (7.1)	1 (9.1)					
외신통제	2 (16.7)	10 (15.9)		2 (11.8)	1 (2.6)	1 (3.6)				1 (25.0)		
경제관계					1 (2.6)	1 (3.6)						
사회관계	1 (8.3)			1 (5.9)	1 (2.6)						1 (20.0)	
문화관계		3 (4.7)	1(100)	1 (5.9)								
대북한 관계		7 (11.1)		4 (23.5)	5 (12.8)	5 (17.9)						
대미국 관계				1 (5.9)	1 (2.6)		1 (9.1)					

대공산권 관계	1 (8.3)	10 (15.9)		2 (11.8)	1 (2.6)		1 (9.1)				1 (20.0)	
그외 국가 와의 관계	1 (8.3)			3 (17.5)	1 (2.6)	1 (3.6)					3 (60.0)	
기타		5 (7.9)		2 (11.8)	3 (7.7)	1 (3.6)	1 (9.1)					
합계	12 (100)	63 (100)		17 (100)	39 (100)	28 (100)	11 (100)	4 (100)	1 (100)	4 (100)	5 (100)	4 (100)

지시 관련별 형식 통제

건수(%)

보도지침 지시관련 대상	기사위치통제			지 면 배 정				기사형태 통제				컷·제목 통제			
	톱	중 또는 사이 톱	1-3 단	1면	3면	11면	기타 면	스트 레이 트	해설· 논평	스케 치	박스	가십	계재 불가	축소 형	확대 요구
대통령 동정	4 (40.0)			3 (25.0)	1 (100)					2 (50)					
행정부 관련사항	1 (10.0)			1 (8.3)			1 (100)		1 (16.7)						
여당 관련사항	2 (20.0)			2 (16.8)									1 (16.7)	1 (25.0)	
야당 관련사항			3 (21.6)			1 (16.7)		4 (26.7)	3 (50.0)		1 (50)	1 (50)	1 (16.7)	1 (16.7)	
재야인사			2 (14.3)			1 (16.7)		1 (6.7)							
학생운동	1 (10.0)	1 (50.0)		2 (16.7)		1 (16.7)		7 (46.5)			1 (50)				1 (25.0)
인권침해			1 (7.1)			2 (33.2)		1 (6.7)					1 (16.7)		
개헌 관련사항			2 (14.3)	1 (8.3)				1 (6.7)						1 (16.7)	1 (25.0)
국내언론 관계			1 (7.1)			1 (16.7)							1 (16.7)		1 (25.0)

외신통제		1 (50.0)		1 (8.3)											
경제관계	1 (10.0)			1 (8.3)										1 (16.7)	
사회관계															
문화관계			1 (7.1)												
대북한 관계	1 (10.0)		2 (14.3)	1 (8.3)				1 (6.7)	2 (33.3)					2 (33.2)	
대미국 관계			1 (7.1)									1 (50)			
대공산권 관계															
그외국가 와의관계															
기타			1 (7.1)							2 (50)			1 (16.7)	2 (33.2)	
합계	10 (100)	2 (100)	14 (100)	12 (100)	1 (100)	6 (100)	1 (100)	15 (100)	6 (100)	4 (100)	2 (100)	2 (100)	6 (100)	6 (100)	4 (100)

학생 재야인사에 대한 특정언어 사용불가의 예

지시관련대상	특정 언어 사용 불가	신문
야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독재, 유신잔당, 전대미문의 정권 ○ 장외투쟁 ○ 협상정신 위배, 과잉조치, 의회민주주의의 끝장 	순응 순응 불응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당의 개헌주장지지 ○ 개헌 서명 	순응 순응

의미(강도)의 축소화

지시관련대상	의미(강도)의 축소화	신 문
인 권 침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행사건 → 폭행주장 관련 ○ 성폭행사건 → 부친사건 	성고문(불응) 성폭행사건(불응)

5) 보도지침 이행률

1988년 열린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당시 이광표 문공부장관은 보도지침의 70% 가량이 지켜졌다고 증언했다. 서강대 유재천 교수(신문학)가 보도지침 이행률과 관련해 연구·분석한 내용을 『기자협회보』에 기고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권 신문의 경우는 ‘보도불가’는 약 96%, ‘보도요망’은 100%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비여권 신문의 경우는 ‘보도불가’는 약 67%, ‘보도요망’은 약 30% 반영됐다.

비여권 신문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① 북한이나 중공과 관련된 보도지침은 ‘보도불가’나 ‘보도요망’ 모두에서 그대로 이행한 배분율이 높았고 ② 정부, 여당, 야당, 학생운동, 개헌문제 등과 관련된 보도지침의 이행율은 ‘보도불가’와 ‘보도요망’의 경우를 막론하고 이행율이 낮았으며 ③ 국회, 재야, 사회운동 등과 관련된 보도지침에는 ‘보도불가’에 대한 이행률이 높았던 반면, ‘보도요망’에 대한 이행율은 낮았다. 이렇게 볼 때 비여권 신문은 ‘보도요망’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따르지 않았으며, 북한이나 중공과 관련된 협조요청은 거의 모두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³²²⁾

다

외신에 대한 통제

외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이 한국 정정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보도를 통제하는가 하면, 한국의 체제에 비판적인 외국 언론인의 입국 거부는 물론 외국의 한국 상주특파원을 추방하고, 언론사의 한국지사, 지국의 폐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움직임이나 대규모 시위에 관한 기사도 국내 정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했다. 국내 언론의 취재 자유가 매우 제약된 상태에서 외신을 통해서 그나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322) 유재천, 『기자협회보』, 한국기자협회, 1987년 7월 10일.

정권은 이 또한 통제하여 언론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1) 박정희 정권 시절

가) 외국신문 기사삭제 및 배포 금지

박정희 정권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신문이나 시사잡지에 게재된 특정기사 또는 기사의 부분적인 내용이 정권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신문 지면을 가위로 절단하여 삭제해 버리거나, 그 부위에 검게 먹칠을 하여 국내독자가 독해를 못하도록 했다. 결국 국민이 정보의 국제화 시대에 자기 면역성을 기르지 못하고 국내외의 변화에 낙후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하겠다.³²³⁾

중요한 국내기사들이 외신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의해 해외매체에서는 널리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신을 불문하고 국내 보도만은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요한 국내외 정보를 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예컨대 미국의 석유메이저인 걸프오일사가 한국의 여당에게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했다는 외신은 처음부터 사전 봉쇄를 하다가 이를 일본신문들이 보도하자 이 날짜(1975년 5월 16일 조간과 17일자 석간) 일본신문의 국내 배포를 금지했으며, 이미 배포된 신문은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중정이 1977년 작성한 「외국간행물 삭제배포현황 보고」 문건은 박 정권 당시 외국간행물 검열을 확인시켜 준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배포되고 있는 신문, 잡지는 과거 불온내용의 경중에 따라 불온기사 부분삭제 또는 먹칠 등으로 삭제배포하였으나

323) 임채정, 「70년대 언론규제법과 그 적용 연구」, 『翠英 홍남순선생 고회기념 논총』, 형성사, 1983, p435.

- 76.12.31부터는 상부지시에 따라 검열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가원수를 극악하게 비방모함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만을 전면삭제 배포하고 있어 77.1.1 이후 삭제된 외국신문은 영자지 6건 일어지 6건 계 12건임
- 현재로서는 전면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여타 기사를 활용토록 할 방안은 없음

3. 조치의견

본지는 월 36부 수입되는 정기간행물로서 청와대, 문공부용 9부를 제외한 잔여량 및 앞으로의 항공, 선편, 우편을 통한 국내 유입분 공히 압수조치 위계임

또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발동한 긴급조치 1호와 관련, 1월 11일 외신기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문공부 해외공보관장은 “긴급조치 선포 이후에도 일본의 신문이 한국의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과 유언비어를 보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에 의해 처리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발표했다.³²⁴⁾ 박 정권이 외국 특파원들의 기자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국간행물에 관한 이러한 검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들어 다소 완화됐다. 문화공보부는 2월 14일 ‘외국간행물심의(검열)기준 완화보고’를 통해 “해외 외국인에 대한 통제국가 인상을 배제하고 통제 경우에도 효율적 관제가 불가하고 유언비어 등 역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외국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아니하고 배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① 국가원수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모독 내용과 ② 국헌을 심히 문란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통제했다. 외국의 일반 서적 중 공산주의 찬양 등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성격은 계속 규제했다.

1982.5.17자 일본 毎日신문에 실린 전면 의견광고를 삭제한 것이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1982.5.22 작성된 「재일교포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와

324) 『KCIA의 대일 매스컴 공작』, 中川信夫·松浦總三編 晩聲社, 1978, p83.

관련 불온기사 적발 보고」는 5공화국 초기 외국간행물 검열기준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김대중 및 국가보안법 위반 재일교포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인권문제를 구론하는 등 현 정부 체제를 비난하는 기사가 일본 참의원 우쓰노미야 도구마(宇都宮德馬) 등 반한인사들과 수감자 가족들과의 간담형식으로 일본 일간지 전면 “의견광고”로 게재된 내용 적발 검토 보고임

1. 간행물명

毎日신문(82.5.17일자 조간 6면)

※ 국내 수입부수 : 50부

제목 : “조용한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다”

- 한국에 인권을, 한반도에 군축과 평화를 -

이 의견광고는 ‘한국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어떻게 변할까’, ‘정치범 석방 및 민주주의 증거는 없는가’ 라는 題下로 국내 수감자들 가족들과의 간담형식의 글과 재일교포 국가보안법위반 수감자(26명) 명단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안전기획부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3. 조치

- 본 기사는 재일교포 수감자 가족들이 광고를 이용, 반한인사를 동원하여 현 정부를 비난한 내용과
- 보도 금지된 광주사태 참상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전면 삭제 조치하겠음.

나) 지국 폐쇄 및 특파원 추방

박정희 정권은 1973년 8월 23일 김대중 납치사건에 중앙정보부의 관여를 특집으로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국을 폐쇄처분했다.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은 서울의 일본인 특파원단을 소집,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다”라며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정정이 없을 경우 지국 폐쇄, 특파원 퇴거를 명한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취재를

했지만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하세가와 편집국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은 8월 25일 폐쇄되어 3명의 특파원이 국외퇴거 처분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1966년 6월 7일 서울지국이 설치된 이래 1972년 9월 8일 『주간 요미우리』가 별책부록으로 「주체의 나라, 북조선」 특집을 실었다는 이유로 서울지국이 폐쇄됐다가 같은 해 12월 6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73년 서울지국이 폐쇄됐다가 1975년 1월 10일 재개됐다. 이어 1977년 5월 4일에는 요미우리신문 편집국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서울 지국이 폐쇄되고 서울 특파원이 국외로 퇴거조치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3차례에 걸쳐 서울지국이 폐쇄당했다.³²⁵⁾

1979년 1월 8일에는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의 서울주재 마에다 특파원이 국외로 추방됐다. 당시 교도통신 특파원이었던 오노다 아키히로는 “TV 방송사의 경우 촬영필름을 해외로 들고 나갈 때 김포공항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저지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일본에서 수입된 신문지면이 잘려 있다든지, 아예 신문배달 자체가 안 된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³²⁶⁾

전 RKB(TBS) 서울특파원이었던 후카야 키이치로는 다음과 같이 증언³²⁷⁾했다.

“나는 정부가 원치 않는 문제라 하더라도 기자의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 취재 보도했다. 따라서 당시 문화공보부 외신과에 불려가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이른바 ‘마스켓 룰’이라 하여, 경고를 5번 당하면 지국 폐쇄 및 국외 퇴거 명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경고를 세 번 받았는데,

325) 『KCIA의 대일 매스컴 공작』, 中川信夫·松浦總三편 晩聲社, 1978, p47-48.

326) 오노다 아키히로, 「유신말기 서울의 일본인 특파원」,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 언론인 세미나』 발제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18.

327) 후카야 키이치로, 「내가 본 한국의 민주화운동」 위 발제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27.

당연히 인정받았어야 할 1년 체재연장 신청이 6개월 밖에 허가받지 못했다. 체재연장 교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회사 상사를 안내하여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방문했을 때 전OO 차장이 ‘충고해 두지만, 앞으로는 민주화 운동 등 정부 비판적인 취재는 그만두고, 문화, 관광분야의 원고를 늘리시오’ 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

다) 외신 기자들의 증언³²⁸⁾

외신 기자들은 박 정권이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전 일본 도쿄방송 서울특파원 후카야 키이치로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종로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여는 순간 입회인석의 노인들이 달려와 그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100장 정도의 투표용지 다발을 던져 뒤섞어 버렸다. 나는 방송 카메라맨에게 부정선거 증거라며 찍을 것을 요구했으나 카메라맨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 한국인인 이 카메라맨은 ‘중앙정보부가 감시하는 곳에서 카메라를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본인인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이곳에 가족이 있는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촬영하고 싶어도 카메라를 돌릴 수 없는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며 비통한 얼굴로 말했다.” 후카야씨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취재가 늘어남에 따라 내 주위의 정보기관이나 경찰의 감시도 한층 심해져 동교동 김대중씨 덕, 안국동 윤보선씨 덕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정보원이 들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곤 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 중 한명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야당 정치가나 종교인, 학자, 문화인이 정부 비판 성명서를 아무리 제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학생데모는 학내에서 진압한다. 학생들의 움직임이 노동자나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릴 배출구와 맞닿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³²⁹⁾

328) 군사독재시절 외신기자로 한국을 취재했던 21명의 해외언론인들이 2007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국제언론인 세미나’에서 증언한 내용을 주로 구성하였다.

329) 후카야 키이치로, 앞 글, p25.

1970년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였던 미야타 히로토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 문화공보담당 공사직이 신설되었고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원홍이 임명되었으며 대사관은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 취재 초청공세를 펼쳤다고 증언했다. 초청 일정에는 유명한 기생이 나오는 연회접대가 포함됐다고 한다.

1975년 일본 오사카에 본사나 지사가 있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지지통신, NHK 등 6개 언론사의 기자 6명이 방한해 ‘관광여행’을 했다고 비판을 받았으며 같은 해 TBS, 도쿄 12채널 보도부장이 방한했다가 일본 민방노련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기생파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³³⁰⁾

유신정권 때 일본 교도통신 특파원이었던 오노다 아키히로는 기사에 ‘민주세력’이란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자주 문화공보부의 호출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비민주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일본의 신문독자나 방송시청자에게 심어 주려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유신 2기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선출된 것에 대항하여 김대중이 가세하여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민주주의 국민연합’의 성명과 참가 리스트를 보도한 것이 정보·치안당국의 미움을 산 듯했다는 것이다. 오노다는 “수도 없이 많은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일본 신문들을 펼쳐 놓고 있던 공보부 담당자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서 단지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유신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이유는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³³¹⁾

전 LA타임스 기자 샘 제임슨은 군사정권의 정보조작을 증언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서울의 미국 정보요원 말을 인용 “50톤 북한선박 한 척이

330) 『KCIA의 대일 메스컴 공작』, 中川信夫·松浦總三편 晩聲社, 1978, pp51-69.

331) 오노다 아키히로, 앞 글, pp18-19.

남한수역을 침범했다는 미측 발표를 한국 국방부에서 500톤으로 발표했다”고 회고했다. 국방부는 이후 미국 쪽이 문의하자 “우리는 국내용으로 발표한 것뿐입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³³²⁾

전 미국 CBS기자였던 브루스 더닝은 “외신에 근무한 한국기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기사를 써 정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이런 문제로 중앙정보부의 언론인 탄압이 극심했고 언론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정부에 충성하라는 경고와 함께 반정부 취재활동을 한다면 가족들이 위협해질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더닝은 또한 “우리 기자들이 서울이나 여타 다른 곳을 가게 될 때면 검은색 자동차가 우리를 따르곤 했다”며 “정부는 이렇게 자신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했다”고 회고했다.³³³⁾

전화도청과 관련하여 더닝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80년대 어느 날 CBS뉴스의 한영도 기자가 중앙정보부에 억류돼 심문을 받게 되었다. 나는 도쿄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행정기관인 미국 공보원에 전화를 걸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도청을 하고 있는 한국 관리가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³³⁴⁾

오노다는 “일본인 특파원들의 사무소, 자택의 전화는 모두 도청당하고 있었고, 도쿄에 전화로 원고를 송고하고 있으면 잡음이 들어간다는지 갑자기 회선이 끊기곤 했다”며 “인터넷이 생활화된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이야기이겠지만, 동네 문구점의 복사기에서 반정부 빠라(전단)를 복사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경관이 매일 복사기 매수 기록을 점검하러 다니던 시대였다”고 회고했다.³³⁵⁾

전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 특파원이었던 도날드 킅은 “김영삼씨가 가택연금 상태였던 전두환정권 초기 우리는 미행당하고 있으며 전화는 도청되고

332)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11일

333) 브루스 더닝, 앞 글, 2007, p13.

334) 브루스 더닝, 상기 발제문, p13.

335) 오노다 아키히로, 앞 글, p18.

있음을 확신했다”며 “호텔 객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³³⁶⁾

후카야는 “사무실이나 자택의 전화를 도청당하는 것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부인이나 아이들은 ‘한국 전화는 왜 잡음이 많지?’하며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며 “10·26사태로 박 대통령이 암살된 후 일시적으로 민주화의 광명이 비추었을 때, 중앙정보부 정보원 한명이 ‘이제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신 집전화는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서울시청, 용산경찰서, 보안사령부에서 도청하고 있습니다’고 귀뜸해 주었다”고 증언했다.³³⁷⁾

(라) 대미 언론공작

중앙정보부는 인권에 관한 비판을 순화시키기 위해 대미 언론공작을 벌였다. KCIA의 대미언론공작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 언론계 침투를 저지하고, 친한여론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공작계획은 1977년 11월 29일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관소위에 의해 발표된 ‘1976년도 대미공작방안’에 포함돼 있다.

이 공작계획은 ① 미국의 반전 저널리스트 계통과 동향을 파악(특히 북한과의 관련성 조사)하고 2개의 미국 조직(명칭 삭제)을 이용하여 미 공보원(USIA)이나 FBI와 협조하며 ② 반한 저널리스트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이를 위해 3명의 저널리스트를 한국에 초대. 항공운임은 1인 왕복 2,200달러, 3인분 6,600달러) 또한 (명칭 삭제) 반전조직에 침투, 조직의 주요 멤버를 한국에 초청한다. 친한 여론을 육성하기 위해 재미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의 홍보활동을 시행한다. 한국 대통령의 대미 홍보활동 지시를 이행하고 워싱턴포스트지의 모(삭제)씨 등 6명의 미국인 기자를 친한파로 변화시킨다. 이를 위한 추진책으로 미국 유력기자를 한국에 초대하고(5인분 왕복여비로 1만1,000달러. 구체적으로 미국 ABC방송기자, 2명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 평론가(이를

336) 도널드 커크,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취재하면서」,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 언론인 세미나』 발제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23

337) 후카야 키이치로, 앞 글, p26.

삭제)가 포함돼 있다. 5인분의 체류경비로 한국통화로 150만원을 계상) 미국인 기자 2명을 협력자로 고용하며(워싱턴 포스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 등 유력지에서 선발, 1인에 월 500달러, 1년치 1만 2,000달러를 계상), 재미 한국인 신문(명칭 삭제)에 대해서 공작하는 미국인 기자 1명을 고용하고, 재미 한국인 특파원 3명(이름 삭제)을 공작인으로 활용(비용 7,200달러)한다.³³⁸⁾

중앙정보부는 이 공작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난 돈을 써가며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을 무마하려고 노력했다.

2) 전두환 정권 시절

홍보정책실의 중요한 임무 중의 또 하나는 텔렉스를 타고 전해지는 외신에 대한 보도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때는 주로 안기부와 협조하여 통신사의 텔렉스 내용을 조절하고, 만일 사전조정이 안된 외신이 신문사 텔렉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곧 보도지침으로 통제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전두환 정권 당시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일보 시카고지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던 조광동은 “나는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칼럼을 썼다. 어느 날 한국본사에서 사람이 나왔고, 나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보도지침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하라’는 말에 나는 그만두는 것을 택했다”고 회고했다.³³⁹⁾

가) 외국언론사 서울지국 폐쇄³⁴⁰⁾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외국 신문사의 지국을 폐쇄하거나 특파원을 추방한 사례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338) 『KCIA의 대일 매스컴 공작』, 中川信夫·松浦總三편 晩聲社, 1978, pp94-95.

339) 조광동, 「시카고에서 감격과 아픔으로 회고하는 30년 세월」, 『1974년 겨울』, 미디어집, 2005년, p326.

340) 앞,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 언론인 세미나』 발제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1980년 5월 30일 신군부 세력은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 폐쇄와 특파원의 국외추방을 명령한 데 이어 7월 3일에는 아사히신문과 지지(時事)통신의 서울 지국 폐쇄와 특파원 국외추방, 7월 7일에는 산케이(産經)신문 지국장에게는 17일 까지 출국 권고조치를 내렸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미 1979년 1월부터 특파원 국외 추방과 신문의 한국내 배포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교도통신의 경우 몇 번이나 한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왜곡 허위보도를 하여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과 지지통신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경우 ‘5월 23일의 광주민주화 사건을 다룬 기사와 잡지 『세카이(世界)』 8월호 ‘한국으로부터의 통신-TK생’, 지지통신의 경우 5월 20일의 광주민주화사건을 다룬 AFP-지지통신 전신과 『세카이』 기사소개 등과 관련하여, 모두 ‘현지에서의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산케이 신문은 ‘5월 28일의 (일본에의) 귀국자 목격담화를 전한 교도통신 전신과 『세카이』 기사 소개의 지지통신 전신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출국 권고를 받았다.³⁴¹⁾

이후 1981년 3월에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의 서울지국, 5월에는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서울지국이 재개설됐다.

나) 외신을 통한 보도지침³⁴²⁾

또한 한국에 관한 외국의 신문, 잡지 관련 기사를 각국에 주재하는 해외 공보관이 번역해서 문공부로 보내오면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국내 보도 유무를 결정하였다. 물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는 일체 언급하지 못하게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각 언론사에 보내 크게 보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대표적인 형태는 아프리카나 유럽의 신문(주로 3류 신문이나 지방의 작은 신문)이 ‘전두환 대통령 개인이나 5공화국 출범이래 한국의 경제

341) 미야타 히로토, 「한국 군사정권시대의 대일 언론공작」, 『6월 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 언론인 세미나』 발제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p61.

342) 김동수, 「권언유착의 현장, 홍조실」, 『월간경향』, 경향신문사, 1988년 11월호, pp140-141.

발전상'을 찬양하는 보도를 하면 문공부 홍정실은 이를 입수하여 신문과 방송에 이 내용을 보도할 것을 시달렸다. 이때 방송의 경우는 이 내용을 다시 그 나라에 주재하는 방송국 특파원에게 보도하게 하였는데-물론 이때의 보도 원고는 방송국에서 작성하여 미리 특파원에게 알려줬다.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해외 특파원이 '세계 속의 한국'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여 생동감 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두환 전대통령의 찬양 보도 이면에는 몇 가지 사전준비 작업이 더 있었다. 그것은 외국 언론인들을 그 나라 주재 한국공보관의 주선으로 보통 부부동반으로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일이었다. 초청된 외국 언론인들은 땅굴 등의 안보시설 및 산업시설 그리고 경주 등을 관광시켜 주면서 사전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이다. 1986년 가을 국회에서 조순형의원이 “해외 언론인 1일 체재경비가 31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국 언론인에 대한 로비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해외 체재 경비가 하루 32만원, 국무총리가 2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983년부터 실시해온 '외국 언론인 초청'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는 언론통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했는데 주로 보도 지침을 통해 일상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단순한 보도 지침의 예라기보다는 기획된 언론통제의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보도통제

1973년 8월 8일 일본의 도쿄에 있는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김대중은 서울로 납치되었다.³⁴³⁾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관련된 것이 확실해 보였으나 정보부내 취재는 불가능했고 또 사건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었으므로 함부로 추측 보도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국가이익을 고려해 보도해 달라’는 것이 기본지침이었다.³⁴⁴⁾

김대중이 서울로 압송된 8월 13일 중앙정보부 작성 문건은 다음과 같다.

제목 : 김대중 사건 조치사항

1. 언론조정

- 김대중의 일방적 언동과 기자들의 무절제한 추측기사 보도 방치는 국가 안보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8.14 23:00를 기하여 계획적이고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8.14 23:00에 각 언론기관에 대해 김대중 사건 기사는 사전 검열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 단, 조선, 한국의 8.15자 지방관까지는 다소 순화하여 현 수준까지의 보도를 허락하였음.

343) 강준만, 『권력변환-한국언론 117년사』, 인물과 사상사, 2006, p476.

344) 김희진, 앞 책, pp26-27. 이후 언론사에 내려진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된 보도지침이 자주 눈에 띈다.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보도지침 참조.

2. 보도지침

- 8.15부터는 사회면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당국 수사상황 발표를 위주로 하여 보도토록 하며,
- 김대중의 일반적, 선전적 발언 게재는 통제하며,
- 불리한 악의에 찬 외신전재를 일체 배제하며,
- 점차 기사를 줄이도록 하였음
 - ※ 김대중 사건 추측기사를 배제토록 하는 방편으로 수사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정○○ 본부장에게 지시하였으며 8.15 문공부 보도국장, 법무, 내무 대변인 및 치안국 공보관을 소집, 합동회의를 하여 보도지침을 결정 하달하겠음

8월 15일 ‘김대중’은 ‘KT’라는 암호명으로 바뀌어 불리며, 좀 더 세부적인 언론조정이 조치된다.

제목 : KT 사건 수사 및 조치현황(73.8.15)

1. 언론보도

- 일간신문 1면에 대서특필로 게재했던 KT사건관련기사를 조정지침에 따라 금 8.15부터는 사회면으로 취급하되 김대중 중심의 기사를 지양하고 수사 상황 위주로 게재토록 조치하여 전면적으로 지면이 조정되었음(동아, 중앙은 1면 축소)
- 특히 다음 기사는 보도 관제하였음
 - 야당의 KT사건진상조사단 구성
 -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
 - KT에 대한 동정심 유발 내용
 - 범인색출을 촉구하는 사실 및 해설
 - 관련 외신기사
- 전체적으로 기사를 축소시키도록 하고 특히 동판(컷)으로 제목을 부각시키는 것을 일절 배제토록 하였음
- 또한 방송에 있어서도 KT사건 특집방송 뉴스해설 및 외신인용보도 등은 일절 관제조치 하였음.

8월 16일 포괄적인 국내대책방안이 강구되고, 이 방안 속에는 단순히 보도지침을 내리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주변 인물들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김대중 관련 소식이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신을 조정하는 등 언론통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중앙 정보부가 이러한 대응과정을 총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목 : KT 사건에 따른 국내대책방안(73.8.16)

1. 기본방향

- 이번 KT사건은 국내외에 주는 정치적 영향이 심대할 뿐 아니라 사건처리 수습의 방향과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정권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력한 수사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킨다.
- 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시켜 이 사건이 정부와 무관함을 입증시킨다.
- 강력한 언론보도통제를 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KT사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한다.
- KT 사건에 관련된 모든 유언비어는 그 진원을 철저히 규명 단속한다.
- KT 추종 및 동조세력의 활동이나 태동을 철저히 봉쇄한다.
- 동 사건을 계기로 KT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 이와 같은 국내대책과 병행하여 어느 정도의 냉각기를 거쳐 대미-일 관계 개선 등 외교대책을 별도 강구한다.

2. 세부대책방안

가. 수사활동

나. 정치대책

다. 민심순화

- 민심을 他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행사(예 : 공산권 초청경기 등)를 개최하여 밝은 기사(예 : 대농작황, 국제경기 개최 등)를 집중 보도토록 한다.
- KT는 정치적 술책에 능하고 사대주의적 성격으로 외세에 의존하여 그간 외국에서 국내적 혼란과 국제적 고립을 획책했음을 은연중 유포, 부각시키도록 유도한다.
- KT에 관련된 유언비어의 진원을 철저히 색출, 강압 조치함으로써 그 유포를 봉쇄한다.
- 수사에 별다른 진도를 가져오지 못해 민심이 악화될 경우 수사관계자의 인책을 고려한다.

라. KT 신병처리

마. KT 추종세력

- KT 추종분자 및 동조자로서 KT를 영웅시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찬양, 고무하는 자는 강력히 응징 조치한다.

- △ 방문 위로자
- △ 掛電 위로자
- △ 서신 및 전문발송자
- △ 금품제공자
- 또한 국내외 언론인에게 K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양 등 발언을 한 자도 색출, 강압 조치한다.
- KT 추종분자 또는 추종세력으로 간주되는 자들의 조직화 여부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 특히 KT사건을 계기로 정부 및 언론기관에 대해 정부를 비방하는 불온문건 및 전단 등을 투입, 우송 또는 살포하는 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강압 조치한다.

바. 보도조정

KT 귀가 당일은 자율적으로 보도토록 했으나 8.15 직후부터 CIA 주관하에 다음과 같이 철저한 보도통제를 가한다.

<통제 지침>

- KT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기사는 정부관계당국의 정식발표사항에 한하여 사회면에 보도
- 취재활동 경쟁과열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추리, 의혹을 야기시킬 보도 태도 嚴戒
- 사설, 논단, 단평, 만화 및 기획특집 등에 의한 취재 계재를 억제
- KT 추종세력 및 야당 측의 인기전술이나 정략적 발언, 성명의 보도 및 이를 지원하는 신문제작태도를 견제
- 특히 KT 사진 계재를 억제하되 현장 검증시만은 축소보도
- KT 및 그 주변인물에 대한 동정기사 및 접촉인물과의 대화내용 보도를 억제하고 KT에 관한 불가피한 기사는 검찰에서 제공하는 것에 국한 보도
- 야당 측의 정치공세 및 정치문제화를 위요한 동향기사는 극소보도
- KT의 무사귀국을 축하하거나 치료비 각출을 위한 국내외인사 또는 단체의 동향 보도를 규제
- 본 지침을 위배하거나 비협조적인 매스컴에 대하여는 강력한 응분의 대응 조치 강구

사. 외신조정

- KT 사건관련 외신보도의 국내 매스컴 인용 보도를 일절 규제한다.
- 동사건 취재차 입국을 희망하는 외신기자는 현지공관에서 입국비자 발급을 통제한다.

- 한국인 해외특파원의 외신과의 지나친 링크 또는 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토록 조치한다.(8.16)
- 특히 일본신문의 주한특파원 송고 기사를 검토하여 억측 기사를 쓴 신문에 대하여는 문공부에서 개별적으로 추궁한다.
- 허무맹랑한 기사에 대하여는 주한외국대사에게 외교부에서 엄중 항의한다.

중앙정보부의 이러한 대언론 활동은 결국 외신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1973년 8월 23일 요미우리신문은 조간으로 ‘정보부 기관원이 사건에 관계-한국정부측 인정한다’라고 보도했다. 윤주영 문공부장관은 서울의 일본인 특파원단을 소집,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다”라며 24일자 조간기사의 정정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정정이 없을 경우는 지국 폐쇄, 특파원 퇴거를 명한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취소요구를 거부했고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은 8월 25일 폐쇄되어 3명의 특파원이 퇴거처분을 받았다. 이후 요미우리 서울지국은 1975년 1월 10일 다시 열었다.³⁴⁵⁾

이러한 조치 등으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일본정부로부터 외교적 수세에 몰리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73.9.7 작성한 문건중 언론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KT사건을 계기로 하여 야기된 일본조야의 도발적인 주권논쟁에 대해 범국민적인 국론통일로서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 반박하여 주체적인 외교적 승리로 유도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악화를 유리하게 수습하는 한편 KT사건으로 인한 국내적 후유증을 일소하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중략)

나. 시행지침

- 활동단계

345) 『KCIA의 대일 마스크 공작』, 中川信夫·松浦總三 편 晩聲社, 1978, p49.

제 1 단계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제 2 단계	국회를 통한 국론집약
제 3 단계	행동을 통한 국방과시

- 중략 -

○ 방법

- 신문, 방송을 통해 일본측 요구사항과 아측 태도를 개명(開明)코 일본의 주권침해 사례를 샅샅이 논박
 - 일본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의 주권논쟁과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 위주로 사실보도 (KT 관련사항은 가급적 축소 또는 불활용)
 - 방송 TV 등 매스컴을 통해 저명인사에 의한 일본측 주권침해에 대한 논거 해설
 - 정기국회를 통한 주권논쟁을 일본국회와 상응하게 전개
 - 애국부녀재단에 의한 대일감정악화 유발
- (중략)

3. 세부대책

가. 총괄표

○ 언론조정

- 日 국회논란 송고사실 보도(9월 6일경-12일경까지)
 - 사설 및 논단계재 반박 비판(9월 10일 이후 10월말까지)
 - TV해설 좌담회 반박 해설(9월 12일경 이후 10월말까지)
 - 주한 日 특파원 견제(9월 7일경-10월12일경까지)
- (중략)

나. 언론조정대책

(1) 방침

- 주권논쟁에 대한 언론보도는 언론기관의 자율적인 재량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작용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획일적인 기사조정은 지양
- 일본 내(국회 등)에서의 주권침해 논란내용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조를 전개토록 하여 국민들의 대일 악감정을 격화 유도
- 다만 KT의 인기를 상승시키거나 그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보도는 억제
- 일본의 親韓派 언론인과 교수 등이 쓴 유리한 기사는 전제하여 국론 집약에 활용

(2) 단계별 조정

단계별	내 용
1단계 (9.20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국회논란 송고, 사실보도 - 주권논쟁 관계 부분 부각 - KT 관계기사는 배제 - 일본평론가의 자숙호소 논평 전제 및 해설 - 여론조성에 유리한 자료 적기 활용
2단계 (9.20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대정부 질의 통한 확대 고조화 - KT의 해외망동상 중점 부각 - 국회의 대일주권 논쟁 반박 중점 보도 - 국회 논의 주제로 한 사실 논평 게재 - 특집보도(TV·라디오)로 국론집약 유도
3단계 (필요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화의 중점 유도 및 보도 비판 - 규탄집회 및 일 상품 불매운동 부각 - 항일독립운동단체 규탄 유도 - 재일교포 현지 활용

(3) 언론조정

- 주일특파원의 일본국회논란 송고 기사 중 취사선택 조정
- 일본평론가의 자숙호소 논평 전문게재 및 해설
- 사실게재는 조선, 동아 양지에 국한
- 논단 및 기명기고는 별도활용 인사 중에서 선정 게재
- 宇○○○○의 父 宇○○○○의 죄악상 폭로를 항일독립투사로 하여금 투고게재
- 국제정치 및 국제법학자의 주권논쟁에 관한 기고 게재

(4) TV 좌담회 활용

- 추석절 경과 후부터 중점 활용
- 저명 관계법학자, 언론인, 항일독립투사를 출연시켜 일의 주권논쟁 부당성 반박
- 사학자에 의한 과거 일본의 주권침해죄악상 부각
- 거국적 국론통일의 필요성과 대일규탄 위한 각계인사 좌담회 개최

(5) 주한 일 특파원 견제

- 주한 일본특파원들의 허위, 추측 기사보도 방지위한 동향 감시
- 요미우리(讀賣)신문 지국 및 특파원 추방 조치 정당성 부각
- 정부의 강경자세 과시로 견제효과 거양
- 주권논쟁 고조화에 따른 자숙 강요 조치

한편 국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조정을 실행했음이 9월 25일 작성된 「김대중 사건 국회질의에 따른 언론조정」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4. 김대중 사건 국회질의에 따른 언론조정

- 김대중 사건을 위요(圍繞)하고 지난 9.29부터 연3일간 국회에서는 대일본 언론 및 일부정치인의 반한국적 태도와 김대중의 반국가적 해외행각에 대한 폭로규탄공세로 시종일관하였는 바 언론인들은 대체로 표면상으로는 협조적이면서도 동 사건이 정치적이고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등 언론조정상 많은 악조건이 있었으나 치밀한 계획과 신축성있게 대처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였는 바 9.25 현재 주요 조정실적은 다음과 같음
- 사설 게재

구분	사 명	일자	제 목
중앙지	동아일보	9.22	일본 언론의 자중을 바람
	조선일보	9.23	경망한 일본의 일부 언론
	한국일보	9.23	일부 일본 언론, 정치인의 과열자제와 자계를 바람
	서울신문	9.24	일본 언론의 자제를 촉구
	경향신문		일본 언론의 자성, 자율을 촉구한다
	중앙일보		일부 일본세론의 대한기본자세
	신아일보		일본언론의 자제를 촉구
지방	전남매일	9.24	일부 일본언론의 횡포
	전남일보		일본 언론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전북신문		일본의 언론 양식에 호소한다
	경남일보		일본 언론의 자중을 바란다
	경남매일	9.25	폭발하는 국회의 대일 불만
	부산일보		자중과 자계를 바람. 일부 일본 언론, 정치인의 경거
	국제신보		일부 일본 언론 과열
	대구매일		일본 언론의 반성

	영남일보		오만과 선동과 편향
	충청일보		일부 일본 언론의 과잉반론
	강원일보		김대중 사건과 한일 관계
	경기신문		불용할 내정간섭
	제주신문		자제와 반성을 촉구한다

○ 논단, 특집

사 명	일 자	제 목
경향신문	9.24	명백한 주권침해, 지나치게 정략적
	9.25	김대중 사건으로 더 이상 분규 말라
중앙일보	9.24	한일우호 역행 일본의 일부 언론
신아일보	9.25	하루 속히 범인체포를(양케이트)
조선일보		자제력 잃은 속단은 주권국가모독 행위
서울신문		일본 언론은 지성을 잃었다
※ 지방지는 7개지가 합동통신 9.24자 특집기사 “국회 대일 불만폭발” 등을 인용, 특집 보도		

○ 방송 통신 특집

局社名	일 시	제 목
KBS-R	9.22 22:00-22:15	金龍星 의원 발언(해설)
	9.23 08:00-08:10	국회질의 및 답변(해설)
	9.24 22:15-23:00	주권침해의 한계(좌담)
KBS-TV	9.23 08:00-08:10	국회질의 및 답변(해설)
	9.24 19:00-19:10 21:00-21:10	국회질의 반응(양케이트)
	9.24 22:15-23:00	주권침해의 한계(좌담)
CBS-R	9.22 13:30-13:40	김용성 의원 발언(해설)
	9.23 19:35-19:45	일부 일본 언론의 망동(해설)

	9.24 22:35-22:40	일본의 언론 및 일부 정치인들의 망동(해설)
TBC-R	9.24 19:00-19:20	일부 일본세론의 對韓 기본자세(르뽀)
TBC-TV	9.23 22:45-23:00	주권침해론을 통박한 국회(좌담)
	9.23 22:30-23:00	일부 일본세론의 對韓 기본자세(르뽀)
MBC-R	9.24 19:00-19:20	주권론과 경제원조중단(해설)
	9.24 22:00-22:40	국회 대정부 질의(좌담)
MBC-TV	9.24 19:00-19:20	주권론과 경제원조중단(해설)
	9.24 22:00-07:30	주권론과 김대중 행각(해설)
	9.24 07:20-07:30	일반 반응과 우리의 자세(좌담)
합동통신	9.24	김대중 사건으로 국회 대일불만 폭발(앙케이트)
동양통신	9.25	국회 김대중 사건 대정부질의(앙케이트)

※ 제 2단계 언론대책으로서는 당면 대책과 중기 대책으로 구분, 국내 여론 및 반응을 예의 분석하여 이에 대응한 별도계획에 의거 실시위계임

5. 김대중 사건에 따른 2단계 언론 조정(續)

- 김대중 사건에 대한 국회논의과정에서의 제 1단계 언론조정에 이어 국회의원의 질의와 정부측 답변 등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의 제 2단계 언론 조정은 주로 김대중의 좌경적인 반국가 행각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고 일본의 경망한 자세에 대하여는 이성을 촉구하는 방향에서 조정하였는 바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일간신문

구분	사명	일자	내용
사설	중앙	9.29	국회질의종결을 보고
	조선	9.28	秋空과 같이 맑은 심정을
	경향		국회 대정부질문과 우리의 관심
논단	서울	9.26	좀 더 대국적 언론을
	중앙		감정의 노예된 日 일부 언론

해 설	서울	9.28	화살은 日 일부 정치인 언론에
	중앙		日 일부언론 탈선 성토 3일
	동아		열기 속에 연 ‘다목적 정치포문’
	조선		대일 화살의 단상단하
	한국		日 정치인 언론에 포문
	경향		단상서 규명한 김대중 사건

△ 방송

구분	사 명	일자	내 용
해 설	MBC-TV	9.25	국회질의분석
		9.26	김대중 사건 질의종결을 보고
	MBC-R	9.25	국회질의에 대한 해설
	KBS-TV	9.27	김대중 사건 질의 종합해설
	H-R	9.27	上同
	DBS-R	9.26	上同
좌 담	MBC-TV	9.25	제88회 정기총회
		9.26	일본의 일부 언론 및 정치인 망동
	MBC-R	9.25	김대중 질의사건 종합분석
	KBS-TV	9.26	일본 언론과 한일 관계
	KBS-R	9.26	上同
	CBS-R	9.25	최근 일본의 대한 자세
르 뵈	KBS-TV	9.25	각계 반응
	TBC-TV	9.25	上同

△ 통신

구분	사 명	일 자	내 용
해 설	동양통신	9.26	국회에서의 김대중 사건 질의
	합동통신	9.26	국회 3일간의 질의로 김대중 사건 궁금증 얼마나 풀렸나

- ※ 제 3단계 홍보대책으로서는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전기와 같은 취지의 논단을 집필 게재하는 동시 일본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도 스스로를 자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기고문을 국내외紙에 게재하는 활동을 실시 중에 있음

2) 대학가 이념 여론 유도

전두환 정권 당시 안전기획부는 학생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학생운동의 이념적 문제를 언론사가 연재하도록 언론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학원 자율화조치를 추진하던 시기인 1984년 2월 29일 작성된 「1984년 신학기 학원대책 추진상황보고」 문건에 따르면, 안기부는 2월 24일과 25일 각각 2大 국내일간지 사장을 만나 학원대책추진과 관련해 언론사의 협조문제를 논의하였다.

Ⅲ. 주요언론사경영주 면담결과

1. 00일보 000 사장(2.24 18:00-23:10)
 - 협조약속
 - 근일중 기획물연재 계획하에 기사작성중
 - ※ 2.25 편집간부에게 지시필
2. 00아일보 000 명예회장(2.25 15:30)
 - 협조약속
 - 00대 이사장이라는 입장 초월, 지원의사 표명
 - ※ 2.27 사장 등에게 지시필
3. 기타 언론사도 근일중 접촉예정

00일보의 경우 이 면담의 결과로 1984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학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6회의 특별 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다.

가) 문공부의 언론정상화 정비작업

1985년 2.12총선에서 야당 신민당에 패한 전두환 정권은 대학가의 용공 좌경화를 내걸어 본격적인 강압체제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불온 불법 간행물을 근절한다는 대책을 세워 이념서적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민중문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언론정상화를 위한 정비작업을 추진했다.

문화공보부는 불온, 불법 간행물 근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KBS-TV와 MBC-TV를 통해 현장실태를 고발하거나 고위인사의 TV 회견 등 조직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문에 문제간행물 및 유인물의 내용을 공개하고 저명 출판인과 언론인 신문기고를 추진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1월에 언론정상화를 위한 정비작업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³⁴⁶⁾ 문화공보부는 우선 안기부 및 치안본부의 협조를 얻어 출판·제본업계의 ‘불온좌경서적’의 제작을 차단하며 안기부 및 문교부와의 협조로 대학 내의 좌경불온서적 감시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언론정상화를 위해 재경 언론사 신규 채용기자를 대상으로 언론연구원이 주관하여 7개월 과정의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전방합숙교육 및 정신문화연구원, 안기부 등의 위탁교육을 의무화하며 개인별 성향을 심층분석하고 교육성적 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도증 발급을 제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언론사 사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각사 문화부장과 문화부기자들과 접촉하여 신춘문에 심사위원회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민중문화 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5월 23일 대학생들의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이후 학생시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3년 시한으로 된 이 법의 시안은 시위학생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6개월 동안 격리교육하며, 반체제이념의 표현물 제작, 판매, 배포하는 행위와 각종 루머의 유포행위에도 중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이 보장한

346) 문화공보부, ‘건전문화풍토 조성 추진 및 언론정상화를 위한 정비작업’, 1985년 11월 28일.

기본권을 유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여 인신의 자유를 구속토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반민주적 발상이었다.

나) 문공부의 학원안정법 제정 홍보계획³⁴⁷⁾

학원안정법제정 방침은 경향신문이 최초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학원안정법제정 방침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등은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안정법 제정을 위해 ‘학원안정법제정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언론대책을 마련했다. 법제정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언론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 1단계로 사전홍보를 통해 학원안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법제정 반대론을 순화시키며 학원좌경화 실상을 폭로하고 민중론 실상을 폭로하고 차단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공보부는 이를 위해 친여신문매체를 통해 기획특집, 해설 등 시리즈를 각 사별로 10회 이상 게재하고 양 TV사에서는 ‘특집기획 학생운동 40년 및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와 문교부장관, 법무장관, 서울대 총장 등 각계 원로인사가 참여하는 ‘KBS 청문회’를 2회 방영하며, 뉴스파노라마 ‘학원안정법 왜 필요한가’를 방영토록 계획을 마련했다. 방송사의 편성권을 정부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계획이다. 또한 문공부는 문교부, 법무부 및 관련부처 장관과 차관이 언론사 간부를 분담, 집중 접촉하여 법제정 지지여론을 유도하고 반대여론을 순화하여 극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홍보계획에는 외신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좌경이념은 60-70년대의 고도산업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학원사태는 우리가 개방사회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서양식의 물리적 제재가 아닌 동양식의 가족적 국민통합적 선도의 미덕’이라는

347) 문화공보부, 「학원안정법 제정 홍보대책」(1985.8.12)

논리를 개발하여 상주 외신기자에 대한 문공장관 초청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사송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키신저 등 유력인사의 긍정적 논평, 기고문 등을 게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재외공보관과 문화관들이 현지언론을 긴밀하게 접촉하여 긍정적 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공관장 주관 하에 특별홍보 대책을 추진토록 하며 ‘학원안정법 제정에 관한 유리한 외신을 국내신문과 방송에 확산’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언론사에서는 정면으로 학원안정법을 반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이채주는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은 허문도 청와대 제 1정무 수석비서관이었고 장세동 안기부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안기부 양쪽에서 몰려오는 압력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³⁴⁸⁾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일부 언론과 야당 등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로 학원안정법 제정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3) 금강산댐 사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있었던 ‘금강산댐 사건’은 왜곡된 여론의 산물이었다. 이번 조사활동 중 확보한 감사원 작성(93.8) 문건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평화의댐 건설사업추진실태」를 보면, 왜곡된 여론을 안기부가 주도했음이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안기부는 금강산댐의 규모를 과잉추정하고, 댐 파괴영향을 과대평가했으며, 88서울올림픽 위협을 허위날조하여 당시 필요없는 대응댐(평화의 댐)착공을 강행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사원이 안기부 문서를 근거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⁴⁹⁾

348) 이채주,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나남 출판, 2003, p246.

349) 과거사위는 감사원이 조사한 문건을 국정원 자료 검색시 확인하지 못하였음.

구 분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
금강산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분석(86.6.22-8.20)시 댐 위치 미확인 등 부정확한 첩보를 근거로 안기부 직원 1인과 한국전력 4급직원 1명이 단 8시간 만에 금강산댐 위치 추정 후, 댐높이 215m, 저수량 199.7억t으로 과대 추정 ○ 2차 분석(86.8.20-10.25)시 댐위치 확인 등 추가 첩보입수 하고, 분석인원도 3명으로 늘려 댐규모를 축소 수정(댐 높이가 155m, 저수량 69.8억t)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가능성이 없는 1차 분석규모를 그대로 대국민 발표 후 대응 대책 마련 ○ 1,2차 분석결과는 추정단계에 불과하므로 지속적 정밀 추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86.10.17 회의자료)하고도 계속적인 수정 보완노력 전무
댐 파괴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괴목적으로 댐을 시공할 경우, 댐 본체내에 수개의 대형 갱구 사전설치가 불가피하나, 대형갱구 설치시 사력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 시공이 곤란하고 댐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댐 축조후 인위적 파괴가능성 희박 ○ 사력댐이 붕괴돼도 댐 밑바닥까지 댐 전체가 완전 붕괴되어 유실되는 것은 아니고, 사력 잔재물 상당량이 댐 하류부에 쌓이게 되어 일부 저수량은 하류로 방류되지 않음 ○ 국가안전기획부는 최대 200억t이 완전 방류될 경우 수도권이 황폐화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사원이 판단한 금강산댐 규모(27.2-59.4t)파괴시 50년 빈도의 홍수와 중첩되더라도 서울 일부 저지대 지역만 침수
88올림픽 위협 여부와 대응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의 당초 정보분석시 북한이 공사에 전력투구하더라도 최초의 위협시기는 89.10(9억t 저수시)로 판단해 올림픽 위협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안기부장의 의견조정 및 대통령 보고단계에서 조기착공토록 변경 (당초 89.6 계획 → 실제 87.4.15 착공) ○ 당시 금강산댐 건설목적에 대한 정보분석이나 사력댐의 인위적 폭파 가능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응댐을 착공할 필요성은 없었음

전두환 정권은 금강산댐의 규모 및 위력관련 내용을 왜곡, 과장 홍보함으로써 국민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정권기반 강화를 기도하였으며, 안기부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정부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실패

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계획(86.10월 안기부 작성)

- 계획시달 : 86.10.25 안기부 2차장 이학봉 주재 대책회의
- 계획의 내용
 - 주요방침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위협에서 점차 군사적 위협을 부각 · 4단계로 구분 각부 장관이 단계별 성명 발표 · 가공할 군사적 위협을 부각 새로운 안보관 정립 · 북괴댐 건설계획 수정유도 및 자위적 조치의 당위성 확보
--

- 단계별 세부전략(시나리오)

단 계 별	발 표 내 용 구 성 방 침	일 정
공개폭로 (건설부장관)	· 공사규모의 위협성 현실감 있게 인식 · 북괴댐의 위협요인에 대한 경각심 제고	D
군사적위협경고 (국방부장관)	· 수공을 통한 군사전략적 책략 경고 · 안보위협에 대한 범국민 일체감 조성	D+ 7
계획포기촉구 (문공부장관)	· 전국토의 평화적 이용 당위성 강조 · 한강수계 수자원독점은 영구적 국토분단	D+ 14
대응조치 공표 (국방,건설,문공, 통일원장관 합동)	· 대응계획 공표 및 공세적 입장 전화 · 반민족적 작태 규탄 및 국민의 공감대 조성	D+ a

이러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기위해 안기부는 실무위원회와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였다. 그 구성내용과 홍보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제10보(1986.11.8)

1. 실시사항 (11.7)
2. 예정사항 (11.8)
3. 강원도민 규탄궐기대회 개최결과
4. 관련업무 추진 및 조치사항
 - 가. JCI 세계대회 활용 홍보자료 지원
 - 나. 북한강 상류지역 학술조사 실시관련 사항 조치
 - 다. 국-공립고 교장 세미나시 시도별 목표인원 책정 시달
 - 라. 금강산 댐 관련 유관부처, 기관업무 추진 사항

- 제24보(1986.11.26)

1. 실시사항 (11.25)
 - 가. 행사 실시사항
 - (1) 총괄
 - (2) 부산시민 규탄궐기대회 개최결과
 - 나. 홍보 실시사항
2. 예정사항 (11.26)
 - 가. 행사 예정사항
 - (1) 총괄
 - (2) 시, 도 규탄궐기대회 개최일정
 - (3) 대구시민 규탄궐기대회 개최 계획
 - 나. 홍보 예정사항
3. 금강산댐 관련 유관부처, 기관 업무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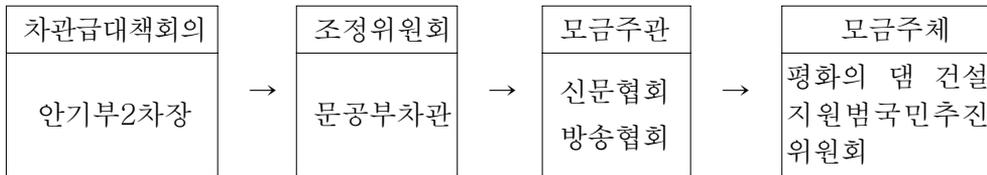
보고서의 별첨 자료에는 각 지역별로 개최된 행사들의 유형과 참가단체, 인원, 언론사의 취재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최종보고인 제 24보에서는 10.28-11.29 기간 중 실시된 모든 행사의 내역과 홍보실적(TV, 신문, 홍보물 제작·활용, 외신대상 Press Tour 주선)을 보고하였다.

한달에 걸쳐서 민·관·군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한 홍보로 인해 전국민은 금강산댐의 가공할 위력에 공포감을 갖게 되었으며, 12월 1일 개시된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게 된다.

이 성금 모금 또한 안기부 2차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안기부는 효과적인 성금모금을 위해 언론기관을 활용한 홍보대책도 세웠다.

○ 성금모금 추진주체 및 임무

모금정책결정 추진사항조정 성금접수 및 집계 모금홍보 및 수합



1년간 400억원 목표로 진행된 성금모금 추진은 목표를 초과해 660억 여원이 걸렸다. 안기부가 주도한 홍보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론을 이용한 홍보는 당시 언론인들의 기억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MBC 손석희 아나운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뉴스를 진행하던 그때, 스튜디오 한쪽에 잉크를 풀어놓은 수돗물로 찰랑대던 여의도 일대의 모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연히 거기엔 63빌딩이 있었고 파란 잉크 물은 그 빌딩의 허리께까지 차올라 넘실대고 있었다.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아니 장난처럼 하면 안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우리는 63빌딩의 중간까지 물이 찬다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2층 정도 까지로 줄이자 어찌자 하면서 제멋대로들 기준을 정하다가 누군가 ‘겁을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지’ 하는 말에 훌쩍거리며 웃기까지 하였다. 그 광란의 시기에 과학적 사고는 오히려 장애물이었다.”³⁵⁰⁾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이채주는 자신의 저서에서 “모든 구상과 계획과 발표는 장세동씨의 안기부가 직접 주도했다”고 증언했다.³⁵¹⁾

350) 손석희, 「부끄러운 언론의 얼굴」, 『노동자신문』, 1993년 9월 10일 9면.

351) 이채주, 앞 책, p430.

5 언론인 연행 및 사찰

가 박정희 정권하의 언론인 연행³⁵²⁾

1) 1960년대 언론인 연행 및 언론계 대응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정책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도전하는 경우나 ‘반공’에 저촉될 경우에 가차없이 규제한다는 2개의 기본지침 아래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침은 크게 보면 박 정권의 정권 유지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세분해서 보면 전자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었고, 후자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개인적인 극우 반공 노선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었다.³⁵³⁾ 김형욱 부장의 이러한 경향은 나라 안팎에서 박 정권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적 전력과 결부되어 종종 과잉조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론정책의 기본지침은 언론인들을 연행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6.3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된 이튿날 1964년 6월 4일 계엄당국은 동아방송 최창봉 방송부장 등 간부 5명을 연행했다. 동아방송의 단평프로인 ‘앵무새’와 뉴스가 정부 시책을 비난하고 학생데모를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서울형사지법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와 법원의 항소 기각, 검찰의 상고 포기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이어 11월에는 당시 문화방송 황용주 사장이 ‘세대’ 잡지 11월호에 쓴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글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세대 필화사건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때에 조선일보에도 반공법 위반혐의의 필화사건이 일어났다.

352) 강성재, 「박정권과 언론탄압」 『신동아』, 1985년 4월호, 내용을 주로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353) 강성재, 앞 글, p401.

중앙정보부는 11월 22일 ‘남북한 동시 가입안 준비/아랍공 등 수 개국 유엔총회 개최 전에’ 기사가 반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우휘 편집국장과 정치부 이영희 기자를 구속했다. 선우휘 편집국장은 11월 27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고 이영희 기자는 12월 17일 구속만기로 27일 만에 석방됐다.

김형욱 부장은 1967년 2월 19일 조선일보 1면에 다섯 차례 연재된 ‘선거 바람 … 민심을 따라’ 기획 기사를 문제 삼아 남재희 정치부장, 김용태 차장대우, 이종구 기자, 박범진 기자 등 4명의 정치부 기자를 2명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 2명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2월 25일 저녁 중앙정보부로 연행했다.

이들 4명의 기자가 연행되자 조선일보는 이 사실을 1면 5단으로 보도했고,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도 회장단과 보도자유위원회의 연석회의 등을 열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언론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당국은 이들 4명의 기자들을 47시간 후에야 귀가시켰다.

기자협회는 빈번한 기자연행이 보도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시하여 1967년 2월 28일에 다시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정일권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 이를 항의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불법, 부당한 처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우리 자신의 권익옹호를 위해 상당한 자위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28일 오후 공보관이 기협을 방문, 이에 대한 해명을 했고 홍종철 공보부장관도 이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³⁵⁴⁾

편집인협회도 28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기자 연행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빈번한 기자연행 및 테러사건 등 신문인의 기본인권을 위협하는 여러 사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54) 『기자협회보』, 한국기자협회, 1967년 3월 15일자.

편협 간부들은 홍종철 공보장관을 방문, 추후 언론인을 연행할 경우 반드시 소속사와 편협에 사전 통고해 주도록 요청했고 홍장관도 이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떤 기사가 실정법에 결코 위반되지 않을 경우 연행은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공보장관의 신사협정은 1년이 못 돼 깨지게 됐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3월 8일자 동아일보 1면 톱 ‘통화량 대폭 억제토록 한은, 정부에 긴축정책 건의’ 기사와 관련, 이춘구 경제부장, 이채주 경제부차장, 신동호 기자와 집필자인 박창래 기사를 연행하여 기사출처와 게재경위 등에 관해 심문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자들이 연행되자 기자협회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앞으로 기자연행을 엄중 항의하여 이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보냈다. 편협도 기자연행 사실을 사전통고하지 않은 당국에 대해 엄중 항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석채 회장은 중앙정보부로 김형욱 부장을 방문해 기자연행 사건에 대해 엄중 항의했으며, 김형욱 부장은 앞으로 그 같은 사건이 근절되게끔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최 회장은 김 부장으로부터 ‘언론인연행 근절 보장’ 메모서명을 받아냈다.

메모내용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4일 하오 동아일보 기자 연행 사건에 대한 최석채 편협회장의 항의를 받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되게끔 보장할 것을 언명하였다”로 되어 있다.³⁵⁵⁾

김형욱 부장의 기자연행 근절보장 언명은 8개월 후인 1968년 11월에 일어난 신동아 필화사건으로 무색하게 된다.

2) 유신체제하 언론인 연행 및 기소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의 기능을

355) 강성재, 「박정권과 언론탄압」,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5년 4월호, p413.

대행한 비상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첫 필화사건은 합동통신에서 발생했다. 합동통신 사회부 유홍구 기자는 1973년 12월 21일 병무청 공보담당관실에서 3급 비밀문서인 ‘지방 병무청장회의록’을 가져와 1974년 1월 11일 회의록 일부인 지방병무청 감사결과를 발췌 보도했는데 이 기사 일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유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정권은 기관원이 언론사에 무상으로 출입하며 신문 및 방송뉴스 제작에 압력을 가했으며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썼을 경우에는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으로 연행했다. 기자협회보에 의하면, 1964년 11월 10일부터 1974년 말까지 약 10년간 언론인에 대한 폭행은 모두 97건으로 나타나 있다. 이유를 분류하면 취재방해가 64건에 65.98%, 기사불만이 29건에 29.90%, 기타 4건에 4.12%였다.

3) 중앙정보부 개입 기자연행 사건

국정원에 현재 보관돼 있는 기자연행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보면, 중앙정보부가 수사의 이유로 문제삼은 기사들은 중앙정보부 관련 기사, 공산권 관련기사, 정치관련 기사, 정책 비판기사 등으로 내용이 분류된다.

가) 중앙정보부 관련 기사

(1) 「경향신문 오보사건 조사결과 보고」 (1961.6.29)

- 중앙정보부 창설 직후인 1961.6.28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삭감 경비 24억여, 최고회의 경비로, 각의-제2회 추경예산을 공포’ 라는 제하의 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최고회의를 불신 내지는 회의심을 갖게 하여 혁명과업 완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 편집국장 박연대(朴運大), 편집부장 임예(林藝), 정경부장 서용○(徐用○), 기자 이상순(李相舜)을 중앙정보부로 소환, 진술서를 받고, 기사원고를 압수하고, 이들을 ‘엄중처단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 보고서의 결재란에 手記로 「‘기자의 시말서 받으시오’, ‘이상순, 서용○, 임예 - 구속’, ‘박연대 - 불구속’ = 의견」이라고 기재돼 있다.

(2) 「불온신문기사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 (1961.7.11)

- 경향신문 1961.7.10자에 체신부 직원 6명에게 보로금 1만원씩 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국의 전화이전 시험 중 극도로 피로를 일으켜 모두 졸도하여...’ 라고 보도
- 중앙정보부 OO실장은 기사내용이 ‘중정에서 6명의 전화국 직원을 졸도함에 이르기 까지 혹사한 양 허위게재’하였다 하여 ‘불온기사’ 로 7.11 OO국장에 조사조치 의뢰
- 3국장은 서울일일신문, 경향신문 기자와 체신부 공보실 주사를 조사한 뒤, 7.15 ‘엄중 처벌할 것이 가할 것이나 그 정상을 참작 하여 시말서를 징구 금번에 한하여 훈방조치’하였다고 통보

(3) 「동아방송 허위사실 보도경위 조사보고」 (1968.2.28)

- 1968.2.27 통금검문에 불응, 도주하는 짚차에 경찰이 발포해 탑승자가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아방송이 ‘해당차량이 중앙정보부의 차량이다’라고 보도
- 중앙정보부는 보도내용이 ‘오보’라며 해당기자와 경찰서 경감 등 4인을 조사하고 사과진술서를 받음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중앙정보부에 대한 보도 기사는 강력한 견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북한 및 공산권 관련기사

(1) 「반공법 위반혐의 기사에 대한 인지보고」 (1965.6.11)

- 조선일보 1965.6.11字 1면 톱으로 ‘베트콩’ 춘계대공세를 다룬 월남전 전황을 보도
- 동 보도에 대해 다음 혐의로 조선일보 편집국장 金庚煥, 편집부장 李禹世, 편집부 기자 黃玉律을 6.11-12 간 소환 조사

(전략) 월남전황을 보도함에 있어 합동통신사에서 수신한 AFP, 동양통신사에서 수신한 UPI 등 외신내용과 한국일보, 동아 및 경향, 서울 등 일간지 기사와 차이되는 점은 없으나 타 신문 등은 제2면 상단 중앙에 본건 기사를 4-5단으로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사에서는 고의적으로 국내 중요 정치기사를 게재하여야 할 위치에 국외공산계의 활동인 베트콩의 유리한 전황을 대서특필로 7단으로 보도 춘계를 맞이하여 공산 베트콩이 우세함을 찬양, 춘계대공세에서 베트콩이 승리를 戰取할 것이라는 저의를 내포한 불순혐의임

- 6.14 다음과 같은 ‘소견’으로 보고

(전략) 제작○○의 저의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나 본 건만으로는 위법성 ○○키 곤란함으로 본건 수사유보하고, (11字 정도 삭제)조선일보사건 ○○○○○(5字 정도 삭제)에 ○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2) 「송추간첩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필화사건 조사결과」 (1965.9.20)

- 1965.7.22자 조선일보 7면 ‘뉴스의 뒷골목’ 란에 ‘독 안의 쥐와 서투른 경찰과...’, ‘송추간첩사건의 문제점’ 이라는 제하의 기사 보도
- 동 기사내용에 기 체포된 간첩을 역용공작한 사실을 보도한 내용 등이 ‘기밀사항을 복괴에 제공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등 불순저의를 내포한 용공적 행위’라는 판단 하에,

- ‘보도의 불순저의와 보도자료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중정은 사회부장 목사균, 안중익·김은구 기자를 5일간 소환조사, 의정부 주재기자 한상진, 송추사건 현장파견기자 김태균을 2일간 소환 조사후 관련 경찰관 18명을 4일간 소환 조사³⁵⁶⁾
- 1965.7.25-8.15까지 수사하고, ‘수사결과 입건하기에는 미흡함으로 기록 존안 하였다가 향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비하심이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라고 9.16 보고

(3) 「중앙일보 반공법 위반 사건철」 (1968.1.27)

- 중앙일보 1968.1.25字 1면에, 임진강 북쪽 3여단 지역에서 1.24 밤 에 벌어진 총격전에 대한 취재내용을 ‘게릴라 30여명 새로 남침’, ‘서부전선 세 곳서 교전, 카투사 2명 전사’ 제하로 보도
- 중앙정보부는 동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을 이롭게 했다’하여 주필겸 이사 홍성유를 비롯해 편집부국장 金寅昊, 사회부장 張烟七, 사회부장대리 趙東午, 편집부장대우 蔡光國, 사회부 기자 張斗星, 金璟郁 총 7명을 소환 조사

30명이 과연 새로 남침한 것인지 또는 그 수가 정확한 것인지 불확실함을 인식하면서도 ‘북괴군 30명이 새로 남침’이라는 제하에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심을 교란시킴으로서 북괴 로선에 동조, 반국가단체인 적을 이롭게 하고

-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고

전시 洪性圃, 金寅昊, 張烟七, 趙東午, 張斗星등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의 증거 충분함으로 구속하고 동 蔡光國, 金璟郁은 범의 인정할 수 없고 증거 불충분하므로 수사중지하고 훈방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356) 예산신청서로 보이는 문건을 통해 조사일수 파악, 소환자들의 식대와 교통비를 청구하였음. 1인당 하루 식대 80원, 교통비 20원을 청구하였음.

(4) 「불온 신문기사 수사기록」 (1969.1)

- 1969.1.4 경향신문 1.1字 3면에 게재된 ‘전환의 69년, 아주인에 의한 세력균형’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는 ‘불온신문기사 인지보고’를 하고 불온성 유무 판단
- 중앙정보부 해당관은 ‘미국의 월남전 실패와 중공의 핵무장 등으로 공산혁명세력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라는 등의 기사내용이 ‘국외 공산계열을 찬양함으로써 불온성 내포했다’고 판단하고 ‘반공법 위반 혐의가 있음으로 경향신문 편집관계자를 소환조사하여 의법처리함이 가하다’고 수사중간보고
- 한편, 1.21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된 ‘과리확대회담 급진전’ 제하 기사에 대해서도 역시 ‘불온신문기사 인지보고’ 하고, 불온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

국외 공산계열의 만만치 않은 활동상을 보여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줄 혐의는 있으나 이 기사 자체가 신문사의 논설이나 기자의 수집 기사가 아니고 모두 외신기사임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속단키는 어렵다는 판단임

- 두 건의 ‘불온기사’와 관련 경향신문 발행 편집 겸 인쇄인 朴瓚鉉, 편집국장 徐壬壽, 외신부장 徐東九, 기자 宋斗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간수사보고

본건 수사한 바 경향신문사는 2차에 ○하여 불온 혐의가 있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있으나 동기사는 외신을 인용 보도한 것임으로 편집관계자를 환문하여 경고조치함이 가하겠습니다

(5) 「이○○ 외 1명에 대한 수사기록」 (1969.9.10)

- 1969.5.10 대전 <중도일보>에 게재된 ‘한반도 긴장확대’ 기사 중 ‘北傀’를 ‘南傀’로 잘못 植字 보도

- 중정 대전 대공분실은 중도일보 文選工 이○○와 교열원 金○○을 수사하여 반공법 위반이라는 구속기소 의견으로 1969.5.23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편집국장과 공무국장에겐 직접적 책임 없어 시말서 징구 후 훈계조치 방면
- 1969.8.2 대전지검은 중앙정보부 대전 대공분실로, ‘피의자들은 단순한 순간적인 착오로 본건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범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코자 협의를 구하고, 중앙정보부는 8.28 검찰의견에 동의함이 가하다고 보고
- 대전지검은 1969.9.5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리하고 9.10 중정정보부에 재판 결과 통보³⁵⁷⁾, 결국 文選工 이○○와 교열원 金○○은 단순 植字 실수로 인해 4개월여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6) 「KAL기 납북 미귀환자 송환대책 보도경위 조사보고」(1970.2.25)

- 중앙일보 1970.2.17字 1면 톱으로 ‘중립국감위 개입요청 검토’, ‘관·민 혼성사절 파견도’, 제하로 당시 납북됐던 KAL기 미귀환승객 송환에 대한 기사 보도
- 동 기사 보도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는 중앙일보 외무부 출입기자 許準, 중앙청 출입기자 尹寄炳, 정치부장 金東益을 2월 24일 소환 조사
- 보도전 허준 기자는 외무부 방교(邦交)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사실화해도 좋은가’ 라고 물었고, 이에 ‘언론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쓰라, 쓰지 마라 할 수 있냐’고 답변했다고 진술
- 윤기병 기자는 기사 관련내용을 ‘off-the-record 전제로 브리핑했다’는 얘기를 취재과정에서 들었다고 진술

357)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규정 제5조 2항 및 3항’에 의거 정보사범 처리 및 재판 결과를 통보.

- 중앙정보부는 기사내용 중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미송환자 대책회의에서 논의 검토된 것이라고 한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라고 보도한 부분을 문제삼았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

5. 소견

출입기자단에 논의된 송환추진방안을 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검토되었다고 추리하여 사실을 왜곡보도한 점 엄중문책하고 기록존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조선일보 필화사건 조사결과 보고」 (1972.7.24)

- 조선일보 정치부기자 강인원(姜仁遠)은 문공부가 발간한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문답’ 이라는 홍보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1972.7.22日 조선일보 1면에 ‘UN의 남북한 초청 거부 안해’ 라는 제하의 6단 기사 보도
- 동 기사에 대해서 중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강인원을 비롯, 정치부차장 李鐘求, 편집부기자 裴宇成, 편집부장 曹秉喆을 7.22-23 소환 조사

(이 기사는) 정부에서 북괴노선에 동조하여 대 UN정책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처럼 독자들이 왜곡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보도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 혐의가 있음

-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고

동 기사의 문장작성과정에서 확대해석하고 또는 집약하는 문장작성의 미숙에 기인된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적을 이롭게 할 범의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취재기사인 강인원과 제목을 작성한 배우성에 대하여는 면직조치토록 조중하고, 편집부장 조병철, 정치부차장 이종구 등에 대하여는 엄중경고함이 가하겠습니다³⁵⁸⁾

358) MF 자료에 ‘강인원’과 ‘배우성’의 사표가 첨부되었지 않으며, ‘강인원’ 인물검색 결과 ‘1965-1981 조선일보 기자, 정치부 차장’ 으로 돼있고, ‘배우성’으로 검색되는 해당인물은 없음.

- 이들은 각각 진술서와 ‘과오를 시인’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각서, 그리고 ‘貴部에서 수사상 필요로 하여 召喚令을 내릴 때는 하시라도 출두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8) 「경향신문 불온기사 수사결과」 (1978.4)

- 경향신문은 1977.12.2자 4면에 소련 체제파 시인 ‘감자로프’와 서독 기자와의 회견내용을 게재
- 중앙정보부는 기사내용이 불온하다고 하여 1978.2.13 중정은 치안본부에 수사 의뢰
- 치안본부는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박우정, 차장 이경일을 수사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및 건의’ 보고

기사내용 중 일부 국외공산계열인 소련의 활동을 찬양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비판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나 (중략) 소련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가 본다면 당료파 시인도 개인승배를 비난하고 있는 소련사회에 혐오를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화 한 것이며,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찬양할 뜻은 추호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결과가 되리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고 본인들의 성장환경으로 보아 사상적인 불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건 처벌할 가치가 없음으로 엄중 경고조치하고 본건 내사 종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1978.4 중정 0000과장은 국장에게 치안본부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

(9) 「동아방송, 중공의 한국배드민턴선수단 입국사중 발급거부 보도경위 조사결과 보고」 (1979.6.8)

- 동아방송은 1979.6.7 ‘라디오조건’ 시간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 2회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달라고 한국선수단에게 초청장을 보낸 중공이 선수단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

- 중앙정보부의 동아방송 담당직원은 07:10경 동 내용 방송 삭제 전화하여 이후 방송을 중지시키고, 사회부 기자 盧翰成, 보도국 부국장 申用淳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환하여 조사

상기명 등은 1976년 정부에서 제정시행중에 있는 ‘공산권국가에 관한 보도요강’의 ‘右 언론기관은 정부 및 민간의 공산권국가와의 교섭, 접촉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함에 있어 문공부의 공식발표 이외의 사항을 보도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내용과 1979.6.5-6.7간 2차에 걸쳐 중공에서 개최되는 제 2회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 참가문제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도를 보류하여 달라는 CIA로부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보도

- 조사보고서는 6.8 상기명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차후 여사 사례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함으로 각서 징구 후 엄중경고 방면하였음’이라고 기술

이상과 같이 북한 및 대공산권 관련 보도는 내용의 사실여부, 정권에 유불리여부 등에 상관없이, 반공법을 우선 적용해 일단 소환 조사했음이 확인되었다.

다) 정치 관련 기사

(1) 「허위사실 유포」 (1962.8.9)

-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산덕이 1962.7.28 ‘국민투표 결코 만능이 아니다’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투표로 개헌한다는 것은 유엔의 승인한 정부를 무로 돌리고 백지로 환원시켜 북한 괴뢰집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무대에서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

- 1962.9.11 육군 보통군법회의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황산덕은 구속기소, 편집인 고재욱은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2) 「신문보도경위 진상조사 결과 보고」 (1966.11.8)

- 동아일보는 1966.11.5 1면에 ‘공화당 내분 심각화’, 11.7 역시 1면에 ‘공화당 공천예비파동 징후’ 제하의 기사 보도
- 중앙정보부 동아일보 파견직원 기사의 출처를 파악키 위해 11.8 이웅희와 면담

(전략)

- 본인은 이상 기사보도 후 모 실장과 11월8일 면담한 일이 있음. 동 석상에서 모 실장은 기사의 출처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바랐음
 - 본인은 동 요청에 대해서 동 기사의 필자는 밝히기를 거절했지만 기사 출처에 대해서는 직업상 일정한 선 이상을 밝힐 수 없다는 고충을 얘기했음
 - 그러면서 본인은 동 기사에 담겨진 내용이 공화당 국회의원 ○○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 실장에게 기사출처는 대충 많은 공화당의원들이라고 말했음
 - 모 실장은 그렇게 막연한 기사출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명확한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했음 (후략)³⁵⁹⁾
- 결국 중앙정보부는 1966.11.8 ‘기사의 근거를 규명’ 하기 위해 정치부 기자 이웅희(李雄熙)를 소환조사하였으나, 이웅희는 ‘공화당내 국회 간부 등의 구체적 인적사항은 지명치 못하겠다 완강히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359) 국정원 보유자료

(3) 「대한일보 불순기사 보도경위 조사보고」 (1967.6.21)

- 대한일보는 ‘1967.6.8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UPI 통신 워싱턴발 1967.6.20자 기사를 ‘명백한 부정 있었다’, ‘미 관리들 6.8 총선결과 주목’ 이라는 제목으로 6.21 번역 3단기사로 보도
- 중정은 6.21 대한신문 편집국장 박용래와 외신부장 강두순을 소환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의견 보고

4. 조치의견

외신 기사를 번역 국내기사화한 내용을 원과 대조책임을 맡은 외신부장인 강두순은 외신부기자인 윤건일이 번역한 동 기사를 검토함에 있어 해석상에 착오 없었음을 인정, 기사화를 결정한 것이며, 편집국장인 박용래 역시 신문제작 과정에서는 의식적으로 불순기사 내지는 해석상의 착오를 발견 못하였다고 인정됨으로 문제점인 “Irregularity”에 관한 어의는 사전에 의하면 불규칙, 변칙, 고르지 못한 것, 반칙, 불법, 난잡한 행실 등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한 부정 운운”으로 번역한 외신부기자 윤건일에 대한 정부비방에 관한 목적의식 유무 및 동 신문사 간부 등의 지시 유무를 수사 후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합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2판 인쇄 전 편집국장 박용래(朴容來)가 ‘국내 사정에 비추어 좀 크게 취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가판(2판)에는 ‘부정처리 주목’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제목도 1단으로 줄여 인쇄하다가, 중앙정보부 언론팀의 요청에 따라 윤전기를 멈추고 동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고 인쇄케 함으로써 서울시판 500여부 외엔 동 기사의 게재가 없게끔 하였다 함

(4) 「동아일보 석유화학 합작투자 관계기사 보도경위 조사결과 보고」 (1973.9.12)

- 동아일보 1973.9.8 1면 톱으로 ‘4.5 정유제품 국내공급 우선’ ‘6정유도 실수요자 선정기준 변경’, ‘상공부, 일측 투자희망업체에 통고’ 제하의 기사 보도

- 동 기사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허위보도로 물의 야기’ 라는 제목으로 9.10 중요보고

「(전략) 이는 일본신문에 김대중 사건에 대한 한국의 보복조치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동경발 AFP 동양기사에 근거된 것임

이에 대해 상공부는 9.8, 11:00 대변인이 상공부 출입기자 전원에게 동 기사가 전연 허위이며 김대중 사건과는 더구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 발표하는 동시 한일관계를 고려, 보도치 말 것을 요청 (중략)

(동아일보의 보도는) 일본신문이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시켜 김대중 사건을 확대시키고 한일경제관계에 썩기를 박으려는 고의적 허위보도를 뒷받침하여 한국측이 김대중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한 것으로 인식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중략)

(동아일보의 보도는) 9.7자 조선일보 사설 (선우 휘 집필)에 따른 반발로서 KT사건과³⁶⁰⁾ 연관지어 고의적으로 경제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한 저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제 2의 조선일보 사설사건이 동아일보에서 자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방지한다는 일환책으로 관계자의 저의를 연행 조사하여 엄중경고조치 하겠음」

- 중앙정보부는 9.10 오후 泰哲洙 편집국장대우, 李採柱 경제부장, 閔丙文 상공부출입기자를 연행 조사하였고, 동아일보 9.12 1면에는 ‘4.5 정유 실수요자 조건 전량수출원칙 불변, 상공부 공식 발표’라고 9.8 정정한 기사 보도

- 이어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등 연행에 따른 반응’ 이라는 제목으로 중요 보고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

동 사건으로 인해 편집국장 대우 등 3명을 연행조사, 특히 추석 전일 저녁에 연행했다는 데 대해 사건의 경중에 앞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으나 적극적인 반발양상은 노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한편 동 강경책이 미치는 데 동아조정의 심리적인 효과는 거양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차 기자들의 반발 가능성 및 보도 경화(硬化)가 예상됨

360) ‘KT사건’은 ‘김대중납치사건’을 말함

○ 한편, 상기보고 내용 중 다음 내용들은 당시 언론보도환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태철수 편집국장대우 반응 중

중요보도에 대한 삭제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삭제요구 또는 통제가 설득력이 크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로부터의 공식요청이 없어 보도삭제의 필요성 여부에 회의적이며 취재원이 확실했다는 점에서 계속 보도했던 것이다」

- 이채주 경제부장 반응 중

상공부가 대변인을 통해 경제부장도 아닌 출입기자 민병문에게 2판 신문이 나올 무렵에야 공식요청도 아닌 비공식 관변소식통을 인용 미온적으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허위보도임을 내세워 보도삭제를 요청해 놓고...동아일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 (중략)

중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중정에서 안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인 보도삭제 및 협조요청이 아쉽다 (중략)

언론인의 연행은 편집국내에 자극이 되고 있으며 취재원이 강제로 밝혀짐에 따라 취재난은 가중될 것 (중략)

정부의 언론조정은 중정내 OO실의 일원적인 채널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기자 반응 중

정부의 차원높은 대일 정치적 포석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 친정부 기사란 평이 있었는데 연행이란 이해할 수 없다.

동아일보가 정부에 대해 90%이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문제가 됐다고 하여 연행조사를 받게 된 것에 실망을 느끼고 계속 협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되며 동료기자들의 감정적인 폭발이 없을까 우려된다

(5) 「반공법 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 보고」 (1974.6.3)

○ 중앙일보는 1974.5.30 석간 5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란에 ‘진보당 사건’을 다루면서, 과거 진보당 간사장이었던 윤길중이 기고한 글을

‘진보당은 죽산의 보람과 애환 담겨’, ‘평화적인 정권교체 외치다 형장의 이슬로’라는 등의 제목으로 게재

- 동 기사가 ‘진보당과 조봉암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고 진보당을 소위 적화혁명 역량이었다고 극찬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중앙정보부는 당시 편집국장 金寅昊, 편집부국장 金東益, 정치부 기자 李英石, 편집부 기자 趙南照, 편집부 기자 金洙保, 집필자 윤길중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 각서 등을 징구한 뒤

- 다음과 같은 ‘조치의견’을 보고

본건 혐의자 등의 행위는 반공법 제4조에 해당되는 범죄이으나 복귀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복귀의 대남전략에 부합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하여 깊이 뉘우침과 동시에 74.5.30자 3,4판(22만부)에 대한 동 기사를 전면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서약을 하고 있음으로 엄중경고 방면함이 가하겠습니다

- 이 사건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연재 하루 만에 중단

라) 정책 비판 기사

(1) 「조선일보 농림문제 과장보도 경위 조사결과 보고」 (1979.6.19)

- 조선일보는 농촌실정을 구체적으로 취재해 총 11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으로 그 첫 회를 1979.6.14 1면에 ‘방황하는 농촌 - 본사 전국취재팀 현장르포’, ‘새 농정을 펴야 한다’ 등의 제하로 보도
- 중정은 ‘보도내용을 현지 및 관계기관에 확인’한 뒤 6.15 ‘조선일보 보도내용 현지확인 결과’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보고

3. 결론

- 보도내용중 주요부문 20개 항목을 각 지부에 확인한 결과
 - △ 13개 항목은 보도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 △ 6개 항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 △ 1개 항목은 확인 중에 있음
- 보도내용은 대체적으로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아니나 농촌의 어두운 면만을 집약 부각시켜 1면 머릿기사로 취급함으로써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음
- ‘대체적으로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동 기사를 ‘과장보도’로 규정, 사장, 편집국장 그리고 해당기자들을 중앙정보부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
- 중앙정보부는 소환한 기자 4명에게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각서 등을 징구받은 후 15일 방면
- 중앙정보부의 OO국은 6.15 기사 작성된 해당지부에 기 송고된 기사내용과 관련 해당지역 주재기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규명해 6.16기한 보고를 지시하였고, 각 지부들은 6.16 본부로 보고
 - *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취재경위, 사실을 왜곡 취재 송고한 경위, 농촌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 취재한 저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또한 중앙정보부는 기사를 취재했던 조선일보 인천, 춘천, 충주, 금천, 포항, 부산, 순천 주재기자 7명을 추가로 서울 본부로 소환 조사하고 6.18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

사실과 상이한 내용을 취재보도한 본사 최준명, 민경원 등 2명과 인천주재 기자 신원철 등 각 지 주재기자 7명 도합 9명의 행위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1가 (유언비어 유포) 위반 범중이나 사안이 경미하고 신문사측에서도 사장 방우영, 편집국장 신동호 등이 사전 기사내용을 확인치 못한 과오를 시인, 향후 자숙하여 이러한 사례 없을 것임을 서약하는 일방 본인들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각서 징구 후 엄중 경고 방면(6.16 16:00)

한편 국정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기자협회측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앙정보부에 소환된 많은 기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³⁶¹⁾

- **동아일보 안성열 기자 환문** : 동아일보 안성열 기자가 1969년 6월 중순쯤 며칠동안 특정기사와 관련 없이 중앙정보부에 환문 당했다. 당시 이 사건은 신문에서 일체 다루지 않는 등 내막을 전혀 알 수 없었다.
- **조선일보 기획연재물 ‘선거바람… 민심따라’ 파문** : 1967년 2월 25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조선일보 정치부 남재희 부장, 김용태 차장대우, 이종구 기자, 박범진 기자 등 4명이 같은 해 2월 19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된 ‘선거바람… 민심 따라’ 제하 기획기사와 관련, 임의동행 형식 또는 강제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가 이틀만인 27일 저녁 풀려났다. 조선일보 1면 기획기사로 연재된 ‘선거바람…’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다룬 내용이었다.
- **중앙청 출입기자의 ‘쓰지 않은 기사’** : 1967년 11월 7일 대한일보 김춘빈 기자(정치부)와 경향신문 김성일 기자(정치부) 등 2명의 중앙청 출입기자가 개각 취재경위와 관련, 각각 자택에서 정보기관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두 기자는 이날 아침 10시경부터 중앙일보 심상기 기자(정치부), 서울신문 유병무 기자(정치부)와 함께 김원태 무임소장관과 이석제 총무처 장관을 만나 개각여부와 그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아는 바 없다”는 두 장관의 말을 듣고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뒤 각자 데스크에 취재경위만을 전화로 연락했다. 기사화하지도 않은 개각여부의 취재경위에 대해 정보기관원이 두 기자를 각각 연행 조사한 사건이었다.
- **중앙일보 박영수 기자 환문사건** : 1971년 7월 20일 중앙일보 박영수 기자(대전주재)가 19일자 7면에 보도한 ‘권총 지닌 여인 음독, 거리서 기절, 주민신고로 입원, 난수표와 가명 쓴 증명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가 돼 대전지검에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일 저녁과 21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김천수 사회부장과 남상환 기자(지방부)도 중앙정보부에 환문 당했다.
- **주간조선 청와대기사 파문** : 1971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일보 김경환 출판국장, 주간조선 이규태 기자, 박광성 기자, 최장학 기자

361) 『한국기자협회 30년사』, 한국기자협회, 1994, pp308-316.

등 4명이 주간조선 8월 15일자(제147호)에 보도한 ‘날으는 50억짜리 청와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중앙정보부에 차례로 환문됐다가 20일 풀려났다.

- **대한일보 강제징집보도 파문** : 대한일보 송선무 기자가 1971년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이 날짜 1판에 보도한 ‘전원 징집 난색, 병무청 교련 거부 학생’ 제하의 기사와 관련,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 10분 풀려났다.
- **통신사 적십자회담 보도 파문** : 1971년 10월 15일 오전 10시 합동통신 강정상 기자, 동화통신 한중기 기자와 오준동 기자, 동양통신 유민수 기자와 전제열 기자(이상 사회부)가 제 4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한적제외에 대한 한적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사전 보도한 것과 관련,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6시쯤 풀려났다.
- **국제신보 장양수 기자 연행사건** : 국제신보 장양수 기자가 1975년 2월 3일 새벽 0시 30분 1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로 1판에 보도한 ‘부산시청 공무원 42%가 음성수입 의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연행됐다가 다음날인 2월 4일 낮 12시 40분쯤 풀려났다.
- **중앙일보 ‘분수대’ 필화** : 중앙일보 최종률 주간은 1975년 4월 22일자 1면 ‘분수대’란에 패망한 월남 티우 대통령의 사임에 관해 ‘티우’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과 관련,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철야심문을 받았다.
- **경향신문 김현섭 기자 학원정상화 보도파문** : 경향신문 김현섭 기자(사회부)는 1975년 7월 25일자에 ‘학원정상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제하의 기사를 특종보도 했다가 중정에 연행돼 심문을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며칠동안 임의출두 형식으로 김 기자를 불러 기사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추궁했다. 이 법안은 김 기자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져 결국 입법에 실패했다.
- **동아일보 강성재 기자 연행사건** : 동아일보 강성재 기자는 1977년 5월 23일 공화당 김용태 원내총무가 미 8군 참모장 싱그러브 소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것과 관련,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취재동기와 보도경위에 대해 심문을 받고 25일 풀려났다. 중정은 이 기사가 “김 의원이 싱그러브 소장에게 주한미군 철수반대 소신을 백악관에 건의하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는 언론사 및 언론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했으며 문제기사가 발생하면 연행하여 조사했다. 특히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사 경영진과 편집간부, 기자 등을 연행 조사했다. 기사내용이 당국의 ‘협조요청’ 또는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처벌이나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나온 기자들은 한결같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함구해 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동아일보는 한 경험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대우, 수모,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환멸, 신은 과연 알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 때문이다.”³⁶²⁾

1) 안기부 개입 기자연행 사건³⁶³⁾

- **한국일보 북한관련 보도파문** : 1982년 3월 24일 한국일보 조두흠 편집국장은 소련에 망명중인 북한 노동당 전서기 임은이 일본에서 발간한 ‘김일성 왕조설립 비사’라는 책 속에서 김의 정체, 피의 숙청사 등 북한정권수립 관련내용을 송고해 온 송효빈 특파원(도쿄주재)의 기사가 문제기때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조 국장은 북한관계 기사를 당국의 허가 없이 게재한 데 대해 집중 추궁받고 풀려났다.
- **조선일보 장영자 사건 방담기사** : 1982년 7월 18일 조선일보 사회부 안병훈 부장 이혁주 김창수 기자는 이날 자 10면에 ‘칼날 같은 검찰신문 안 보였다’ 제하의 이철희·장영자 사건 방담기사와 관련, 안기부에 연행돼 기사 게재의도와 취재원 출처 등에 관해 집중 심문을 받고 다음날 풀려났다. 이 방담기사는 이·장씨가 구속된 뒤 진행된 네 차례의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 **조선일보 ‘김일성 사진’ 게재사건** : 1983년 3월 21일 조선일보

362) 「다큐멘터리 5공의 언론수난(13)」, 동아일보, 1988년 11월 16일.

363) 「기자협회 30년사」 한국기자협회, 1994 발췌요약 하였다.

인보길 편집부국장을 비롯, 발행인 유건호 부사장, 안병훈 편집국장, 허구 월간조선부장, 염세훈 기자(편집부) 등 5명은 3월 22일자 초판 5면에 서울대 김학준 교수의 연재기사 ‘역사는 흐른다’ 제하의 기사에 들어간 북한 김일성 사진이 문제가 돼 안기부에 연행됐다. 이들은 안기부에서 사진출처와 게재경위 등을 추궁받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풀려났다.

- **한국일보 노진환 기자 연행사건** : 1984년 1월 7일 한국일보 노진환 기자(정치부)는 ‘미·남 북한 3자회담’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문제가 돼 안기부에 연행됐다. 이 기사는 “북한이 아웅산 테러사건 직전 중공을 통해 미국에게 미·남북한 3자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한국 어깨 너머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려는 저의가 담긴 홍계‘라는 내용이다. 노 기자는 안기부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입수한 배경과 출처를 추궁받은 뒤 다음날인 8일 풀려났다.
- **경향신문 학원안정법 사건** : 1985년 7월 25일에는 ‘학원안정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최초보도 관련, 경향신문 당시 손광식 편집국장, 강신구 사회부장, 홍성만 정치부장, 이실 정치부차장, 김지영 정치부기자 등 5명이 연행돼 1박 2일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들 역시 고문과 함께 취재경위 및 취재원 등에 대해 추궁받았다.
- **동아일보 ‘중공조종사 대만망명’ 보도사건** : 1985년 8월 29일 동아일보 이채주 편집국장과 정치부 이상하 부장, 김충식 기자는 이날 자 2판 정치면에 보도된 ‘중공기 조종사 대만 보내기로’ 제하의 기사가 문제가 돼 안기부에 연행됐다. 이 기사는 ‘전북 이리시 근교에 불시착한 중공 경폭격기의 승무원들 가운데 대만 망명 희망자는 대만으로 송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안기부에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보도하게 된 경위와 출처는 물론 이 사건과 관련 없이 그동안 보도된 다른 기사에 대해서도 심문을 받았다. ‘엠바고’도 붙여지지 않은 데다 정부가 곧 공식 발표를 한 이 기사에 대해 연행된 언론인들은 납득이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하고 8월 31일과 9월 1일 풀려났다.
-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불고지죄 사건** : 안기부는 1989년 7월 2일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가 서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윤 기사를 철야심문하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는 또 윤

기자가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7월 12일 오전 7시 공권력을 동원,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난입해 이를 저지하던 편집국 기자 12명을 강제연행하고 20여분 신문사를 뒤져 윤 기자의 사물함에서 서 의원 방북 관련 사진 21장 등 취재자료를 수거해 갔다.

- **시사토픽 객원기자 연행사건** : 1990년 8월 5일 오후 2시 주간지 ‘시사토픽’(국민일보 발행) 객원기자인 노가원씨(본명 노종상)이 8월 2일 자에 쓴 ‘노 대통령에 반기, 김복동 대권공작’ 제하 기사와 관련, 노원구 공릉 2동 자택 근처에서 잠복대기 중이던 안기부 요원 6명에게 연행되었다가 6일 오후 1시경 풀려났다.³⁶⁴⁾

이밖에 1984년 1월 7일 북한의 3자회담 제의와 관련, 동아일보 이도성 정치부 기자가 조사를 받는 등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언론인들이 많았다.

2) 만화·소설 관련 안기부 연행

- 한국일보 안의섭 화백 ‘두꺼비’ 필화 : 한국일보 만화가 안의섭 편집위원은 1986년 1월 19일 이날 자 11면에 레이건 종양수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게재한 4단 만화 ‘두꺼비’가 문제돼 안기부에 연행됐다. 안 위원은 안기부에서 “이 만화가 국내상황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로 그려진 것이 아니냐”는 등의 추궁을 받고 21일 새벽 풀려났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00여명은 안기부의 안 위원 연행을 규탄하는 철야농성을 벌였다. 안 위원이 집필하던 한국일보 ‘사회만평’과 ‘두꺼비’의 연재가 1987년 8월 24일까지 1년 7개월여 동안 중단됐다.
- 1981년 7월 29일 한수산의 신문 연재소설과 관련, 중앙일보의 당시 손기상 국장대리 겸 문화부장 등이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1981년 5월 14일자 중앙일보 연재소설 ‘욕망의 거리’에는 광촌을 찾아가 그곳 아낙네들과 악수를 나누는 정부 고위 관리가 묘사되어 있었고, 또 같은 소설 22일자 연재분의 대화 가운데는

364) 『기자협회 30년사(발췌 요약)』, 한국기자협회, 1994, pp316-323.

“제복… ” “군대 갔다왔다는 얘기… ” 운운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젊은 여성이 부유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연애소설이었다. 이 부분 중 앞의 것은 정부 고위관리를, 뒤의 것은 군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5월 29일 손기정 국장대리가 1차로 연행돼 철야로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풀려나 귀사했다. 이날 작가 한수산도 제주도 자택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한씨와 친분이 있던 정규웅 편집위원, 권영조 출판부장, 이근성 출판부 기자도 30일 오전 9시 출근과 동시에 연행됐다. 이들 세 사람은 6월 1일 하오 풀려나기까지 70여 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언론계에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³⁶⁵⁾ 이 사건 당사자들은 풀려난 뒤에도 대부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한수산은 일본으로 외유를 떠나는 등 고통을 겪었다.³⁶⁶⁾

다

신동아·월간조선 제작 방해사건(필화사건 참조)

전두환 정권의 강압통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불러 왔고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6.29선언으로 일단 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6.29선언에는 언론자유 보장이 중요 항목으로 등장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해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현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제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365) 김동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 실태」,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7년 11월호, p523.

366) 「미디어 오늘」, 1996년 2월 21일, 8면.

이 선언으로 국민 대다수는 이제야 한국에서 언론통제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6.29선언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에 월간지 ‘신동아’와 ‘월간조선’ 제작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한 이후락씨 증언기사에서 발단된 이 사건은 기자들의 저항과 당국의 강경입장이 맞서 정치·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9월 28일 이윽희 문공장관이 발표문을 통해 “신동아 및 월간조선의 이후락씨 인터뷰기사 취급은 양 언론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인쇄·출판될 문제이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³⁶⁷⁾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일동이 9월24일 채택한 ‘신동아 제작탄압에 대한 공개질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계의 시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①국가기관의 동아인쇄공업(주)의 강제점거에 의한 신동아 10월호 보도억압은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6.29선언’에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일 뿐’이라고 언명한 언론자유 보장을 명백히 식언한 것이 아닌가? ②정부가 동아인쇄소를 강점하고 신동아 보도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로써 헌법 위반이 아닌가? ③이미 14년 전에 발생하여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완전히 타결을 보았고 중앙정보부의 개입 등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대한 세세한 사실이 국내외에 충분히 주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문제를 이유로 신동아 출간을 막는 것은 오로지 정부 기구의 안전과 위신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④만에 하나 신동아 기사내용 중 실정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도되지 않은 기사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억류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⑤김대중씨 납치사건의 진상보도가 국민의 기본적 알 권리를 제약해야 할 만큼 이른바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것인가?”

367) 김동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 실태」,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7년 9월호, p519.

노태우정권은 직접 보도지침을 시달하는 데서 벗어나 음성적으로 언론인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언론사 내부의 정보를 얻는 한편, 정부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담당 공무원이 정부 경비로 개별적으로 접촉해 접대하는 과정에서 언론조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는 방식보다 한 사람씩 불러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언론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좋은 방식이었다. 또한 접촉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하므로 언론인들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언론계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1988년 국회언론청문회가 열렸을 때 국회 문공위원들은 문공부를 현장 방문해 캐비닛에서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를 찾아내 공개했다.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는 당시 기자협회보에 공개됐고 이후 잡지 ‘여론시대’에서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현 정권과 언론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가’를 발간했다. 여론시대가 공개한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는 1987년 5월, 6월, 11월, 12월, 1988년 3월, 4월의 활동현황 보고서이다.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는 신문사 사장에서 말단기자에 이르기까지 개별 접촉으로 이루어진 통제였다. 보도지침이 직접적인 강제성을 동반한 규제였다면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는 ‘협조와 조정’이란 미명하에 우회적으로 행해진 언론통제이다.

만찬이나 오찬을 통해 고급음식점에서 행해진 이 활동은 기사의 축소 또는 삭제, 컷이나 제목의 크기 변화 요구, 기사나 제목 중에 주요단어 사용여부, 텔레비전 방송뉴스의 경우 뉴스순서와 시간 조정요구 등으로 결과되었음을 볼 때 명백히 알 수 있다.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일시 : 1987.0.00

장소 : 서울 가든호텔 아수카

구분 : 오찬

접촉대상자 : MBC보도국장 이○○

경비집행내역 : 수령액 50,000

집행액 38,540

잔 액 11,460

보고자 : ○○○

{활동접촉결과보고(대화내용/조치 의견 등)}

- 교수시국선언에 이어 기자선언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으나 언론연수원 동기라는 연대감을 악용하여 일부사의 기자들이 선동하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 문공부의 방송조정장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6일 공보국장이 특집담당 부국장을 불러서 학원에 면학분위기를 강조한 프로를 중용하고 특히 뉴스 데스크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보도국 관할 사항은 정책실을 통해서만 협의했으면 좋겠다.³⁶⁸⁾」

노태우 정권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항의했다.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작 1주일 앞두고, 1988년 4월 19일 언론담당관은 동아일보 성낙오 부장을 ‘빅토리’로 초청해 선거예측기사 부분 가운데 표제부분까지 들먹이며 항의했다.

“최근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4월 18일 1면 톱기사는 총선 취재반이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한 것인데, 민정은 87석, 민주, 평화, 공화당은 죄다 합해도 74석으로 나타나 민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정작 제목에서는 ‘민정 과반의석 힘들듯’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정 과반의석 힘들 듯하다는 표제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하여 담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인 민정당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게 일반여론입니다. 노대통령, 채문식 대표, 그리고 당 간부들이 같은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은 야측의 대어 비난을 한 데 묶어서 톱으로 다뤘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문은 어느 당의 책략이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제작 방법입니다.”³⁶⁹⁾

368)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 『여론시대』 별책부록, 1989년 1월호, p10.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가 정치, 노동, 학원,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6월 민주항쟁 이후 정부 당국자에 의해 근절된 것으로 확인된 보도지침이 방송국에 계속 시달되고 있었다.³⁷⁰⁾ 홍보정책실 요원들이 매일 신문, 방송 등의 보도방향에 대해 언론사 편집인 등을 직접 만나 지시하고 기자들의 동태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공부 보도과가 작성한 ‘언론인개별접촉보고서’에는 일시, 장소, 보고자, 접촉대상자, 접촉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보도지침이 계속 전달된 것이 밝혀졌다.³⁷¹⁾

1988년 12월 12일 열린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이철 의원은 “문공부의 공보실에는 상황실 근무일지를 쓰고 있는데 홍보조정이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일지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상황과 조치라는 기재란이 있는데 1988년 2월 9일 안 모라는 근무자가 작성한 일지에는 안기부 OO과 이 기획관이 연락해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88년 2월 12일에는 서 모라는 근무자의 기록에는 “안기부 기획반, 조선일보 2면에 ‘미국이 88인권보고서 한국부분 기사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고 한겨레신문 창간사를 분석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철 의원은 이를 토대로 “당시 홍보조정실이 지금은 공보실로 이름만 바뀌어 문공부에서 아직도 안기부나 타 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것을 보고한다”고 발언했다.³⁷²⁾

369) 상기 보고서, p192.

370) 「아직도 보도지침 언론」, 『말』 14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7년 10월, pp11-14.

371) 김영선, 『한국의 정치권력과 언론정책』, 전예원, 1995, p75.

372) 이철, 『제144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4호, 1988, p16.

IV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언론을 통제했던 시기에 유신찬양, 신군부 찬양 등 언론의 여론 왜곡들이 일어났다.

이 시기의 언론통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 본 조사에서는 언론의 왜곡에 국가 정보기관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언론자유를 침해했던 사례를 확인하고자 했다.

1 조사결과 및 의의

세간에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의 증언과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었으며, 이는 비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보편성을 띤 결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증거와 자료를 접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증언과 기록으로 보아 개연성은 충분하나 실증할 수는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필화사건은 물론 언론자유실천탄압사건, 보도지침, 언론인 연행 등 언론 통제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창설 초기부터 중앙정보부는 주로 정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한 사후통제를 실시했다. 즉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연행하여 취재·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때로는 언론인을 구속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언론인들에게 일종의 위협효과를 낳기도 했다.

중앙정보부의 언론통제는 사후통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방식도 매우 중요했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문제삼아 언론인을 연행해 조사하거나 구속하던 사후통제에서 더 나아가 아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심지어는 비판적인 언론사나 언론인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전통제 방법을 사용했다.

각종 필화사건에서 중앙정보부는 사찰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연행해서 조사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잡지들의 폐간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금융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신동아·월간조선 사건의 경우 직접 제작방해까지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아·조선 등 유신정권 아래 발생한 기자 강제해직 사건의 배경이 되는 언론자유실천운동, 노조 결성 등에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중앙정보부가 기사내용을 문제삼음으로써 기자들의 언론자유 실천운동을 자극한 것은 물론, 광고통제, 해직기자의 언론민주화운동탄압 등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가 직접 행한 보도지침 사례, 그리고 5공 정권 보도지침 이행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였다. 3선 개헌이후 시작된 박정희 정권의 보도지침의 시달에는 중앙정보부가 전권을 행사했고, 문화공보부와 각 부처의 공보관 등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5공시절에는 보도지침을 형식상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내렸지만 실제로 그 골격은 청와대 정무비서실과 공보비서실, 안기부, 보안사 등에서 만들어졌다.

언론인 연행과 사찰 관련해서는 그 동안 피해자 증언이 있었지만 공식적 문서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국정원 보유자료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였다. 일부이지만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기관의 조사가 단순 조사차원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었으며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였지만, 가장 큰 성과는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던 자료에 국정원 자료를 보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언론통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의 한계 및 제언

국정원 자료를 통해 세간의 의혹을 확인하고 산재한 자료를 조합하여 전체 윤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성과이기는 하나 본 조사에서 아쉬운 점도 많다.

첫 번째는 국정원의 과거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 있지 않은 데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가 보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실증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기관 출신의 과거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수적인데 이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다.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대해 내부 관련자들의 정확한 증언이 매우 중요함에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온전한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였다.

세 번째는 언론통제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언론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언론내부의 조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과거 언론통제의 진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목표 달성에 미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것에 대해 더 정확한 접근이 가능했고, 국정원이 오류를 스스로 밝히는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정확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원 자료의 재분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익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 그 비밀로서 유효성이 소멸한 자료의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정리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시간의 한계로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정원 내부 관련자들의 증언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 밝힐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증언 가능자들의 사후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서론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4. 결론
-

I. 서론

1. 조사의의 및 목적 · 267
 2. 조사방향 및 조사의 한계 · 269
 3. 조사방법과 조사현황 · 269
-

- 가. 자료조사 / 269
- 나. 면담조사 / 270

II. 조사내용

1절. 정보기관 개입 주요의혹 사례 분석

1.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과정 · 271
-
- 가. 한국노총 설립과정과 중정 · 271
 - 나. 한국노총, 각 산별위원장 선거와 중정 · 278
 - 다. 한국노총 활동과 중정 · 281
 - 라. 소 결 · 283
-

2.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탄압 · 284

- 가. 도시산업선교회의 설립과 활동 / 284
 - 1) 산업선교의 시작 / 284
 - 2) 도시산업선교 활동과 유신정권의 대응 / 285
 - 가) 노총과 도시산업선교회의 갈등 / 285
 - 나) 유신정권과 도시산업선교회의 충돌 / 285
- 나.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중정(안기부)의 탄압책 / 286
 - 1)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내사 / 286
 - 2)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탄압 / 289
 - 3)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노동자에 대한 탄압 / 291
 - 4) 도산 조직와해를 위한 시도 / 295
- 다. 소 결 · 298

3.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의 확대 · 300

- 가. 사건개요 / 300
- 나. 핵심의혹 / 301
- 다. 조사내용 / 301
 - 1) 사건발단과 수사경위에 대해서 / 301
 - 2) 인권의 문제-고문·불법구금 등의 사실여부와 실태 / 304
 - 3) 사건의 왜곡선전과 확대홍보 / 308
 - 4) 사건의 목적성 / 311
- 라. 소 결 / 315

4. 1987년 이전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 317

- 가. 동일방직 / 317
- 나. 반도상사 / 329
- 다. YH노조 사건 / 337
- 라. 청계피복, 원풍모방과 한국콘트롤데이타 / 340
- 마. 기 타 / 344

5. 블랙리스트와 위장취업자 관리대책을 통한 노동통제 · 348

- 가. 주요 의혹점 / 348
- 나. 조사내용 / 348
 - 1) 「블랙리스트」의 실체 / 348
 - 2) 중정(안기부)의 「블랙리스트」 관리와 활용 / 351
 - 3) 위장취업자 관리대책을 통한 노동통제 / 355
- 다. 소 결 / 363

6. 1987년 이후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 365

6-1. 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공작 · 365

- 가. 사건의 실체 / 365
- 나. 조사내용 / 366
 - 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출범경과와 전교조 탄압의 배경 / 366
 - 2) 『청와대 대책회의』 문서로 드러난 전교조 종합대책의 실상 / 368
 - 3) 교원노조 와해대책에서 안기부의 역할과 개입사실 / 369
- 다. 소 결 / 377

6-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기업연대회의 탈퇴 및
조직와해 활동 / 379

가. 사건개요와 주요 의혹사항 / 379

나. 조사내용 / 380

1) 전노협의 실체 / 380

2)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가입탈퇴 및 조직와해를
위한 안기부 개입실태와 양상 / 381

다. 소 결 / 387

2절.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개입양상과 실태

1. 노동대책회의(관계기관대책회의),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설치
및 활동 / 389

가. 노동대책회의(관계기관대책회의) 구성과 현황 / 389

나. 공안합동수사본부의 구성과 현황 / 391

2. 노동대책회의와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중정(안기부)의
역할과 개입 / 393

가. 노동대책회의를 통한 노동통제 개입양상 / 393

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통한 노동통제 개입양상 / 403

III.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1절. 권위주의 국가 노동통제의 전개

1.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의 개념과 유형 · 407
2. 억압적 배제체제의 전개와 노동통제 · 410
3. 1987년 노동체제와 헤게모니 배제전략 · 419

2절. 국가의 노동통제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1.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통제와 공안기구 · 424
2. 중정·안기부의 노동통제 유형과 특성 · 431
3. 중정·안기부의 노동통제 특성과 함의 · 464

IV. 결 론 · 473

1 조사의의 및 목적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통해 새로운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 경제개발정책을 강행하였고 경제성장은 반공과 함께 국가가 달성해야 할 최고의 목표였다. 권위주의 정권은 당면한 국가적 목표달성을 내세워 사회전반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제를 하였다.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점차 강요된 저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국가정책에 항의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저항하였다. 1970년대 이후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강해지자 정권은 이를 통치기반의 위기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였다. 정보기관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며, 나아가 체제반대세력’으로 몰아갔다. 권위주의정권은 취약한 정통성 확보와 정치적 위기상황 타계를 위해 노동자들의 호소와 투쟁을 왜곡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인식과 논리로 국가권력은 당시 노동운동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면서 일상적으로 노동운동을 통제하고 개입해왔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중정·안기부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정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 노동

* 본 노동편 보고서 집필에는 외부전문가로 노중기, 박승옥님이 참여하였다.

분야 조사활동은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당시 중정·안기부에 의한 노동통제·개입 사실과 양상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실행과정에서 중정(안기부)의 역할과 당시의 중정(안기부)의 노동통제 관리 시스템을 밝히는 것을 중점 조사목표로 설정하였다. 중정·안기부의 사회분야 전반에 걸친 통제의 수준과 실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동통제·개입의 양상과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실위 노동분야 조사보고서는 국정원이 과거의 상처와 치부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고해성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과거 정보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약하였는지, 민주노조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때로는 탄압하였는가를 가감 없이 담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 분야 조사활동의 의의는 과거 정보기관의 노동통제·개입 실상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에 있다.

진실위 노동분야 조사는 국정원이 과거의 어두웠던 노동인권탄압과 부당한 노동통제의 행적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응시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는 용기와 진실한 고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이 민주화시대에 바람직한 정보기관의 활동상을 도출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정보기관의 공권력 남용시비를 둘러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진실위의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사에서 정보기관 개입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보고서는 국정원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2 조사방향 및 조사의 한계

진실위 조사의 방향은 의혹이 제기되는 대상사건 중, 국정원의 자료 존안가능성·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와 시기별 조사대상을 검토하였다. 국정원 자료의 열람과 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공개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사건의 중요도에 비추어 국정원 존안자료의 질과 양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실질적인 조사를 진척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정원 자료에 대한 접근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노동분야와 관련한 자료의 양과 질의 부족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전반적인 노동통제·개입 실태를 종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자료 원문을 통해 해당시기 중정·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개입실태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자료의 제한요인과 더불어 당시 노동문제는 청와대·노동부·안기부(중정)·보안사·검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본 위원회 조사는 중정(안기부)만을 대상으로 노동통제·개입 실상을 확인하고 있는 바 국가권력의 총체적인 노동통제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조사방법과 조사현황

가 자료조사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는 노동분야 검색자료 총 270건 4,272매를 입수·분석하였다.

외부자료로서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창수

사건 관련자료」 1,500매 · 「현대중공업테러」 사건관련 판결문 165매 · 노동분야 대통령보고기록물 120매, 울산지방검찰청에 보관중인 「현대중공업 테러사건」 수사보고자료 200매, 「한국노동자의 사회적 고립」, 「국가의 노동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1987~1992)」 등 다수의 논문 자료와 노동운동 관련 시사지, 계간지, 국회국정감사 보고 자료 2,000여매를 참조하였다.

또한 공개 자료로 『한국노동운동과 국가』 · 『영등포 산업선교회 40년사』 · 『한국노동운동사-고대노동문제연구소-』 · 『70·80년대 민주화운동 실록』 등 서적 총 48권, 논문 12종 3,000여 매중 중정 · 안기부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나

면담조사

보강자료로는 도시산업선교회, 현대중공업 사건,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한국노총, 섬유노조 관련자 등 총 25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II 조사내용

1절. 정보기관 개입 주요의혹 사례 분석

1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과정

가 한국노총 설립과정과 중정

1961년 대한노총을 해산하고 한국노총을 직접 조직한 것은 다름 아닌 중정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결성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중정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였던 조직이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성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란 지각변동 이후 노동자들이 스스로 신규 민주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뒤바꿀 때까지 지속되었다.

물론 이러한 한국노총의 관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은 대한노총이 출범한 초기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하였다. 자유당과 이승만이 대한노총 간부를 임명하던 것에서 중정으로만 그 주무기관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들은 이승만을 대한노총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일까지 벌였다.

한국전쟁으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사라지자 남한에는 오직 대한노총만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노총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비롯한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다수 대한노총 간부들이 자유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었다. 노동조합 간부 자리란 그들의 개인 영리를 위한 감투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이권을 둘러싸고 노총과 산별노조 집행부 안에서 끊임 없는 조직분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¹⁾

1) 2007.1.23. 지OO(전 노총 사무총장) 진실위 면담 참조.

그런데 4·19혁명은 이런 관제 노총에 대항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을 키워놓았다. 교원노조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 같은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을 처벌하였고, 중앙정보부라는 강력한 정보기관을 창설하면서 그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로 노동조합 재편을 포함시켰다. 5·16 군사 쿠데타 정부는 처음부터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억압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위로부터 관리하고자 했으며, 이를 집행한 기관이 다름 아닌 중앙정보부였다.²⁾

1961년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8월 4일 중정은 이규철 등 과거 대한노총 산하 조직의 노조 간부 출신 9명을 지명하여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중정이 한국노동단체재건위 9인위원회³⁾의 인선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2) “군사혁명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동조직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군사정권은 한국노총을 해체하고 노동운동가들을 체포했으며 노동쟁의를 금지했다. 3개월 후에 새로 만들어진 중정(KCIA)는 일단의 노동지도부를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복원]하게 하였다.”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p54, 창작과 비평사, 2002. ; “노동조합 재조직의 전 과정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원보, 『경제개발기의 노동운동』, p65,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보고서.

3) 「사회와 역사(5·16 이후 노동조합재편과 한국 노동체계의 성립, 김준, P103-144)」, 문학과 지성사 99.5.28.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9인) 명단 및 활동

이름	산별	자유당 말기	민주당 시기	재건 조직	한국노총 결성 직후	공화당 시기
이규철	철도	철도노조 부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의장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기수	광산	광산노련 사무국장	광산노련 사무국장	총무책임위원겸 대변인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광조	외기	미군종업원노조 초대위원장	미군노련 부위원장	조직책임 위원	한국노총 사무차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창화	전력	조선전업 위원장	조선전업 위원장	재정책임 위원	전력노조 위원장	
김광수	섬유	대한노총 회계감사위원		위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총 위원장 직무대리
조규동	체신	체신노조 사무국장	체신노조 위원장	위원	한국노총 회계감사	
안강수	운수	자유연맹 총무부장	자유연맹부산역 소화물분회장	위원	한국노총 회계감사	운수노조 위원장
최재준	해상	한국수산업노조 간부	해상노조연맹 간부	위원	해상노조 위원장	노총 회계감사
김준호	금융		진은노련 운영위원	위원	금융노조 국제부장	

재조직을 직접 담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위원회 면담 속에서도 지00·배00·김00 등 몇몇 증언자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1977년~1981년 중정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전 한국전력 노조부위원장 배00의 2007년 1월 17일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5·16쿠데타 이후 군부의 노동계 재편은 전 광산노련 사무국장인 한00와 최고회의 보사분과 위원장인 홍00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에 따라 한기수와 경쟁적 관계에 있던 김말룡 계열의 노조활동가들은 노동계 재편과정에서 배제되게 되었으며 한00와 홍00은 이북 동향 출신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9인 중 대한노총 회계감사 출신인 김00에게 규모가 가장 큰 23개 기업별 섬유노조 지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별사업체의 노조지도부 구성에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정의 노동조합 재조직 실무를 맡은 사람은 지금까지의 각종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5·16 이전 치안국 정보과 경사로 대한노총을 담당했던 전력을 인정받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근무하다 중정에 발탁된 김00이었다. 그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선정해 3개월간의 연구 끝에 노동조합 재조직 보고서 팀을 조직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군정과 중정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조합 재조직에 관심을 갖고 있던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중심인물들은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산별조직을 미리 상정해 놓고 있었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이 같은 방침 아래 중정을 설립한 김종필에게 지시해 한국노총 집행부를 직접 임명했다는 주장도 있다.⁴⁾ 당시 군사정권의 일차 관심은 일사분란하게 정권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조합 조직이었다.

그런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토대로 1961년 7월 중정은 노동조합 재조직 요원으로서 우선 노총 간부 30여명을 선발해서 그 가운데 9명을 지명해

4)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중정 본부에서 한 달 동안 합숙교육을 시켰다.⁵⁾

이들 9인위원회는 그 뒤 일사분란하게 노총 재건과 재편 작업을 시행해 나갔다. 물론 중정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해 노총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재건위를 구성한 다음날인 8월 4일에는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칙과 노동단체 재건 조직요강을 정하고 8월 5일 이를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이 같은 신속한 진행은 중정의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동단체 재건 조직요강에는 용공 및 반혁명분자 발본 배제, 어용, 사이비 노동단체 및 노동지도자의 철저한 제거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원노조와 4월 혁명 후 통합노총의 임시의장까지 맡았던 김말룡 계열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철저하게 탄압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중정은 9인위원회의 노총 재건 작업에 반발하였던 김말룡을 한국노총 출범식 날인 8월 30일 새벽에 전격 연행, 구속조치 하였다.

노동단체 재건 요강이 성명서로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9인 재건위원회는 8월 6일과 9일 회합을 갖고 15개 산별노동조합의 조직책임위원·조직지도위원, 조직연락위원과 조직위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그리고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단위 산별 노동조합 결성대회가 열렸다. 각 산별연맹 결성대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8월 30일 마침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대회가 열리고 한국노총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9인위원회 결성 발표일로부터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노동조합운동 역사상 유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속전속결 조직결성작업이었다.

중정이 만든 한국노총에 대해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도전해온 세력은

5) 당시 군정이 지명한 9인 재건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금속노련 위원장을 맡았던 김 아무개 씨와는 평소 안면이 있었는데, 노총 설립 얼마 뒤 나를 찾아와 고백했다. 61년 7월에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와 같이 가보니 반 정도 안 되는 방에 사람을 앉혀놓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교관이 애국심·(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 대한)충성심을 물으면서 수십 번이나 세뇌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그밖에도 체력훈련, 반공교육과 어떤 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르겠는지 등등을 한 달가량 테스트한 뒤에 내보내 재건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고 내게 말했다. 『한겨레21: 김말룡 인터뷰』, 「노총은 중정이 만들었다.」 (1994.5.5);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승혁은 2006.10.10 진실위 면담에서 당시 노총지도부는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며 노총을 처음 만들 때 9명중 8명이 보도연맹 출신이고 노총 조직국장 1명이 시청 정보과 출신이었다고 진술.

김말룡 중심의 한국노련 세력이었다. 이들은 9인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인 8월 5일 섬유·광산 등 40여명의 산별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전국노동단체 재조직연락위원회’(책임위원 김말룡)를 구성하고 ‘전국노동자 동지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이들은 “노동조합의 재조직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재건되어야”함에도 재건위원회에는 노동조합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많고 9인위원회가 “마치 재조직을 청부나 맡은 것처럼 앞장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8월 8일 9인위원회가 대한노총회관을 힘으로 탈취하려 시도하자 연락위원회 측은 관권으로 축출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경하게 버티고 나왔다. 8월 9일 정희섭 보사부장관은 서울시장과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단체의 건물 및 비품 일체를 한국노동단체 재건위원회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공여”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는 담화문을 발표해 엄중 단속 방침을 천명하였다. 보건사회부는 8월 12일 재건위원회가 제출한 집회허가 신청은 받아들이고 연락위원회가 제출한 집회허가 신청은 거부하였다. 연락위원회는 이런 군사정권의 일련의 경고와 편파조치에 대해 보건사회부가 노동운동을 어용화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중정은 김말룡측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김말룡측의 대한노총회관 점거사건을 계기로 연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하나하나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김말룡과 분리시키는 한편, 보사부를 통해 노동회관을 접수하고 담화문을 발표해 연락위원회를 압박하는 양면 전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일부 연락위원회 조직들이 재건위원회 쪽으로 돌아섰고 마침내 김말룡은 8월 29일 노동운동 일선에서 은퇴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보사부 당국이 어용 사이비 운동자와 결탁하여 전국의 재조직을 청부시키고 집회의 일방적 불허, 노동회관 및 노조 재산의 불법인도 지시, 노동조합 결성 대의원 지명제 등 민주노동운동의 완전말살을 기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김말룡은 보사부 당국을 지목하였지만 사실상 중정의 방침에 대해 저항한 것이었다.

또한 김말룡은 한국노총 결성대회가 열리는 8월 30일 새벽 군정당국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체포·연행돼 전격 구속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세력의 도전은 중정에 의해 일단 진압되고 한국노총 체제는 순조롭게 출범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민정이양이 선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민간인 정치활동이 허용되자 김말룡 세력은 다시 거세게 한국노총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2월 17일에는 철도·광산·외기 등 산별노조에서 나온 3백여 명이 모여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후 기존 한국노총 조직과 별도로 제2노조 결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정은 1963년 4월 17일 복수노조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노련 계열의 인천제강 노조 위원장을 불법노조 활동 혐의로 구속하였고, 군사정권의 이 같은 강경조치로 이후 한국노련 소속 제2노조들은 급격하게 활동이 위축되었다. 게다가 1964년 1월 7일 김말룡과 김대연이 제기한 한국노총 창립대회 무효소송도 소송인들의 석연치 않은 공판 불출석으로 기각되어 법률상의 근거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1967년 전국연합노조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김말룡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국노총은 즉각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하였고, 모든 노조활동을 중지시켰으나⁶⁾ 김말룡은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개혁을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군사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해 왔다.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기피인물이자 중정의 주요 사찰대상이었으며 김말룡의 활동은 중정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되고 제한되었다. 이는 국정원 보유자료인 「자동차 노조간부 비위사실 이첩」 (73.36)

6)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p224,- “전국연합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지된 19개월 동안 김말룡과 그의 동료들은 한국노총과 오랜 소모전을 계속했다. 막다른 상태에 다다른 중앙정보부는 일단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김말룡과 그의 지지자들을 노조 사무실에서 물리적으로 쫓아냈다. 그리고는 국가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 노조 사무실을 채웠다.”

제하 중정이 검찰에 발송한 문건에 의하여 확인되었다.⁷⁾

또한 1971년 김말룡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자 중정은 역시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 개입에 나서 김말룡 낙선 공작을 펴기도 했다. 위와 관련하여 전 한국전력노조위원장 배OO는 2007년 1월 17일 실시된 면담에서 “김말룡 후보가 출마하자 중정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말룡 지지의사를 표명한 전국규모 노조 중 4개에 대해 지지철회 설득작업을 전개하는 등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중정은 김말룡, 배상호, 박영선 후보 중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김말룡 후보를 배제시키려고 하였으나, 1차 투표 후 김말룡 후보와 배상호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배상호 후보가 당선되고 김말룡은 상임지도위원에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중정이 지원한 특정 후보가 낙선하게 되는 결과도 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용택(70세)은 2007년 1월 23일 진실위와의 면담을 통하여 선거 당시 자신이 김말룡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중정 간부인 강OO이 선거당일 사무실로 불러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중정이 김말룡 지지선언을 한 자신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중정의 보호와 지원 하에 유지되었으며, 중정은 한국노총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였다. 더불어 중정은 직접 노총 간부들을 협박·회유·구속시키면서 노동단체를 재편하고 이후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나갔다.

7) 중정 자료 「자동차 노조 간부 비위사실 이첩」(73.3.6) 제하 문건에는 김말룡(노총지도위원 겸 자동차노조자문위원) 등 자동차 노조간부들이 공금과 조합예산을 부당지출 혹은 장부조작 등으로 착복하고 조직분규를 배후조종하면서 수습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내용이 포함.

중정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설립한 한국노총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각종 노동통제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나갔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부분 공화당이나 유정희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였다.⁸⁾ 때문에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던 현장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하였다.

한국노총 위원장이나 각 산별위원장,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정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⁹⁾ 또한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의 선거는 중정의 주요 공작 대상이었다. 특히 당시 중정의 한국노총 각종 선거 개입의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노동계에서 주된 관심사로 취급¹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실위의 면담 요청에 응한 노동운동가와 한국노총 관련자의 증언도 당시 중정의 노총선거개입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인 황OO은 2006년 11월 7일 진실위 면담에서 “당시에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대기업 노조위원장이나 산별노조 위원장은 중앙정보부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위원장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8) 「선거 관련 사항: 노총 노동계인사 유정희 의원 탈락반발」(12.20. 상황4호) 제하 문건에서는 “노총(위원장 정동호)에서는 12.20 노총위원장실에서 17개 산별위원장이 참석 중앙위를 개최하고 그간 노동계가 유신정착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제3기 유정희에서 노동계 인사를 탈락시킨 것은 노동계를 의회 교량역할에서 제외시킨 처사라고 비난코 반발” 등의 내용을 적시.

9) 전 섬유노조 조직차장 김OO, 전 한국전력 노조부위원장 배OO,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 황OO 위원회 면담내용 참조.

10) 78년 미국친선위원회(American Friendship Charity Committee) 발행 「현장연구자료」에서 ‘한국에서의 노조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일은 정부의 투철한 관심사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중정이 거의 예외 없이 위에서 조종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였다고 언급하며 그 사례로 73.10.1 한국노총대회 시 배상호 단일후보추대설을 제기한 바 있고, 1979년 일본섬유노조에서는 79.1.20 개최 한국노총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위한 전국인쇄노조 대의원 대회 시 중정담당요원이 연단에 올라가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주장한 대의원을 비난하며 불신임 투표를 무효화하였다고 서술된 바 있는 등 당시 중정의 한국노총 각종 선거 개입의혹이 있다고 주장,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p210.

구체적 물증은 없지만 한OO(반도상사)·김OO(신진자동차 초대위원장)·지OO(금속연맹 경기도지부 간부)·박OO(인천중공업, 노조위원장 출마 후 중정 조정관의 사퇴압력으로 후보사퇴) 등을 만나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 섬유노조 조사통계국장인 이OO은 2006년 11월 28일 진실위 면담에서 “섬유노조 김OO 위원장이 재선으로 당선되었을 때 몇몇 노조 대의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져 선거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위원장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중앙노동대책(실무)회의에 불려가서 청문회를 하였는데, 노동청 차장·경찰청장·중정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중앙노동대책회의의 권고를 거부하자 남산 중정에 불려가서 고문은 없었으나 중정이 주는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재차 가처분신청 취하 권고를 받았으며, 위원장 선거 시 권력기관(중정)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의원들에 대한 액션을 통하여 당선시키지 않았기에 임명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 한국전력노조위원장 배병우도 진실위 면담시 당시 노총위원장 선거 등 중요한 선거시 남산의 오더설이 유포되었으나 이를 거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전 한국노총 지용택도 진실위 면담에서 노총산하 노조위원장 선거 시 반정부 성향의 인물이 당선되자 중정요원이 본조의 추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조가 중정을 상당히 의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중정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의 모든 단위 노조 선거에 일일이 개입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정은 민주노조의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가 산별위원장이나 대기업 지부장, 심지어는 중소 규모의 노조 지부장이 되는 것까지도 통제하였다. 중정의 이 같은 노동조합 통제와 개입은 특히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이래 청계피복·원풍모방·동일방직·반도상사 등 민주노조의 등장에서 비로소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 전태일 분신 사건이후 한국 노동계에서는 대중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노총 체제에 대한 비판 움직임을 배경으로 김말룡은 민주노조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를 기회로 하여 1971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1970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OO가 1971년 5월 공화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1971년 10월의 대의원대회는 남은 임기 2년의 새 위원장을 뽑는 선거대회가 되었다. 중정은 김말룡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김말룡 지지의사를 표명한 4개 산별노조에 대해 지지철회 압력을 행사하고 박OO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전개 하였으나 선거결과는 배OO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김말룡은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상임지도위원이 되었다. 이런 의외의 결과는 중정이 대의원들에 대해 압력과 회유를 하기보다 노총 상층부의 소수 간부를 중심으로 공작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¹¹⁾ 게다가 중정으로서 김말룡이 아니라면 배OO건 박OO이건 그들의 성향 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1973년 10월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중정은 또다시 후보자로 출마한 김말룡을 배제하고 당시 위원장인 배상호를 단일후보로 하여 김말룡과 다른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이와 관련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OO(70세)은 진실위와의 면담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배상호를 낙점하였기 때문에 중정에서도 배상호를 당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와 관련 당시 최고권력 차원에서의 개입사실을 주장하였고, 선거 당시 자신이 “김말룡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중정 간부인 강OO이 선거 당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언동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중정이 김말룡 지지선언을 한 자신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11)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OO 2007.1.23 진실위 면담.

막기 위한 배려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시 노총 중요 선거 시 중정의 오더가 있었고 이에 반할 경우 물리력이 행사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선거는 10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의 집단항의와 입후보자였던 김말룡의 선거무효소송 제기, 불법선거, 배상호 체제에 대한 교회단체들의 비난성명 등 많은 부작용으로 중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런 중정의 선거 개입은 1976년에도 나타난다. “중앙정보부는 네 명의 후보를 직접 지명해 실제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 것을 원천봉쇄한 뒤, 선거 1주일 전에 지명한 후보 네 명 중 두 명에게 후보사퇴를 종용하더니 선거 당일 날, 또 한 명의 후보인 김말룡에게 최종 승자가 될 전국화학노조 위원장인 정OO를 위해 물러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¹²⁾과 함께 심지어 1979년 1월 20일 한국노총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위해 열린 인쇄노련 대의원대회에서는 중정 요원이 직접 연단에 올라가 불신임을 제기한 대의원을 비난하면서 불신임 투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했다.¹³⁾

다 | 한국노총 활동과 중정

중정은 한국노총과 각 산별노조에 담당관을 배치하여 일상적인 동향파악 뿐만 아니라 중요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정은 한국노총 상층 간부들에 대한 금전 매수와 후원을 통해 결탁하거나, 정보망원으로 이용하였으며 중정 요원들은 한국노총 중앙위를 비롯한 각종

12) 전순옥, 앞책, p224.

13) 이에 대하여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OO은 2007년 1월 23일 진실위 면담에서 1979년 김말룡이 출마했을 때 중정직원이 직접 무효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회의에 동석하거나 회의 안건·주요 성명서·담화문 등을 사전에 입수 검토하기도 하였다.¹⁴⁾

한국노총 권력의 향배는 중정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으며, 한국노총 간부들은 중정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었다.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OO은 2007년 1월 23일 진실위 면담시 “한국노총 담당 중정요원은 1명이었고 당시 노동청장이 노총간부들을 1년에 한번 청와대로 초청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주선” 해 주었으며, 한국전력 노조부위원장 배OO 면담시 “당시 한국노총 담당 중정직원 김OO는 한O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62년 10월 개최된 전력노조 대의원대회 때 김OO는 물리력을 행사 한 바 있으며,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 이규철 보다는 한OO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는 한OO와 김OO의 친밀도에 따른 영향 때문이었다” 는 진술로 볼 때 근로조건 개선도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한국노총 간부가 중정요원에게 청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OO은 진실위 면담에서 노조 지도자가 현명하면 중정 담당요원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예로써 72-73년경 미군 대상 영업택시노조의 파업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달러 확보를 주장하는 자신의 요구를 중정 담당요원이 묵인해 줌으로써 실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정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와 압력은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정은 노총의 사무총장과 각 산별노조위원장급들에게 매달 3, 4천원의 기밀비를 주었고¹⁵⁾, 그들로부터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일일보고형식으로 보고받았다는 면담 내용도 있었다. 특히 중정은 이처럼 중정의 망원이 된 한국노총 간부들을 통해 문제

14) 전 섬유노조 간부 김OO은 2007년 4월 17일 진실위 면담에서 “동일방직의 경우는(중략) 중정과 섬유노조는 당시 상시보고체계를 갖추고 공문수발도 한 사실이 있다. 내가 우OO 조직국장 밑에서 조직국 차장으로 있을 때, 직접 중앙정보부에 문서수발 심부름도 한 사실이 있다. 동일방직의 경우, 당시 우OO 국장과 중정과의 관계에서 상시로 보고를 주고받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5) 前 한국전력 노조부위원장 배OO, 07.1.17 진실위 면담 증언내용 참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노총간부를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동향감 시도 하였다.

한국노총 간부들과 각 산별간부에 대한 동향파악은 지속적으로 실시 되었으며 특히 민주노조 간부·JOC 관련자·산업선교회 관련자 등에 대한 성향과 동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조 간부 들에 대한 중정의 동향 파악은 중정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¹⁶⁾

라 | 소 결

중정은 한국노총 조직결성에 관여하였고, 한국노총을 재조직하기 위해 군사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9인위원회와 조직위원들을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산별체제의 조직형태까지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후 중정은 자신 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한국노총 간부들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관리 하였다. 이는 주로 노총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중정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와 각 산별위원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도록 했다. 그리고 김말룡 등 비판 성향의 인물이 한국노총 간부가 되는 것을 강압과 회유를 동원하여 직접 막았고, 김말룡이 연합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을 통한 공작뿐만 아니라 각종의 물리력과 협박, 회유 등의 공작을 통해 무력화시켰다.

이 같은 중정의 한국노총 통제와 개입은 당시 군사정부의 명백한 국가 권력 남용과 오용이었다.

16) 안기부, 「불순노조 간부(방00) 동향보고」(80.10.24), 전 섬유노조 간부 이00 진실위 면담내용 참조.

2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탄압

가 도시산업선교회의 설립과 활동

1) 산업선교의 시작

1957년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예장 산업전도위원회’가 구성된 후, 가톨릭에서도 노동청년회를 조직하고, 1961년에 감리교와 성공회가, 1963년에 기독교장로회가 산업전도를 시작하였다. 초창기 산업전도위원회의 활동은 노동자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점차 기업주와 손을 잡고 전도하려는 노력이 커지게 되었다. 초기에 산업전도위원회는 사장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장 노동자는 저절로 교회에 나올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인 기업 간부를 찾아가 공장 예배를 부탁했고 잘 성사되면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 강제예배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초창기 산업선교 활동이란 공장 내에서 예배를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산업전도를 시작한 교회의 입장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낡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존조건과 구조적인 노동현실의 문제보다는 노동자들 개인의 내면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회사와 당국은 산업선교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다.

1968년을 계기로 ‘산업전도’라는 말이 ‘산업선교’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은 이 같은 산업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도시산업선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제반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를 교회가 자신의 과제로 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산업선교회는 공장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 해고와 임금체불 등의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후 유신정권은 ‘산업선교 활동의 변화’를 기존의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시도로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불순한 반체제운동으로 규정하였다.

2)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유신정권의 대응

가) 노총과 도시산업선교회의 갈등

유신정권 출범을 전후하여 도시산업선교회(이하 도산) 등 종교계는 한국노총의 무력한 모습이 두드러지자 이전까지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끊고 기층 노동자들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조민주화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직화에 역점을 두었다. 1971년 3월 한영섬유 노동자 김진수 피살사건은 노총과 종교계의 갈등이 표면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도시산업선교회는 이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한국노총에 대해 비판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의 반박비판 등이 이어지면서 상호간의 누적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나) 유신정권과 도시산업선교회의 충돌

1970년대에 들어서자 도산·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어용노조를 탈바꿈시키는 소위 ‘민주노조 운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원풍모방·반도상사·동일방직·청계피복·콘트롤데이터 등이 그들이었다. 그 결과 이들이 조직한 노조는 어용상급 노조에 대항하면서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된 공식적 노조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써 유신정권·기업주·한국노총 등과 민주노조나 이들을 지원하던 도산·가톨릭노동청년회 등 종교계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각 사업장 안에서는 도산에 드나드는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도시산업선교회와 민주노조운동의 연계를 막기 위하여 도산실무자들을 구속, 추방하는가 하면, 도산을 ‘용공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주요한 민주노조 간부나 도산 관계모임에 참여하던 노동자들을 해고 조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산업선교회의 영향 하에 발생했다는 노동쟁의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지극히 ‘경제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 퇴직금 돌려 달라” · “폭행과 폭언하는 관리자를 징계하라” · “기숙사의 난방과 수도를 고쳐 달라” · “부당한 해고 철회하라” · “오른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제대로 달라” ·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보장하라”는 것 등이었다.¹⁷⁾

도산은 민주노동운동 탄압이나 노동자해고 등에 맞서 노동운동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각종 사회선교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성명서 등을 통해 부당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여론화하였다. 그리고 탄압을 받던 노동자들은 정부와 한국노총, 기업주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노동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 민주노동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도산에 대해 강경한 탄압정책을 시도하였다.

나 |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중정(안기부)의 탄압책

1)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내사

도시산업선교회의 선교방향이 전환되는 시기와 정권의 노동통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산업선교회와 관련된 노조에 대한 탄압은 강화되었다. 그러자 이제 산업선교회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회사와

17)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조OO, 황OO, 전 동일방직 지부장 이OO, 전 반도상사 지부장 한OO 등의 위원회 면담증언내용 참조.

중재하고 체불임금과 부당해고를 청원하는 수준을 넘어 억압적인 노동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양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는 정부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적극 여론화하였다. 유신정권 하의 정보기관은 이를 정권에 대한 반대를 넘어 불순한 반체제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전 인천산선 간사 황OO은 진실위 면담에서 “도시산업선교회는 당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교육하고 그에 준해서 노사관계를 다루었다. 그러나 당시 정보기관은 노동관계법을 다루는 것 자체를 불온하다”고 보았다. 자신이 중정에 끌려갔을 때도 “노동운동은 빨갱이가 하는 것”이라 하여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하자 빨갱이로 몰면서 두들겨 팼다고 진술하였고, 전 원풍모방 지부장 방OO은 2006년 11월 21일 위원회 면담에서 이곳은 늘 감시의 대상이었으며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사진을 촬영했다.

중정은 당시 도산을 ‘빨갱이’를 양산하는 문제집단으로 파악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는 민주노조운동의 거의 유일한 지원 세력이었다. 중정으로서 ‘민주노조’ 등 노동자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유일한’ 지원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였다.

중정 보고 자료인 「한국 도시산업선교연합회내사계획」 18)에 의하면, 1974년 3월초 중정 차원에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내사목표와 목적·내사대상·내사방법·주요내사주안점·구체적인 내사지침·보고체계·예산」 등을 기안하여 도시산업선교회 전지역 조직에 대한 내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위 보고서는 내사현황에서

18) 중정, 「한국 도시산업선교연합회 내사계획」 제하 문건.

도시산업선교회가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조종 또는 선동하여 분규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으며, 작금에는 점차적으로 적극화됨으로써 비상사태 하에서의 사회적 불안조성과 유신과업 수행에 노사총화로 총진군하는데 큰 저해요인¹⁹⁾이 되고 있어 내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산업선교회 내사목적 : 도시산업선교연합회와 휘하 각 선교회 구성원의 성분과 불순자금의 유입여부 및 불순책동 등을 내사규명하고 노사분규 개입을 위요한 부정거래 또는 개인비위 사실 등을 내사 증거 보족, 차제 엄중 처단함으로써 유신과업수행의 저해요인을 제거함에 있다.

내사대상: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회장 조지송)산하 영등포·동 서울·인천·대구·청주·광주·부산·마산 등 전 지역도시산업선교회와 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위원 문동환·조승혁)의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내사목표로는 각 지역 산업선교회의 조직현황, 주요 구성원의 사상성분, 활동 상황, 활동대상 목표업체(산업선교회 회원 소속 사업장) 및 기타 조직망·자금출처(외국자금 유입상황)·노사분규에 개입현황·구성원의 비위불순세력 침투 및 배후조종 여부 등을 내사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사 요령지침과 원칙으로 모든 내사활동에 있어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암암리에 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체를 세밀히 파악하여 타 단체와의 관련성(NCC 등 교계와 재야 단체로 추정) 등을 세밀히 내사하고 구성원 자신은 물론 친인척 또는 주위 인물들의 사상성분을 세밀히 파악하고 성분이 불확실한 자를 중점 내사, 불순세력의 개입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대상업체에 대하여 노사분규를 악화시키거나 그 업체로부터 금품갈취 등 불순행위에 대한 증거를

19) 지극히 경제적인 요구에 대해 체제를 부정하는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게 된 것은 유신체제가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이었다. 당시는 노동자의 일체의 권리주장을 법으로 통제하였고 ‘불순한 딱지’가 매겨졌다.(전 원풍모방 지부장 방OO·전 동일방직 지부장 이OO·전 섬유노조 실무자 이OO의 진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의 진실위 강의내용 참조).

수집하며 노사분규 개입과정(분규조장)에서 국가보안법 저촉행위 유무를 중점 내사하고 거래은행의 협조를 얻어 외국수수 자금의 성질과 거래현황 또는 부정사용 등을 세밀히 내사 파악한다는 등을 제시하였다.

내사 및 수사기간과 내사반 편성과 업무분장·보고체계 및 예산 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내사기간은 1974년 3월8일에서 3월3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1974년 4월1일부터 4월15일 기간이며, 내사반 편성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는 내사1반과 2반 두 개조를 편성하여 제 1반은 보고 종합과 노사분규 개입과정의 비위내사, 자금거래 상황내사, 입건 시 조사 전담을 맡고, 제 2반은 조직체 구성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성분내사, 구성원의 비위내사 등을 전담키로 역할분담” 하였다.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일일 내사활동 상황은 당일 18:00까지 종합하여 서면보고하고 예산은 필요에 따라 별도 신청한다”고 적시하였다.²⁰⁾

2)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탄압

중앙정보부는 도시산업선교회 견제를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도산 실무자나 간부에 대한 내사와 사찰을 진행하였다. 국정원 보고 문서에 의하면 조OO 목사²¹⁾(영등포 산업선교회)·안OO 목사(경수산업선교회)·김OO 목사(한국산업선교회)·인OO 목사(영등포 산업선교회)·조OO 목사(인천 산업선교회)등²²⁾ 주로 목사였던 도산 실무자나 간부들을 내사하고 관리하였다. 이 내사보고서에는 가족 및 재산·전과관계·본인 및 친척 등 주변인의 사상관계·구체적인 활동사항이나 발언 등이 기록되었다.²³⁾

20) 중정,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동향첩보내사보고」

21) 중정, 「위해분자 조지송 목사 신원정보에 대한 내사보고」(76.2.4)

22) 중정, 「문제종교인 인적사항」

23) 조OO의 경우 별도의 인상착의·특이동향 등이 적시된 파일이 첨부되었으며, 인OO의 경우 별도의 개인 신상파일 형식으로 보존.

앞에 서술한 「도시산업선교회 내사계획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74년 12월 30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신원내사 결과보고」 문서는 “(1) 인천도산 조OO·전OO·황OO (2) 경수도산 강OO·안OO 목사에 대해 「조삼전 제 414호」(74.12.19)에 의거 신원내사 결과보고 함. (첨부: 조OO·전OO·황OO 내사결과보고)”라고 적시하였다.²⁴⁾ 이 중정 「조OO 내사결과보고」는 조 목사의 인적사항·가족관계·종교관계·학·경력 등 신원사항과 본인 및 배후의 사상관계, 한OO 등 접촉인물, 활동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조OO·홍OO·이OO·선교사 존 그린 등 동일방직사건 전후에 대상인물들의 주요연동 및 활동 동향을 내사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²⁵⁾

「조OO 목사 해고여공 월례회기도 와해조치 결과보고」(80.9.3)

..... 확인결과.... 동일방직 해고 여공 조(양)OO 등 37명이.... 조OO 목사를 추종하에 집회허가 없이 해고 여공들을 모집 불법집회 행위는 위법처사임을 통보 철회토록 인천 도산 IP로 하여금 조치토록 처리하였던 바, 동 조OO은.... 동 월례회를 자진철회 하였음을 확인, 조치의견 : 사건 존안 종결하고 동향주시 위계
※첨보자:OOO

또한 인OO의 경우에는 기본신원사항과 사상·전과비위관계 외에 1973년 2월 1일부터 1979년 8월 17일까지의 일자별 활동·발언 등 주요 동향을 파악 정리하였다.²⁶⁾ 이상 동향보고서의 말미에는 ‘계속동향파악 위계’의견으로 적시된 바, 도산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중정의 감시와 사찰은 지속적인 것이었다. 또한 도산의 내사경위에는 내부 정보원의 첩보제공에 의해 내사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²⁷⁾

24) 위 보고서에는 “조OO전OO·황OO의 내사결과보고 첨부”라고 적시하였으나 조OO 내사결과보고만이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25) 중정, 「내사사건철 (조OO·홍OO·이OO·선교사 존 그린) 등」

26) 중정, 「인OO」

27) 안기부, 「조OO 목사 해고여공 월례회기도 와해조치 결과보고」(80.9.3) 내사경위 참조

중정은 도산조직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도산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작도 수행하였다. 국정원 존안자료 「인천도산 고립화공작 종결보고」에는 인천도산 실무자인 김동완 목사에 대해 “고립화에 성공하여 산업안정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세한 공작과정은 문서보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3)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정과 안기부는 민주노조 활동 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도산계열 근로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였다. 당시 안기부는 이들을 도산과 연계하여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중정·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활용했던 소위 ‘블랙리스트’의 대상자들이었다.

국정원 보존자료 「해고 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1983.3)에 의하면 “당부에서는 해고도산근로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활동재개 예상자들의 동향추적 결과, 일부가 신분을 위장 신규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일부는 친목회를 결성해 활동기반 구축을 기도하고 있음을 적출함에 따라 위장취업자 성향을 분석하여 활동재개 소지가 있는 자는 사업장에서 축출토록 하는 일방, 친목회 조직의 와해 공작을 계속 추진 중”이며 “※ 82.12.15 노동부 주관으로 해고도산노동자 명단(681명)을 각급공단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배포하고 동향감시”하였다.

또 안기부는 “기업·노동부·경찰 등과의 상호 정보교류 속에 이들에 대한 동향을 추적하여 <도야회 : 원풍모방 해고자 모임>, <파트리회 : CDK 해고자모임> 와 같은 친목회 조직에 대한 와해공작을 추진” 하였다.²⁸⁾ 그리고 도산 관련 해고자의 재취업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8) 안기부, 「해고 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83.1).

또한 안기부가 84.1.10 작성한 「해고도산 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검토」 제하 보고서에 의하면 안기부는 “83년 10월25일 중앙노동 대책 실무관계관회의(노동부·내무부·문교부·보안사·안기부 참석)를 개최하여 해고도산근로자 취업전면 봉쇄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 681명의 관리대상을 재분류, A급 28명·B급 97명 등 계 125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중점 관리”하였다.

위의 국정원 보존자료에 의하면 해고도산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안기부가 직접²⁹⁾ 또는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노동대책회의)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이상의 안기부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82년 12월15일 도산계열 해고자 681명의 명단을 노동부가 각급공단 및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배포하고, 안기부는 이들의 동향을 감시, 재취업자를 발굴하여 축출하고 도산 관련조직의 와해공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도산 경력자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구직조차 허용치 않고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여론악화 등 부작용에 직면하자 안기부는 이들 해고자에 대한 선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 결과 관리대상자를 681명에서 125명으로 축소하였다.

안기부는 125명의 A·B급 관리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분기 1회씩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를 통해 관리대상자 동향분석·등급재분류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 관리지침에 의하면 “A급 28명에 대해서는 사업장 접근 철저차단·위장취업 시 즉각 해고·사실상 행동반경을 도산회관으로 제한하고, B급(97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업 제한(자영업 유도)·위장취업 발견시 보직변경 및 순화·순화 불가능시는 해고조치”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종교계의 ‘블랙리스트’ 철폐요구에 대해 안기부는 중앙노동 대책실무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종교지도자·교계신문·TV 등을 활용

29) 국정원 보존자료 「해고도시산업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보고」 및 83.6, 84.1 작성 「해고도산노동자 최근실태 및 관리방안검토」 제하 보고서에서 도산해고자에 대한 선별 동향감시 등 필요 의견 제시.

하여 자연스럽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해명할 것, 125명의 중점 관리대상자에 대해 재분류·대상자축소·원직복직은 불허하나 일정한 재취업 허용 등의 관리방안을 완화할 것, 사업장내 도산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강력 규제할 것,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한 자들이 문제 활동시 지역노동대책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등”³⁰⁾을 결정하였다.

정보기관에 의해 도산출신의 노동자로 분류되어 해고되면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도산계열 해고자의 재취업 엄금조치’를 내린 안기부조차 ‘선별적’ 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 인천산업선교회 총무 조OO의 2006년 10월 18일 진실위 면담에서 “애들이(동일방직노동자) 블랙리스트로 많이 해고당하고 했어. 블랙리스트로 당한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부르르 떨어. 그 중 한 아이는 아직도 시집 안간 애가 있어. 왜 그렇게 까지 했는지, 시골까지 쫓아가서 주변에 말을 돌려서 글썄, 결국 사람들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야. 빨갱이라고, 어디 오지에 가서 혼자 산대”라는 진술과 2006년 10월 12일 전 동일방직 지부장 이OO의 면담에서 “당시 블랙리스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러 번 해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주안공단에 있었던 원풍물산이라는 봉제공장에 재취업을 했었어요. 저는 취업해서 좋아라하고 출퇴근했었는데, 경찰이 미행을 했던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공장장이 저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문서 위조로 쫓겨났어요.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주안공단 봉제공장에 많이 취업해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모두 해고당했다”는 진술로 확인되었다.

진실위에 제출된 중정 내부분서 가운데는 ‘OOO 공작’이라는 이름의 공작보고 문서가 있다. 문서의 내용상 OOO공작이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OOO공작 대상으로 지목

30)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1984.1.10)

되고 있는 문OO과 인OO 등의 경력을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도 도산과의 관련성을 의심 받은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도산계열의 노동자들에 대해 중정차원에서 진행한 노조활동중단 공작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도상사의 노조지부장이었던 장OO와 김OO에 대해 중정 경기지부는 지속적인 소위 ‘순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장OO의 경우는 순화결과 “79.5.31 경기도 AR대책소위에서 AR삭제 중점감시대상자로 결정 (삭제사유: 순화로 문제점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의 개인 신상자료에는 77년 2월부터 79년 4월까지의 주요동향이 상세히 적시되었는데, 이 문서를 통해 장OO에 대한 중정의 ‘순화사업’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서의 내용을 보면

- 77.12.19. 총무 조OO을 대동, 당 지부 담당관을 접촉하고 77.12.21. 인천시 북구 제2공보관에서 조합원 잔치를 개최코져 장소임대 등 지원을 요청해움에 따라 행사내용 사전검토를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
- 77.12.20. 10:00-13:30 간 총무 조OO을 대동, 당 지부 담당관을 접촉하고 조합원 잔치행사 내용을 검토하여, 웅변내용 중 계급의식 자극내용 삭제 “사자여 잠에서 깨어나라”제하의 연극 전면 취소에 합의
- 78.1.25. 반도상사 노조간부 12명을 대동하고 당 지부 인술에 따라 판문점을 견학하고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국가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겠다”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시현
- 78.12.22 북구 소재 제2공보관에서 조직원 400여명 참가 리에 조합원 송년잔치를 개최 하였는바, 당지부에서는 15,000원 상당의 사과 3상자를 선물 순화하였음.
- 79.1.7. 본명은 노동청 인천북부사무소장·부평경찰서장 및 정보과장·담당관 등을 차례로 방문, 신년인사를 하면서 79년도에는 매사를 관계기관 협조하에 처리하겠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시현
- 79.4.19. 동사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본조과건 대의원에 피선 (※ 동 대회 시 장OO 계열의 임OO 등 남자 대의원 3명이 “대의원 선출투표가 장OO 측에만 유리하게 실시되었다”고 비난하면서 대회장을 소란케 하므로 담당관이 저지, 대회분위기를 바로잡자 장OO 등은 담당관에게 사의 표시)³¹⁾

31) 중정, 「OOO 공작(반도상사 관련자 김OO)」

김00에 대해서도 중정은 000 공작³²⁾이라는 명칭으로 김00의 노조 활동 중단 공작을 실행하였다. 반도상사 노조에 대한 대책자료와 한00·최00 등의 면담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정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4) 도산 조직와해를 위한 시도

중정은 직접적인 도산조직와해를 추진하였다. 아래 제시된 국정원 자료의 목록과 목차를 보면,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중정차원의 내사·공작이 상당기간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국정원 보존자료 「영등포 도산 비위내사」와 「도시산업선교회 비리자료」의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 도산관련 비위내사 결과 보고('78.6.22)
 - '77.12.9 도산 관련자 비위내사 결과(1보)
 - 신용협동조합실태, 정치관계 등 내사
 - '77.12.27 도산 비위내사 중간보고(3보)
 - 종교단체 연계 근로자 현황(현 근로자, 퇴직자 명단)
 - '77.12.27 도산 비위내사 중간보고(4보)
 - 영등포 도산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재무부를 조정, 신용협동조합 업무정지 또는 인가 취소조치 등 조직와해 시도
 - '78.1.13 비위내사 중간보고
 - 영등포 도산 신탁 내사 와해기도
 - '78.1.24 재무부 신탁 감사계획 보고
 - '78.1.28 비위내사 보고(5보)

32) 중정, 「<중요보고>반도상사 노사분규 조정결과(경기)」. (74.6.10.)등 반도상사 관련 국정원 자료 참조. 동 보고서의 「1970년대 민주노조에 대한 중정의 탄압」 중 '반도상사'관련 부분 참조.

33) 중정, 「영등포 도산 비위내사 결과보고」(78.6.22)이하 「영등포 신용협동조합 조직와해 공작 1,2,3,4보. 중간보고」 등 참조

- 영등포 도산회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대책 강구
- 당산 이동 17동 주민 연대서명으로 불허 유도
- o '78.1.30 비위내사 보고(6보)
- 회관건립 자금 상황 파악
- o '78.2.2 재무부 영등포 도산 3개 신협 감사거부에 따른 조치상황 보고
- o '78.2.17 신협 업무정지 조치보고
- o '78.4.20 신협 인가취소 방침에 따른 검토보고
- o '78.5.16 인명진 목사 긴급조치 위반 등 검찰 수사상황 보고
- o '78.5.20 인명진 목사 긴급조치 위반사건 구속 기소상황 보고
- o '78.6.17 동 사건 공소장 변경신청 상황 보고
- o '78.6.20 신협 조세범 처벌법 위반 검찰 동향 보고

이에 따르면 중정은 재무부와 협조하여 신용협동조합 업무정지 또는 인가 취소조치 등의 방법으로 영등포 도산의 신협 조직와해를 시도하였다. 또한 중정은 영등포 도산회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하는 대책도 강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도산회관 건립예정인 당산 2동, 17동 주민의 건축반대 연대서명을 공작하여 불허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83년 8월 30일 작성된 안기부의 「한국 NCC, WCC승인사업 견제대책보고」에 의하면, 안기부는 “NCC가 WCC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한 공작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안기부는 도시산업선교회의 회원확대사업·도산 선교센터운영 등을 견제·저지토록 하였다. 또 「WCC. 1983년 사업예산 총괄서」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NCC선교자금공개 공작」 등에 활용하였고, 해외에서는 WCC 비판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을 기획하였다. 공작개요는 안기부가 ‘시민을 가장하여 미국 언론매체 중 WCC에 비판적인 방송이나 기사를 게재한 곳에 동 총괄서를 우송토록 하여 WCC 비판여론을 확산코자’ 하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문건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개황 : 한국NCC가 WCC에 신청한 83년도 승인사업 및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 유관부처대책회의를 개최(3.25) 견제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WCC책자 <1983사업예산 총괄서> 활용공작을 추진 중에 있음

2. 각 부처별 대책방안

가. NCC가 승인 받은 20개 사업 중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 1) 전국 10개 공단지역 대상 및 도산회원 확보를 위한 근로자 의식화교육
- 2) 군산지역 어민 의식화교육
- 3) KSCF [학생사회개발단] 재결성
- 4)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불순책자 발간
- 5) 약수동 도산선교 센터운영
 - 국내 도산선교단체의 전국 10개 공단에 대한 도산회원 확대 침투기도에 대해서
 - 해당공단 관리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 각 기업체별 사전저지대책을 수립 토록 지시하고, 도산 해고근로자 및 문제노조원들에 대한 감시·감독 철저
 - 각 공단 별 도산규탄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도산선교의 문제성을 홍보(이상 노동부)
 - 82년 CDK사건이후 도산 규탄대회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산단체의 근로자 포섭기도에 대처,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업체 침투기도주동자 색출 (노동부·보안사·치안본부·안기부)...(이하 중간생략)
 - 성공회의 약수동 도시산업선교센터 운영추진에 대처, 동 성당 임00 신부를 접촉, 불순성 여부점검 및 문제성 사전배제 (치안본부)
 - 기타 문제성이 없는 4개 사업과 함께 NCC 등 기독교 비관단체들이 해외 선교자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국내사실 과장·왜곡전파 등 국위손상행위 및 선교자금 불법사용 등을 발굴, 교계에 폭로 (문공부·안기부)

나. WCC가 검토 중인 사업(12개)

- 1) EYC 회원 의식화교육(3개 사업)
- 2) 도산근로자 포섭활동(6개 사업)
- 3) 기독교농민회의 농민의식화
- 4) 빈민선교
- 5)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민중 신학 책자발간
 - 신청단체가 기 발전하고 있는 문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종교대책사업에 포함 실시..... (이하 중간생략)
 - 전국 도산선교단체가 근로자 포섭활동 및 도산실무자 양성을 위한 의식화 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 수립 시행중인 도산견제대책에 포함 실시(노동부·보안사·치안본부·안기부)

3. WCC 책자 활용공작 추진

가. 국내 종교전문가에 동 총괄서 검토의뢰

- 1) 동 총괄서 1권을 해방신학에 대응비판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설립(82.11.19)한 「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고범석 소장에게 문제점을 검토토록 의뢰(3.22)
- 2) 동 검토내용을 토대로 「NCC선교자금공개 공작」 등 별도의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계획

나. WCC의 불순성을 폭로한 미국단체에 동 총괄서를 우송

- 1) WCC의 불순성을 규탄, 폭로한 바 있는 미 CBS-TV 및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 동 총괄서를 우송, WCC 비판에 활용토록 유도
- 2) 방법 : WCC의 본부가 있는 제네바 주재 당부 담당관으로 하여금 미 CBS-TV가 83.1.23 방영한 <60분> 프로의 WCC 비판내용과 리더스 다이제스트 82년도 8월호의 「WCC 선교자금의 불순단체 지원동향」을 감명 깊게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서신과 함께 미국인으로 가장, 발송
o 미 CBS-TV는 <60분> 프로 제작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는 편집인 앞으로 확실히 배달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 조치
- 3) 또한 83.3.28자 TIME지에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 지는가에 대한 논쟁」 제하로 WCC 선교자금의 불순성을 규탄한 미국종교 및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소(IRD : 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에도 동 총괄서를 공작적 차원에서 우송, WCC의 불순성을 규탄토록 활용

다 소 결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중정의 내사와 공작은 일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내사·수사계획」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정은 당시 도시산업선교회를 유신체제의 주요 위해요인으로 규정하고 조직와해를 통해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중정은 첫째, 도산조직과 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내사계획을 마련하고 내·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였다. 개인비리에서 사상검증·자금원 등 그야말로 도산의 모든 활동과 조직·사업·예산 등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종합하였다.

둘째, 목사였던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등에 대한 내사나 소위 ‘고립화 공작’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찾고 도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다.

셋째, 도시산업선교 회원 등 도산관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내에서 도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노조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반도상사의 김OO·장OO·한OO의 경우와 같이 중정차원에서 노조간부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영등포 도산내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와해공작」이나 도산을 지원하던 「NCC의 WCC 승인사업 견제공작」 등과 같이 조직와해나 활동위축을 위한 공작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정의 도산에 대한 대책은 조직와해와 제거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내사·공작 대상도 도산회원·재정(자금)·실무자·지역조직 등 전면적이었다. 물리적 억압뿐 아니라 이념적 공격을 통한 여론조작, 기독교 내 비판세력 지원 등을 통한 도산의 고립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실제로 탄압이 최고조에 이르던 70년대 말에 이르면 도산은 그 활동과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는 중정의 도산대책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3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의 확대

가 사건개요

1979년 4월16일 중정이 발표한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발표문에 따르면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의 농촌·산업·여성 등 각 분야 간사 6명이 용공 지하서클을 결성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³⁴⁾ 중정수사보고에 의하면 1979년 3월 9일 아카데미 여성사회 간사 한명숙을 연행한 이후 약 한달 동안에 간사 6명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등 최소 약 38명 이상을 연행 수사하였다.³⁵⁾ 중정 수사결과 농촌사회간사 이우재·장상환·황한식·여성사회 간사 한명숙·산업사회간사 신인령·김세균·당시 한양대 사학과 교수 정창렬 등 7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중정은 중부경찰서로 한명숙을 강제연행한 후, 약 한달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였다.

79년 4월 16일 중정이 발표한 이들의 혐의는 “『현대사상연구』 36)·『경제학교과서』·『자본론』·『공산당 선언』 등 불온서적을 취득·복사·배포하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며,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등 반공법 4조 1,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불법 비밀 용공단체를 통해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민중계층에 기반을 둔 비밀조직을 확대해 이들을 활성화시켜 반정부 활동을 선동함으로써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획책했다”는 것이다.³⁷⁾ 1980년 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용공지하 서클구성’에

34) 중정,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발표문」 (79.4.16)

35) 중정 수사보고서상의 수사대상 이외에 참고인 조사와 아카데미 교육측정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농민 등도 반 강제적인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당시 아카데미 측은 경찰에서 연행하거나 출석시켜 진술서나 서약서를 받은 사람을 합치면 7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36)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철학과 역사관,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입문 개론서적임.

37) 중정,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발표문」 (79.4.16) 중앙정보부 내부자료 인용.

대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이우재는 징역·자격정지 각 5년, 한명숙은 징역·자격정지 각 2년 6월, 장상환은 징역·자격정지 각 2년, 신인령은 징역·자격정지 각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세균은 선고유예, 황한식과 정창렬은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

핵심의혹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는

첫째,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의 사전 기획여부, 대공신고에 의한 한명숙 조사과정에서 불순지하조직의 전모가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였다는 사건의 발단과 수사경위에 대한 중정 수사보고의 신뢰성 여부 등 사건의 실체 확대 여부와 둘째, 사건 관련자와 교육생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구금, 피의자에게 가해진 고문, 가족에 대한 가택연금과 감시 등 인권탄압의 사실여부와 그 실태 셋째, 중정이 사건의 실체보다 확대·왜곡한 바는 무엇인가 하는 목적성과 수사결과를 노동운동탄압에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다

조사내용

1) 사건발단과 수사경위에 대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하였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에 대한 의혹제기 이유는 당시 수사기록상 신고 일자와 사건접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신고자로 기록된

김OO과 고OO의 증언내용과 수사보고의 내용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언론홍보대책 등 중정의 사후대책 수준이 단순 공안사건 처리가 아닌 중정 조직 전체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보존자료³⁸⁾에 의하면 79년 12월1일~5일까지 아카데미 농촌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김OO(당시 32세)이 동생 집에 남긴 ‘농민가’ 노래가사 메모를 당시 공군중사인 제부 고OO이 발견하여 12월 12일 대공상담소에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중정 내부분서인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³⁹⁾에는 “아카데미 농촌사회교육 수강생 김OO(33세)이 1979년 12월12일⁴⁰⁾ (한명숙의) 거동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제보한 후 신원내사 중 범행 증거를 포착하여 검거”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아카데미 사건 발표문」 중 사건관련 참고자료에 기록된 「수사경위 보고」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지난 1979년 3월 9일 아카데미 간사 직에 있는 자들이 용공적인 불온활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반공정신이 투철한 애국시민으로부터 신고 받고 동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여성사회 간사 한명숙을 임의동행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진실위가 고OO·김OO과 유선 접촉한 결과, 고OO에 의하면 “처형이 집에 남기고 간 노래가사 메모가 수상하다고 대공상담소에 신고 하였다”고 하였고, 김OO은 중정 전남지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받은 사실⁴¹⁾이 있는데 “자신은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받아 적어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1979년 4월 16일 중정이 언론 등에 발표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38) 국정원 보존 자료철 반공법 위반 등 피의사건-아카데미사건-기록 중 「불온가사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회보」(79.1.7).

39) 국정원 보존자료철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

40) 국정원 보존자료철 중 첩보보고 1페이지에는 12.9일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자료목록에는 첩보보고일이 11.24로 등재되어 있음.

41) 중정, 「79.3.26자 김OO(제보자)자술서」

사건 발표문에 의하면 “최초 연행자인 한명숙이 동행 당시부터 신체조건이 허약하여 의무관의 진찰을 거쳐 닝깁 및 영양제주사 또는 쥬스 등을 공급하는 한편,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인도적인 면에서 설득, 추궁하자 이에 감화된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장상환·신인령·황한식·김세균 등 6명이..... 서클을 조직하고 정기회합을 갖고 있으며, 현대사상연구라는 책자 중 변증법적 유물론 부분을 연구 발표한 사실이 있다는 등 범행일절을 자백하였고” (이하 생략)라고 되어있다.

위원회 면담시 당시 피고인 장상환은 “조직의 행동강령·규약 등은 중정수사관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하여 베껴 적은 것이다. 그대로 썼더니 ‘똑같이 쓰면 어떻게 하나’고 해서 일부를 다시 고쳤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국정원 보존자료인 「제 7차 공판상황보고 (79.8.8)」에 적시된 이우재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비공개 학습소모임을 운영하여 공부하고 토론한 사실 외에는 공소내용의 대부분이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또한 1979년 3월 14일자 중정 수사자료⁴³⁾에는 관련자들이 “아카데미 원장 강원룡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결정을 하였다고 적시된 바 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내란죄를 적용하지도 않았고 이후 공소장이나 중정의견서나 사건발표문에는 이 부분은 빠져있다. 또 강원룡은 그의 회고록⁴⁴⁾에서 “당시 중정부장 김재규가 박대통령 지시로 별로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는 공작을 하였으나, 중정부장 김재규와 당시 비서실장 김계원의 노력으로 자신이 이 사건에

42) 중정, 「제 7차 공판상황보고(79.8.8)」에는 “피고인(이우재)이 중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인적사항 및 학, 경력을 제외하고는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거의 없다. 특히 조직에 관한 부분은 장상환의 글씨로 보이는 제록스된 것을 보고 베끼라고 해서 베꼈고, 다른 부분은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43) 중정, 「중요보고 : 기독교계 침투 불순용공조직 수사상황 보고」(1979.3.14) “79.1.2 강남구 개포동 소재 김세균 가에서 피의자 등 6명이 회합, 서클을 조직키로 합의하고 사회중간계층을 확대 결속, 정치적 압력단체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3년 내에 현 정치체제를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변혁, 강원룡을 대통령으로 모시자.”라는 결의를 하였다고 적시함.

44) 강원룡, 『역사의 언덕에서』 한길사, 2003, p125~126 참조.

연루되지 않고 사건이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해보아 중정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강원룡 원장을 포함한 아카데미 자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구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정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아카데미를 불순 배후세력으로 주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⁴⁵⁾ 고OO의 ‘노래 말’ 신고는 평소 주목받던 아카데미에 대한 공식적 내사 돌입의 시점이자 계기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권의 문제-고문·불법구금 등의 사실여부와 실태

중앙정보부는 당시 사건관련자와 노조간부들을 영장 없이⁴⁶⁾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후 불법 구금하여 장기간 고문 수사하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중정 수사단계에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면회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없었고, 구치소 수감 후에도 초기에는 일체의 가족면회조차 차단되었다. 5월4일 기소될 때까지도 구속자 3인에 대해서만 한 차례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었을 뿐이었다. 사건관련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아카데미 교육생들까지도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가족들이 시국기도회나 NCC관련자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택에 연금되고 감시를 당하였다.

중정 수사기록에 의하면 79년 3월 9일 오전에 한명숙, 3월 13일 이우재·장상환·김세균·신인령·황한식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79년 3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한정진 부장판사 명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한명숙 외 5명은 4월 3일, 황한식은 4월 5일, 이우재는 4월 6일에 각각 구속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명숙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은 구속집행 전까지의 기간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불법구금 수사를

45) 중정, 「도산관련 비위내사 결과보고」(78.6)에는 아카데미 하우스 공인계리사 강OO 등 인적 사항 및 동향(77년)등이 적시된 바, 아카데미에 대한 동향과 내사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46) 국정원 보존 자료 「반공법 위반 피의사건 검거보고」에는 79년 3월 30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불법구금 기간은 짧게는 20여일에서 길게는 25일이나 된다. 중앙정보부는 구속자에 대해 각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관련자들은 4월 22일~4월 25일까지 수사를 받았다. 결국 이들 7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40여일 이상이었다. 한명숙의 경우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45일간이나 된다. 그 중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여일 이상이 불법구금에 의한 강제수사였다. 아카데미 교육생을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 기간에 집중되었다. 중정은 이 불법구금 기간중 구속영장 발부 요건(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을 갖추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재차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자와 참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연행과 구금은 이 사건자체를 확대 조작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의 각종 성명서도 관련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연행과 구금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⁴⁷⁾

8월 6일 7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고문사실을 최초로 폭로하자 당시 아카데미대책위원회와 각계인사들은 성명서·청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정은 청원서에 서명한 인사들을 연행하여 청원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시와 불법연금을 자행하였다.⁴⁸⁾ 구속자 가족에 대한 가택연금은 5월 18일 이래 계속되었다. 가택연금 외에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 통제하거나 매일 아침 담당형사가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고 교회나 시장에 가는 등 외출할 때에는 형사와 동행해야 했다. 특히 기독교 인권운동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NCC 사무실이 있는 기독교회관과 금요기도회의 참석은 어떤 이유로도 허락되지 않았다.⁴⁹⁾

이와 같은 사실은 이우재·김세균·한명숙·신인령 가족 등의 접견기록을

47) 『1970년대 민주화운동 4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7, pp1538-1551 참조.

48) 중정, 「C.A사건 구속자 동향철 구치소 접견내용」 참조.

49) 『1970년대 민주화운동 4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7, p1532 참조.

‘79년 5월 25일 ‘아카데미 사건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OO의 처 오OO은 전날 밤 형사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서 변장으로 새벽에 기독교회관에 잠입할 수 있었다.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드러난 고문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보고한 중정 「구속자 동향 보고」⁵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상환도 진실위 면담에서 “당시 가족들의 거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중정은 수감 후 재판이 진행될 때도 변호인·가족·친지 등 모든 접견상황과 대화내용·수형 중 언동을 동향파악 하였다.⁵¹⁾

다음으로는 사건관련자들과 참고인들에게 가해진 고문피해 사실이다. 중정 「홍보대책」 문건⁵²⁾에는 관련자들의 고문피해에 대한 호소를 용공주의자들의 재판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문서 중 「공판진행 상황보고」에는

“이들 피고인 및 소위 아카데미 사건 대책위원회가 주동이 된 반체제 분자들은 본 사건이 당부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왜곡 선동함으로써, 재야 반체제 및 반정부 활동 동조자들을 단합시켜 반정부 투쟁력을 확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불신풜조를 고조케 하고 공판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재판 초기에는 고문주장을 하지 않다가 재판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으로써 고문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 피고인들은 변호인 반대심문 기회 외에 별다른 발언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피고들이 법정진술에서 밝히고 있듯이 구속 상태에서 고문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또 다른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실제로 장상환은 진실위 면담에서 “자신도 당시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두려웠다. 더욱이 고문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재판결과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갈등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것이 변호인 반대심문이 시작된

50) C.A사건 구속자 동향철은 79.4부터 80.1까지의 일자별로 가족과 지인면회시 나눈 발언요지를 정리한 내용을 수록.

51) 중정, 「크리스찬 아카데미사건 피고 동향파악 지시」 참조.

52) 중정, 「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 저의 검토 및 대책」(1979.8.27).

7차 공판에서야 고문사실을 폭로하게 된 이유였다.

“고문은 주먹과 발길질, 각목과 침대 봉 등에 의한 구타는 기본이었고 성기를 고문하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권총을 들이대며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성에게는 때리는 방법을 쓸 것인지, 벗기는 방법을 쓸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여성의 성적수치심과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다”고⁵³⁾ 피해자들은 주장해 왔다. 중정 기록⁵⁴⁾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들은 공판장에서 고문이 폭로된 1979년 8월 6일 이후 약 한달이 경과한 9월 14일 10:30-13:30까지 구속자 7인 전원이 구치소 내에서 외상과 병력에 대한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검진의 김OO가 교도관 3인 입회하에 서울구치소 의무과에서 검진한 결과와 진료기록은 「C.A 사건 구속자 이우재 등 7명 검진결과」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일부 구속자들이 탈의를 거부하고 남·여가 한 곳에서 진료를 한 점, 아카데미 사건 관련자들만 동 시간대에 진료한 점, 구치소 입소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점, 중정이 검진의에게 보안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진료행위는 구속자들의 요구나 구치소 측의 통상적인 검진은 아니었으며 중정에 의해 급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검진 후 중정은 담당의사에게 검진사실을 절대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담당의사는 자신이 “오히려 진찰사실의 비밀보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⁵⁾ 그러나 당시 검진의사인 김OO는 진실위와 면담에서 진료사실 자체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진찰이 있었던 것은 1979년 8월 6일 7차 공판에서 고문논란이 일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진단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당한 신체부위에 외상이 확연히 남아 있는

53) 구체적인 폭력의 가해정도에 대해서는 법정진술 『1970년대 민주화 운동 4』, pp1541-1546.

54) 중정, 「C.A사건 구속자 동향철」

55) 중정, 「C.A사건 구속자 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진료기록이 고문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중정은 이 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고문논란에도 불구하고 9월 22일 1심 담당판사는 “이 고문 사실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없다”라면서 검찰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했다.

3) 사건의 왜곡선전과 확대홍보

가) 언론을 통한 사건의 왜곡과 확대홍보

중앙정보부는 4월 16일 언론에 “아카데미 간사 6인이 아카데미 안에 불법지하 용공서클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⁵⁶⁾ 사건 발표와 동시에 각 일간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7명, 용공활동 혐의구속, 비밀서클 결성… 사회주의 국가건설 획책’, ‘크리스찬 아카데미 안에 용공서클 조직’ 등의 머리글로 사건을 보도하였다. 간사들의 학습소모임이 중정의 언론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한 지하용공조직 활동으로 확대 보도되었다. 아카데미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당시에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반공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준다. 중정은 정식 기소도 되기 전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하였고 여론재판을 통해 그 효과를 달성하였다.

당시 언론보도⁵⁷⁾는 거의 전문을 중정 발표문과 보도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국가

56) 중앙정보부의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내 불법 용공단체 구성사건 관련자 검거」 보도참고자료에는 “79.4.16. 17:00 이전에 보도할 수 없음” 이라고 보도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57) 1979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의 보도. “중앙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비밀 서클을 결성, 북괴 평양방송 및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청취 학습하는 한편, 『현대사상연구』 등 각종 불온 책자를 탐독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북괴 노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 이우재 등은 그들의 비밀서클을 크리스찬 아카데미 밖으로 끌어내 핵심참모부를 결성한 뒤 단선 연계방법으로 동조 세력을 규합,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 결의하고 농촌, 도시근로자 및 여성사회 등에 침투해 조직 확대를 꾀하다가 중앙정보부에 검거됐다. 이OO는 아카데미에 침투한 비종교인으로서 1963년에 있었던 ‘통혁당 사건’ 주범이었던 북괴 간첩 이OO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해왔었다는 것이다.”

건설을 획책’, ‘침투’, ‘북괴간첩으로부터 영향 받아’, ‘비밀조직을 결성’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간첩단’을 검거한 듯한 논조로 확대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사회 곳곳에 반국가 단체(북한)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나) 『청원서명자』에 대한 중정 수사와 ‘고문조작’의혹에 대한 중정의 홍보대책

1979년 8월 6일 아카데미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심문을 통해 고문사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되자 대책위원회와 재야세력은 수사결과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8월 24일에 청와대와 재판부·중정 등에 무죄방면을 청원하였다. 청원서명 사실이 외신에 보도되는 등 고문의혹이 확대되자 중정은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청원자를 직접 연행 수사하였다. 중정은 청원서명자 36명을 A급 대상자와 B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B급 대상자 15명을 8월 30일부터 연행 수사하여⁵⁸⁾ 청원서명경위와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을 진술조서로 작성케 하였다.⁵⁹⁾

국정원 보존자료 「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 제하의 보고서는 중앙정보부가 청원서명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한 국내외 홍보대책⁶⁰⁾과 대국민 일반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건 발표 시점보다 더욱 공세적인 여론 조장을 도모한 기록이다. 청원서명자에 대한 수사와 이 같은 홍보대책은 아카데미 사건에 대해 당시 중정이 어떠한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58) 중정, 「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 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의 대책부분에 첨부된 「청원서 서명 경위 수사계획 보고 -대공수사국」에는 “3. 수사방침으로: 본 청원서 작성자 중에는 전 대통령 윤보선, 신민당 총재 김영삼 등 일부 특정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서명자를 A, B급으로 구분 B급 해당자를 우선 탐문 조사한 이후 A급 대상자 및 Y. H사건 관련 목회자, 부산 등 지방거주자 등은 차후 조사.

59) 「C.A사건 청원서 작성서명 및 외신보도경위 조사결과보고」 참조.

60) 국외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보부는 79.4.16 서울지검에 사건 발송 후 제 1차장 및 외사국을 통하여 해외 지점과 주한 독일·캐나다 등 거주대사관을 대상으로 신문보도자료 및 압수증거물 사진 등을 제시 설명한 바 있고, 79.8.25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의 진상책자 50부를 제1차장 보실에 배포, 해외지점으로 하여금 본 사건의 실태를 적극 홍보토록 조치하였다.

이 청원사실은 뉴욕타임즈 동경지국장 헨리스코트 스톱스에 의해 외신에 보도 되었다. 외신보도에 주목한 증정은 「외신기자 청원서배포자의」에서⁶¹⁾ 이 청원서명 작업이 종교계를 위시한 반체제 분자들의 반정부 활동 책략으로 규정하였다.⁶²⁾

또한 청원서 회신문제에 대해서도 증정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하였다. “청원서 배포가 국내외적으로 대정부 투쟁수단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고자 하는 계략이므로 본 청원서에 대한 회신의 필요성이 없으며, 회신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도에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고문문제가 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수간첩과 귀순간첩을 활용한 대국민 일반홍보 대책⁶³⁾도 추진되었다.

“현재 공판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문여부는 사건 발표 당시 사실발표된 적이 없어 일반 국민이 아직 모르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본 청원서에 회답하는 형식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경우, 새로운 의혹을 사게 될 우려가 있다. (중략) 본 사건 관련 기관이 종교적 배경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 고문운운 사실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보수기독교단 지도급 인사들에 한해 공판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아카데미 사건관련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 실태를 홍보하고 (중략)

대국민 일반홍보는 고문여부 등 사건쟁점에 대한 직접 홍보는 배제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대정부 투쟁방법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61) 증정, 「중요보고: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

62) “국내적으로, 평소 NCC계 극렬 반체제 분자들은 현 사회정치구조의 변혁을 목적으로 현행 반공법규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선동. 아카데미 사건 역시 고문에 의한 조작물로 부각시켜 반정부 세력의 호응으로 단합을 기도, 국제적으로는 동 아카데미 사건을 왜곡 전파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 현 정부를 국제적으로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는데 있다.”

63) 증정, 「중요보고: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중 대국민 일반홍보 방안 중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을 주제로 하는 홍보방법은 배제하고 자수간첩 김용규와 이 사건 직전 귀순한 안찬일 등을 활용 북한의 대정부 투쟁책동수법 등 대남 적화전략에 관한 특별 반공좌담회를 개최하여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

중정은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과는 상관없는 자생적 공산주의자라 주장하였다. 검찰은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회색분자라고 논고문에서 규정하였음에도, 중정의 홍보 전략은 북괴의 대정부 투쟁책동수법 등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홍보의 핵심으로 하여 마치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북의 간첩들과 비슷한 부류로 선전하였다. 중정의 이 같은 대국민 홍보는 아카데미 사건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연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었다. 중정은 이렇게 혐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핵심 사실은 당시 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국민일반에게는 아카데미 사건은 종교계에 침투한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 사건으로 각인되었다. 중정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아카데미 교육생 박OO·장OO·이OO에 의하면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자들을 “노동·농민 등 각계각층에 침투 암약하여 그들을 포섭하려 한 공작원”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⁴⁾

그러나 중정의 아카데미사건 관련 홍보활동은 반공교육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1979년 8월 25일 구속자석방 청원서가 외신 등 국내외적으로 배포된 이후 중정에서 사회적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언론조정활동을 실시하였다.

4) 사건의 목적성

당시 아카데미나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기독교계 단체들은 노동운동 지원기관으로 반 유신 민주화운동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들에는 비기독교 학생운동 출신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이들을 분리해냄으로써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세력을 분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정은 이들 기독교계 주류로부터 도산이나 아카데미 등을 고립

64) 박OO(당시 원풍모방 부지부장) 면담기록. 장OO(당시 반도상사 지부장), 이OO(당시 통일방직 지부장) 유선접촉 면담내용 참조.

시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⁶⁵⁾

민주노조운동에서 도시산업선교회가 현장의 지원세력이라면 아카데미는 민주노조 간부들의 교육과 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말하자면 아카데미는 민주화운동 각 부문의 간부양성 학교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었다.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민주노조의 핵심간부를 맡고 있었기에 민주노조운동에서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정은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을 학생운동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반정부 불순세력의 온상’으로 파악하였다.⁶⁶⁾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정이 아카데미를 무력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카데미의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재생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방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사건 후 중정발표에 의하면 아카데미와 지하서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교육이수자 표본조사계획>이라는 중정의 내부분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중정의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중정이 아카데미를 주시해 왔고 아카데미 사업과 활동을 이 불법지하서클과 관련 지으려 하였다. 중정은 아카데미 교육이수자들의 신상기록 카드를 작성하여 아카데미 교육 분야·직장·직위 등 기본 인적사항과 교재인물 및 최근동향·내사결과 등으로 분류 관리하였다.⁶⁷⁾

“지하용공 비밀조직이 종교기관을 활용 각계각층에 침투, 사회혼란을 조성한다”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등 기독교 사회운동을 위축시키고 견제하려던 중정의 의도는 고문의혹이 증폭되면서 기독교계 등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이 사건을 통해 중정이 얻고자 한 효과는 충족되었다. 국민들은 종교기관에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였다고 믿게 되었고,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빙자한

65) 안기부, 「한국 NCC, WCC 승인사업 견제대책보고」(83.8.30) 내용은 기독교계를 상대로 한 공작 실태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이다.

66) 국정원 보존자료 중, 동일방직, 원풍모방, YH 사건 등 노조동향보고서의 개황, 동향 등 참조.

67) 중정, 「C.A교육이수자 동향철(79.10.26-12.7)」 참조.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들도 중정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또는 사건발표를 보고, “아카데미 간사들이 혹시 진짜 간첩이 아닐까’하는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였다”⁶⁸⁾라고 한다. 이로써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무력화하여 민주노조 간부들과 아카데미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던 효과도 달성되었다.

당시 아카데미는 재야단체보다는 중간집단 교육이라는 민중의식화 교육으로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민중의식화 교육의 문제였다. 당시 아카데미 중간집단 교육생들은 농민운동·노동운동·여성운동 등 각 부문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발표 당시 중정은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간사들의 불법지하 용공조직사건이 아카데미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위의 발표와 달리 중정은 수사 초동단계에서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용공교육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⁶⁹⁾

아래는 「교육이수자 표본조사계획」이라는 중정 보고서에 적시된 설문내용이다.

68) 박00(전 원풍모방 부위원장), 장00(전 동일방직 위원장)과의 진실위 (유선)면담 인용.

69) 중정 수사보고 자료인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측정(12-6,12-7,12-8)」, 중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표본조사 계획보고」(79.4.4)에는 1974년 이후 중간집단 지도자교육이수자를 4800여명 이상으로 추정, 이들 중 1%에 해당하는 분야별 교육이수자 50명을 표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행정권역별로 10명씩 총 80명의 교육수료생을 차출하여 조사하였다. 이 계획보고서는 “아카데미 교육의 용공성 여부와 반체제적 성향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짙을 경우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설문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귀하가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 동기와 경위
- 아카데미 교육이념과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장 인상 깊었던 강사와 강의내용은
- 중간집단의 기능과 목표는
- 중간집단 지도자 교육에 가장 공감이간 부분에 0표 하시오
- 교육기간 중 ‘민중’ 이란 말은 몇 번이나 들었나
- 민중과 중간집단과의 관계는
- 교육내용 중 사회주의 경향성 여부에 대한 귀하의 소견
- 새마을사업과 중간집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기간 중 현실을 비판하거나 현 체제를 비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내용은
- 중간집단 지도자 교육을 받고 난 귀하의 소견(교육 후 가치관 변화, 교육이념에 따른 활동내용)
-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교육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요(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
- 귀하가 교육이수 후, 이 교육을 권유 또는 추천한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 교육 후 아카데미를 방문 (또는 재교육)하거나 서신연락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 아카데미 직원 중,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 아카데미 교육이념과 현 정부 시책과 상치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 교육내용 중, 다소 옹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 본 설문을 작성하고 난 귀하의 소감 등을 서술하십시오

동 보고서는 설문참가자에 대한 인적사항·신원성분·경력 소속부서에서의 활동내용·교우관계·불온문건 탐독여부 등을 조사보고하거나 진술조서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설문의 결과분석 보고서⁷⁰⁾는 교육의 옹공성, 체제 및 현실비판,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교육이수 후 동향 등에 대한 개인별 평가보고가 적시되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대상자 답변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70) 중정,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추경」

사건 당시 중정의 수사를 받은 이00·장00·박00 등 아카데미 교육이수자들은 진실위와 면담에서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아카데미 간사들을 북에서 지령을 받고 노동계에 침투한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증언하였다. 또 노동자들을 “간사들에 의해 포섭된 하부조직원”으로 취조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중정이 민주노조 간부들까지 망라하여 ‘도산 계열 노동운동과 용공지하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사건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정은 이들 민주노조의 간부들마저 ‘용공지하조직’의 조직원으로 만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중정은 이들 노조간부들을 마치 ‘간첩사건’에 연루된 자들로 몰고 취조함으로써 이들과 아카데미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는 있었다. 노동자들은 수사관의 무리한 사실왜곡에 반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반공교육의 영향과 위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심리적인 동요와 갈등을 겪었다’고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⁷¹⁾ 그리하여 아카데미 중간집단교육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라 소 결

중정의 아카데미 사건 수사는 그 결과를 노동운동 탄압에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관계없이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을 후원하던 기독교운동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중정은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이 한국사회 민주화와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신체제를 위협하는 반정부활동으로 간주, 공안사건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유신정권의 저항세력으로 민주노동운동 등 기층대중운동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카데미 활동을 무력화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카데미 간사들이 비공개 학습소모임을 구성하고 암암리에 몇 권의 맑스·레닌 서적과 그것을 해설한 개론서를 토론 학습한 실체는 중정의

71) 원풍모방 전 부지부장 박00, 반도상사 전 지부장 장00, 동일방직 전 지부장 이00의 진실위 면담.

수사과정에서 확대되었다. 민주노조 지원세력인 도시산업선교회와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아카데미 활동이 용공불순활동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아카데미를 무력화 하려던 정권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집단 교육활동은 실제로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가

동일방직

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중정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2001년 3월 19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참고인 증인으로서 전 중정 경기지부 노사문제 담당관 최종선이 발표한 진술서에 소상히 밝히고 있다. 최종선은 1978년 초부터 1981년 퇴직 때까지 경기지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최종선은 자신이 중정 경기지부에 근무하던 당시 직접 동일방직 노조 파괴 공작에 개입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2. 내가 아는 동일방직 사건

78년 초, 저는 인천에 부임한 직후 동일방직 노조의 이충각 지부장과 산업선교회의 조화순 목사 등과 전화통화해 “앞으로 내가 담당자”라는 인사를 나누는 적이 있으며, 그 뒤 이 지부장과는 직접 만나 “‘유신체제 철폐’와 ‘박정희 정권타도’ 요구만 하지 말라. 그것은 일선 담당관 차원에서 봐줄 성격의 일이 아니다. 그 외에는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국과 노조 사이에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은 격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소위 ‘똥물 투척사건’이 일어나기 2주쯤 전인 2월초 였습니다. 보안사 인천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형, 우리에게 거동수상자 보고가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소관(군 관계)은 아닌 것 같고 최 형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알려준다.”며 인천 신포동 뒷골목의 배명여관에 거동수상자들이 집단으로 기거하며 들락날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현장에 도착, 여관 종업원과 그들에게 “누가 책임자냐”고 물으니 '작은 덩치에 가죽 모자를 쓰고 개털 잠바를 입은 사람'과 '체격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중정 인천담당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이들에게도 “신분을 밝히라”고 했으나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중략)

이 두 사람은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묻느냐” “위(중정 본부를 지칭)에서 다 알고 있다”면서 체격이 작은 사람은 자신을 ‘전국섬유노조 조직국장

우중환'이라고, 체격이 큰 사람은 자신을 '조직행동대장 맹원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뒋 하러 왔느냐”는 질문에는 “동일방직 노조 깨부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우중환과 맹원구 두 사람은 마치 대단한 특명이라도 받고 온 양 “서울 본부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간석동 경기지부 사무실로 돌아와 최 모 지부장과 허 모 정보과장에게 즉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본부에까지 전달된 이 보고서에서 “이총각 지부장, 조화순 목사 등과 지금 평화상태인데 구태여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공연히 건드려 화근을 만들 이유가 없다. 만약 섬유노조 내부의 조직분규라면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아무튼 이런 강력한 ‘중지’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두세 차례 쓰고 그런 과정에서 본부 최모 담당관과도 한두 차례 통화했습니다. 본부와 지부 사이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자 결국 본부로부터 “경기 지부는 이 일에 빠지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마침내 “빠지겠다.”는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경기도 노동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략) 이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별명이 있을 때까지 송현동 동일방직에는 동서기 한명도 넣지 말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중략) 그 뒤 정말 경찰관은 물론이고 어느 공무원도 한동안은 동일방직 내부에 들어간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예상대로 문제가 이렇게 되자 본부에서는 뒤로 빠지고 경기도경과 우리 (경기지부)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중략)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본부 최 모 담당관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마침내 본부 방OO과장이 도지부로 내려와 지부장에게 “이제는 좀 수습하러 나서야 할 것 아니냐.”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문제를 예상해 경기 지부는 빠지기로 했던 것 아니냐. 나는 수습할 능력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결국 방 과장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며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 지부장이 다시 저를 불러 “일이 터진 마당에 수습을 하지 않을 수야 있느냐”고 권유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동일방직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하고, 회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략)

저는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1단계로 단식농성장의 수돗물과 전기를 끊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변에 경찰의 모습은 일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지쳐서 농성장을 나오게 만들려는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뒤 일부는 명동성당으로 가고 일부는 인천에 남는 등 곳곳에서 항의농성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 다시 방OO과장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지부장에게 했던 말인즉 “명동성당이 계속 반정부시위 장소로 이용되니 혼을 내야겠다. 똥을 뿌린 남자종업원들을 보내 명동성당을 쫓발으로 만들라. 국민들도 명동성당의 꼴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결국 저는 사흘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명도 복귀시일 안에 복귀한 사람이 없으므로 본부에 보고하여 저는 농성자들을 전원 해고시키도록 조치했고, 노조는 다시 집회를 열어 박복레 집행부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본부에서 작성하고 관리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지부 내의 보직이 바뀌어 동일방직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인지 기억은 분명치 않으나 인천 북구 부평 지역의 반도상사 노조도 동일방직과 비슷한 방식으로 섬유노조 본조에서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인천에서 동일방직 문제만 해도 시끄러운데 같은 인천 지역에서 또 사고를 벌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견제하여 기존 노조를 유지토록 한 일이 있는데, 그 무렵의 전후 사정은 당시의 노조원 장현자(당시 노조 지부장), 조금분(당시 노조 부지부장) 등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01. 3. 19. 전 중정 경기지부 직원 최종선 >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1972년 주길자가 한국 최초의 여성지부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중정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주길자 집행부는 21대부터 23대까지 내리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기존의 남성 어용후보 문OO를 큰 표차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해냈다. 한국노총과 산별 위원장들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지부장까지도 중정의 낙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1,400명의 손꼽는 대기업인 동일방직의 역대 지부장은 예외 없이 어용이었고 또 예외 없이 남성이었다.

그런데 인천산선의 조화순 목사는 동일방직에 입사해서 노동자로 일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과는 교류가 깊었다. 이때부터 조화순 목사와 인천산선 실무자였던 황영환·최영희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소모임을 만들고 노동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동일방직의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주길자 집행부는 사실상 인천산선의 동일방직 소모임과 인천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탄생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길자 집행부는 중정의 지시 명령 아래 일사분란하게 노동자들을 통제 관리해오고 있던 당시의 섬유연맹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동일방직 노조는 여성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착실하게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초대 여성 노조지부장인 주길자가 물러나고 1975년 두 번째 여성 노조지부장인 이영숙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정은 동일방직 노조에 대해 적극 대처하였다. 당시 동일방직에 대한 중정 내부 자료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전 반도상사 지부장 한00은 2006년 11월 18일 위원회 면담에서 “당시 동일방직 사태 전후로 기관쪽과 회사쪽 사람들이 현장문제를 하나의 방향을 잡아가며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이 참여하는 회의 과정에서 기관에서 박복례 조직을 지원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자신은 중정 사람들을 직접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 연맹 조직국장 우종환은 중정 사람들을 만났다. 동일방직 사건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에서 깊이 개입하고 같이 방향설정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여성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노조였다. 조합원들은 인천산선의 소모임과 각종 활동을 통해 더 이상

무지몽매한 근로자들이 아니었다. 노동하는 인간에 대해 새로운 깨우침을 갖게 된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한 의식화된 활동가들이었다. 중정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깨뜨리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중정의 무리한 동일방직 노조 와해 활동이 빚어낸 사건이 1976년 7월 26일의 동일방직 여성 조합원들의 알몸시위였다.⁷²⁾

이 과정에서 지부장 이영숙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분노한 여성조합원들이 지부장 석방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노조 사무실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하였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려고 하자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알몸으로 이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일체의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투쟁은 아카데미 기관지인 『대화』 지에 석정남(동일방직 노조 조합원)의 「불타는 눈물」이라는 논픽션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외언론에서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알몸시위가 여기저기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세력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촉발하였다. 이제 동일방직 노조 사건은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어 갔다.

최종선이 중정 경기지부로 전근해 온 것은 그런 복잡하고도 심각한 분규 사태가 일단 봉합되고 1977년 4월 대의원대회에서 이OO이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된 뒤였다. 그 시점에서 최종선은 이OO 집행부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72) '중정 요원들이 4월 3일의 정기대의원대회를 며칠 앞둔 1976년 4월 1일 이OO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의원 고두영 등과 회사 측 간부 4명을 인천 소재 화신여관에 불러 직접 정기대의원대회 불참전략을 지시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정 요원이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하는 일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작을 통해 회사 측 대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면서 노조와해 전략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중정 경기지부가 동일방직 노조와 무리하게 부딪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중정이 섬유노조 본조를 앞세워 왜 굳이 파괴하려 했는지 공작 이유를 직접 밝혀주는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선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중정 담당관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민주노조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노동정책, 중정의 한국노총 통제관리전략이라는 큰 기조에서 보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동일방직 노조를 와해한다는 중정의 기조는 변함이 없던 상태에서 중정 경기지부와 최종선은 동일방직 노조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짧은 기간의 소통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방직 노조 문제가 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정은 잠시 여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계피복·동일방직·원풍모방·반도상사·콘트롤데이터·YH 등 1970년대의 민주노조에 대해서도 중정은 끊임없이 관여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노동쟁의가 곧바로 전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했을 때 중정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틈을 노리는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전략을 구사하곤 했다.

최종선이 중정 경기지부에서 동일방직을 담당하기 이전인 1977년 2월 2일, 이OO을 중심으로 한 ‘사건수습투쟁위원회’는 2월 6일에 10여개 종교단체 후원으로 명동성당에서 ‘동일방직 사건해부식’을 갖겠다는 호소문과 초청장을 사회 각계에 발송하였다. 한 해 전인 1976년 2월 6일 대의원선거 때부터 1년 내내 계속된 고두영 등 회사측 대의원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조 와해 시도에 대해 더 이상 회사 안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회문제화 시도였다.

중정 내무문서에 따르면 중정은 명동성당의 사건해부식을 막기 위해 호소문과 초청장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저지하고 노동청을 조정해 해결책을 강구한 뒤 동향을 파악한다는 역할분담까지 명시해

두고 있다. 특히 중정 문서에 하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서 보고는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른 사건 조치 결과보고로서 동일방직 지부의 사회문제화 시도는 결국 성공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당시의 노동문제가 얼마나 휘발성 강한 사회문제였던가를 입증한다. 중정 문건을 보면 사건해부식 초청장과 유인물이 발송되자마자 중정은 신속하게 유인물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요보고 (2-3) 명동성당에서 동일방직사건 해부식 개최추진」

- 내용 : 인천 동일방직 해고여공들로 구성된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에서는.... 77.2.6(14:00) 명동성당 내 문화회관에서 동일방직사건 해부식을 개최한다는 초청장과 여공들에 대한 부당 해고행위를 규탄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고 있어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
- 대책 : 노사문제를 성당 내에 끌어 들이는 것은 노동계는 물론 앞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킬 것이므로 회사 측과 분규당사자를 조정, 해결점을 찾으려 하며 성당 내에서의 노사문제로 인한 논란을 사전 저지하겠음
- 결재자(다른 필체로 쓰여 진 것으로 보아) 지시 : “유인물 내용 분석 할 것”(2.5)

그런데 같은 중정 내부분서이면서도 유인물 분석 결과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대목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흥미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에서는 유인물이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무튼 초기에는 강경진압 방침을 세웠으나 곧 어떤 연유인지 중재와 타협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방직 노조쟁의 [사건수습투쟁위원회] 유인물 분석보고」

1. 노사분규 과정
2. 유인물 검토
 - 동일방직 노조지부 내에 [사건수습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임의결성,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9조 1항(단체 교섭권 등의 규제)을 위반

- 노동쟁의를 빙자, 규합한 후원단체인 산업선교연합회 등 문제 종교단체는 노사문제를 교회영역으로 끌어들이려 거론함으로써 인권회복을 빙자한 반정부 불순활동으로 전환될 우려가 농후함

3. 대책

- 집회 저지
- 노동청을 조정 근본적 사건수습책 강구
- 동향주시

「제목: 동일방직 노조분규사건 내사결과보고」

1. 인적사항 : 동일방직 노조분규사건수습투쟁위원회 대표 이OO(30세)
2. 내사결과
 - 77.2.5 노동청 등이 중재, 동 해부식 사전저지(중정의 지휘 조종)
3. 조치의견

본건 사건수습투쟁위원회 유인물을 검토한 바,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고 문제종교사회단체와의 연계관계 등에 대하여는 경기지부로 하여금 동향감시토록 조치위계

「동일방직 노조분규사건 내사결과보고」(1977.6.8)

다. 사건 해부식 초청장 및 호소문 등 작성·인쇄·우송 상황 (中)

- 동 유인물 회수상황은 인천우체국 117매, 광화문 우체국 50매, 중앙우체국 64매, 동대문 우체국 369매 계 590매를 회수하였음

이때 중정은 명동성당의 사건 해부식을 막기 위해 노동청과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당시 노동청 노정국장 신OO는 중정의 개입과 지침 하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청이 어떠한 중재나 타결도 할 수 없다며 중정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노동청이 그 어떤 독자의 중재안과 타협안도 만들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이처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노동청은 강력하게 동일방직 사건 중재와 타협 자리에 중정의 참석 배제를 요구했고 이는 일부분 수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 동일방직 지부장 이OO은 2006년 10월 12일 진실위 면담에서 당시 노동청 노정국장 신OO가 해부식 직전에 “너희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

주겠다. 해부식만 취소해라”고 요구하며 회사와의 중재를 주선하였다.... 당시 노동청 노정국장을 몇 차례 만나기도 하였으며 노정국장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기도 하는 위치에 있으니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 문제는 자신에게도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자기 소신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함. 그래서 이OO이 “소신으로도 안 되는 것이 뭐냐.”고 되물었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신OO가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자기 판단으로 하는 일이 아니며 이OO 자신은 그 실체가 중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단 며칠 만에 노동청을 동원해 중재를 하고 명동성당의 사건해부식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방직 노조의 조직 분류 배후에 중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정은 동일방직 노조의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조직 분류를 조장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노동청의 중재로 명동성당 사건해부식은 열리지 않았고 동일방직 노조는 이OO 집행부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중정의 노조와해 전략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중정은 그 이후에도 동일방직 노조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였다.

1977년 중정의 동일방직 내사보고·동향보고 문건 등은 동일방직 지부 활동에 대해 중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 집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동일방직 노조동향 보고-2보」

- 노조 대의원 대회가 15:37 여자기숙사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바, 대의원 45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동일방직 노조지부장을 선출한 결과 대의원 30명 중 29명이 찬성, 1명 기권으로 이OO이 동일방직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
- 추가 종교인 참석자 명단-서울 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조승혁 등 2명(15:55)

「동일방직 노조지부장 이OO 동향보고」

1. 동일방직 노조지부장 이OO은 지난 77.4.4 대의원대회 회의록을 인쇄 의뢰하였던 삼우인쇄소 대표 조OO과 중앙동 소재 호반다방에서 접촉 대화 중 동일방직 노조에 관련하여 언동 하였는바 그 언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일방직 노조대의원대회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관에서 방해 작용하는 것 같다.
 - 남자종업원 170명을 포함한 675명이 노조를 탈퇴하려는데 내가 알기로는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이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측에서 해고해야 하는데 그냥 둘 수 있다는 노동청의 유권해석은 기관의 작용인 것 같다....
 - 지급 당장 급한 것은 지난번 개최한 대의원대회 결과를 인준 받는 것인데 KCIA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 우리는 합법적으로 권익보호를 찾기 위해 투쟁을 하지 위법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 회사 측에서 매월 봉급 때면 노조원의 회비를 일괄 공제하여 주는 등 편의를 도모해 주었는데, 지난번 봉급 때부터 공제해주지 않는 것도 기관의 작용인 것 같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관계기관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니온삽제 해부식’을 개최하려 했다. 그러자 중정은 이를 지난번 노동청이 주도한 중재안 탓으로 돌리면서, 관이 개입해서 사건해부식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시 중정의 상황인식은 중정 보유문건인 「동일방직 이OO계 관계요로에 초청장 발송 예정」 등으로 확인되었다.

「동일방직 이OO계 관계요로에 초청장 발송예정」

2. 지난 2.6. 사건해부식과 유니온삽 제도 규명식 대책방안 분석
 - 당시 이OO은 관 개입의 약점을 악용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동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집회를 중단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동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이OO이 요구한 6개항에 대하여 노동청 중재 하에 회사 측, 본조 및 이OO 등 3자의 대표 연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이 같이 동 집회를 저지시키기 위해 관이 개입함으로써 이OO계에 관이 휘말려 들어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OO은 당시 유리했던 점을 악용해 또다시 “유니온삽제 규명식”을 구상한 것으로 보임.....

3. 조치건의 : 동 노조지부장 이OO이 구상한 오는 4.24 명동문화회관에서의 유니온샵제 규명식은 방입하되 위법사실 유할시 강력히 위법 조치함이 현명한 대처방안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방안을 채택 조치하실 것을 건의함(77.4.16)

증정은 이처럼 강경한 진압책과 노조 약화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한편 동일방직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내의 폭행사건이 그 예이다.

「동일방직 여공폭행사건 수사상황 보고」

1. 피의자 인적사항 : 유OO(1954.2.23생)외 4명
2. 내용 : 본명은 노조 조직부 차장으로서 77.4.5 21:30경 작업장에서 피해자 김OO(23세)을 노조에 비협조적 배신자라고 시비, 폭행 중 노조원 김OO 등 4명이 가담하여 전치 3주간의 타박상을 입게 함.
3. 조치
 - 유OO은 인천동부경찰서에서 구속, 기타 4명은 불구속 조사 중.
 - 본명 등은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계된 노조지부장 이OO 계열로서 엄중 위법 처리토록 조종위계

「동일방직 여종업원 폭행사건 주동 구속자 석방 요구 유인물 입수보고」

1. 동일방직 이OO계 여종업원들은 별첨 유인물 1,500여부를 인쇄 배포예정 에 있는바 유인물 내용은 다음과 같음(중략)
4. 참고사항: 동 유인물은 아직 배포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동 유인 물은 경찰을 조정하여 사전 입수된 것임

「동일방직 여종업원 폭행사건 검찰수사 상황보고」

「동일방직 이OO계 일부극렬분자 반대파 종업원에게 침 뱉기 등 소극적 보 복 행위 계속 자행」

「동일방직 여종업원 폭행사건 피해자 김OO 퇴원예정」

「동일방직 노조원 대 비노조원 세력 확대 부심」

「문제변호인 임광규 동일방직 여종업원 폭행사건 주동구속자 유OO 접견 동향보고」

「동일방직 노사협의회 노조 재가입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합의」

「동일방직 관련 일일동향보고」

「동일방직 비노조원 측, 노동청의 조합비 공제 중재안 거부」

「중요상황 보고서: 동일방직 지부 근로자 노동청에 집단항의」 접수일시:77.5.9.
18:50

「동일방직 동향보고」

「동일방직 노조 노동청 본청에 상경 비노조원 조합비 공제요구」

「섬유노조 본조 동일방직 비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승인을 번복」

「동일방직 비노조원 호소문 배포」

결국 동일방직 민주노조 탄압 사건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아 널리 알려진 바대로 알몸시위에 이어 1978년 2월 21일 대의원대회 때 민주노조 반대파들이 주동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뿌리는 이른바 전대미문의 ‘똥물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이에 항의하여 동일방직 노동자 65명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노동절 행사에서 공개시위를 벌였고 이어서 최후로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동일방직 민주노조는 중정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124명의 해고자를 낳으면서 와해되어 버리고 만다. 당시 최후의 기회는 1978년 3월 23일에 ‘똥물사건’ 이전으로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킨다는 종교계와 중정의 합의였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얻어낸 결과였다. 최OO의 증언대로 복직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이 관철되는 조건에서 회사복귀가 결정되었고 중정은 회사를 통해 농성노동자들의 복귀 시한을 정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복귀시한을 넘기게 되었고 124명이라는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한 사실은 전 원풍모방 노조지부장 방OO의 진실위 면담내용으로 확인된다.⁷³⁾

그러나 당시 분명히 원상회복 방침이 타결되었음에도 동일방직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똥물사건’이 상징하는 바 현장의 끈질기고도 끔찍한 노조 탄압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고 농성 조합원들이

73) 2006.11.21. 전 원풍모방 노조지부장 방OO 위원회 면담내용 “1978년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장기간 농성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김OO 신부 방에서 중정간부가 가톨릭 노동청년회 정OO 회장에게 ‘그렇게 회사로 들어갈 필요 없고, 사장을 불러내서 사장에게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며 복귀를 지연시켜, 회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회사가 124명 전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당시 그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결국 중정의 방해로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복귀시한 안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대량의 해고자를 낳으면서 동일방직 민주노조는 문을 닫고 말았다.

아무튼 이처럼 길고 긴, 그리고 끈질긴 중정의 노조와해 전략에 대해 동일방직 민주노조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에 걸쳐 정말 끈질기게 저항했다. 막강한 중정과 군사정부의 부당한 권력의 힘에도 쉽게 꺾이지 않았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힘의 원천은 인천 산선이라는 외부의 지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외로 천대를 받고 스스로도 열등의식에 휩싸여 있던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도 인간이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 깨달음에 있기 때문이다. 긴급 조치를 비롯한 어떤 악법과 경찰이라는 물리력, 중정에 대항할 수 있는 정의감은 이런 상식의 깨달음에 있었다. 그렇게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동일방직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그렇게 길고 긴 시간과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

반도상사

1970년대 중정의 민주노조 운동 탄압과 와해 과정에서 반도상사 노동조합은 드물게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중정은 노동조합이 없는 반도상사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 농성이 일어난 최초 시점부터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성 주도자이자 이후 노동조합 지도부가 된 한순임 등이 인천 산선의 조화순 목사와 특히 실무자 최영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고는 곧바로 양자를 분리, 이른바 순화하는 공작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그 공작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

전 반도상사 담당간사 최OO은 2007년 3월 16일 위원회 면담에서 “한OO이 중정수사를 받은 전·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거의 매일 최OO를 찾아와 상황을 알려주고 의논하였으나 석방 후에는 처음 찾아와서는 다분히 의무적으로 얘기 하였다. 한OO이 ‘최OO의 이름을 불었다는 것,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하였고, 내왕이 뜸해지다가 한참 후에는 전혀 한OO을 볼 수 없었다..... 한OO 등이 중정에 연행되고 나온 후에 경찰인지, 중정인지 누구의 구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OO 몽타쥬를 만들어 간첩으로 수배 하였는데, 실제로 수배한 것은 아니고, “봐라. 이렇게 몽타쥬를 들고 다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최OO는 없는 인물이고 간첩이다”라고 반도상사 노동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한OO 뿐 아니라 장현자 등 거의 모두가 자신을 간첩이라 여겨 무서워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학생운동 때의 경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기관에서 몽타쥬를 통해 간첩으로 몰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것은 중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의도란 자신을 잡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한OO과 관계를 단절하여 한OO을 통한 배후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그리고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도산이나 자신으로부터 독립된 어용노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고 주장하였다.

전 반도상사 담당간사 최OO가 진술하고 있듯 중정은 이미 최OO가 학생운동 때부터 이대생들을 데리고 광산촌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 등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산선 실무자로서 일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조OO 목사나 최OO를 무턱대고 구속시킬 수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과 반도상사 한OO 집행부를 분리하는 공작을 펼쳤고 이것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한OO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한다. 중앙정보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 받은 내용은 최OO·조OO과의 만남의 횟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산업선교회와 어떻게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였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하도록 어떤

권유를 받았는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전 반도상사 지부장 한OO은 2006년 11월 18일 위원회에서 면담에서 “자신이 볼 때 도시산업선교회 조OO·최OO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어떤 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자신을 통해서든 짜맞추어진 대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사를 하였다. 의도대로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시, 옥설과 주먹질, 이틀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고문으로 살벌한 분위기에서 수사 받았음..... 수사 받고나서 조OO·최OO가 정말 지령을 받은 간첩이었을까도 생각해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1974년 2월 26일과 3월 5일 2차례에 걸쳐 반도상사 부평공장에서 한OO·장OO 등의 주도로 7개항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이 일어났다. 그 후 한 달 만인 4월 15일 회사 측과 파업농성 지도부는 임금 37.9% 인상, 한OO을 지부장으로 하는 노조 인정 등에 합의하였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성과였다.

한OO·옥OO·장OO·김OO 등 반도상사 부평공장 파업농성 주동자들은 인천 산선의 여성노동자 지도자모임에서 최OO의 지도로 노동법과 노동조합 교육을 받은 이른바 의식화된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전 반도상사 담당간사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조건 개선은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속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결성이 필요하고 노조결성을 위해서는 농성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희생이 따른다. 어린 나이에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네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부평지역 여성노동자 지도자 모임을 만들어서 각 회사별로 똑똑한 여자들을 소개받아서 교육을 하였어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이런 것이고, 사회는 이렇고, 노동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등의 합법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당시 한OO씨가 탁월한 학습능력과 언변으로 단연 눈에 띄었어요. 소위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이었어요.

문제의식도 치열하고요..... 사전에 조OO 목사님이 한OO·옥OO·장OO·김OO 등 4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빨갱이들이 하는 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나중에 끌려가면 최OO를 빼고, 목사인 나에게 미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중정은 파업농성이 일어나고 노조결성이 되자마자 이미 배후를 파악하고 있었다.⁷⁴⁾

국정원 내부문서 「반도상사 노조결성 배후조종 일정표」를 보면 중정은 경찰의 한OO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최OO, 총무 조OO과 반도상사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접촉을 했는지, 비용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여부까지 자세하게 도표로 작성해 놓고 있었다.⁷⁵⁾

중정 경기지부는 1974년 3월 12일 파업농성 상황을 본부에 보고하고 중정 본부는 한OO 등 4명을 이른바 남산으로 연행 조사한 뒤 훈방 조치했다. 중정은 이어 곧바로 한OO 등 노조 지도부 순화공작을 벌여

74) 중정, 「중요보고: 전국섬유노조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 결성동향보고」 제하 문건에서는,
 ○ 경찰조치로써 74.3.6 06:30 주모자로 인정되는 한OO 등 12명을 1차로 연행하고 2차로 동일 16:00에 4명, 3차로 동일 17:00에 3명 등, 계 19명을 연행조사.

○ 연행자 중 이OO 등 7명은 불순혐의점 없어 3.6 21:00에 1차로 귀가 조치하고 한OO 등 12명은 부평동 봉화여관에 보호하여 조사한 결과 불순요인이 없으므로 3.7 19:00에 각서 수리 후 엄중훈계방면 하였음 등의 내용 수록.

75) 중정, 「(중요보고): 반도상사 노사분규 조정결과」 (1974.6.10.) 제하 문건에는,

1. 섬유노조 반도상사 부평공장 지부는 지난 4.15 노조결성이 되었으나 노사간에 노조활동지원 문제를 위요하고 반목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과 회사 측을 지지하는 비노조원(봉선회원)간의 감정대립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사회물의를 야기되어 왔었음.

2. 조사결과 : 경기지부에서는 지난 6.6 반도상사 측과 수습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
 ○ 회사 측은 노조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봉선화회 활동을 일절 지원하지 않으며 이를 공장장이 책임진다.

○ 현재 지부장과 사무장 2명이 노조운영문제를 전담토록 하되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는 상근인원을 증가시킨다.

○ 노조사무실을 이동설치하고 노조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대기비품 및 사무용품 등을 회사 측이 지원한다.

○ 기숙사 인원감축은 노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보류한다.

※ 이와 같은 조정사항은 6.10 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장장이 직접 발표키로 하였음.

나갔다. 중정은 한OO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해 노조 결성 초기 회사 측 비노조원 조직인 봉선화회의 활동 금지, 조합 상근 인원 확대, 사무실과 비품 등의 지원을 회사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6월 10일 기한 내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반도상사 부평공장 공장장이 직접 발표하도록 조치까지 취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결국 이 공작은 성공을 거두어 한OO 등 반도상사 노조 지도부는 최OO와의 접촉을 끊기 시작했고, 이후 한OO 등은 중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새마을운동 강연을 통해 인천 산선을 비판하는 연설에 동원되었다. 특히 동일방직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중정의 공작에 동원되어 동일방직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인천 산선을 비판하는 연사로 적극 나서기도 했다.⁷⁶⁾

중정은 한OO 이후에도 장OO·김OO 등 노조위원장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OO은 ‘OOO 공작’이라는 공작명으로 중정에서 직접 노조활동 중단공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⁷⁷⁾ 장OO의 경우는 개인존안기록 형식의 동향자료⁷⁸⁾에 의하면,

76) 2007년 3월 16일 위원회 최OO 면담내용 “당시 중정이나 경찰은 반도상사노조에 대해 시간을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노조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 완전히 노조를 처음부터 파괴하려는 전략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전략은 부평경찰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부장 한OO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동료 간부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폐결핵에 걸린 현장 동료의 해고문제를 독단적으로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도시산업선교회와 아카데미는 한OO을 어용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일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선 비방 교육에 한OO이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 최OO는 “섬유노조 우OO 조직국장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한OO을 동원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 근거는 당시 관이 동일방직 노조에 대해 대단히 종합적인 개입을 하였으며, 한OO이 섬유노조를 그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한OO이 어느 새마을 운동 강연에서 “최OO에게 교육받고 나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 강연 녹음 테이프가 중앙정보부에 넘어가 1977.10.경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 전 반도상사 지부장 한OO은 2006년 11월 18일 면담에서 “중정수사 후에는 최OO 간사를 만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최OO 간사도 만나자는 연락이 일체 없었다. 그때, 자신은 최OO 간사가 도망 다니느라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977. 반도상사 지부장 선거 후에 섬유노조 조직국장 우OO의 제안으로 박OO가 주도하던 이OO 반대조직을 강화하는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산업선교회에 대한 배신감에다 노조가 산업선교와 관계에서 독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OO 조직에 참여하였고 섬유노조의 방침에 따라 조직지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보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과 섬유연맹은 박OO 조직에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주었다”고 진술했다.

77) 중정, 「OOO 공작(반도상사 관련자 김OO)」

77년부터 79년 5월까지 중정이 순화공작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정은 장OO 순화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반영하여 “문제점이 감소하여 AR대책소위에서 AR삭제 중점관리대상자로 결정” 하기도 하였다.

1975년 중정은 일본 『세카이』 지 1974년 9월호에 반도상사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사태가 실린 것을 기화로 자료유출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최OO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후 최OO로 하여금 인천산선 실무자 활동을 중단하도록 다양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국정원 보유 문건인 아래자료에서 확인된다.

「『세카이』 지 불순기사 유출 원 조사결과 보고」

1. 인적사항

- 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최OO(25세) ※ 75.10.16. 10:20. 연행조사
- 나. 전 주한미국감리교 선교사 오명결(George Ewing Ogle, 47세)
※74.12.14. 추방됨

2. 관계자

- 가. 반도상사 부평공장 노조지부장 한OO(23세) ※ 75.10.15. 12:50. 연행조사
- 나. 반도상사 부평공장 노조사무장 옥OO(23세) ※ 75.1.16. 동사 사직

3. 세카이지 개제 내용

- 4. 반도상사의 분류상황 (※74.3.13. 당국에서 주동자 한OO 등 4명을 연행 조사한 건임)

5. 내사 공작 결과(조사내용)

- 가. 한OO은 73.1초부터 2.24간 약 10여회에 임하여 동료여공인 옥OO 등 약 20명과 같이 부평소재 여관 또는 음식점에서 최OO를 접촉하여...
- o 본건 유출경위에 대하여 74.9.20부터 75.10.7 간에 걸쳐서 동사에 첩보

78) 동 형식의 국정원 보존자료 내용 중 하나의 예를 들면, 79년 4월 노조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회사 측 임OO 등 남자대의원이 대회무효를 주장하며 대회에서 소란을 피우자 중정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여 장OO 집행부가 중정 직원에게 사의를 밝히기도 하였다고 기록.

원을 부식하는 한편 기타 방법으로 내사공작 하였던 바, 한OO 및 최OO 등의 소행으로 혐의점이 부각되어 동인 등을 연행 조사한 결과

- 전시 세계지 9월호 불온기사 유출원을 색출하기 위해 1974.9.20부터 75.10.7까지 성OO(36세), 박OO(38세), 오OO(24세), 박OO(24세), 이OO(26세) 등을 공작원으로 물색, 반도상사 노사분규 주동자이며 현 노조지부장인 한OO 및 최OO 등을 접촉하여 전시 불온 기사를 일본 등 해외에 유출여부를 내사토록 공작 하였던 바,
 - 한OO은 74.10.25. 공작원 박OO 및 오OO 등에게.... 74.11.9. 공작원 오OO에게 “반도상사 노사분규 사건이 해외에서 기사화 및 잡지에 나올 것이며 외국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발설하였고
 - 한OO은 74.12.5. 공작원 이OO에게 “최OO와 자신은 반도상사 노사분규 사건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한국기자와 외국기자에게 제보하고 이를 비밀에 부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약속하였다.”라고 발설하였고
 - 옥OO은 75.2.29. 공작원 성OO에게 최OO가 75.1.15경 반도상사 쟁의에 관한 문안을 작성 타자를 쳤다.
- 외국에서 기사화 된 것은 기사 원고를 한OO 최OO를 통해서 조OO 목사에게 전달하였고 조OO 목사가 재차 외국인 선교사에게 제공하여 외국에 유출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발설하였고

6. 최OO 진술내용.....

7.판단

- ...최OO가 동 분규사건내용을 오명걸에게 상세히 제보함으로써 오명걸은 동 내용을 과장 수기화하여 세계지에 게재토록 제보한 것으로 판단 됨.

8. 조치의견

- 가. 동 기사는 최OO가 오명걸에게 구두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오명걸은 기 추방되어 조사 불능이고
- 나. 최OO는.... 재범할 징후를 감안, 현직을 자진사퇴토록 가족입회하 책임 각서 수리 후, 엄중경고 종결 처리함이 가하겠습니다.
- 한OO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도시산업선교회와의 접촉을 단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 최OO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한OO 등 반도상사 노조 지도부 순화공작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정은 직접 반도상사 경영진을 불러 회사로 하여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당시 중정이 개별사업장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부분까지 관여하고 개입하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정은 필요에 따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못하는 노동조건 개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조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중정이 반도상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반도상사 경영진이 법인 인감으로 날인까지 해서 중정에 보낸 각서가 있다.⁷⁹⁾

중정은 각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노동조건 개선상황을 공사 시행날짜와 소요경비까지 상세하게 도표로 작성해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상사의 근로조건개선 추진동향보고를 중정부장이 직접 확인할 정도의 중요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⁸⁰⁾

79) 중정, 「노사분규 시정방안 보고서 제출의견」 반도상사 주식회사(1974.3.25.) 제하 문건 내용은,

“o 제목 : 노사분규 시정방안 보고서 제출의견

상기 건에 대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귀부의 막중한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서약하면서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반도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승 관인, 이사 구자경, 구자두, 황인일, 김석구, 허준구, 구철회, 구정회 각인의 인감날인

o 별첨 : 16개항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시정방안 적시

1. 작업장 시설개선 : 작업장 내에서의 환풍 설치는 즉시 설게 착수하여 늦어도 4월말일까지는 설치완료하겠으며, 냉방장치는 작업장에 부분적으로 가급적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2. 기숙사 침실개선.....
3. 식당시설 개선문제.....
4. 전임보건관리관 배치문제.....
5. 화재보상금 지급 건.....
6. 동상자 및 병자 취업 건....
7. 퇴직금 지급문제....
8. 징계해고자 해고수당 지급 건....
9. 도급 근로자의 일정 노임 보장제도..... ”등을 수록

80) 중정, 「반도상사 작업환경 개선 추진상황중요보고」 (74.5.28)(주 : 스탬프로 ‘부장님 보신 것’ 이라고 찍혀있음) 「별첨: 반도상사 부평공장 개선추진상황」

이처럼 중정은 반도상사 노동자들의 파업농성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이후 반도상사 노조를 직접 관리하고 순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다 | YH노조 사건

YH노조 사건은釜馬민중항쟁을 점화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파국을 앞당기게 한 사건이었다.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흩어져있던 유신반대 범국민 세력이 다시 결집되었다. 뒤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이 일어나고釜馬민중항쟁이 터져 나오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YH무역은 1966년 재미교포 장용호가 세운 가발회사로 1970년대 초반에는 노동자가 4천명에 수출순위 15위에 이를 정도로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1975년 기준 시급 220원이라는 저임금에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1975년에 YH노조를 결성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장용호는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노동자들 인원을 감축하기 시작해 1979년에는 직원이 4백 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YH노조 간부들과 산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민주노조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던 YH노조에 대해 중정은 결성 초기부터 동향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틈만 보이면 노조를 탄압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중정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1979년 3월 중정이 확대 적용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 최순영 지부장이 중정에 연행되자 회사 측은 폐업공작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최순영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농성으로 풀려났지만 회사 측은 4월 말에 회사 문을 닫겠다는 공고를 부치고 말았다. YH노조는 정부 각 부처와 언론, 채권은행 등에 호소문을 보내고 폐업철회와 공장가동, 은행관리기업 인수 등을 요구하며 4월 13일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밤 9시 30분에 해산할 것을 종용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뒤에 기동경찰을 투입해 강제해산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이 진압작전으로 농성 조합원 1명이 뇌를 다쳐 실신했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8월 11일 새벽의 YH노조원 신민당사 농성 진압작전의 전초전인 셈이었다.

YH노조가 그 같은 강경진압에도 굽히지 않고 여전히 농성을 계속하자 중정이 나서서 수습을 시도했다. 4월 17일 농성현장에 노동청 박00 차장·진00 전 사장·박00 현 사장·노동청 북부사무소장·태능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대동하고 중정 요원 2명이 나타났다. 중정 요원은 이 자리에서 폐업철회를 합의하게 하고 농성을 풀게 했다.

이 때 중정은 이미 중앙노동대책위를 소집하여 YH노조 사건을 수습책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⁸¹⁾

이후 YH노조는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는 농성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폐업을 막기 위해 은행과 노동청에 호소도 하고 정상화를 기다렸다.

81) 중정, 「Y. H무역 노사분규 진상조사보고」(1979.4.19)

1. 첩보내용....

- Y.H 무역 폐업공고로 동사 종업원 400여명이 농성을 기도다가 경찰기동대 100여명이 회사에 출동, 발로 차는 등 강력 저지하여 5명이 입원하고 200여명이 부상당했으니 대책을 강구하자고 촉구하자.....

2. 인적사항 : 신철영과 최순영에 대한 인적사항....

3. 내사결과....

다. 중앙노동 대책위 합의내용

- (1) 일시 및 장소 : 79.4.17. 14:00-17:00 노동청 차장실
- (2) 참석자 : 위원장(노동청 차장) 및 요원 4명, 관계자 2명(회사 측)
- (3) 결의사항

○ 폐업공고 무조건 철회

○ 회사 측은 수습방안 조기수립, 단독처리 곤란사항은 대책위가 지원방안 강구

○ 조흥은행은 최단 시일 내 건실 인수업체 선정, 근로자 승계조건인수 조치

○ 회사대표 및 대책위원장 현장에 출장, 근로자 설득.....

4. 조치의견

- 본건 존안 종결하고 동향계속 주시위계

그러나 회사 측은 결국 8월 6일 폐업공고를 하고 말았다. YH노조는 최후의 호소 수단으로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농성이 진압되고 김경숙이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과 김영삼 총재까지 끌려나오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YH사건이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의 철권통치와 붕괴전야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만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정의 개입을 입증할 중정 내부자료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나 당시 YH노조 지부장과 간부였던 최순영·박태연의 증언과 당시 YH노조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인명진·서경석·이문영·고은 등의 증언은 중정의 개입을 추정할수 있다.

중정이 YH노조 사건 이후 79년 9월 이후 산업선교회에 대한 공격 계획을 주도했으며 검찰·치안본부·노동청·문공부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 등에 대한 외부세력 침투실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특별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산업선교에 대한 이념공세를 본격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⁸²⁾

국정원 내부 문서에는 김00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사실에 대해 중정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이처럼 중정의 YH노조에 대한 감시와 노조와해·농성해산 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82) 중정, 「YH무역 근로자-신민당 당사 활동사건 진상 보고」

〈서문〉

〈회사운영실태〉

〈폐업 및 노사분규 경위〉.... 노조장 등 노조간부들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산업 사회교육 및 여성 사회 교육 등 특수한 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 75.5.24 전국건설노조 YH무역 지부를 결성이후 건설노조의 각종 지시 및 의무를 불이행하고 본조 납부 의무금(78.4-79.7간 약100만원)조차 미납하는 등 본래의 노조 성격을 이탈, 독단적인 노조 운영 자행....

〈여공들의 신민당 당사 농성경위와 강제해산 전망〉.....

〈농성장 상황〉....

〈김경숙의 사인과 시간〉.... 농성조직 20개 팀 중 주동적인 선발팀장으로 자칭 투신자살팀장임을 선언하는 등 농성 분위기 주도.

〈경찰의 당사 진입상황〉...

청계피복노조에 대한 중정의 개입은 전태일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 전태일 분신 사건 당시 전태일의 모친 이소선의 증언에 따르면 중정은 노동청 간부를 시켜 엄청난 거액을 제시하며 이소선을 매수 회유하려 했다. 이소선이 단호히 거부하고 청계노조가 이후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민주노조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중정은 청계노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것을 가능한 억제하고 배후에서 개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도 청계노조 간부나 이소선에 대한 동향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1977년 7월 22일 이소선 구속 사건에 대한 청계노조의 투쟁과 이어 빼앗긴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한 9월 9일의 농성투쟁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목숨을 건 투쟁 가운데 하나였다. 이 같은 투쟁을 유발한 이소선 구속과 노동교실 탈취는 중정이 기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 5.17 이후 노동계 정화조치와 노동조합 해산 과정에서 안기부로 바뀐 중정의 개입은 그대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중정의 민주노조와해 공작의 맨 처음 대상은 청계피복노조였다. 청계피복노조는 1981년 1월 6일 서울시장 명의로 해산 명령을 받은 뒤 해산되고 말았다. 청계피복 노조원들은 최후의 선택으로 1981년 1월 30일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하고 청계노조의 부활과 서울시장 사퇴를 내걸고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되어 그중 11명이 구속되었다.

콘트롤데이터 노조는 1982년 다국적기업인 회사가 공장철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공장철수 반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다 3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되고 말았다. 안기부는 오히려 도산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외자기업이 철수한다는 홍보용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중정의 「콘트롤데이터 근로자 집단농성 사건」 제하의 내부분서를 보면 콘트롤데이터 노조 사건의 개요와 관련자 이00·박00·조00 등의 형량 보고, 사건처리 상황, 농성

일지 등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0년대 민주노조 가운데 조직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노조가 되고 말았다. 원풍모방 노조에 대한 중정의 개입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었다. 1972년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어용노조였던 한국모방 노조가 민주노조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정의 개입이 시작된 사실은 2006년 11월 21일 전 원풍모방 지부장 방OO의 면담내용⁸³⁾과 「JOC 간부급 불순혐의첩보에 대한 조사보고(1974.10.04)」⁸⁴⁾제하의 국정원 보유문건으로 확인된다.

이후 1974년에는 민주노조가 중심이 되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1974년 말 원풍산업에 공매 낙찰되어 원풍모방 노조로 다시 출범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정상화 과정을 통해 원풍모방 노조는 강력한 노조로 성장하게 되었다.

중정은 1970년대 내내 원풍모방 노조에 대한 감시와 동향보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시때때로 중정은 원풍모방 간부들을 연행해 조사했다. 중정은 원풍모방 해고자를 취업주선까지

83) 방OO 면담내용 “72년 9월 3일. 한국모방 어용 집행부 교체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 중에 중앙정보부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 “농성을 풀면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여 농성을 해산하였으나 중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자신과 총무 정상봉이 연행되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다.”

84) ..이상 내용에 대한 이창복 진술서(1974.9.25)

▶ 이창복 4회 진술서 중

○ ‘1972. 9.3. 명동성당에서의 근로자 농성에 대하여’ 진술부분

“...이날 아침 8시-8시 30분 사이 6회나 한국모방근로자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회사이 사장, 전무, 상무, 부장 등이 정문에서 몽둥이를 들고 철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노동자들을 때리고 지부장도 집단구타 당했고 2명의 여공이 병원에 입원했으니 빨리 좀 나와 도와달라는 열화같은 독촉이었다. 사실 이 당시 본인의 판단은 이때에 중앙정보부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OO에 계시는 OOO를 전화로 연락하여 모시고 현장에 나가보았다. 사실 지부장은 집단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고 다리를 맞아 절뚝거리는 여공들도 있었다. 이 선생은 이때 지부장과 부상당한 여공 2명을 데리고 중정으로 데리고 갔었고 나는 사무실로 가서 계속 업무감사(카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감사)를 받았다.”

해주어 회유를 통해 현장에서 격리하려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원풍모방 지부장 방OO과 부지부장 박OO에게 각각 반공연맹 홍보국장과 보건사회부 5급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석방 후에 바로 출근하라고 근무지 견학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 원풍모방 부지부장 박OO의 2007년 4월 10일 면담에서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저하고 방 지부장한테 취업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방 지부장은 반공연맹 홍보국장하라고 했고, 저는 보건사회부 5급 공무원 하라고 회유했어요. 보건사회부에, 지금 광화문 종합청사 자리야. 이력서도 다 쓰고, 출근한다고 약속도 하고 그 자리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했어요.....(중략) 집요하게 설득하더라고, 노동운동 그만 두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용활동에 동원 활용하려고 한거지. 그럴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참 갈등이 많이 되었어요..... 보름 중에서 한 3-4일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맞고 했죠. 이렇게 하나씩 다 묻고 나서 보건사회부 가라고 하는 거야” 라는 진술과 2006년 11월 21일 원풍모방 전 지부장 방OO의 진실위 면담에서 “중정에서 수사 후에 나보고 반공연맹에 홍보과장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장충동에 있는 반공연맹 사무실까지 갔었어요. 조사 후에 집에 보내지 않고 거기 먼저 데리고 가서 ‘저기가 당신 책상이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하겠다고 하고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튀었어요. 그래서 원주에 지학순 주교에게 얘기했어요. 지 주교님이 알았다고 하더니, 안기부 유학성 부장 시절에 원주에서 1군사령관 취임식에 안기부 차장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지주교가 “박정희도 안 그랬는데 말이야. 전두환은 더하다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무조건 일하러 가라고 한다. 복직을 안 시켜 주려면 내보내주거나 하지.”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화를 벌컥 낸 거죠.....”라는 진술뿐만 아니라 2007년 2월 2일 전 중정직원 이OO 면담에서 “방OO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하루는 나한테 방OO을 취업 시키라고 지시가 떨어졌어.... 방OO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어디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반공연맹에 취업시키려고 했지. 내가 담당이라서 수사국에 가서 인도를 받았어.... 반공연맹을 찾아가서 취업 부탁을 했다. 성향으로 보아서

다닐 사람은 아닌데 위에서 지정을 해서 취업을 시켜 달라고 부탁 했다. 그래서 취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방OO이 안 오고 도망갔다. 전화해도 안받고 해서 나만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면담내용으로 확인되었다.

1980년 5.17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중정의 원풍모방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일상 활동으로 계속된 사실이 국정원 문서⁸⁵⁾로 확인이 된다.

원풍모방 노조의 와해는 실제로는 1980년 7월 방OO 지부장과 박OO 부지부장을 정화조치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끊임없는 노조 집행부 해고와 상여금 축소지급 등 노동조건 저하 등으로 노조를 약화시키는 공작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982년 9월 총공격을 시작해 10월 1일 650여 명의 농성조합원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면서 원풍모방 민주노조도 와해되고 말았다.

85) 안기부, 「원풍모방 노조간부(방OO) 도피자금 출처 확인보고」(1982.11.26.)

1.개황 : 도피중인 방OO이 82.10.21 한국교회노동자 복지협의회 기금을 보관중인 지학순 주교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자금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확인보고 임.

2. 확인결과

○ 81.6경 원풍모방 노조 전 지부장 방OO은....

※ 잔여 복지회 기금 3,800만원을 지OO 주교가 관리 중.

국정원 보존자료 「불순혐의자 방OO 내사결과보고」

1. 인적사항

2. 첩보내용

3. 내사결과

○ 조치의견 : 본건 내사결과 본명은.... 동 발언의 배후에 대공적 불순세력의 개입협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건 종결처리 건의

* 同 첩보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불순협의 대상자 신고’ 우편 접수에 의해 내사착수

※ 첨부 : ○ 본적지 신원조회결과 1부 ○ 내사 중간보고(1,2,3차) 각 1부 ○ 첩보보고서 1부 등의 내용 수록

중정은 민주노조 간부들을 비롯해서 JOC·도시산업선교회 관련자들을 ‘위해분자’로 분류하고 인적사항에서부터 일일동향보고를 할 정도로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중정의 활동을 입증하는 문서는 그 일부만이 공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몇몇 국정원 내부분서를 살펴보면 중정의 활동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정, 「위해분자 조OO목사 신원정보에 대한 내사보고」(1976.2.4.)

1. 인적사항
2. 내사결과 : 가족사항, 재산관계, 활동상황 보고
3. 조치의견 : 본명에 대하여 계속 동향파악보고 위계입니다.

중정, 「위해분자 JOC회장 이OO 조사보고」

- 이OO의 당시 활동과 행적보고, 특히 신규교연합기도회의 추진 및 한국교회 정의구현 위원회를 통한 지학순 주교를 포함한 성직자 구명활동과 관련된 부분임
- 의견 : 본건 반 유신 및 반 안보사안임으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사하여 진상규명위계임.
 - 이OO에게 혐의가 있는 관련 첩보를 차재에 전부확인조사 할 것
 - ※ 의명. 1974.9.26.19:00 각서수리 후 훈방 함.

문제종교인 인적사항

1. 안OO(경수도시산업선교회 목사), 김OO(한국 도시산업선교회), 조OO·인·조화순 등에 대한 학·경력, 가족사항, 전과관계 등에 대한 정리 (※ 조OO의 경우 이어서 O별도의 인상착의, 특이동향 등이 적시된 파일이 연결되어 있음)

중정, 「불순혐의 노조간부 내사결과 보고」(1980.9.6)

1. 방OO, 장OO에 대한 인적사항....
2. 첩보내용....
3. 내사결과....

4. 조치의견....

□ 장OO

1. 신원사항....

2. 특이사항....

3. 주요동향....

- 77.12.19. 총무 조OO을 대동, 당 지부 담당관을 접촉하고 77.12.21. 인천시 북구 제2공보관에서 조합원 잔치를 개최코저 장소임대 등 지원을 요청해 오며 따라 행사내용 사전검토를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
- 77.12.20. 10:00-13:30간 총무 조OO을 대동, 당 지부 담당관을 접촉하고 조합원 잔치행사 내용을 검토하여, 응변내용 중 계급의식 자극내용 삭제 ‘사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제하의 연극 전면 취소에 합의
- 79.5.31.경기도 AR대책소위에서 AR삭제중점감시대상자로 결정(삭제사유 : 순화로 문제점 감소)

중정의 민주노동운동 탄압과 와해 과정에서 중정 직원의 불법연행과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소선·최종인·유동우·방용석·박순희·김승호 등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운동가들의 모임인 ‘70민노회’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가 중정에 끌려가 조사를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중정 직원을 만나 협박을 받거나 한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970년~1979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간사로 활동했던 황영환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조화순 목사나 지주 집안 출신에 해병대 장교 출신인 조승혁 목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아래 면담내용으로 확인된다.

전 인천도산 간사 황OO은 2006년 11월 17일 위원회 면담에서 “정보부 직원이 사업장의 노조 간부를 만나 회유와 설득을 시도하고 때로는 정보부 직원과 만난 사실을 역정보로 흘려 어용으로 고립시키는 공작을 벌이기도 하였다. 당시에 자신이 만난 중정 직원은 자신을 정보부 직원으로 소개하고 이름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알려준 이름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해 보면 모두가 가명이었다. 주로 하는 말은 “분단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고 노사문제를 치안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했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를 드나들던 노동자들도 중앙정보부의 감시나 미행을 당했는데, 한국베어링사건으로 경기지부에서 조사받을 때도 자신의 동향이 일자별로 모두 기록 파악되어 있었으며, 검정색 짚차가 집 앞 골목에서 자신을 항상 감시하였다....

자신이 다니던 한국베어링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자 5명이 중정 경기지부에 연행되어 고문수사를 받았는데, 회사와 중정이 자신들의 노조활동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 낸 일이었다. 8년을 끈 해고무효소송 후 회사 사장과 면담에서 사장 말이 “(재판은) 이겨도 저희가 이긴 것이 아니다. 죄송하다. 사실은 저희 뜻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며 회사와 중정 경기지부가 함께 만들어낸 일로 알고 있다.

당시 중정 경기지부에서 수사 받은 내용은 한국베어링에서의 소모임 활동과 산업선교회와의 관련성, 연행된 노동자 5명 중 조인원이라는 사람의 작은 아버지와의 관련성 등이었다. 수사관은 조인원의 작은 아버지가 월북자로서 남파되어 내려왔는데 만난 사실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취조를 통해 자신들을 간첩과 접촉한 사람들로 묶으려 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은 한국베어링에서 퇴사하고 노동운동 그만두겠다는 자백을 받기위해 위협용으로 지어 낸 말이었다.

수사과정에서 3일 동안 수 없이 매를 맞고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왔다. 조인원은 당시 고문으로 양쪽 고막이 터졌고, 자신은 주동자로 지목되어 집중적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전기고문용 의자에서 전기고문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수사하던 여러 명의 수사관은 얼굴을 보면 기억할 수 있으나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OO은 2006년 10월 18일 진실위 면담에서 “한국베어링 노동자들이 중정에 연행되어 수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황OO이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데, 황OO은 당시 고문흔적이 몸에도 남아 있었다. 황OO이 조OO에게 고백하길 “자신이 고문을 받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일은 백지를 주고 유언을 쓰라는 것이었으며, 그때 자신은 ‘드디어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함..... 1975년도에 처음 중정 경기지부에 연행되었다가 서울 남산으로 옮겨져 4일간 수사 받다가 유죄판결을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을 살았음. 동일방직과 반도상사 노동자들을 지도한 배후로

지목, 빌미는 공장 다니는 노동자들과 야외예배를 보면서 했던 설교를 문제 삼았으나 진짜 수사 목적은 민청학련 사건과의 관련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에 수사과정에서 섹스와 관련된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 함.”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OO은 2006년 10월 10일 진실위 면담에서 “자신이 처음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것은 1971년도 한국베어링 사건 때문이었다. 연행 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산전에서 만든 산업안전 포스터 때문이었고, 다른 이유는 ‘한국베어링 노동자들이 중정에 끌려간 것을 여론화’ 한 행위가 중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문제를 삼은 것임. 황OO이 주축이 된 한국베어링 노동자 5명이 중정 경기지부에 끌려가 며칠 동안 고문수사를 받았고 다음날 자신도 경기지부를 거쳐 남산으로 연행되었으며 당시 조 계장이라 불린 이가 속옷만 입히고 무조건 패면서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 “당신 무슨 소리냐 나는 목사고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촌에서 지주계급 출신이고 아버지는 면장으로 공산군에 박해를 받기도 하였다.”며 항의하자 “장관이나 높은 사람 대보라.” 해서 해병대 동기이며 정보부 정보국장인 강OO의 이름을 대니 분위기가 바뀌고 그제야 고문을 그침....”

1980년 이후 본격 문제 제기가 되고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블랙리스트 또한 앞서 중정 요원이었던 최OO의 진술과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황OO의 면담⁸⁶⁾ 등으로 중정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86)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 황OO 2006.11.7. 진실위 면담내용 “김OO 섬유노조 위원장 명의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김OO도 중정의 낙점을 받아서 위원장 된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도 조종 받아서 한 것이라 생각하며, 당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정보과 형사보다도 실제 영향력이 없었기에 실제로는 중정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5 '블랙리스트'와 '위장취업자 관리대책'을 통한 노동통제

가 주요 의혹점

1978년도 124명의 동일방직 해고자 신상기록이 전국 사업장에 배포된 이후,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불린 해고노동자나 학생출신 노동운동가의 개인 신상자료가 노동운동 통제수단으로써 널리 활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그 종류나 규모가 다양하고 그 범위도 전국을 망라하고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해고노동자나 학생출신 노동자의 현장 재취업을 막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을 포함한 노동관계 기관 등이 개입하여 작성·배포하였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당시 정보기관 등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개인신상정보를 폭넓게 수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정과 안기부는 주로 학생출신들의 노동운동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위장취업자 대책을 마련하였다. 도산관련 해고자의 경우는 학생출신은 아니었으나 블랙리스트를 피하기 위한 경력위조 사실로 위장취업자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정원 보유문건을 통해 노동자 블랙리스트의 관리방안과 체계·블랙리스트 활용여부·위장취업자 대책 등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조사 내용

1) 「블랙리스트」의 실체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는 '블랙리스트'는 그 실체와 작성 주체 및 배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정(안기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1978년 동일방직 인분투척사건 직후 124명의 해고자 재취업을 막기 위해 김영태 섬유노조위원장 명의로 각 사업장에 배포된 것이 그 시초⁸⁷⁾로 알려져 있다. 그 후 노조활동으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점점하면서 다양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였다.

1986년 8월에는 인천 경동산업 파업농성 중 회사에서 해고자와 위장 취업자의 블랙리스트가⁸⁸⁾ 발견되었다. 동 리스트의 내용은 1978년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을 비롯한 1,662명의 명단, 동일방직·서통·콘트롤데이터·원풍 등 1970년대-80년대 초반까지의 민주노조활동가 925명 및 85.5.30까지 근무한 인천지역 25개 사업체의 지식인 취업자 및 노동자 164명 그리고 1986년 3월8일까지 근무한 인천지역 위장 취업자 299명, 직종별 노동자 253명을 대상으로 업체·성명·본적·주소·주민번호·최종학력·활동사항·근속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장 취업자를 A·B·C급으로 분류하였다. 1987년 10월 27일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가 공개한 ‘블랙리스트’는 1978년의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과 태창섬유, YH무역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 1,662명을 대상으로 작성⁸⁹⁾되었다. 1988년 6월에 성남 공단 내 (주)고려피혁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에는 총 763명의 명단과 해고 일자·사진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관리공단 이사장이 각 기업체의 장에게 “관리공단에 의식화 근로자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협조문이 함께 발견⁹⁰⁾되었다.

또한 1991년 9월17일 부산신발업체에서 학생과 노동자 등 8천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발견⁹¹⁾되기도 하였다. 당시에 이 블랙리스트는

87) 『진실을 행한 함난한 여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차보고서, 2003.7-2004.6, 04.12.6

88) 『영등포산업선교회4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1998.10

89)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1980년대 편 2권』, 인물과 사상사, 2003

90) 『전노협 백서1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1997

91) 이경우, 『인권 제6집-1991년의 인권상황개관』, 대한변호사협의회, 1991, p26

전국을 포괄하는 규모의 방대함과 경찰에 연행되었던 노동자 대부분의 명단이 포함되었던 점으로 인해 정보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1990년 3월말에는 경남도청 지방과에서 관장한 창원·울산·양산 등 공단지역의 노조핵심간부들의 블랙리스트(“순화 대상자 카드”란 명칭으로 기재)가 발견⁹²⁾되었다. 이 리스트에는 경남 도내 200여명의 노조핵심 간부들에 대해 출신학교·교우·가족관계·성향·노조활동상황 등이 기록되었다.

그 외에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활용된 것으로서 88.3.25 (주) 금성사 평택공장 블랙리스트⁹³⁾와 2003.4.17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대우자동차 판매(주)에 대해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대우자판 경영진을 국가인권위에 제소⁹⁴⁾한 사실 등이 있었다.

또한 1983년~84년 당시 안기부는 노동부에서 작성한 681명의 도산 관련해고자(민주노조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관리해 왔으며, 681명을 재심사하여 핵심인물 125명을 A, B급으로 재분류하여 중점 관리하였다.⁹⁵⁾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노동현장에 실재하였다. 안기부 등 노동관련 관계기관은 민주노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격리한다는 명분하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였다.

92) 「노동탄압정책의 흐름 3-5월」, 전노협, 1990.6.3

93) 금성사 노무과장 김OO, 노무담당 강OO가 하청업체인 동신전자 외 22개소에 금성사 노사분규 주동자 최OO 등 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며 채용금지 등 동향통보를 요구한 사실이 적시되었다. 「88년 노동부 국감 요구자료-노무현·이상수 의원」

94) 한겨레 신문, 2003.4.17자

95) 83.1 안기부 작성 「해고도시산업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보고」 및 1983.6, 1984.1 작성 「해고도산노동자 최근실태 및 관리방안검토」 제하 보고서.

2) 중정(안기부)의 「블랙리스트」 관리와 활용

가) 실 태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증언⁹⁶⁾과 안기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중정·안기부는 해고노동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왔다. 또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에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블랙리스트 적용범위와 대상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블랙리스트의 작성은 대체로 개별기업의 제보에 의해 기업·노동부·정보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아래 작성되어 각 사업장 및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실·정보기관 등에 비치되어 활용되었다는 것⁹⁷⁾으로 분석된다. 중정(안기부)·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해고자나 노동운동가의 격리를 위해 조직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운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주요 관계대상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⁹⁸⁾ 전 노총간부 이00·전 동일방직 노조지부장 이00·전 원풍모방 노조지부장 방00은 “물증은 없지만 중정(안기부)이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개입했다. ‘블랙리스트’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이었고 당시 민주노조와 중정의 관계로 볼 때 당연

96) 前 원풍모방 지부장 방00(62세)은 06.11.21 진실위 면담시 섬유노조 명의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원풍에 취업하려 했으나 원풍모방의 노무과장이 취업시킬 수 없다고 통사정을 해서 취업을 못한 일이 있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하였다. 前 동일방직 지부장 이00(여, 57세)은 06.10.12 진실위 면담시 당시 섬유노조위원장 김00 명의로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었던 블랙리스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일방직 조합원들이 근거 없이 수차례 해고당한 경험이 있어 당연히 실체가 있다고 주장

97)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pp485-511); 이원보, 『한국노동사』,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 강수돌·이해영 편 『경제개발기의노동운동 (1961-1987)』·『한국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1999 ; 『영등포 산업선교회 40년사』, 영등포 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98.10

98) 前 동일방직 지부장 이00(여, 57세, 06.10.12 면담), 前 원풍모방 지부장 방00(62세, 06.11.21 면담), 前 섬유노조 조사통계국장 이00(68세, 06.11.28 면담) 공히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중정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증언

히 중정이 관여했을 것이고 그 작성 주체가 중정이든 상급노조이든 그 대상자들의 취업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운동에서 격리하려 했던 목적과 동기가 같았기 때문에 누가 처음 작성하였든 결국 동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국정원 보존 문서인 「해고 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1983.3)에 의하면 당시 상황을 개괄하며

“당부에서는 해고도산근로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활동재개 예상자들의 동향추적 결과, 일부가 신분을 위장 신규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일부는 친목회를 결성, 활동기반 구축을 기도하고 있음을 적출, 따라서 위장취업자 성향을 분석, 활동재개 소지가 있는 자는 사업장에서 축출토록 하는 일방, 친목회 조직의 와해공작을 계속 추진 중”이며 바로 아래에 “※ 82.12.15. 해고도산노동자 명단(681명)을 각급공단 및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배포하고 동향감시”라고 기술하였다.

이어서 1983년 6월에 작성된 내부보고를 통해 “각급 사업장의 과거 도산활동경력자는 순수한 생계를 위한 구직을 희망해도 이를 전면 봉쇄하여 여론악화 등 부작용이 크므로 해고도산 근로자들의 선별관리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기부가 1984년 1월10일 작성한 「해고도산 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개선방안검토」 제하 보고서에는 “82.12 노동부에서 해고도산노동자 681명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 공단 및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배포하였고 83.10.25 중앙노동대책 실무관계관회의(노동부·내무부·문교부·보안사·안기부 참석)를 개최하여 사업장내 도산 배격분위기 조성, 해고도산근로자 취업전면 봉쇄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 681명의 관리대상을 재분류, A급 28명·B급 97명 계 125명으로 축소 조정, 중점관리 중(노동부 재경 6개 및 11개 대표 지방사무소에 명단 제한 배포)”라고 서술하였다.

위의 안기부 문서에 의하면 해고도산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안기부 및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직접⁹⁹⁾ 또는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노동대책회의)”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위 보고서들에 따르면, 노동부에 의해 1982년 12월 15일 681명의 명단이 각급공단 및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배포되었고, 안기부는 이들의 동향을 감시, 재취업자를 발굴하여 축출하고 도산 관련조직의 와해공작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산해고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용과정에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여 관리대상자를 축소(681명→125명)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안기부는 125명의 A·B급 관리대상자에 대해 각 급에 따른 차등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분기 1회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 회의를 통해, 관리대상자 동향분석·등급재분류 작업을 하였다. 이 관리지침에 의하면 “A급 28명에 대해서는 사업장 접근 철저히 차단, 위장취업시 즉각 해고, 사실상 행동반경을 도산회관으로 제한하고 B급(97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업제한(자영업 유도), 위장취업 발견시 보직변경 및 순화, 순화 불가능시는 해고조치한다”고 적시하였다.

< 전 소속 업체별 현황 >

업체, 구분	계	A급	B급
원풍모방	40	15	25
CDK	33	5	28
태창섬유	8	3	5
청계피복	8	3	5
동일방직	8	1	7
서통	7	1	6
무궁화섬유	5	.	5
반도상사	4	.	4
기타 12개 업체	12	.	12
계	125	28	97

※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1984.1.10)에서 인용

99) 안기부, 「해고도산산업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보고」 및 83.6, 84.1 작성 「해고도산노동자 최근실태 및 관리방안검토」 제하 보고서에서 도산해고자에 대한 선별 동향감시 등 필요 의견 제시.

또한 당시 종교계의 ‘블랙리스트’ 철폐요구에 대해 “84년 1월 6일 노동부로 하여금 중앙노동대책실무 관계관회의(노동부·문교부·치안본부·보안사 및 당부)를 개최토록 조정하여 해고도산근로자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 결정.... 노동부가 종교지도자, 교계신문, TV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해명할 것, 125명의 중점 관리대상자에 대해 재분류, 대상자축소, 원직복직은 불허하나 일정한 재취업 허용 등의 관리방안을 완화할 것, 사업장내 도산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강력 규제할 것,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한 자들이 문제 활동 시, 지역노동 대책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등”¹⁰⁰⁾이었다.

84년 1월에 작성된 안기부 문서에는 위의 125명·681명의 블랙리스트와는 일부 중복되나 이와 별개로 한국수출산업 공단 내 총무회(각급 사업체 노무관리자 친목단체)가 작성한 1,060명의 블랙리스트도 다루고 있다. 이것은 83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70년대 이후 사업장에서 해고된 1,060명의 해고도산근로자 명단이였다. 수출산업공단 내 총무회는 각 사업장에 40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명단이 유출될 경우 문제 발생 소지를 우려하여 83년 12월 19일 노동부가 파기를 지시하였다. 이 명단에는 안기부 중점 관리자 125명¹⁰¹⁾중 58명(A급:3명, B급:55명)이 미포함 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나) 소 결

국정원 보존문서 분석결과 다양한 형태의 ‘블랙리스트’는 민주노조 활동에 참가한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 도시산업선교회 등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 각 개별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해고가 자행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과

100)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1984.1.10)

101) 국정원 보존자료에 의하면 681명 블랙리스트가 중앙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125명으로 축소된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상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그 작성 주체와 관계없이 각 기업체 및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 등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안기부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국정원 존안자료¹⁰²⁾를 입수·분석한 결과 1980년대 당시 안기부는 동일방직·원풍모방 등 도산관련 해고자 등을 외부세력과 연대,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도산 해고노동자를 대상으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업·노동부·경찰 등의 상호 정보교류 속에 노동자 친목조직¹⁰³⁾에 대한 와해공작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산관련해고자의 재취업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노동운동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노동쟁의시 핵심 노조간부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력이나 인적사항을 빌미로 쟁의현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쟁의를 무력화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¹⁰⁴⁾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 체제’를 통해 상호 교류되었다.

3) 위장취업자 관리대책을 통한 노동통제

80년대 초·중반부터 학생출신의 공장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이 공장에서 노조결성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러자 안기부 등 관계기관은 이들을 위장취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격리시키는

102) 안기부, 「해고 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

103) 안기부, 「도야회 : 원풍모방 해고자 모임」, 「파트리회 : CDK 해고자모임」

104) 90.3월말 경남도청 지방과에서 관장한 창원, 울산, 양산 등 공단업체 노조핵심간부들의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대부분 분규예상업체의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봄철 임투 등 본격적인 노동자 투쟁에 앞서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는 달리 70년대 말·80년대 초반에 안기부 등 국가기관과 사용주들은 원풍모방·동일방직 등 주요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 민주노조 사업장 근무경력을 누락하고 재취업하였다. 이들은 위장취업자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위장취업자는 도산계열의 해고자와 학생출신의 공장취업자로 분류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대상자이기도 하였다.

가) 학생출신 위장취업자에 대한 관리

학생출신의 공장취업자에 대한 안기부 수사보고 문서인 「무궁화근로자 불순의식화 교육사건 수사상황 보고」(82.12.14)에 의하면 “문화사업대상목표인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내사를 하던 중 홍익대 미술과 졸업생 김OO 등이 82년 3월초부터 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김OO 家 셋방에서 무궁화 공원 김OO 등 5명을 포섭하여 야학을 병자하여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관련자 6명을 연행조사 중으로 김OO 등 2명 계속 수사, 김OO 체포수사, 나OO 등 3명 귀가조치, 김OO 방면조치”한 것으로 수사 보고 하였다.

또 다른 국정원 보관 「문제대학생 및 도산근로자 위장취업실태 적출 공작 결과보고」(1984.8.13) 제하의 문건을 보면 “당부에서는 지난 1984년 7월 16일부터 구로공단을 비롯한 서울지역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대학생 및 도산세력들의 위장취업, 근로자 포섭실태 및 2학기 대정부투쟁을 위한 연계활동 징후 등을 적출키 위한 공작활동에 착수하여 기간 중, 문제대학생들의 위장취업사례 및 활동내용, 대우어패럴 등 신규 노조설립 배후조종·근로자 의식화 교육·노사분규 조장 등의 사실을 적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활동실태에 대해 「문제대학생 및 도산세력 사업장 위장취업실태」라는 소재목으로 하여 “서울대 사학과 졸업자 황OO 등 9명이 6개

신규사업장에 위장취업 하였고,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인 정00이 구로공단 내 전자업체에 위장취업설이 있어 현재 추적 중”이라 하였다.

이어서 「대우어패럴 노조 결성 경위 불순성 확인보고」라는 소제목에서 “84년 6월9일. 노조설립전후 추00과 학생출신 민00 등의 의식화 교육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효성물산 노조의 불순 결성경위 확인보고」를 통해 “84.7.14 대우어패럴 노조조합장 김00 등 간부들에게 포섭된 김00·정00 등이 노조결성”이라고 동향보고 하였고, 「공단서점 불순 운영실태 확인보고」에서는 “공단 내 ‘공단서점’은 근로자들에게 불온서적 탐독을 유도하고 도산계열 근로자들의 연락거점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조치방향으로 “실태를 계속 추적할 것,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불순세력 제거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대책에 참고할 사항>으로 사업장 스스로 불순세력들의 위장침투를 사전 방지토록 적극 유도하고 불순세력 침투 사업장에 대한 신규노조설립억제 및 동 세력 조기제거, 불순세력에 의해 결성된 노조에 대해서는 상급 노련 주도하에 단계적으로 문제노조 간부를 축출토록 관계기관에서 측면지원”이라 적시하였다.

또 국정원 보존자료 「노동부, 위장취업 방지대책 마련보고」(85.5.추정)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위장취업 방지대책을 마련, 한진희 차관이 5.20 청와대 비서실장에 보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5.17 현재 위장취업 현황으로, 총 적출인원 : 284개 업체 561명, 해고 및 자퇴 : 544명, 재직 : 15개 업체 17명”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안기부의 대책방안으로 “위장취업 해고자 대책으로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교환 체제강화, 법적 투쟁 봉쇄, 사업장 및 근로자 접근 차단”등이 제시되었다.

국정원 보존자료 「방산업체 통일중공업 침투 위장취업자 용공행위 등 수사상황 보고」(1985.6.28)에 의하면 “창원공단 소재 방산 업체인 (주)

통일 위장취업자 문OO(당 33세, 노조위원장)등 19명 조사결과 북괴찬양 등 국보법 위반혐의 부분은 허위제보로 판명, 노동쟁의 조정법 및 집시법 위반행위 부분은 모두 시인”이라고 적시하고 이 사건의 입수 및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회사측 제보에 의해 85.6.25.18:00 유관기관지역실무 협의를 거쳐 수사하게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의 신병처리 계획으로 “6.27 19:30 마산지검 검사장실에서 지검 검사장 하OO 부장검사 김OO 공안검사·도경국장·도경 대공과장·보안대 대공과장·노동부 근로감독관·마산분실 대공과장·당부 파견 연락관 2명 등이 참석, 지역 대책회의를 개최, 주동자 문성현 등 2명은 입건 구속, 적극가담자 이봉균 등 7명은 즉심회부, 단순가담자 이청용 등 10명은 훈방 등으로 각각 처리토록 결정하였음. 조치의견 : 마산지역 실무대책회의 결정대로 신병 처리토록 하겠음”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87년 12월 작성된 「위장취업자 불순혐의자 내사결과보고」에서는 당시 연세대 생물학과 4년 휴학자 한OO에 대한 위장취업 내사결과(인천 대공 상담소 신고) 서울대 제적생 박OO·연세대 제적생 이OO·최OO에 대해 위장취업혐의자로 내사 보고하였다. 내사보고 내용은 이들의 본적지 신원을 추적하여 동일인 여부·활동 및 경력·주변관계 등이었다.

또한 88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기부 보고 자료인 「문제권 학생출신 노동계 침투실태」에 의하면 1985년부터 학생출신의 위장취업자로 적발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위장취업 적출현황>

계	85년	86년	87년	88년 9월
1,030명	329명	463명	195명	43명

나) 소위 ‘도산계열 해고자’에 대한 관리실태

국정원 보존 자료인 「도산근로자 불순활동 재개징후에 따른 문제점 검토」(84.4.29) 제하에 “78.2 동일방직 사건을 전후로 도산계열세력이 확산되어 100여개 사업장 2,200여명에 이르다가 YH·원풍모방 사건 등 대형 노사분규를 계기로 당국의 견제조치 및 산업사회 내 도산규탄분위기 조성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은 거의 정체(84.1.현재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개괄하며 이어서 “최근 학원사태 등과 관련 대학에서 축출된 문제학생들이 사업장 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노동운동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도산계열 출신 해고자들은 종래 교회중심활동에서 탈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 불순단체를 결성, 세력 확산 및 불순활동을 획책하고 있어 도산계열 활동재개 징후에 따른 저지책 강구필요”라고 현황 보고하였다. 도산계열 주요활동 인물로 “이00·양00·한00·유00·이00·박00·정00·방00 등”을 거명하였다. 이어서 대책 및 조치방안에서 “공단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도산계열 근로자들의 조직화 및 불순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기본방향>은 사업장내 도산세력 침투예방 및 적출, 도산교회 및 근로자간 연계활동 저지, 불순노동단체 무력화를 지속 추진하며 대처방안으로 첫째, 각 사업장 별 도산계열 근로자 재점검 및 견제. 그 세부방안으로 취업규칙 위반 및 해고사유 등 적출, 축출·도산세력의 노조결성 및 장악사전 저지·건전 근로자 및 노조육성, 대응 세력화 둘째, 공단주변 도산교회 정보활동 강화. 그 세부방안으로 문제교역자 순화 및 경고 등 병행·비인가 야학 및 노동상담소 개설 예방 및 폐쇄유도·각 사업장별 근로자 도산교회 출입견제 셋째, 불순노동단체 무력화 지속 추진 그 세부방안으로 각종 불순집회 저지 및 차단·각 지부결성 징후포착 및 저지·간부 등 핵심세력 위법사항 적출 의법조치·사업장 노사분규 선동 및 개입 차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87년도에 작성된 국정원 보존 자료 「사업장내 불순 서클 활동실태 및 대처방안 검토」(87.3.23)에서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교회

및 종교단체에 출입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암암리에 불순서클을 조직, 수시로 교회 및 자취방 등에서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노사분규를 선동하는 등 문제 활동을 야기하며, 최근 사업장에서 적출된 불순서클은 8개 업체, 10개 서클 168명에 달함(※ 이들은 주로 비공개적인 학습·토론 서클로 존재하여 공장 내에서 현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유인물 제작·어용노조 비판·쟁의행위를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주목을 받음)”이라고 개황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既 조직된 불순서클을 적출·와해하는 한편 향후 서클결성저지를 위해 지역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간 협조 하에
 ▷ 既 조직된 불순서클 색출 와해를 위해 근로자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불순서클결성 활동실태를 파악하고·서클 가담근로자 자진탈퇴유도 및 주동자에 대해 자진해산을 경고하고 불온 유인물살포·노사분규 선동 등 위법행위 사례적출·의법 조치하며 ▷ 불순서클 결성저지를 위한 대책으로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불온유인물 상습제작 주동자 및 인쇄소를 추적·의식화교육장소 수색, 불온서적 등 회수·위장취업 해고자·문제종교 단체 등의 근로자 연계차단” 등을 제시하였다.

‘불순 서클 실태’ 사업장으로 “부산화학·신한건설·대우중공업·한국화장품·통일(주)·한국중공업 등 8개 업체의 각 사업장 서클회원수·배후 지원세력·집회회수 및 장소” 등을 실태 보고하였다.

위와 내용상 비슷한 또 다른 국정원 보존 자료 「사업장내 불순 서클 활동 강력견제 필요」(91년경) 제하에서 사업장내 불온서클이 산업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있어 적극적인 견제방안강구 필요를 주장하며 <주요 사업장 불온서클 실태>를 도표로 정리하였다.

업체	불온서클	결성일(인원)	배후세력
포항제철	민족포철 민주노조 추진협의회	88.12.15(45명)	- 포항 “노동자의 집” - 놀이마당 “한터울”
대우조선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90.4.17(286명)	민중당, 전노협
현대자동차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90.6.26(42명)	전노협
한진중공업	백두회	86.7.25(400명)	부산노동자 연합
삼척탄좌 등 강원도내 5개 탄광업체	노동조건개선 추진위원회	88.8.8(91명)	성원회 기념사업회, 광산노동자협의회

<전망 및 대책>으로 “첫째, 관계부처는 경제단체들과 협조, 각 사업주들로 하여금 노조 내 불온서클들에 대한 견제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며, 사업주 책임 하에 서클대표들을 순화하여 해체 혹은 활동중지토록 권장하고 둘째, 사내 건전서클을 대응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노조집행부를 통해 강력견제토록 지원하며, 핵심주동자 및 배후 지원세력들에 대해서는 위법 및 사규위반행위 등을 포착, 고발 내지 강력징계토록 유도하여 무력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내무부, 상공부, 노동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라고 제시하였다.

「최근 노사분규 관련 외부개입 불순세력 수사처리대책」(87.8)의 첨부자료에는 <노동현장 침투 좌경사건 관련 수배자 26명 명단>이 적시되었다.

연번	인적사항	노동현장 침투사례	비고
1	송OO(32세, 서울대 교육4 제적)	o 86.7초 구로공단에 침투, 좌경의식화 학습 및 현장지도책 양성 노동현장에 위장침투 시킴	M-L당 사건관련
2	박OO(27세, 서울대 국교4 제적)	"	"
3	송OO(26세, 중앙대 교육4)	"	"
4	최OO(26세, 서울대 사회80 제적)	"	"
5	박OO(25세, 서울대 산공 81 제적)	o 85.10 구로공단에 위장취업 지역현장운동론 및 남한혁명론 학습	"
6	서OO(26세, 중앙대 신방 86 제적)	o 86.6 지역 노동자연맹 결성 후, 현장 노조팀장으로 현장 지도책 양성	"
7	김OO(24세, 서울대 사학 82)	o 86.7초 구로공단 현장에 침투, 좌경의식화 학습주도 o 86.11 중순 경인지역 해방동맹 당 결성	ML당 및 해방동맹 당사건 관련
8	양OO(서울대 83 제적)	o 86.11 부산 사상공단에 위장취업 좌경의식화 학습	친 북괴 반미공산혁명 관련
9	김OO(서울대 심리 79)	o 85.11 중순 구로, 독산지역공단에 위장침투 “구로지역노동자 모임” 결성 후, 주 1회 의식화 학습	"

10	박OO(인노련 문화부장)	o 86. 인천지역 위장침투, 좌경 의식화 학습주도	"
11	박OO(서울사대 79)	o 86.4 부평지역에 위장침투 좌경의식화 학습주도	"
12	문OO(연대제작)	o 86. 부평지역에 위장침투, 좌경의식화 주도 및 김지연(서울대?)을 협진업직에 위장 취업시킴	"
13	김OO(서울대 공법 81)	o 86.7 인천공단지역에 위장침투 조경의식화 학습	구학련
14	김OO(서울대 영교 83)	o 86.4 부천공단 등에 위장침투 좌경의식화 학습	"
15	한OO(연대경영 79 제적)	o 85.7 인천공단에 위장침투, 노동투쟁 주도	전학련
16	양OO(서울대 서양 줄)	o 86.9 부평지역에 위장침투 좌경의식화 교육 노동현장 지도	민민투
17	한OO(25세, 덕성여대 줄)	o 86.10 초 인천 부평공단에 위장침투	"
18	박OO(26세, 연대80 제적)	"	"
19	최O(서울대 철학4년 제적)	o 86.9 하순 부평공단에 위장침투, 공장소조원으로 활약	반제동맹 사건
20	김OO(서울대 국4 제적)	o 86.9 하순 부평공단에 위장침투, 공장소조원으로 활약	반제동맹 사건
21	김O(고대 사학4 제적)	o 86.7 노동자 해방사상연구회를 결성, 구로공단에 위장침투 좌경의식화 교육 및 현장지도책 양성 노동현장침투	노동자해방사상 연구회

위 문서에 의하면 “1987년 구성된 합동수사대책기구는 위장취업자, 해고자, 노동단체 활동가(좌경분자)에 대해 격리, 제거, 척결대상으로서 효과적인 통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이 합동수사대책기구 안은 1987년 노사분규에 대한 안기부 대책방안의 세부계획 중 하나였다.

「해고근로자 불순활동 견제대책 강구 필요」(91년 2월 작성추정) 제하로, “해고노동자, 구속석방자들이 그룹, 업종별로 ‘해고자복지 협의회’ 등 해고자 단체를 결성 추진”하고 있으며 그 활동실태와 문제점¹⁰⁵⁾ 등을

105) 해고자들의 활동실태에 대해 “사업장 내 강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식화 교육 등을 통해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이른바 ‘민주노조’ 결성을 배후 지원하거나, [노조민주화 추진위] 등 노조 내 별도의 불순서를 결성을 유도하여, 건전성향의 노조집행부 전복 및 대사용주 강경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노사분규 발생시에는 파업지도부를 배후조종, 유인물 배포와 농성장 방문, 격려연설 등으로 분규 과격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적투쟁”에 대해 우려하면서 일부 해고근로자들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4호의 단서조항이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점을 악용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노동부의 “법적소송 등에 관계없이 해고조치로 근로자 및 조합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자복지” 및 투쟁동참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는 한편 심지어 조합원 신분임을 내세워 조합장 선거에 출마, 당선되거나 노조간부로 선임되어 노조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사간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 대우캐리어·진주 동서유리·서울 MBC노조 등에서 해고자가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서울지하철·(주)통일노조 등은 조합장이 해고된 이후에도 노조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90.11.27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 3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노·사단체간에 해고자의 근로자 또는 조합원 신분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이다”고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적시하고 “강력한 견제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 소 결

시기에 따라 규모가 변화하였으나 1980년대에 안기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안기부는 노동대책회의를 통해 노동부·경찰·교육부·공단관리본부·사업장별 인사·노무담당자 등 국가기관과 사용자 등이 블랙리스트 대상자의 정보취합·대상자분류 및 관리·재취업방지와 노동운동 참여자의 격리·제거방안으로 블랙리스트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안기부는 블랙리스트의 관리·활용지침·적용대상자 범위조정·블랙리스트로 인한 여론동향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안기부는 주로 노동대책회의와 노동부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에 의하면 해고도산노동자 대책과 관련한 노동대책회의의 소집·운영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와 노동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안기부의 대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안기부의 대책방안은 통상 내무부·법무부·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되었다. 이 때의 안기부 대책방안은 그 내용상 ‘행정지침’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노동대책회의나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는 안기부의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유관기관간 업무공조를 공식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기부는 1984년 7월 16일부터 구로공단을 비롯한 서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학생출신 공장취업자나 민주노조 해고자의 재취업·

평가 및 대책에서 “관계당국에서는 석방근로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위법행위 적출시 강력사법조치 하며, 노조의 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차단, 해고자 단체와의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자 출근투쟁과 노조사무실 출입 등 노조활동 참여를 적극 저지토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노사간 법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 3조 4항 단서 조항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내무부·법무부·노동부에 통보하겠습니다)”이라고 보고 하였다.

의식화 학습모임 등을 적출키 위한 자체 공작활동에 착수하였다. 안기부는 이들 대상자들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실태를 계속 추적하고 감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제거대책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때 안기부는 대책에 참조할 지침이나 원칙을 제시하였다.

소위 ‘위장취업자’와 현장노동자 소모임에 대한 안기부 대책에 의하면 안기부를 최상위로 하여 노동부 등 관련부처·경제단체·개별사용주·어용노조 등이 하나의 힘으로 작동하였다. 이들 조직들은 ‘위장취업자’를 격리·순화하고 ‘불온서클조직’을 해체·무력화하기 위해 공조하였다. 이 때 각 기관은 합법·비합법의 다양한 견제방식·순화방식·해체수단·무력화 수단 등을 사용되었다. 그것은 구속·수사·감금 등의 물리적 강제수단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경제적 보상·진급·전직 등의 회유방안이¹⁰⁶⁾ 활용되기도 하였다.

106)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OO 사건자료 중 포항제철노조 박OO 위원장 등,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장OO 등의 참고인 조사자료, 당시 안기부 조정관 홍OO 진술 참조.

6 1987년 이후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6-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직탈퇴 및 와해 공작

가 사건의 실체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안기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89년 3월 당시 전국적으로 120개 시·군·구 교사협의회와 625개 학교단위 평교사협의회를 두고 3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¹⁰⁷⁾ 그러나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출범을 신성한 교직을 이용하여 학원을 좌경용공 민중교육의 의식화 장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전교조 출범 전부터 자발적 교사조직인 민주교사전국협의회를 불법화하고 전교조 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당시 청와대가 진두지휘하여 안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교원노조 (분쇄)대책’ (일명 교원노조 와해를 위한 청와대 대책)¹⁰⁸⁾에 그와 같은 사실이 압축되어 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교원노조 분쇄대책’은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 와해를 위해 청와대비서실·문교부·안기부 등 11개 기관을 총동원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전교조 대책의 실상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가입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징계·회유하여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107) 국정원 보존자료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동향과 대책」 인용.

108) 1989. 9. 문교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철 의원이 입수하여 폭로한 청와대 비공개 문서로서 일명 ‘교원노조 대책’ 문건으로 알려짐. 원본은 입수하지 못하였고 이 문건을 원용한 『전교조 신문』 특집분석기사 내용을 재인용.

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출범경과와 전교조 탄압의 배경

가) 공안정국과 전교조

여소야대 국회 하에 국민들의 기본권 투쟁이 확산되고 민주적 법과 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노태우 정부는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봄 임수경·문익환·서경원 등 민간인 방북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정부는 사회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며 국면을 전환하였다.¹⁰⁹⁾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서경원의 방북은 야당과도 같등요인이 되어 정국은 더욱 경색되었다. 이어서 안기부·검찰 등 정부 내의 공안 세력이 주도하는 ‘공안정국’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대치국면에서 정부는 교사들의 전교조 관련 단체행동을 교사들의 권리문제가 아닌 안보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전교조 조직 와해에 초점이 맞춰졌다.¹¹⁰⁾ 이로 인해 1,519명의 가입교사가 대량 해직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나) 19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전교조의 출범

1960년 4.19이후 결성된 교원노조가 군사쿠데타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구속·해직된 사건 이후 교사운동·교육운동은 기나긴 암흑기를 맞았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홍사단 등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소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자생적 교사운동이 모색

109) 정부는 공안기관합동수사본부(이하 공안합수부)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하여 전민련, 전대협 등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회운동 단체와 핵심인물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110) 국정원 보존 자료 「전교협 교원노조결성 관련대책 추진실태와 전망」 “제하 문건 내용중 2. 대책추진상황과 관련동향 3. 평가와 대책부분” 참조.

되었다. 특히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사 운동은 86년 5월 10일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 ‘교육 민주화 선언’은 대중적인 교사운동의 전기가 되었다. ‘교육민주화 선언’ 이후 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시기에 집중된 사학민주화 · 교육민주화 투쟁을 전환점으로 교사 조직은 전국적인 틀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7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건설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이하 전교협)이 그것이다. 이 때 전교협이 기초한 민족 · 민주 · 인간화교육 이념은 후에 전교조의 강령에 반영되었다. 이 시기 개별학교에서는 평교회 조직이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전교협은 창립이후 교육법 개정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전교조가 결성되는 89년 초까지 교육악법 철폐를 위해 활동하였다.¹¹¹⁾

그러나 1988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교육관계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나마 89년 2월 임시국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이 야 3당 단일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¹¹²⁾ 이후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은 전교협의 교육관계법 개정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교협은 노동 3권의 법적보장을 위해 노조를 우선 결성하고 그 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후 89년 2월 19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교원노조 결성방침’을 결정하고 89년 5월에 전교조가 출범하였다.

교원노조의 건설은 자발적인 교사단체인 전교협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는 80년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함께 발전해 온 교육민주화운동의 결과였다.

111) 이 시기 교육관계법 개정내용은 1. 교사의 노동3권 보장 2. 교장선출, 임기제 3.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4.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5. 학생의 권리보장 6. 국정교과서 폐지 및 검인정제 개선 등이었다.

112) 안기부,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동향과 대책」의 대책부분에는 “문교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교육관계법 개정추이를 면밀히 주시,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라고 제시되어 있다.

2) 『청와대 대책회의』 문서로 드러난 전교조 종합대책의 실상

1989년 정기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교조 대책」(청와대 비공개 문서)¹¹³⁾에 의하면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전 행정기관을 동원,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청와대를 주축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비방왜곡 유인물·영상물 살포 등 가능한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대책이었다.

청와대는 전교조 대책 예산을 위해 전경련을 통해 18억원을 각출하도록 하고 내각과 비서관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홍보순회강연을 추진하였다. 청와대는 안기부와 검찰을 포함한 차관급을 실무자로 하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당정회의를 통해서 민정당의 전 조직을 동원하여 탈퇴공작도 직접적으로 벌여왔음¹¹⁴⁾이 확인되었다.

청와대 대책회의 자료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사실상 전면적이라 볼 수 있다. ‘관련정보의 수시제공’이란 역할은 안기부 내부 정보보고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기부는 공안차원에서 교직원노조의 내사를 하면서 전교조결성을 전후로 본격화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을 통해 이른바 대국민 홍보심리전도 병행하였다.

한편 안기부는 보안심사를 통해서 재학시 시위에 가담했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임용대상자 1백27명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해 각 시·도교육 위원회에 통보하여 탈락시키기도 했다. 보안심사는 형식적으로는 시·도교육위에 의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안기부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 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 보안심사 결과를 보면 폭력전과 3범에 재물 손괴 전과자는 임용적격이라 판정하고 단순시위 가담자는 부적격이라고 하여 임용에서 탈락시키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견되었다.¹¹⁵⁾

113) 89년 문교부 정기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철 의원 폭로로 공개된 청와대 비밀문서 「전교조 대책」 문서 인용.

114) 1989.10.11. 청와대 대책회의 자료를 인용한 『전교조 신문』 재인용.

안기부는 또 소위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의 구성을 직접 지휘해 왔으며 실제로 각 지역대책협의회의 인적 구성에는 1-2명의 안기부 직원이 빠짐없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교원노조 와해대책에서 안기부의 역할과 개입사실

위 청와대 대책문서와 당시 안기부 내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전교협에 대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대응방안과 시기별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원노조 대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기부는 전교조 출범전후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전교조에 대한 이념공세와 지역대책협의회를 주도하였다. 또한 안기부의 대책은 전교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참여교사 징계심사·복직교사나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보안심사를 통해¹¹⁶⁾ 단순시위 경력자들조차 교원선발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이었다. 또한 대량해직 이후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교원양성과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 마련에도 안기부의 조정력이 행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전교협, 전교조 조직 확산 방지대책

88년 11월에 보고된 국정원 보존 자료 「‘전교협’ 조직 확산 실태와 활동전망」은 전교협 추진현황과 정부 대응방향을 개괄하고 있다.

이 문서의 ‘현황’에서 “비관성향 교사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 (전교협: 회장 : 윤영규)에서는..... 87년 9월 창립 시에는 600여명의 회원조직에 불과하였으나, 88년 11월 현재 100여개 지역교사협의회와 316개의 학교단위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2만 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조직으로

1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신문』, 1989.10.11

116) 당시 문교부 내 소위 교원정보부로 불린 전교협·전교조 대책기구 실무담당자인 박찬봉(당시 교원연구원)도 “당시 안기부가 보안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문교부에서는 이를 신규채용 인이나 징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확산 되었다”고 현황보고 하였다.

‘평가 및 대책’으로 “문교부 등 관계당국은 현재 여건에서 ‘전교협’의 와해 및 도외시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제도적 대화창구 개설을 유도하여 합리적 건의사항은 수렴·반영하여 장외 집단 활동을 자제토록하고 대한교련의 조직과 기능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전교협’과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이탈 방지와 영향력을 강화토록 하고 향후 전체 교직자들의 동향과 여론을 보면서 ‘전교협’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대한교련’과의 위상정립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¹¹⁷⁾이라고 진단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안기부는 88년 11월에 이미 전교협의 조직세가 확장되어 “조직와해나 도외시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진단하면서 집단 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대한교련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전교협’과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교련’의 조직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동향과 대책」에서

‘1. 현황’으로 “전국교사협의회(회장 : 윤영규)가 87년 9월 창립이후 교육민주화와 민족, 민주교육 실천을 표방하며 기존 제도권 교사단체인 ‘대한교련’의 회원 탈퇴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 확산을 기도하며 89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20개 ‘시·군·구 교사협의회’와 625개 ‘학교단위 평교사협의회’를 두고 3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민주교육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전개하여 교육계의 진보세력으로 자처하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89년 2월 19일 단국대에서 개최한 정기 대의원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교원노조를 결성하여 세력 확대의 계기로 삼고... 3월14일에는 ‘교원노조건설 특위’를 발족하여 노조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관계법 개정문제와 함께 교육계의

117) 안기부, 「전교협 조직 확산 실태와 활동전망」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검토가 전망되고 있다.”고 개괄하면서 전교협 회장단의 기자회견·전교협 중앙위원회·시도 교사 협의회 동향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3. 전망과 문제점’에서는 “6월 이전 노조결성을 강행,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6월 이전에 ‘전교협’의 명칭을 ‘교원노조’로 명칭을 전환하고.... 이와 같은 ‘전교협’의 노조결성 추진은 87년 9월 창립 이래 임의단체에 불과한 동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해 합법성을 부여받은 후 궁극적으로 교원노조로 발전시킴으로써.... 교원노조 결성은 교육관계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운동차원에서 계속 강행, 이를 계기로 교육민주화를 표방하고 외부 문제권과 연계, 각종 집단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이라고 분석하였다.

‘4.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교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교육관계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 거부권 검토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교협 간부가 소속한 교육위원회 및 학교장을 통한 대화체제 유지, 극렬문제교사 소속 학교의 건전 학부모와 동창회를 활용한 순화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대한교련의 기능 활성화와 교원처우개선으로 전교협 가입을 사전에 방지토록 유도, 전교협의 ‘노조결성’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의 홍보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민정당과 문교부에 통보하겠음”¹¹⁸⁾이라고 적시하였다.

당시 안기부 대책방안은 우선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핵심골자로 한 전교협의 교육관계법 개정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검토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교조 참가 교사들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학교장·소위 ‘건전 학부모’·동창회 등을 활용한 탈퇴회유·압력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전교협 견제 방책으로 ‘대한교련을 통한 교원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전교협 가입을 막고자 하였다. 아울러 전교협의 ‘노조결성’ 추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 제고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118) 안기부, 「전교협 교원노조 결성 추진동향과 대책」 인용

대책방안을 민정당·문교부에 통보하여 사전 조정하였다.

국정원 보존문서인 「전교협 교원노조결성 관련대책 추진실태와 전망」에서는 “전국 시도교위에서는 교원노조결성 주도교사 54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교원노조 결성반대’ ‘주동교사 축출’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 대책추진상황과 관련동향으로 “전국 시도교위에서는 문교부 지시에 따라 교원노조 결성 주도교사 54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문교부는 5월 17일 각 시도교위 학무국장 회의에서 주동자 처리기준 협의 후 5월 22일 주동교사로 파악된 54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지시, 5월 23일 노조결성대회 연기 및 취소시 징계유보방침 발표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주동교사들에 대해 최대한의 설득노력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공립교사 37명 중 36명은 5.23~5.25간 직위해제(담임직 박탈)후 검찰에 고발조치, 1명은 노조결성활동을 포기토록 설득 중이며, 사립학교 교사 17명중 3명은 5월 24일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1명은 순화 가능성이 있어 전교협 탈퇴를 종용중임 그리고 5월 25일 반상회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교원노조 부당성 홍보내용의 유인물 300만부를 배포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한양대로 하여금 5월23일 전교협 측에 한양대 장소사용을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조치함

검찰은 주동교사 수사착수, 5월 28일 노조결성대회 이전에 공립학교 교사 36명에 대해 소환조사 후 사법처리 방침이며 주동자급 3-4명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할 계획임. 당일 결성대회 참여하는 공립학교 교사도 전원 연행·입건키로 하였으며 사립교사들도 격리차원에서 연행토록 경찰에 지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안기부가 제시한 평가와 대책으로 “강·온 양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물의확산 극소화 방안 강구필요

○ 징계조치 등 강경대책 계속 추진 : 주동교사에 대해 파면 등 징계와

사법조치로 여타 가담 교사들에 대해 경각심 고취.

- 문교당국 교원처우 개선방안 제시.
- 5월 28일 한양대 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각 시도교육위별로 참가 예상교사 상경 저지와 학교장, 장학사 등의 한양대 현장지도를 비롯한 별도장소 집회개최에 대비, 핵심간부 동양과약 견제.
- 전교협에 대한 대국민 비판홍보 지속 실시
 - 언론과 협조하여 교원노조의 부당성과 강경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학부모와 사회단체를 활용, 전교협 소속교사와 의식화 교사에 대한 비판활동 지속 유도
- 대한교련 조직 활성화 적극 도모
 - 평교사 중심의 ‘교사여론’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당국의 대한 교련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화하며, 교련에 대한 기대감 조성을 위해 ‘대한교련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이상 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¹¹⁹⁾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안기부 대책방안은 위의 「청와대 대책회의 비공개 문서」에 열거된 정부 내 유관부서의 협조사항과 거의 일치한다. 위 안기부 대책방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안기부가 교원노조 대책과 관련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문교부 등 유관기관이 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와대 대책회의 비공개 문서」가 위에 제시된 안기부 보고문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내용상 안기부가 「청와대 대책회의 비공개 문서」를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문서의 안기부의 대책방안은 당시 전교조 대책으로 구사되었던 모든 실행방안과 유관기관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119) 안기부, 「전교협 교원노조결성 관련대책 추진실태와 전망」

나) 전교협·전교조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대책

문교부가 주관하고 안기부·문공부 등이 참여한 교육대책 실무회의에서는 전교협·전교조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문제·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임용기준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국정원 보관 문서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문제 등 협의」에는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가 (89).3.19 11:00-13:00간 문교부 장학편수실장 주재 하에 당부 등 관계위원 참석리에 개최하여 문제교사징계문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함.

- 타도전출 항의교사 처리방안으로는 타도 전출거부교사 3명 중, 유00은 3.14 기부임, 근무 중에 있으므로 징계불문하고 김00은 당국조치에 승복, 3월18일 임지로 부임한 점을 감안, 현지 성실 근무시 해임이 아닌 징계조치를 취하고, 노00는 계속 부임을 거부하고 있어 해임조치토록 하되 금명(3월20일 시한)간 부임시는 재검토 처리한다.
- 교권수호서명 및 문제집회 참석교사 처리방안으로는 소위 ‘교권수호 공동대책위’(재야 15개 문제단체연합) 명의 교권수호서명 및 서울 Y중등 월례강좌 (2월11일)시 결의문 채택 등 집단문제 활동 가담 교사 10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개전의 정 표시 및 소속 학교장의 책임지도 선처요청이 있음을 고려, 전원 중징계보다는 해당 시도 교위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징계조치토록 일임한다.
- 기타 국립사대 및 교대출신 교사임용후보자 중 사태관련 임용 유보자(초등 52명·중등 10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성향재 심사 임용여부 결정”¹²⁰⁾이라고 결과보고 하였다.

또 다른 국정원 보존 자료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에서는 전교조 징계현황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교조의 향후계획을

120) 안기부,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문제 등 협의」

보고하고, 문교부는 소위 ‘참교육’ 저의 폭로와 탈퇴유도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학부모, 언론 동향 등을 개괄하였다.

“평가와 전망 중 정부의 전교조 교사징계에 대한 부당여론 확대와 대량징계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반전을 위해 징계중이라도 최대한의 탈퇴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정치권에서 조속히 대안을 수립, 확정 제시하여 받아들이도록 하며, 거부시에는 이들의 전교조 결성목표가 ‘참교육’을 빙자한 좌경이념 확산을 교육계에 확산시키는 데 있음을 홍보하여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계로부터 과감히 축출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진단하였다.

이 보고문서에 제시된 대책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우선 민정당 주도하에 ‘문공위’나 ‘4당 정책위원장’ 차원에서 ‘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교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토록 유도하고 4당 합의하에 교원관계법을 조속 제정하여 수용토록 하고

-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민정당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새로운 홍보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후까지 남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강력 응징할 것임을 재차 천명하고
- 관계당국에서는 현재의 징계방침을 계속 추진하여 탈퇴여부를 놓고 심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의 결단을 유도하여 탈퇴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미탈퇴 교사들에 대해서는 용공적인 범증을 확보하여 국가보안법 적용 등 사법조치를 적극화하고
- 각 시도교위에서는 교사결원 충원을 위한 미발령교사 임용시, 대상자의 교육관 등 인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당국과 협조 하에 재학 중 시위주도 전력이나 불순단체 관련자들을 적출하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민정당, 문교부, 법무부에 통보하겠습니다.)”¹²¹⁾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상의 전교조 대책개요는 민정당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용공교사로 지목하고 이들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화하도록 하였다. 이제 전교조 탈퇴유도는 체제수호 차원의 문제로 상승하였다. 신규임용대상 교사들 중 시위경력이나 사회단체 관련자들은 임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되었다.

국정원 보존 자료 「교원노조활동 강화 기도관련 견제대책 필요」에서는 교원노조 교사의 시국선언 직후의 교원노조 조직상황 및 활동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평가 및 대책에서

- 교원노조는 정부당국의 견제대책 추진으로 활동입지가 약화된 상태이나, 각종 문제 활동을 통해 대중성 확보와 합법성 쟁취의 토대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관계당국은 임의 불법단체인 교원노조 명칭사용 불허·사무실 폐쇄조치 등 기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시국선언 교사 중 서명철회 거부자 42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서명철회 설득과 징계추진을 병행함으로써 물의소지를 사전 차단해 나가고
- ...교원노조의 일선 교육계 침투기도를 사전 봉쇄하여 잔존한 세력의 무력화를 유도하며
- 교원노조의 불순한 정치적 이념투쟁에 대한 비판홍보를 지속 전개하는 등의 견제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교육부에 통보하겠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121) 안기부,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

또 다른 문서인 「교원노조 조직 활성화기도 견제대책 강구필요」 제하의 해직교사 복직서명운동·국제기구와의 교류·가입추진 등 최근의 교원노조 활동상황에 대한 동향과 관련대책을 제시했는데 평가와 대책에서

- 관계당국은.... 교원노조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장으로 하여금 일반교사들의 교원노조 재가입과 복직서명 참여를 책임견제토록 하고
- 일선교사들의 동조방지를 위해 국회의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교원노조의 ‘해직교사 복직 특별법’ 청원과 관련 당·정간 유기적 협조 하에 민자당 주도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 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¹²²⁾ 라고 적시하였다.

다 소 결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다루어진 전교조 대책 문서와 당시 안기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교원노조’ 문제를 ‘공안대책’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안기부는 전교조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후를 판별할 수는 없으나 안기부 내부 자료와 청와대 대책회의 자료는 대응 방향과 대책이 거의 동일하다. ‘교원노조대책 청와대회의자료’가 안기부가 기초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안기부의 전교조 대책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더욱이 청와대 대책회의 문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기부 업무협조 사항만이 아니라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 출범 전후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관계기관대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안기부의 대책방안에 의하면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을 추진하고 전교조 참여교사의 징계수준을 심사하기도 하였다. 복직교사나

122) 안기부, 「교원노조 조직 활성화기도 견제대책 강구필요」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보안, 성분심사를 명목으로 임용 및 복직여부도 사실상 안기부에 의해 결정¹²³⁾되었다. 또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와 확대홍보 방안을 주요대책으로 제시하고 대량해직이후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교원양성과 임용에 관한 종합 대책안-의 활용구상까지 안기부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²⁴⁾ 이와 같이 안기부는 정부의 ‘전교조 대책’의 전방위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대응 방향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교조 와해를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 실현에 앞장서 왔다.

123) 보안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문교부에서는 이를 신규채용 인사나 징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의 안기부 대책 중 “관계당국과 협조 하에 재학 중 시위주도 전력이나 불순단체 관련자들을 적출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124) 국정원 보존 자료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의 대책방안에는 “민정당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이미 성안되어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새로운 홍보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후까지 남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체제수호 차원에서 강력 응징할 것임을 재차 천명”이라고 적시.

6-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기업연대회의 탈퇴 및 조직와해 활동

가 사건개요와 주요 의혹사항

1990년 1월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¹²⁵⁾(이하 전노협)의 건설 전후로 당시 노태우정권은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전노협 와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기부·경찰·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대책반(관계기관/공안기관 대책회의)을 통해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가입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탈퇴유도 공작·노조에 대한 업무조사·핵심간부에 대한 회유·언론을 동원한 전노협에 대한 이념공세 등이 그것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전노협 와해를 위한 대책을 기획·조정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의 탈퇴와 조직와해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노협 초대회장 단병호가 노조위원장이었던 동아건설 창동 공장¹²⁶⁾이나 부산의 한진중공업¹²⁷⁾은 안기부가 직접 개별사업장의 전노협 탈퇴공작에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25) 문서에서는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등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나, 1993년 정부는 남재희 노동부장관의 공식입장을 통해 전노협을 불법단체가 아니라 범외단체(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지 않거나 비등록된 단체)로 규정하였다.

126) 안기부, 「동아건설 창동공장노조, 조합장 단병호 불신임결의」에 의하면 “※ 유관기관과 협조, 노조 신 집행부로 하여금 [전노협]에서 탈퇴토록 유도하겠음.”이라고 적시 됨.

127) 대기업 연대회의의 소속인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OO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가 박OO의 석방, 노조 요구를 수용한 임금 단체협상 타결조건 등으로 노조간부들에게 접근, 한진중공업의 전노협 탈퇴를 도모한 사실이 안기부 직원 등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창수 사건 조사기록 중, 안기부 부산지부 0000과장 이OO, 홍OO, 김OO 등의 진술조서와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OO, 사무국장 장OO, 총무부장 오OO 등의 진술 참조.

1) 전노협의 실체

가) 전노협의 자기규정¹²⁸⁾

87년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민주노조세력은 노동법 개정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약칭 :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민주노조 중앙조직 건설을 시작하였다. 전노협은 ‘기업별 민주노조체계’에서 ‘산업별 민주노조체계’로 재편되는 과도기의 전국조직체였다. 따라서 전노협은 각 사업장의 민주노조가 참여하는 지역별 노조협의회를 근간으로 하여 제2노총의 전망을 갖는 전국적 노동조합 연합조합의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¹²⁹⁾

전노협의 창립선언문과 강령 및 규약 등에 의하면 전노협은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 및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대처할 수 있는 전국 조직’으로 조직위상을 밝히고 있다. 활동과제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전개·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통일을 위한 제 민주세력과 연대·기업별 노조체계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 전국중앙조직 건설’을 천명하였다.

전노협은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쟁취·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완전쟁취·노동자와 전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제 민주세력과 연대·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통일 실현 등 12개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128) 전노협 백서 참조.

129) 안기부, 「전노협 성향분석」에 의하면 당시 전노협의 조직현황은 “서울, 인천, 마산/창원 등 14개 지역별노조협의회 536개 노조, 18만 3천명, 민주출판언론, 시설관리노조 등 2개 업종별 노조협의회 38개 노조 7천명 등 총 574개 단위노조 19만 여명(노총의 10.5%)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규약에 의하면 ‘전국노동자의 권익옹호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결성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나) 당시 안기부가 분석한 전노협 실체¹³⁰⁾

당시 안기부는 전노협의 기본이념을 현 체제의 근본적 변혁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즉 노동해방, 민중해방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노협의 투쟁전략은 계급투쟁, 정치투쟁 강조 등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이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노협의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노동계급을 사회 변혁의 중심 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중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에서 당시 안기부는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에 대한 대책을 공안차원의 문제로 다루었다.¹³¹⁾

2)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가입 탈퇴 및 조직와해를 위한 안기부의 개입실태와 양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전노협은 범외조직이었다. 그러나 전노협 결성은 박정희 정권이후 고착된 국가주도의 노조질서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사용자 단체와 국가권력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로 표현되는 제2노총 결성시도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당시 정부는 전노협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고립, 분산, 해체시키기 위한 통제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 등에 의하면, 당시 국가권력은 안기부 등을 통해 전노협에 대한 이념공세와 지도부의 구속·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온갖

130) 「전노협 성향분석」(1990) 등 전노협관련 안기부 보고 인용 문서 참조.

13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시, 안기부 송00의 진술, 부산지부 김00의 진술, 노동부 노정과장 김00, 부산지역 전국노운협 실무자 김00의 진술 등이 공히 이를 뒷받침해줌.

탄압수단을 동원하여 전노협의 조직와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안기부 자료인 「전노협 성향분석」에 의하면 정부의 전노협 와해대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와 단위노조를 지원하는 행위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여 이를 엄벌한다. 둘째, 전노협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을 다양한 이유로 사전에 사법처리한다. 셋째,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해서는 그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업무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조사 결과, 전노협에 기금을 낸 것이 확인되면 양자 모두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한다. 넷째, 전노협과 관련된 행사나 집회는 원천봉쇄하고 각종 유인물의 배포도 사전 차단한다. 끝으로 회사나 안기부, 경찰 등을 통해 탈퇴공작과 회유작업으로 개별 사업장 노조의 탈퇴를 조직”¹³²⁾ 하였다.

가) 국정원 보존자료 상의 전노협 대책분석

이하는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보고문서에서 ‘전노협 대책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전노협 성향분석」(1990.1) 제하의 국정원 보유문서에서 전노협에 대한 안기부 대책방안으로 “전노협 실제 및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재야 학원 등 외부세력과의 연계 철저 차단, 노동상담소·정치학교 등 의식화 학습행위 엄단,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지속 발본색원, 노사분규 개입, 노조활동 지침하달, 기부금, 의무금 각출 등 불법행위 의법 조치, 전노협과 관련된 각종행사 원천봉쇄 및 부당노동행위 강력대응, 기업자체 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자구책 강구로 위장 취업자, 지하조직 등 침투방지, 핵심인물에 대한 전향적, 적극적 순화, 기 가입노조 탈퇴유도 및 미 가입노조·미조직 노동자의 신규가담 억제, 임금 안정대책, 근로자 주택건설 등 근로자 복지정책 지속추진으로

132) 노동부, 「급진노동세력대책과 위법부당쟁의행위 지도방안」, (1990)

투쟁명분 해소 등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강구”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주관 전노협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결과」 (1990) 제하의 문서에 의하면 당시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으로 “전노협 가입노조 업무조사권 발동-노동부 및 각 시, 도별로 핵심가입노조의 규약, 단체 협약 내용 및 조합비사용 내역 등 조사, 노동관계법 위반시 1차 시정 명령 후 불응시 사법조치-전노협의 제3자 개입사례 정밀조사, 전노협 창립기금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모금금지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 전노협 대응논리 홍보 및 노사교육 시 활용, 중앙 및 각 지역별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설득팀’ 운영, 전노협 주관 각종 불법행사 원천봉쇄 및 불순유인물 집중단속, 경제단체 및 한국노총의 자구책 강화 유도” 등이 제시되었다.

「소위 민주노조 세력, 전노협결성 저지방안 강구필요」 제하의 보고 자료에서 안기부가 제시한 대책 방안은 “핵심간부에 대한 격리방안과 민주노조에 대한 이념투쟁, 기금과 모금활동 견제, 하부조직 이탈, 매스컴을 활용한 전노협에 대한 (왜곡)선전 등 홍보방안 강화, 이를 민정당,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노동부에 통보” 등으로 적시되었다.

안기부는 이와 같이 전노협 대책방안을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통보 하여 전노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소위 민주노조 세력, 전노협결성 추진동향 및 대책」 제하의 문서에서 안기부는 “전노협 결성 저지 및 무력화를 위해서는 핵심지도부 와해 등 강경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진단하고 “① 89년 12월 27일 전노협 준비위원회 발족행사 불허통보 및 행사장 사전 차단, 전노협 결성추진 핵심간부에 대한 조기사법처리 추진 (김OO, 등 핵심 간부 10명의 명단 및 직책), ② 배후지원 단체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각 지역 노동상담소, 의식화 학교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명분 확보, 압수수색 등 견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③ 노총, 경단협을 적극지원, 이념투쟁 전개·모금활동 견제, 하부조직 이탈 등 공동대응 활동을 유도

해야 할 것임.(내무부·법무부·상공부·노동부·문교부에 통보하겠습니다.)”이라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노동부, 전노협 가입노조 대상 2차 업무조사 계획」(1990) 제하의 문서에 의하면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3월 15일간 전노협 가입 139개 노조에 대해 실시한 ‘노조업무조사가 가입노조의 전노협 탈퇴 및 상반기 활동무력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전노협 활동 지속견제 차원에서 7-8월 2개월에 걸쳐 각 시도 및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2차 업무조사 실시계획에 있음.”이라고 적시하였고, 2차 업무조사 대상선정은 “14개 시도 및 6개 지방노동청에서 3개 이상씩 선정하고.... 전노협 탈퇴를 약속한 28개 노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였으나 71개 노조는 업무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중 64개 노조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노협 초기에 가입사업장이나 전노협을 지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업무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였고, 업무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을 동원하여 노조를 고립시키고 간부들을 구속하겠다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회사 측에서는 교섭을 해태하여 노조가 파업을 하게끔 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여 바로 핵심간부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전노협 소속 사업장을 무력화 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 「전노협 준비위 ‘90 임금투쟁 지침 및 대책」 문서 내용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동 문서에 의하면 “90.1.22 전노협 결성대회 봉쇄 및 핵심간부들을 지속 의법 조치하고¹³³⁾ 산하 각 지역, 업종별 노협의 연대투쟁(파업 및 집회, 시위)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전노협 가입노조 특히 대기업(현대, 대우, 럭키금성, 기아그룹 계열사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초동단계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임투분위기 확산을 저지하고 전노협의 급진노동운동 이념에 대한 대응홍보활동을 강화,

133) 안기부 보고 자료의 대책 방안에는 “대검주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전노협 결성 불허 및 강력 저지하고 핵심주동자 9명을 조기 검거기로 결정한다.”고 적시하였다.

임투 기도를 무력화해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³⁴⁾

안기부는 전노협 탈퇴선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 홍보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하였다. 「경기지부, 전노협 집단탈퇴 선언 및 홍보계획 추진」(1990) 의하면 “경기지부에서는 그간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관내 전노협 가입 158개 노조에 대해 탈퇴를 지속 추진해 현재 28개 노조가 탈퇴하였는 바, 이중 18개 노조간부들을 규합, 4월 3일 11:00-13:30간 노총 경기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노협 탈퇴선언 및 노총가입 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 또한 경기지부에서는 동 대회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총으로 하여금, 경인·경기일보 등 지방신문과 연합통신 수원지국에 전노협 탈퇴성명서 등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확대보도토록 하는 한편 KBS·MBC TV측에 대회 상황을 촬영하여 4월3일 정례뉴스에 방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¹³⁵⁾이라고 적시하였다.

나) 안기부 조직을 통한 탈퇴 및 와해공작 실태

국정원 보존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유관기관 합동대책반(공안기관 대책회의, 관계기관대책회의)을 조정하여 이루어진 전노협 탈퇴유도, 조직와해 작업 외에, 안기부는 지부조직을 통해 직접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사업장과 핵심간부에 대한 탈퇴공작을 수행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 「전노협탈퇴공작 성과거양보고」 제하로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공작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를 내부보고하기도 하였다.

「경기지부 관내 전노협 가입 11개 노조 탈퇴성과 거양」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기부) 경기 지부는 성남노련, 경기남부노련, 부천노협 소속 전노협 가입사업장 11개 노조탈퇴 성과이후 17개 노조를 대상으로

134) 전노협 관련 안기부 보고문서는 “※ 경제기획원, 노동부, 법무부, 내무부, 상공부에 통보 조치”와 같은 유관기관에 대한 통보조치 계획이 조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135) 안기부, 「경기지부, 전노협 집단탈퇴 선언 및 홍보계획 추진」 인용.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기부 경남지부 전노협 가입 8개 노조 탈퇴성과 거양」 보고에 의하면 안기부에 의해 “마창노련 가입 37개 노조 중 만호제강, 한국시티즌 등 6개 노조가 탈퇴하고, 마창노련 소속의 엄흥철강, 한국강국 등 8개 노조의 탈퇴성명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전노협 가입노조 탈퇴 적극 추진-전노협 탈퇴 추진 현황」 등에 의하면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 유도 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성과보고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전노협이나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노조나 이를 지지하는 ‘민주노조 추진 위원회’ 등에 다각적인 정보파악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순화견제활동(탈퇴유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기부 조직을 통한 직접적인 탈퇴 유도 활동 사례로 드러난 대표적 사업장은 한진중공업과 포항제철, 동아건설 창동공장, 금호타이어 등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1991년 안기부 팀원이었던 홍00가 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탈퇴 회유공작을 추진했는데, 이는 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당 전직직원¹³⁶⁾들이 진술한 바 있었다. 포철노조의 경우 당시 안기부 분실에서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1991년 2월 대기업연대회의 소속 위원장들이 모두 연행되었던 의정부 다락원 수련회에도 참석치 말도록 사전 언질을 주어 포항제철 위원장이 구속에서 제외된 사실도 있었다.¹³⁷⁾ 이후 포항제철은 대기업연대회의를 실제 탈퇴하였다. 또한 핵심 조합원들을 안기부 분실에 연행하여 조합을 탈퇴하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박군기 전 포철위원장에 의하면 “조합원 김00을 통해 연행된 곳이 안기부 분실임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노협 의장 단병호가 위원장이던 동아건설 창동 공장의 경우,

136) 안기부 부산지부 김00, 홍00, 부산시청 사회과 과장 이00, 노정계장 하00의 진술에 근거함.

13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6.14 참고인 조사시, 포항제철 해고자 이00, 포철 전 위원장 박00의 진술에 근거함.

안기부가 전노협 탈퇴공작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조합장 단병호 불신임 결의」제하의 안기부 보고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 노조 신 집행부로 하여금 전노협에서 탈퇴토록 유도하겠음”이라고 조치의견이 적시되어 있다. 당시 동아건설 창동 공장 노조 위원장 단병호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술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단병호는 “관계당국이 ‘자신의 사업장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노협을 주도한다’는 선전효과를 위해 집요하게 자신의 위원장 불신임을 성사시키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금호타이어 전 위원장 손종규는 “금호타이어에서는 구청, 경찰서, 안기부 직원들이 간부들에게 접근, 대기업연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결성 후에도 계속해서 ‘연대회의에서 빠지면 누가 봐도 인정해 줄만한 임금인상율을 보장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탈퇴를 위해서 현장핵심활동가와 간부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탈퇴회유, 협박, 연행수사, 구속처벌을 통한 현장격리 등의 방법이 취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 소 결

1989년 이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등 범외노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조직와해를 목표로 한 강경한 것이었다. 1989년 연말 노태우 대통령의 청와대 담화를 통해 발표된 ‘전노협 등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안기부는 청와대 발표 이전부터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와해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과 지침을 유관행정 각부에 지속 통보해 왔다. 따라서 안기부는 전노협 등 범외노동단체의 와해를 정부정책화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안기부는 정부의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 와해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노협과 대기업연대

회의 조직와해의 필요성을 타 유관부서보다도 먼저 제안하여 정부시책으로 확정케 하였다.

아울러 안기부가 직접 전노협이나 대기업노조연대회의를 와해시키는 순화작업(탈퇴유도)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하였다.¹³⁸⁾

안기부는 지부를 가동하여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에 대한 탈퇴와 조직와해를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안기부는 경찰, 검찰, 노동부, 시, 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범정부적인 전노협 탈퇴와 조직와해 작업을 점검하고 기획하였다. 지방에서도 안기부 지부의 주도하에 지역대책회의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탈퇴공작을 추진하였다. 이 때 다른 관계기관은 안기부의 지원단위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¹³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시, 노동부, 시청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기부는 전노협 탈퇴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편성이나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당시 안기부 보고자료¹⁴⁰⁾에 의하면 한국노총을 통해서 지방신문에 확대보도를 요청하고, 사전에 MBC, KBS TV에 기자회견 촬영분을 지정된 날에 방송하도록 조치하였다.

138) 이에 대해 당시 안기부 송OO은 안기부가 계획을 실행했다기보다, 계획을 제안하는 수준이었고 당시 안기부는 국가시책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내부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바는 안기부가 전노협과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을 행정 각 부서에 전달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전노협 보고문서 내용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전노협 성향분석」, 「전노협 불순책동 지속견제필요」, 「경기지부, 전노협 집단탈퇴 선언 및 홍보 계획 추진」 등 전노협 보고문서 참조.

139) 부산지방노동청 노정과장 김OO, 노동조합과장 문OO, 부산시청 사회과 이OO, 하OO 등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술 참조.

140) 안기부, 「경기지부, 전노협 집단탈퇴 선언 및 홍보계획 추진」(1990).

2절.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개입양상과 실태

1 노동대책회의(관계기관대책회의),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설치 및 활동

가 노동대책회의(관계기관대책회의)¹⁴¹⁾구성과 현황¹⁴²⁾

노동대책회의는 80년 4월 사북사태 등 집단적 노사분규가 빈발하자 당시 노동청에서 각급기관이 참석하는 관계기관협의회 발족을 제안하여 81년 2월 총리훈령 제163호로 설치되었다. 노동대책회의는 중앙차원의 노동대책회의와 지역노동대책회의, 이에 따른 실무대책회의가 있었다. 노동대책회의는 이후 구체적 노동사안 발생시 공안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통합적인 노동문제 대책기구로 활동하였다. 중앙노동대책회의는 공식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소집하였고, 지역노동대책회의는 시·도지사가 소집하였다. 그러나 지역노동대책회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안기부가 소집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⁴³⁾ 중앙노동대책회의는 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노동대책실무회의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외 12명, 특별위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노동대책회의는 각 시·도의 장이 위원장으로 안기부지부장 시·도 경찰국장 등 관계기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시·군·구 노동대책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안기부 담당관을

141) 노동대책회의의 법적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163호(81.12.13) 및 동훈령 제171호(81.12.1)에 의해 중앙노동대책회의, 광역시·도별지역노동대책회의, 시·군·구별 지방노동대책회의로 설치됨.

142) 노동부, 1985년 설치 현황 : 『85 노동백서』, p15

	중앙노동 대책회의	중앙노동 대책실무회의	지역노동 대책회의	지역노동 대책실무회의	시·군·구 노동대책회의
설치수	1	1	13	13	159

143) 전 울산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홍OO, 전 노동청 노정국장 신OO의 본 위원회 면담내용, 최OO 증언 등 참조.

포함 지역 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였다. 노동대책회의는 노사분규의 예방 및 해결대책 마련·관련기관 간의 정보교환·노사문제 확산 방지대책 마련·제3자 개입 금지·기타 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노동문제 해결대책 등을 협의, 결정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였다. 그러나 87년 2월 10일자 안기부 보고문서에 의하면 지역노동대책회의는 지역노동대책협의회에 흡수 통합되어 운용되었다.¹⁴⁴⁾ 위의 안기부 문서에 의하면, 86년의 경우 지역노동대책회의는 총 9회, 실무회의는 총 43회 개최되었을 뿐이며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대책협의회(총 3,324회 개최)를 통해 해결하였다.

그러나 노동대책회의는 88년 10월에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안기부 보고자료 「노동부, 노동대책회의규정 폐지에 따른 지침시달」 문서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81년 2월부터 노동대책회의규정(국무총리훈령 제171호)에 의거 운영되어 온 중앙 및 지방 노동대책회의를 당부,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9월 29일 국무조정실에 동 규정폐지를 건의, 88년 10월 13일부로 폐지(총리훈령 224호)되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동대책회의 폐지와 관련 향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기구 구성치 않고 대형·불법분규 발생시 검찰·치본·당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대처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89년 1월8일 울산 현대중공업 테러사건 대책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보고」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대책회의는 관계 법령의 폐지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44) 안기부, 「지역노동대책회의, 지역대책협의회로 통·폐합 운용필요」(1987.2.10)에 의하면 “노동대책회의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이유로 첫째, 지방단위에 학원, 종교, 홍보 등 분야별 대책회의가 부재하고 둘째, 최근 노동문제가 단순 노동차원이 아닌 학원, 종교, 재야 등과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데다 셋째, 각 시, 도에서는 지역대책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노동문제까지도 실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노동대책회의를 제외한 지방단위 노동대책회의는 지역대책협의회에 흡수됨”이라고 적시.

대검찰청 「공안합동수사본부 운영지침」(1988.8.29)에 의하면 공안합동수사본부(이하 공안합수부)는 1989년 4월3일 안기부·보안사·검찰·경찰·노동부·문공부·문교부 등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안합동수사본부의 목적은 “각 기관의 대공수사역량을 총결집, 효율적인 수사지휘 및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확산일로에 있는 좌경폭력세력 발본색원에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공안합동수사본부의 당면 역점사업은 노사분규 개입 좌경분자 색출 수사 등 7개 분야¹⁴⁶⁾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보존자료¹⁴⁷⁾에 의하면 1987년 8월 17일부로 이미 공안합동수사본부체제가 편성·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7년 8월 국정원 보존문서 「최근 노사분규 관련 외부개입 불순세력 수사처리대책」에는 ‘합동수사대책기구 편성·운영안’을 세부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상위에 안기부 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공안부장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사실무지휘는 서울지검 공안부장 책임 하에 공안부 검사·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서울시경 공안수사단, 서울시 각 경찰서 대공과에서 직접 수사하고 안기부, 보안사도 수사지원 및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지역 또한 11개 시도에 지검차장을 본부장으로 검찰,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유관기관 공조수사체제의 지역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검공안(특수)부장 지휘 하에 내·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 국정원 문서의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일반적으로 1988년 연말에 노태우 대통령의 「민생치안과 산업평화를 위한 대통령 긴급담화」 발표 이후 1989년 공안정국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공안합동

145) ‘합동수사본부 편성운영지침’(대검 88.8.29자 공일 23120-7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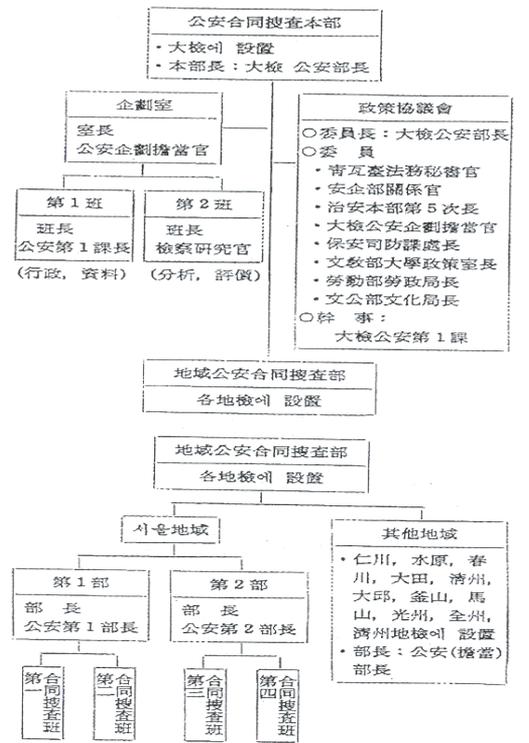
146) 89.4.4 대검 지침 시달 내용 중 당면 역점사업으로 ① 문익환 등 밀입국사건 및 그 동조 환송행사 등 수사 ② 자의적 대북접촉 기도사건 수사 ③ 좌경이념출판물 수사 ④ 노사분규 개입 좌경분자 색출수사 ⑤ 북괴동조 문제단체 수사 ⑥ 좌경이념 확산을 위한 교육장소 수사 ⑦ 문화예술분야 침투 좌경분자 색출수사 ⑧ 소위 민주인사로 위장된 좌익불순분자 색출 수사

147) 안기부, 「합동수사본부 노사분규 관련사범 수사상황 보고」(1987.8.25)

수사본부' 체제는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운용되어 왔다. 또한 이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안기부의 제안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며, 안기부 1차장이 수사대책위원장으로 최종 지휘권한을 행사하였다.

<운용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상설기구로서 주 1회 수사실무 대책회의 개최하여 수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방향 및 처리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위장취업자, 해고근로자, 좌경분자 및 노동권 불순조직 리스트를 작성, 정밀내사토록 하였다. 지목된 범법대상자는 국가보안법, 형법, 노동관계법에 따라 엄정처벌토록 한다고 운영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기구는 “위장취업자, 해고자, 노동단체 활동가(좌경분자)를 척결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격리, 제거하기 위한 관리통제방안”으로 편성·운영하였다.

※ 87년 합동수사 대책기구 편성표



2 노동대책회의와公安합수부에서 중정(안기부) 역할과 개입

가 노동대책회의를 통한 노동통제 개입양상

- 1) 안기부¹⁴⁸⁾는 중앙·지역노동대책회의를 통해 노사분규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유관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 「노동부장관주재 노사분규 관련 대책회의 결과」(1987.8.10)¹⁴⁹⁾에 의하면 “1987년 8월 9일 17:00-19:30, 프라자호텔에서 노동부장관, 경제기획원, 내무, 상공, 동자, 교통 차관, 대검차장, 치안본부장, 정부2수석, 서울부시장, 당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하여 협의 결정사항으로, 노동부장관, 노사협조당부 담화문 발표(87.8.11),公安장관 담화문 발표는 8월 10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고, 공권력 투입문제는 기업주 요청에 따라 검토하되 인질, 난동 등 위기상황 시 투입한다. 불순세력 노사문제 개입색출을 위한公安기관 수사체계화 및 지역단위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용한다(※ 8.10 검찰 주관 하 안기부, 노동부, 치안본부 관계자 대책회의 개최)”고 보고하였다.

회의의 공통 토의사항은 정부2수석이 전달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최근 분규관련 관계기관 유기적 협조 공동대처, 중앙에서는 사태의 심각성 인식, 비상수단 대책도 강구(※관련 부처간 충분히 검토), 총리주재 하 관계 장관회의 및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개최, 노동부 장관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검찰과 안기부, 노동부, 경찰은 불순세력 색출에 주력할 것을 지시함” 등이었다.

148) 진실위 면담에서 전 울산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 홍OO은 “당시(1987년-1989년) 노동부의 보고서는 100% 안기부에 모두 보내주었는데, 노동부의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추가사실 확인 등을 위해 안기부 조정관들과 수시로 유선접촉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기부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 주요 분규에 대해 항상적인 정보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149) 안기부, 「노동부장관주재 노사분규 관련 대책회의 결과」(87.8.10).

안기부 담당관은 보고를 통해 “주요지역, 공단, 사업장에 지역별 테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하여 수습방안을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는 개별기업의 쟁의에 대해 사측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권력 투입시기와 방법·절차·주요쟁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

1987년 현대중공업 쟁의의 경우 울산지역노동대책회의에서 “통반장, 노인회, 관리직을 동원하여 지역여론 조작 및 강경근로자에 대한 회유, 징계협박 등 소위 순화활동을 펴고,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 위력시위를 통한 성과거양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국정원 보존자료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동향 및 전망」(1987.9.22)¹⁵⁰⁾에 의하면 1987년 9월 22일 20:00~21:40 울산지역대책회의를 개최, 9월 22일 정상조업을 위한 유관기관 간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통반장 및 노인회 동원, 독신자 근로자 대상 항의 및 순화활동, 이형건 노조조합장 정상화 당부내용 유인물을 독신자숙소에 배포하고 내용을 가두 방송키로 하였으며, 관리직 2000여명을 동원해 조업분위기 조성 및 강경근로자 집중순화계획, 현대그룹노조협의회장 권용목을 금명간 소환하여 개입경고하고 불응시에는 구속방침, 9월22일 경찰병력 20개 중대 출근전 배치, 위력시위 효과거양” 등을 결정하였다. 안기부는 향후 계획으로 “관계당국에서도 근로자들간 충돌 또는 과격농성 야기시에 공권력투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이라고 보고하였다.

1991년의 현대자동차쟁의 대책회의에서는 쟁의지속시 회사측의 고발을 유도하고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공권력 투입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키로 하였다. 창원공단 내 방위산업체 통일중공업의 경우는 쟁의를 주도한 문성현 등 19명에 대해 지역노동대책회의에서 그 신병처리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150) 안기부,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동향 및 전망」(87.9.22).

또 다른 국정원 보존자료 「일부대기업 노사분규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결과」 (1991)¹⁵¹⁾에 의하면 “1991년 상여금 지급문제로 분규가 야기된 일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현대미포조선 등의 분규 동향보고 후(내용생략), 이에 따라 12월 23일 노동부에서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치본, 당부 관계관 참석 하에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 12.26 이후에도 불법쟁의 지속시 회사측의 고발을 유도하고 ‘공안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공권력 투입시기, 방법 등을 결정키로 하였다. (각사 공히 협상에 의한 타결을 기대, 분규악화를 우려 주동자 고발 및 공권력 투입을 원하지 않고 있음)”라고 보고하였다.

3)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위장취업자 대책, 임·투 대책 등 노동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하였다.

안기부가 84년 1월 10일 작성한 「해고도산 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검토」 제하 보고서에 의하면 안기부는 도산계열의 해고노동자 관리를 위해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노동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조정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부에 의해 82년 12월 15일 681명의 명단이 각급공단 및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배포되었고, 안기부는 이들의 동향을 감시, 재취업자를 발굴하여 축출하고 도산관련조직의 와해공작을 추진” 하였다. 84년 1월 10일자 보고서의 「해고도산근로자 관리현황」에 의하면 안기부 주도로 “83년 10월25일 노동부를 동원하여 중앙노동대책 실무관계관회의를 개최, 681명의 관리대상을 A급 28명, B급 97명, 계 125명으로 축소”하였다.¹⁵²⁾ 안기부는 125명의 A, B급 관리대상자에 대해 각 급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매분기 1회씩 중앙노동대책 실무관계관 회의를 통해, 관리대상자 동향분석, 등급재분류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 관리지침에 의하면 A급 28명에 대해서는 사업장 접근 철저차단,

151) 안기부, 「일부대기업 노사분규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결과」 (1991).

152) 이 블랙리스트는 “노동부 제경 6개 및 11개 대표 지방사무소에 명단 제한 배포 함”이라고 적시된 바, 안기부는 이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만 배포를 하고 그 외의 배포는 노동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장취업 시 즉각 해고, 사실상 행동반경을 도산회관으로 제한하고 B급(97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업제한(자영업 유도), 위장취업 발견 시 보직 변경 및 순화, 순화 불가능시는 해고조치 한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종교계의 “블랙리스트” 철폐요구에 대해 안기부는

84년 1월6일. 노동부로 하여금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관회의(노동부, 문교부, 치안본부, 보안사 및 당부)를 개최토록 조정하여 해고도산근로자대책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 결정.... 노동부가 종교지도자, 교계신문, TV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해명할 것, 125명의 중점 관리대상자에 대해 재분류, 대상자축소, 원직복직은 불허하나 일정한 재취업 허용 등의 관리방안을 완화할 것, 사업장내 도산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강력 규제할 것,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한 자들이 문제 활동 시, 지역노동 대책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등¹⁵³⁾이었다.

이 보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시 안기부는 노동문제 현안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조나 공조가 필요할 때는 형식상 주무 부서인 노동부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다. 블랙리스트 철폐여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안기부는 노동부를 움직여 중앙노동대책 실무관계관 회의의 소집토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대책방안은 안기부가 기본 안을 제시하고 결과는 항상 노동대책(실무)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 1985년 통일중공업 위장취업자 대책문서인 「방산업체 통일중공업 침투 위장취업자 용공행위 등 수사상황 보고」(1985.6.28)에 의하면 “이들의 신병처리를 위해 85년 6월 27일 19:30 마산지검 검사장실에서 지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동자 문성현 등 2명은 입건 구속, 적극 가담자 이봉균 등 7명은 즉심회부, 단순가담자 이청용 등 10명은 훈방 처리토록 결정”¹⁵⁴⁾하였다.

또 다른 국정원 보존자료 「관계부처 노동 실무대책회의 개최결과」¹⁵⁵⁾는

153)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1984.1.10)

154) 안기부, 「방산업체 통일중공업 침투 위장취업자 용공행위 등 수사상황 보고」(1985.6.28)

155) 안기부, 「관계부처 노동 실무대책회의 개최결과」

노동계 임투 대책에 대한 기관의 추진계획을 보고 확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1989년 10월 27일 ‘관계기관노동대책회의’를 앞두고 차관 주재로 10월 25일 14:00~15:30 간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부, 문공부, 대검, 치본, 당부 등 관계관 참석 하에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안기부는 임투 대책에 대한 기관의 추진계획에 다음사항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보고문서 말미에 “89년 10월 27일 노동대책회의 자료 준비하겠음”. 이라고 적시된 바, 이는 노동대책회의의 중요한전자료료를 안기부가 성안하여 준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은 “안기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실제로 주도하였다.”는 노동부 관리 등의 증언¹⁵⁶⁾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볼 수 있다.

<부처별 실시 요망사항>이라고 적시된 내용에 의하면

“내무부, 치안본부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적극 지원토록 요청하고 이를 위해 지역단위 노,사,정 간담회개최 등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및 민주노조, 재야 노동단체 및 핵심간부 불법행위 강력저지를 요청하였다. 경제기획원에 대해서는 90년 임투 이슈 해소차원에서 근로소득세 인하 및 근로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부 산하 ‘노사교육본부’에 인력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 상공부에는 사업주들의 자구노력 강화를 중점 지도할 것과 업종별 임금교섭 확대추진을 요청하였다. 대검에는 폭력, 반인륜행위 등 불법쟁의 강력의법 조치, 악성분규 조기수습을 위한 공권력 투입강화를 요청”

4)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 결성을 전후로 전노협 조직와해를 위한 대응방침을 협의하고 결정

전노협 대책과 관련한 안기부 보고문서 「노동부 주관 전노협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결과」¹⁵⁷⁾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소위 민주노조 세력들의 전노협 결성기도에 따라 차관 주재로

156) 울산지방 노동청 홍OO 진실위 면담결과, 노동청 노정국장 신OO 진실위 면담결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박OO 조사기록 중 안기부 부산지부 김OO, 부산지방노동청 문OO, 김OO, 부산 시청 사회과 하OO, 이OO 등 참고인 진술내용 참조인용.

157) 안기부, 「노동부 주관 전노협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결과」

1.19일 경제기획원, 내무, 법무, 상공, 문교부, 공보처, 당부, 치안본부 관계관 참석 하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 전노협 대응조치 협의하여

- 전노협 가입노조 업무조사권 발동
 - 노동부 및 각 시, 도별로 핵심가입노조의 규약, 단체협약 내용 및 조합비 사용 내역 등 조사·노동관계법 위반시 1차 시정 명령 후 불응시 사법조치
- 전노협의 제3자 개입사례 정밀조사
- 전노협창립기금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모금금지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
- 전노협 대응논리 홍보 및 노사교육 시 활용
- 중앙 및 각 지역별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설득팀’ 운영
- 전노협 주관 각종 불법행사 원천봉쇄 및 불순유인물 집중단속
- 경제단체 및 한국노총의 자구책 강화 유도 등을 결정하였다.

2002년 6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창수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박군기 전 포철노조위원장은 “포철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려 나도 한번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포항제철 민주노조 출범식을 앞두고 (기관장들이) 최영희씨를 강사로 초청하지 말 것을 요청해서 거절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지역차원의 노동대책회의는 핵심사업장의 노사관계에서 위법사실의 처벌 등 공권력 행사여부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장의 노조사업조차도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전교조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교사징계문제 등을 결정

국정원 보존자료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 교사징계문제 등 협의」에 의하면

“문교부 주관 교육대책 실무회의가 3월 19일 11:00~13:00간 문교부 장학편수실장 주재 하에 당부 등 관계위원 참석 하에 개최, 문제교사징계문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함”

- 타도 진출 항의교사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타도 진출거부교사 3명 중, 유동용은

3.14 既 부임, 근무 중에 있으므로 징계불문. 김민곤은 당국조치에 승복,
3.18 임지로 부임한 점을 감안, 현지 성실 근무 시 해임이 아닌 징계조치.
노응희는 계속 부임거부하고 있어 해임조치토록 하되 금명(3.20시한)간 부임
시는 재검토 처리토록 함

교권수호서명 및 문제집회 참석교사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소위 ‘교권수호공동대책위’(재야 15개 문제단체연합) 명의 교권수호
서명 및 서울 Y중등 월례강좌(2.11)시 결의문 채택 등 집단문제활동 가담
교사 10명에 대해서(중략) 전원 중징계보다는 해당시도교위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징계조치토록 일임. 기타 국립사대 및 교대출신 교사임용
후보자 중 사태관련 임용유보자(초등 52명, 중등10명)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성향재심사 임용여부 결정”으로 보고하였다.

6) 1989년 1월 8일 현대중공업 테러사건 당시 사건당일과 다음날 연속된 긴급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수사방향 등을 긴급협의하고 결정

사건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 활동¹⁵⁸⁾과 관련하여, 89년 1월8일 19:00경
울산시 오정동 오작교 식당에서 울산시장 주재로 긴급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축소를 도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¹⁵⁹⁾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테러사건 관련 안기부 보고문서인 「울산
현대계열 근로자 피습사건 수사 동향(2보)」(1989.1.8)¹⁶⁰⁾의 조치사항에
의하면 “89년 1월 8일 13:30~15:00간 울산 경찰서장실에서 시장, 서장,
노동부 소장, 당부 소장 등이 참석하여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 방향을
협의결정”하였고,

158) 「현대테러사건 후도 관계기관대책회의」, 중앙일보 2면, 89.1.16자

159) 89.1.17자, 중앙일보 15면, 「현대테러경찰서 방조」

160) 안기부, 「울산 현대계열 근로자 피습사건 수사 동향(2보)」(1989.1.8)

89년 1월 8일 19:00 울산시 중구 오정동 소재 오작교 식당에서 울산시장 곽만섭, 노동부 울산사무소장 양정의·울산경찰서장 권중수·안기부 울산소장·지역보안부대장 등 참석 하에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 협의 사실도 확인되었다.¹⁶¹⁾

또 다른 국정원 보존자료 「현대계열 근로자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1989.1.9)」를 통해 “89년 1월 9일 18:00 울산시 태화동 진고개 식당에서 울산시장, 울산지검지청장, 울산서장, 남부서장, 501보안대 분견대장, 노동부소장, 당부 울산출장소장 등 7명 참석 하에 간담회 개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회의의 결정사항은

“경찰수사 초동 단계에서 사건진상 철저 규명으로 의혹 불식, 유관기관 지원 협조체제 강화 및 검찰 사전지도, 노사분규와 폭행사건 분리 처리로 사태 조속 수습 촉구, 울산시장은 정몽준 의원에게 노동부 소장은 노사 쌍방접촉 분규수습 성의 촉구 및 지도 감독 강화, 강성 불법 선동근로자 조기검거로 공권력 회복, 업무 방해 등 고발대상 현중 근로자 7명 검거 활동 강화, 회사 측 수습분위기 조성 활동 강화, 근로자 및 가족 순방”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중공업 테러사건 이후 유관기관이 이 사건의 수사방향과 처리대책 등을 긴급히 협의 조율하여 사건수사에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부의 해체지시 후에도 울산지역에서는 노동대책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¹⁶²⁾할 수 있었다.

161) 「현대테러사건 후도 관계기관대책회의」, 중앙일보 2면, 89.1.16자

162) 양00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장 “울산시장, 노동사무소장, 안기부 분소장, 경찰서장, 검찰지청장, 보안부대장 등이 수시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만나 논의해왔으며 관계기관대책회의 때에는 그 성원이 참석했으나 최근에는 필요한 사람끼리 만나고 있다”고 언급.

7) 83년도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도산지원사업 등 NCC가 WCC에 지원 신청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집행

국정원 보존자료 「한국NCC, WCC승인사업 견제대책보고」(1983.8.30)에 의하면 “한국NCC가 WCC에 신청한 ‘83년도 승인사업 및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 유관부처대책회의를 개최(3.25)하여 소위 ‘견제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WCC책자(1983사업예산 총괄서) 활용공작을 추진”하였다.

NCC가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견제대책을 나열하고 견제대책방안을 담당할 기관을 적시하여 대책수행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관부처는 청와대 정무2, 대검, 문교부, 노동부, 문공부, 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등 유관부처 관계관 13명이었다. 이하의 내용은 NCC추진사업 및 이에 대한 저지대책과 대책수행 기관을 적시한 사례이다.¹⁶³⁾

- “(1) 국내도산선교단체의 전국 10개 공단에 대한 도산회원 침투기도에 대해서
 - 해당공단 관리사무소에 동 사실을 통보, 각 기업체별 사전저지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도산 해고근로자 및 문제노조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 철저
 - 각 공단 별 도산규탄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도산선교의 문제성을 홍보(이상 노동부)
 - 82년 CDK사건이후 도산 규탄대회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산단체의 근로자 포섭기도에 대처,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업체 침투기도주동자 색출(노동부, 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 2) 기장 교단의 군산지역 어민의식화 교육과 단체조직 추진에 대처, 예방정보 활동 강화 및 사전저지대책 수립시행(치안본부)
- 3) KSCF의 학생사회개발단 재결성 기도에 철저한 사전저지, 대학생의 KSCF 회원가입 계속 봉쇄조치(문교부)
- 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민중신학, 통일, 언론, 인권 등을 내용으로 한 각종 불순책자 발간저지 및 의법 조치(문공부, 법무부)

163) 안기부, 「한국 NCC, WCC승인사업 견제대책보고」(1983.8.30)

- 5) 성공회 약수동 산업선교센터 운영추진에 대처, 동 성당 임승용 신부를 접촉, 불순성 여부점검 및 문제성 사전배제(치안본부)
- 6) 전국 도산선교단체가 근로자 포섭활동 및 도산실무자 양성을 위한 의식화 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 수립 시행중인 도산건제대책에 포함 실시(노동부, 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 7) 기타 문제성이 없는 4개 사업과 함께 NCC 등 기독교 비관단체들이 해외 선교자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국내사실 과장, 왜곡전파 등 국위손상행위 및 선교자금 불법사용 등을 발굴, 교계에 폭로(문공부, 안기부)

※ WCC 『83년도 사업예산 총괄서』 책자 문공부, 보안사, 치안본부에 배포

(2) WCC 책자 활용공작 추진

가. 국내 종교전문가에 동 총괄서 검토의뢰

- 1) 동 총괄서 1권을 해방신학에 대응비판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설립 (82.11.19)한 ‘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고범석 소장에게 문제점을 검토토록 의뢰(3.22)
- 2) 동 검토내용을 토대로 NCC선교자금공개공작 등 별도의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계획

나. WCC의 불순성을 폭로한 미국단체에 동 총괄서를 우송

- 1) WCC의 불순성을 규탄, 폭로한 바 있는 미 CBS-TV 및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 동 총괄서를 우송, WCC 비판에 활용토록 유도
- 2) 방법 :
 - WCC의 본부가 있는 제네바 주재 당부 직원으로 하여금, 미 CBS-TV가 83.1.23 방영한 60분 프로의 WCC 비판내용
 - 리더스 다이제스트 82년도 8월호의 ‘WCC 선교자금의 불순단체 지원동향’을 감명 깊게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서신과 함께 미국인으로 가장, 발송
 - 미 CBS-TV는 60분프로 제작자, 리더스 다이제스트사는 편집인 앞으로 확실히 배달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 조치
- 3) 또한 83.3.28자 TIME지에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 지는가에 대한 논쟁 제하로 WCC 선교자금의 불순성을 규탄한 미국종교 및 민주주의의 관한 연구소(IRD : 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에도 동 총괄서를 공작적 차원에서 우송, WCC의 불순성을 규탄토록 활용

국정원 보존문서 「최근노사분규 관련 대책보고」(1987.8)는 1987년 8월 당시의 전국의 노동쟁의에 대한 안기부 종합대책보고로서, 그 내용은 문서의 개요, 노사분규 사태의 양상 및 특징, 외부 불순세력 개입실태, 전망, 대책(정보공조체제 구성운영, 합동 수사체제 편성운영), 홍보, 기관별 임무, 기타 좌경 용공세력 척결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 노사분규 세부대책은 안기부가 주도하는 <정보공조체제구성·운영>과 안기부 1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수사체제 편성·운영-합동수사(본부)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안합동수사 본부로 알려진 합동수사체제가 안기부에 의해 제안되어 안기부 중심의 수사공조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보기관으로서 노사분규대책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안기부가 정보공조체제와 합동수사체제를 통해 분규대책을 총괄하는 체제였다. 즉 안기부 주도의 정보 집중과 수사체제를 편성하는 것이었다.

위 문서에서는 ‘대책 및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 국민경제, 국민생존과 직결된 현 노사분규 종식을 위해 전 수사정보력을 총 가동하여 안보차원에서 대처하며,
- 각종 노사분규, 집단사태의 신속대처와 불순세력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조체제 및 합동수사체제를 구성, 중앙 및 시도지역에 동시 운영
- 노동현장 침투 위장취업자, 해고근로자와 인노련 등 좌경 불순조직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 범증 확보를 위한 정밀 내수사를 추진하여
- 수사결과는 대국민 홍보
- 학원, 종교, 재야 등 좌경용공세력 척결대책 동시 추진』 등을 대책 및 기본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세부대책’으로

- (1) “정보공조체제” 구성, 운영

각 시도에 안기부가 주관, 검찰, 경찰, 보안사, 근로감독관, 관련 기업 주, 시·도 관계국 및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보공조체제를 강구하고 정보공조체제의 임무는 각 지역 대책협의회에 정보지원, 근로감독관은 노사분규 현장 정보수집 신속전파, 현장대처방안 강구, 사법처리를 위한 현장 체증 활동, 공권력 투입문제 검토, 구사 대항세력 육성 지원 및 활용』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공조체제의 운영은 ‘안기부 분실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필요시 사업장별 특별 실무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할 점은 “구사 대항세력을 육성지원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조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노사분규 주동 및 배후세력에 대항하고 이를 제압키 위한 구사 건전 대항세력을 육성지원 및 활용하고, 필요시 특망 및 공작원으로 활용한다.

분규 사업장 주변 주민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해 생업지장, 사회 불편, 불안 등의 호소를 유도하고, 사회건전 인물을 동원하여 비판, 규탄여론을 조성하여 확산한다.” 등 노동운동에 대항하는 구사대 조직을 유도하여 내부 정보원 등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조성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합동수사체제’ 편성 운영

가. 합동수사체제의 구성에 대해

“안기부 1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수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대검 공안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검찰·경찰·안기부·보안사 등 중앙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한다. 서울지역은 서울지검 공안부장(1,2) 책임 하에 공안부 검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서울시경 공안수사단·서울시 각 경찰서 대공 과에서 수사를 전담 키로 하고, 11개시도 지역도 중앙과 같은 체제의 시도지역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지검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검찰·경찰·안기부·보안사 공조 수사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지검 공안부장(또는 특수부장)이 검찰,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지역의 경우 안기부·보안사는 수사를 지원한다.”고 기록하였다.

나. 합동수사체제의 운영에 대해

“수사대책위원회는 정책사항을 협의하고 합동수사본부는 주 1회 수사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방향 및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 지역 합동수사본부는 지역발생 노사분규 사태를 협의 처리한다.”고 기록하였다.

▶ 기타 좌경 용공세력 척결대책으로

“정보공조체제와 합동수사체제시행과 병행하여 전 공안수사력 동원 학원, 종교, 재야 등 각 분야에 침투된 좌경 용공세력 색출을 위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족민주통일운동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서울지역대학생협의회 등 학원 좌경 조직의 핵심 주동인물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합동수사공조체제를 확대 운용함” 이라고 기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노동, 학원·종교·재야 등 각 분야 좌경용공 불순세력 수사계획 보고」(1987.8.25)에 의하면 전대협 등 학생조직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단체의 조직와해를 위해 각 분야 핵심 인물 1,619명에 대한 대공수사차원의 내·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르면 안기부는 합동수사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대상자 1,619명에 대한 관련혐의와 내·수사단계를 분류하고 수사요령까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에 입각하여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시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위 문서의 내용을 직접인용하면

1. (문서)개요

“노사분규 개입 외부세력, 전대협 등 학원좌경조직, 민헌국 등 재야 불순세력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수사 확대하여, 소위 ‘9-10월 투쟁공세기’ 이전에 선제 수사로 조직와해추진” 한다고 기록하였다.

2. 수사계획

“<기본계획>으로 노동, 학원, 종교, 재야 등 각 분야 좌경위해분자 1,619명을 총 대상으로 선정, 각 기관이 분담, 책임처리 - 1차로 핵심 분자 209명에 대한 수사착수와 범증 확보 - 잔여 1410명은 동향 정밀내사로 단계별 수사를 추진하고 수사결과는 적극 홍보한다”고 보고하였다.

가. 합동수사본부 확대운영

- 현재 가동 중인 합동수사본부 체제를 확대운영하고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전 대공수사력을 집중 투입

- (안기부가) 주 1회 실무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좌경세력 실체분석, 수사방향 결정, 수사정보 조기전파, 체증자료 분석 등 수사지원

나. 수사대상 : 총 1,619명

- 노동(697) : 노사분규 개입 불순세력 56명, 위장취업 전력자 641명
- 학원(125명) : 주요좌경사건 수배자 69명, 전대협 등 좌경조직 56명
- 종교, 재야(28명) : 민한국 핵심세력 19명, 불법시위 배후지원 9명
- 기타(769명) : 7.8 특사 등 석방자 769명

다. 단계별 수사처리

(1) 1차 수사대상(209명) : 10월말까지 집중 수사처리

- 좌경용공 불순세력 핵심 분자로서 범증 확보 동시 수사처리

대상자	안기부(46명)	보안사(37명)	경찰(126명)
노사분규 개입 불순세력(56명)	14	12	30
주요좌경사건 관련 수배자(69명)	5	6	58
학원좌경권 및 민한국 핵심세력(84명)	27	19	38

(2) 체증내사대상(1410명)

- 위장취업전력자 641명과 7.8특사 등 좌경사건 석방자 769명에 대해 사법 처리 위한 정밀내사 체증하고, 1차 수사대상 처리 후 2단계로 조사 착수
(※ 단 내사 중 명백한 범증 확보자는 즉시 수사 처리함)

라. 수사요령

- 좌경용공세력은 범증이 명백한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처리
- 좌경지하조직 및 배후관련자는 수사를 확대하여 조직와해 추진
- 수사결과는 확대홍보, 국민공감대 형성

3. 조치 : 본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음 으로 적시하였다.

Ⅲ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1절. 권위주의 국가 노동통제의 전개

1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의 개념과 유형

노동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사회적 갈등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임금노동에 기초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에는 잠재적인 이해 대립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해왔으며 그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매개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실행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문제는 경제적 생산의 유지와 정치적 갈등 관리 두 측면 모두에 연관되는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노동을 관리, 통제하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배의 방식과 관련해서 국가는 억압과 헤게모니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억압적 지배는 국가가 주로 물리적인 억압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어하고 봉쇄하는 통제방식을 말한다.

반면에 헤게모니적 통제방식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노동통제이다.

특정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제방식은 대개의 경우 억압적 방식과 헤게모니적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결국 구체적인 통제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통제수단들의 비중과 관계, 그리고 그 함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배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해서 보면 국가의 노동통제는 배제전략과 포섭전략으로 구별될 수 있다.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배제하거나 포섭할 수 있다. 배제전략은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전략적 태도를 말한다. 노동자들의 권력자원이 일천하여 국가나 자본의 권력이 노동을 압도할 때, 그리고 자본주의발전 초기 단계에서 자본의 지불능력이 매우 제한될 경우 배제전략이 항시 사용되어 왔다.

다음으로 포섭전략은 국가가 노동의 이해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수용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대체로 자본주의가 일정 정도 발전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국면이 도래하거나 노사 간의 계급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될 때 국가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표> 국가의 노동통제 유형

구 분	억압적 지배	헤게모니적 지배
포섭전략	억압적 포섭전략 (20세기 라틴아메리카)	헤게모니적 포섭전략 (20세기 서구 유럽)
배제전략	억압적 배제전략 (한국 1961-1987년)	헤게모니적 배제전략 (한국 1987년 이후)

국가 노동통제의 방식과 전략적 목표를 결합하면 <표>와 같은 네 가지 통제의 유형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노동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초반 이후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곧 노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집권 초기부터 군사정권이 노동문제에 깊이 개입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쿠데타정권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박 정권이 추진한 것이 국가주도의 수출산업화전략이었다. 이것은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을 전제로 한 발전전략이었으므로 노동문제는 곧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군사정부 시기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은 억압적 배제전략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었다. 국가정치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는 물리적 억압수단을 거의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경찰·검찰 등 사법·치안관련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군대까지 포함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통제기관은 권력이 극도로 집중화된 조건에서 최고 권력기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던 정보기관이었다. 중정과 안기부 그리고 보안사 등 정보기관은 그 자체가 물리적 억압을 실행한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 배제전략 전반을 기획하고 주관한 통제기구였다. 노동문제에 관한 한 이들 기관은 사법, 치안기구 뿐만 아니라 법무부·문공부·문교부·경제기획원·상공부 및 여타 관련된 정부부처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

약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이라는 권위주의 국가는 이른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중에서도 노동문제는 국가가 항시 해결해야 했던 핵심적 과제였다. 국가는 노동인력의 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노동관련법의 제정·개정, 그리고 제반 노동행정과 노사관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핵심적인 주체로서 개입하였다. 국가의 개입방식은 여러 통제유형 중 ‘억압적 배제전략’이라는 유형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상대적으로 온건하였던 국가 통제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강화되기 시작하여 억압성을 배가하였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의 규모와 빈도는 급속히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의 규모와 성격도 시기별로 크게 변화한 결과였다.

2 억압적 배제체제의 전개와 노동통제

노동체제(labour regime)는 한 사회에서 노사정 3자 간에 진행되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궁극적으로 노사정 3자의 전략적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사정 3주체의 전략적 행위의 폭과 내용을 규정하며 특정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노동체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은 대개 이러한 노동체제의 형성,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행된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적 지향이 노동과 자본 양자의 전략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와 국가정치의 지형 변화·사회문화적 조건 변동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노동체제의 흐름을 고찰하는 일은 국가의 노동문제 개입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노동체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변동해 왔다. ①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군사정권지배시기의 노동체제는 억압적 배제체제(repressive exclusionary regime)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형식적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② 1997년까지 10년의 기간은 1987년 노동체제(1987 labour regime)로 규정될 수 있으며 ③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dependent neoliberal regime)가 형성되어 왔다.

이 세 단계의 노동체제 변동은 대체로 국가정치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억압적 배제체제가 군부정권 집권시기와 일치하는 반면, 1987년 노동체제는 불완전한 정치적 민주화 혹은 정치 민주화의 초기 단계의 체제였다. 그리고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는 야당 세력의 첫 집권시기와 일치하며 형식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변동에 의해 변형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국가정치와 노동정치의 시기적 변화가 대체로 동일한 것은 우리 노동정치에 대한 국가변수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억압적 배제체제 시기에 국가는 노동계급의 이해를 정치 경제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다. 그것은 국가가 추구했던 경제성장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축으로 경제적 발전을 꾀했으며 이 때 순응적인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경제 개발 초기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가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노동배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조직적 통제체제를 새로이 구성하고 노동법을 개정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이념을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보족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결국 중요했던 국가의 노동통제는 경찰력과 정보 치안기구의 물리적 힘 이었다. 국가 전략선택이 이런 특성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던 1960년대 말 이후 국가는 억압성을 보다 강화하였던 것이다.

억압적 배제체제는 그 억압성의 강도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 억압적 배제체제 1기 : 1961-1969 >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4.19 이후 일시적으로 되살아난 노동대중의 요구를 봉쇄하고 안정적인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두 가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하나는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대한노총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이 위로부터 노동조합 조직을 전면 재편하는 일이었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 및 근로기준법 등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통제가 강화되었는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쟁의 개시 요건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법제화한 것과 행정관청의 개입을 강화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특히 보건사회부 산하 일개 국으로 있었던 노동담당 행정기관이 노동청이라는 독립된 부처로 승격된 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조직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린 노동청을

설립한 것에는 근로감독 강화라는 기능과 함께 국가의 행정적 노동통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조치로 큰 의미가 있었다.

법개정 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노동조합 조직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한 일이었다.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 기존 노조들을 모두 해산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위로부터 산업별 노조체제를 급조하였다. 1961년 8월 30일 결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화 작업에는 중정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정에서 기업별 노조를 해체하고 중앙집권적인 산업별 노조를 결성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 일사불란한 노동통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사전에 배제하고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한국노총의 주요 간부들은 중정에 의해 선발되고 임명되었으며 항시적인 감독을 받았으며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간부들은 철저히 격리되거나 억압되었다.

한편 군사정권이 설립한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즉 조직 형식의 측면에서 단일조직이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지부나 분회의 자율적 운영의 폭이 컸으며 종업원을 조합원 자격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새로운 산별노조는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관철되는 통제기구의 측면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결국 근로기준법 조항의 몇 가지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노동체제는 상명하복의 군대식 노동통제를 의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 체제가 1953년 노동법체제의 후퇴를 의미한 것은 분명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즉 1953년 노동체제가 허용했던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격적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자본단체들이 이 기형적인 산별노조체제의 해체를 요구했던 것도 그것의 통제효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1968년과 1970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결성하고 기업별체제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한국노총에 의해 독점되었다. 한국노총은 반공주의와 실리주의 노동조합운동을 표방하였으나 개발독재체제에서 실리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리는 상층 간부의 부패한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크게 구분하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경제성장이 계속될수록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대중으로부터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권의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저항의 압력은 점차 커져갔다. 196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국계기업인 시그네틱 쟁의·섬유노조의 면방쟁의·대한조선공사 파업 등은 기존의 국가 통제체제에 상당한 약점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억압적 배제체제 1기의 국가 노동통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이었으며 불완전하였다. 군사정권은 일사불란한 노동동원 체제를 원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지 못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 부문 노동자들은 급증하였고 1960년대 말 이래의 경제공황과 함께 이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모순을 점차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이라는 기형적 산별노조체제 그 자체로서는 이 모순의 압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졌다.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은 노동통제와 노동운동 모두에서 변화가 임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 억압적 배제체제 2기 : 1970-1979 >

1970년과 1971년 두 해에 걸쳐 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기 억압적 배제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이 두 법률은 갑자기 도입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된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쟁의봉쇄조치에 있었다. 임시특례법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쟁의를 봉쇄했다면 특별조치법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앞서 행정기관의 강제중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쟁의를 봉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 1972년 ‘10월 유신’의 정치적 반동을 거쳐 1973년과 1974년에는 또한 차례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규정에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사실상 기업별 노조가 허용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련 조항이 대폭 확대 강화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미 쟁의권을 박탈당한 노동조합은 기업단위로 고립되었으며 나아가 노사협의회라는 대체 기구로 말미암아 더욱 무력한 기구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노동법 개정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원래 국가 통제기구의 핵심적인 장치로 설계되었던 한국노총의 비중이 크게 약화된 점이었다. 억압적 배제체제의 두 번째 시기에 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유의미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노동대중의 이익대표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가 크게 약화된 탓이었다. 그것은 점차 국가기구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그만큼 부차적인 노동억압기구로 전략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한국노총을 대신해서 노동정치를 규율한 것은 정보기관·치안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행정기구와 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이었다. 한국노총을 매개로 해서 노사관계에 개입했던 국가기구들은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를 정점으로 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들은 개별 쟁의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와 인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또 노동청·경찰·검찰·군 정보기관과 중앙정보부 사이에는 치밀한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중정은 이 모두를 관장하였다.

결국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유신정권이 의도한 바는 단결권의 완전한 박탈, 곧 단결금지였다. 노동법이 있으되 그것은 노동자 이익을 거의 반영할 수 없었으며 통제장치로서의 적나라한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공식적인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법 기능이 위축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억압적

국가기구였다. 또 공장새마을운동, 반공주의, 선성장 후분배 등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와 긴급조치 등의 정치적 억압수단들이 이를 보조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노동운동도 이전시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질적 변동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전태일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기존 한국노총 체제의 어용노조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민주노조가 다수 출현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경제적 모순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 산업의 여성 노동자들은 극한의 노동조건에 자연발생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197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한국노총은 정치적 억압의 강화에 따라 점차 무력한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새로이 분출하기 시작했던 노동대중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가권력의 하수인으로 직접 억압적 통제의 주체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노총이 이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노동대중에 대한 조직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산발적이기는 했으나 자연발생적이고 폭발적인 쟁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태일의 분신을 전환점으로 해서 광주대단지에서 노동대중이 봉기하였으며, 한진상사 노동자들의 대한항공 빌딩 방화 시위사건·삼립식품 노동자 파업농성·울산 현대조선 노동자투쟁 등이 1970년대 전반기에 발생하였고 후반기에는 현대건설 사우디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엄혹한 정치적 상황과 노동통제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이 폭발한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대중의 생존권 위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독립노조운동인 민주노조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청계피복노조·원풍모방노조·동일방직노조·반도상사노조·콘트롤데이타노조·YH노조 등 경공업 수출산업 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노조의 주체들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극한의 노동조건과 비인간적 작업장은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투사로 만드는 주요 동력이었다. 이들은 억압적 배제체제에 대한 저항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기존 공식노조운동과 구별되는 민주노조운동을 형성해나갔다.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원칙은 민주노조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소박한 요구로 시작되었던 투쟁은 국가와 공식노조와 결탁한 사용자의 억압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국가기관과 공식노조, 사용자에 부딪히면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집 외에 이들이 의존할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 재야인사나 종교단체의 지원과 연대는 이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외부 역량이었다. 민주노조는 경제개발에 따른 노동자 생존권의 구조적 압력으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의 가혹한 억압으로도 그 투쟁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결국 민주노조의 투쟁은 유신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60년대 다소 모호했던 국가의 억압적 배제전략은 1970년대 2기에 들어와서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 국가는 한국노총을 매개로 해서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전략을 대체로 철회하였다. 그 대신 정보기구와 치안기구 등 직접적 억압수단들을 광범하게 동원하였고 노동법과 행정적 기구의 억압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새로이 출현한 민주노조들을 파괴하는 것이 억압적 국가의 주요한 전략적 목표였다. 노정간의 현격한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 억압적 배제체제 3기 : 1980-1987 >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유신정권 붕괴의 촉발요인이 민주노조였음을 목도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이 등장한 군사정권에게도 노동운동의 통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안 중 하나였하다. 12.12 군부쿠데타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으로 집권한 5공 세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더욱 강력한 억압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격과 당시 제2차 석유위기라는 세계적 경제 위기상황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침식하는 결과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5.16쿠데타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억압 강화전략은 5공화국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초헌법적 기구였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억압적 배제체제의 기본틀을 기획·실행한 핵심적 기구였다. 국보위는 조직노동운동을 전면 재편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광범한 노동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동운동에 대한 재편 조치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해서는 총연합단체나 산하 산별노조·지역지부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노동조합 정화 지침’을 발표하여 191명에 이르는 핵심 간부들을 사퇴시키고 지역지부를 해산하며 산별노조를 강제 통폐합 조치하였다. 2기 억압적 배제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던 한국노총을 다시금 무력화하는 정책이었다. 상급단체로서의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이나 기업 단위의 노조만을 용인하는 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이었다.

한편 1970년대 새로이 형성되었던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파괴 정책을 취하였다.¹⁶⁴⁾ 민주노조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82년 말에 이르면 원풍모방노조를 끝으로 민주노조들은 모두 해체되었다. 그리고 핵심 간부들은 노조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구속되거나 삼청교육대로 보내지기도 했다.

국보위가 실행한 보다 중요한 조치는 1980년 12월 말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개악된 노동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위로부터 기업별 노조체제를 강제하려는 데에 있었다. ‘제3자 개입금지’·‘단체교섭 위임조항 삭제’·‘기업별 노조 강제’ 등의 새로운 통제장치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기업별 체제의 강제는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함께 노동운동을 기업별 단위노조 틀에 속박하여 이들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노조 설립요건의 강화’·‘노조 임원자격제한’ 조항으로 자주적 단결권은 거의 봉쇄되었으며 ‘쟁의행위의 제한’·‘직권중재 범위의 확대’·‘냉각기간의 연장’·

164) 주요 대상노조에는 청계피복노조, 반도상사노조, 콘트롤데이터노조, 서통노조, 남화전자노조, 무궁화노조, 태창메리야스노조, 원풍모방노조가 포함되었다.

‘벌칙의 강화’ 등으로 쟁의권도 무력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다른 한편 새로이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은 무력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대체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확대된 노동행정기구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노조 해산명령’, ‘임원 개선명령’, ‘단체협약 취소명령’ 등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로써 행정기관은 노조활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1년 12월에는 국가억압기구들로 구성된 ‘노동대책회의’가 법적 기구로서 출범하였다. 노동대책회의는 1970년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억압기구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억압적 노동행정을 더욱 효율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권위주의국가의 억압적 배제전략은 3기에 들어와 그 제도적 형식을 완성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국가는 직접적 물리력과 행정력, 그리고 법제도적 통제장치로 개별 기업노조들의 활동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모든 노조와 쟁의들이 국가의 직접적 감시와 억압하에 놓였으며 개별 노조 활동가들도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국가의 억압이 극적으로 강화됨으로써 5공화국 초반 노동운동은 일시적인 정체 국면을 맞이하였다. 민주노조들은 사라졌고 한국노총은 노조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억압의 강화는 그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의 이념을 급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에서 광주항쟁과 1970년대 노동운동의 한계를 반성한 다수의 학생들이 노학연대 노선에 따라 노동운동에 유입되었고 운동의 내용을 급진적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이 형성된 남성 중공업노동자들이 국가 억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변화의 조짐은 1985년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파업에서 명료하게 나타났다. 전자는 대규모 남성 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조직적 파업이었으며 후자는 기업별 노조 체제의 강제를 노조 간 연대로 넘어선 파업이었다.

이 두 파업은 극도로 강화된 억압적 배제전략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강한 억압은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불러와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시키게 된 것이다. 3저 호황이 시작된 이후 6월 항쟁으로 국가 억압이 완화되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폭발한 것은 이런 모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1987년 노동체제와 헤게모니 배제전략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정치적 민주화의 계기이자 노동체제 변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노동체제 변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두 개의 구별되는 과정이라기보다 하나의 민주화과정의 두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사회 민주화의 첫 단계에서 국가 억압이 일시적으로나마 이완되었고 그것은 곧바로 노동대중의 민주화 요구, 곧 노동기본권 요구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대투쟁은 본질적으로 노동사회로 확장된 민주화요구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반민주적 권력이었던 5공 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희생된 사회집단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국가 권력의 정치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전반기 전체에 걸쳐 민주화를 요구했던 대표적인 사회세력이기도 했다. 사실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경제성장 전략 속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생존권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구로 머물 수 없었다. 그것은 곧 국가권력의 정치적 지지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인지되었고 이런 인식 위에서 국가는 모든 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을 억압했던 것이다. 치밀하고 가혹한 감시와 통제 체제를 넘어 생존권을 요구했던

노동자들도 그것의 정치적 성격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요컨대 억압적 배제체제에서 생존권 요구는 매개 없이 곧바로 국가권력에 대한 정치투쟁·민주화투쟁으로 전화하였던 것이다.

세 달이 못되는 짧은 기간에 약 3,300건 이상의 파업이 분출했던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에서 전무후무했던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주체의 측면에서 중화학산업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하여 이전까지의 노동운동과 뚜렷이 구분되었다. 반면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 생존권 요구와 민주노조 인정 요구는 1970년대 이래 민주노조운동과의 연속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투쟁의 양상도 기업 노조 간의 자발적 연대투쟁과 점거농성 가두시위 등의 비합법적, 전투적 쟁의 양상이 주류를 이루어 대동소이했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국가 억압에 의해 위축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이 대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000개가 넘는 신규 노조들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민주노조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노동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결국 5공 정권은 1987년 11월 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법을 급하게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노동법은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억압적 통제 기제들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 교원의 단결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이른바 4대 악법조항과 직권중재 등 핵심적 억압수단들이 그대로 남았다. 결국 억압적 배제전략이라는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통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해체되지 않았으며 대투쟁의 민주화 요구는 위로부터 봉합된 셈이었다.

개헌과 대통령 직선제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의 주요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나 노동사회의 사정은 달랐다. 1988년부터 민주노조들은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광범한 노동사회 민주화 요구를 새로이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세력의 연장이었던 6공화국은 여야 합의의

노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 배제전략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적 갈등과 함께 노동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88년까지 민주화 정국에 소강상태를 보였던 노정간의 대립은 1989년 1월 풍산금속 안강 공장에 대한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시작으로 격화되었다. 이후 서울지하철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의 파업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립을 거치면서 대립은 격화되었고 공안정국이라는 대탄압국면으로 확장되었다. 국가의 전면적 탄압에 대해 민주노조는 전국 단위 노조조직을 결성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1990년 1월 민주노조의 전국적 연대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둘러싸고 국가와 민주노조 간의 대립은 정점에 달하였다. 6공은 전노협을 불법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인 와해공작에 나섰다. 대다수의 전노협 지도부 인사들은 구속·수배조치를 당했으며 가입 노조들에 대해서는 업무조사와 탈퇴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92년에 이르면 전노협의 조직 역량은 뚜렷하게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노조운동도 크게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 성립 이후 상황은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노협이 전면에서 국가의 억압을 견디는 동안 대기업노조들과 사무전문직 노조들이 점차 민주노조로서 결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문민정부에서도 현대그룹노조·한국통신노조와 철도노조·지하철노조쟁의 등 대규모 쟁의가 연발하였고 국가는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기업연대회의와 업종별회의라는 전국적 협의체를 유지하던 이 노조들은 국가의 탄압에 맞서 전노협과 함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고 1995년 11월 최종적으로 40만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할 수 있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7년 민주노총의 겨울총파업에 이르는 기간은 국가의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의 저항이 치열하게 교차했던 10년

이었다. 민주노조들의 노동민주화 요구에 대해 국가는 가혹한 탄압을 되풀이했고 노조는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대응하였다. 개별 쟁의에서 민주노조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민주노조들은 조직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결국 국가의 탄압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개별 쟁의에서 패배했으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딜레마는 1987년 노동체제의 고유한 내적 모순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1987년 체제는 무엇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사회의 비민주적 상황이 장기간 유지된 모순적 체제였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귀결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6공 정권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일반을 민주화하면서도 노동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기업별 노조 조직형식과 노사협조주의 운동노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던 것이다. 민주노조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수용할 수 없었다. 국가의 요구는 기업 노조의 설립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1987년 이전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민주화 국면에서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기도 하였다.

6공 정권의 배제전략은 직접적인 억압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노동탄압은 6공 집권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여소야대 정치국면이 유지되었던 1989년까지는 물론, 3당 합당이 이루어진 199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세계화와 OECD가입을 추진했던 문민정부에서 그 비용은 더욱 커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제전략의 비용은 그 수익을 넘어섰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한 점에서 국가와 대사업장 자본, 곧 재벌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조 자체를 봉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더불어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일상화되고 작업장 내에서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경영전략이라는 구조변동을 꾀했던 자본의 의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노동자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조건에서 생산성 향상은 불가능했으며 쟁의와 노무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급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87년 노동체제에서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는 의미있는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양적인 측면에서 이 기간 동안 행사된 국가의 노동억압은 이전 시기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중요했던 것은 억압적 배제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합법·비합법적인 물리적 억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억압적 배제전략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가는 억압적 수단 이외 각종 이데올로기수단, 새로운 법적·제도적 통제장치, 조직적 수단 등 새로운 요소를 개발하는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경제위기 등 각종 이데올로기, 무노동 무임금과 경영권·인사권 및 총책임금제 등의 행정적 법률적 수단, 노경총 임금 합의 등의 조직적 통제수단들이 망라되었다.

통제전략의 변화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으로부터 야기되었다. 즉 정치적 민주화 국면에서 억압수단의 무제한적·무조건적 사용이 불가능했고 시민들과 노동자 대중로부터 최소한의 절차적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민정부 말기에 오면 이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은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영삼정권 내부의 개혁세력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라는 이데올로기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헤게모니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 국가의 노동통제와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1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통제와 공안기구

지난 20세기 많은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권위주의정권이 억압적 통치를 행해왔다. 이들 권위주의 국가는 물리적 억압수단에 의지하여 소수의 지배집단에 권력을 집중하고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집권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것은 권위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약점이었다. 이들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인 이익 표출을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였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계급집단들과 이익집단들 사이의 갈등은 흔히 이들의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그것은 사회안정과 통합이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수렴되었으며 사회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권위주의 억압국가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기제는 경제 발전 또는 빈곤의 퇴치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지체되고 낙후된 제3세계 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구조적 여건은 열악하였다.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은 부족하였으며 건강한 기업가 의식을 갖춘 자본가 집단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 많은 경우에 지주 등 전근대 사회의 지배집단은 비생산적 이윤추구에 몰두하여 근대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권위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세력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억압적 비합법적 통치를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권력의 이 두 가지 정당화 기제는 매우 편파적인 권력 행사로 귀결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계급은 흔히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집단이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제한된 물질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또 많은 경우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혁명세력이나 정치적 급진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나 노동운동은 권위주의 억압의 제 일차적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자본가계급은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정치적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적 세력이었다. 또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집단이었고 경제개발을 실행할 핵심적인 주체들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해왔다.

이 모든 측면에서 노동문제는 권위주의국가가 억압적 권력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노동통제전략의 차이에 따라 억압의 정도와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비합법적인 물리적 억압은 공통적인 요소였다. 즉 대개의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공안기관·군대와 같은 물리적 억압기구를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권위주의국가는 그 보편적인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매우 특수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1961년 이후 약 30년에 이르는 군부 권위주의 통치에서 외견상 두드러지는 것은 노동자들의 높은 순응성과 국가 노동통제의 높은 효율성이었다.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가혹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체제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경제 개발은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어린 소녀들이 하루 15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으나 임금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산현장에서 노동법은 무용지물이었으며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폭력과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려야 했다. 또 직업병과 산업재해가 빈발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1970년에

전태일이 기록하고 또 죽음으로 항거했던 노동현실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더욱이 가혹한 노동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하거나 투쟁에 나선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경공업 수출주도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으나 1960년대 말까지 노동현장에서 쟁의는 많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출현하였고 쟁의를 벌였다. 그러나 조직화된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규모에 비하면 극소수였으며 그 요구도 대체로 소박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 대부분의 경우 억압적 국가의 탄압 앞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빠르게 억압되고 봉쇄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쉽게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점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통제는 치밀하였으며 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 여러 차례 국가는 주요한 정치적 전환기에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선제적인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5.16쿠데타 직후와 유신 이전 박정희 정권의 노동법개정과 노동조합 억압이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1980년 집권한 전두환정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는 5공 정권이 스스로 노동법을 일부 개선하기도 하였으며, 1996년 문민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모든 권력을 집중하여 시민사회 세력들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압도한 과대성장국가는 1960년대 이후 국가 노동통제의 특성을 규정한 핵심 요인이었다. 그것은 5.16 쿠데타와 유신쿠데타 그리고 5.17 군사쿠데타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이었던 동시에 가혹한 노동착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 조건이 되었다. 또 노동통제에 물리적 억압수단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통제수단으로 동원된 배경에도 바로 이런 국가 특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권위주의 국가가 억압적 국가기구 전반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든 핵심적인 억압기구로 작동하였다.

중정은 그 출발에서부터 노동문제에 깊이 개입하였다. 특히 1961년 이후 노동법 개정이나 대한노총의 재편과정은 처음부터 중정의 전략적 기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 체제의 성립과정은 그 내용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으나 중정의 개입과 기획에 따른 것임이 기존 연구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바 있었다.(이원보, 2004; 최장집, 1989; 김준, 1999) 이후 중정은 노조와 노조 간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로부터 주요 쟁의에 대한 개입과 파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정과 안기부 등 노동통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통제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였으며 통제의 전체 과정을 조율하였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들은 국가 행정기구나 치안기구에서 산출되는 각종 정보들을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생산하였고 이를 국가 행정망을 통해서 적절히 배분하였다. 청와대 등 최고 권력기구의 의사를 정부 각 부서로 전달하였고, 반대로 각 부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수합하였던 것이다. 또 종합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어 상황을 평가했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들이 생산되었고 경우에 따라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세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사안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였다. 1960년대까지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국한되었던 감시체계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노조운동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재야와 종교단체 학생운동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는 특별하게 감시되었으며 그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반 공작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협박과 매수, 구속 수배 등의 인신 구속이 포함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민주노조의 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쟁의를 와해시키거나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이 빈번하게 실행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개입했던 재야·종교단체·학생운동도 주요한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공식노조 기구로 국가에 순응하였던 한국노총이나 사용자단체도 경우에 따라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87년까지 국가권력에 순응했던 이 단체들은 감시의 대상이기 보다는 통제체제의 협력자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의 후견을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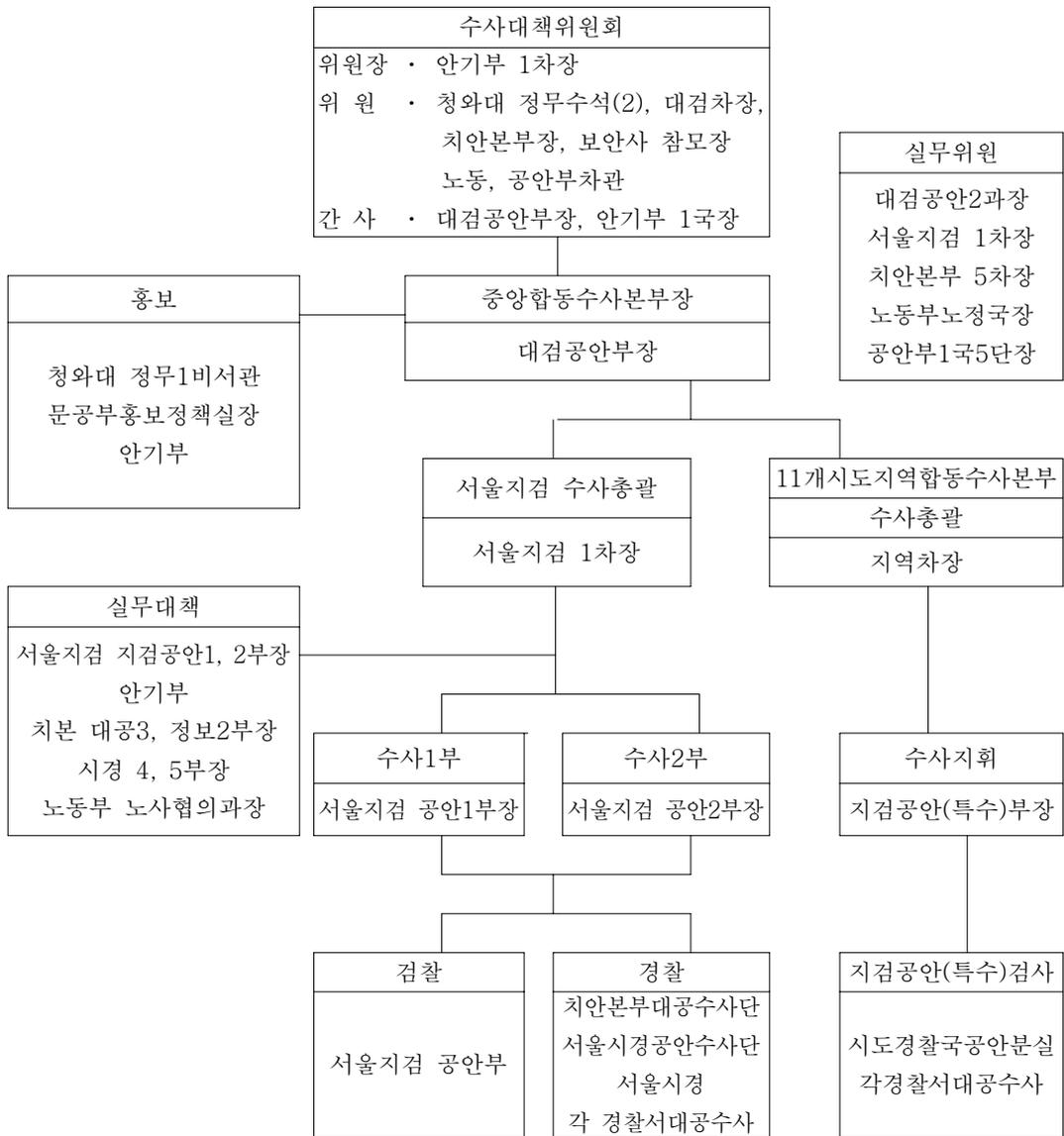
권위주의 국가 노동통제에서 중정과 안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체 통제체제를 조율하고 제반 국가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기능에 있었다. 중정과 안기부가 직접 통제에 나서는 경우는 특별한 사안에 국한되었고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통제의 구체적 실행은 여타 공안기관과 행정부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중정과 안기부는 관련 기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어진 전략방침을 전달·지시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 간에 역할을 나누어 분장하고 이를 조율하며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대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기관의 노동통제 조율기능은 1980년대 들어와 제도화·공식화되고 크게 강화되었다. 1981년 말 5공 정권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범정부 노동통제기구인 노동대책회의를 법제화하였다. 여기에는 점차 그 규모가 커져 통제가 어려웠던 민주노조 세력을 보다 완벽하게 통제하고자 했던 5공 정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화 이후 노동대책회의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문제되자 1988년 말 노동대책회의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도 그것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합동수사본부라는 부서간 협력기구 형식으로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하였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기부는 노동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대표기관이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최상급기구인 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대검차장·치안본부장·노동부차관·문화공보부차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위원장은 안기부 차장이 맡았다. 그리고 홍보실무나 수사실무 기구를 지휘한 것은 검찰, 문공부 담당자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형식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각 수준에 배치된 안기부 담당자의 의사가 대체로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 89년 합동수사대책기구 편성표



중정과 안기부가 협조한 국가 기구들에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군 보안부대 등 정부 내의 여타 공안기관, 정보기관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 체제 속에서 법 집행의 주체인 검찰은 법적 판단을 제시하는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내무부·법무부·문교부·문화공보부·상공부 등 거의 모든 주요 정부 부처가 중정이나 안기부와 협조하여 노동통제에 동원되었다. 때때로 법률적 사안이 연관되거나 야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회나 여당 등 입법부도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노동통제에 동원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문제에 관한 한 정보기관의 행동범위는 정부기관이나 국가 기구에 국한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서 그 활동 범위는 대기업이나 전경련과 같은 기업가 단체, 그리고 민간 언론기관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노동문제의 성격상 기업이나 언론기관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으며 전체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는 동향 파악·정보 교환·대책 회의 결과와 정부 정책 시달·주요 통제실행에서 역할 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시나 동원은 관계기관대책회의나 노동대책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나 회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동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판단과 대책 방안은 공문의 형태로 관련 부처에 통보되었으며 이 방침은 관련부처의 행정 실행의 기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안기부·중정 등 정보기관이 정부기관 내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노동문제가 최고위 권력의 주요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료 회람 형식의 통보는 통보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정과 안기부는 기초 행정단위에 모두 요원을 두고 있어 전국적인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보기관의 노동통제는 지방의 광역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기초 행정기구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정과 안기부 지역 조직들은 지역의 행정기구와 사법 공안기구와 협조했으며

중앙의 노동대책회의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협의체계를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 지역에서 주요한 노동쟁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 분소는 중앙 정보기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중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중정과 안기부로 대표되는 공안기관·정보기관의 노동통제는 치밀하고 강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잘 발달된 국가 관료제 전반을 통괄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효율적 집중과 체계적 배분을 관장한 핵심적인 노동통제기구였다. 정부 부처 간의 수평적 협력체제와 중앙과 지역 간의 수직적 협력체계가 물리적 통제장치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는 해방 이후 비대화된 국가기구, 그중에서도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억압기구가 존재했던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기 노동운동은 이와 같이 막강한 억압기구와 처음부터 대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폭발적이고 급진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형태를 보인 것은 국가 노동통제의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정·안기부의 노동통제 유형과 특성

국가의 노동통제과정 전체에서 중정, 안기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정책의 기획과 실행 모든 과정에 걸쳐 있었으며 거시적인 정책 생산으로부터 미시적인 노조 간부 감시까지 포괄하였다. 또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변동이나 민주화 이행의 정치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노동통제에서 중정·안기부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을 그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노동관련 각종 정보의 생산은 정보기관으로서 중정과 안기부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다. 사실 이들 기관의 모든 업무는 정보의 생산과 가공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 노조 활동가에 대한 사찰도 그 활동가의 범법행위나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쟁의사업장에 대한 개입도 그 사업장의 특성과 노조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일상적인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전제로 하되 보다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 생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인 자료 생산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특정 유형의 노동운동 활동가 개인들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정리 분석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고된 노동자들이나 대학생 출신 위장취업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들에서 안기부는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안기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1982년 말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협력을 통해 노동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도시산업선교회 출신 해고 노동자 681명의 명단이 전국의 공단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배포된 바 있었다. 그리고 안기부 등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위장취업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위장취업으로 판명된 노동자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석하여 다시 활동할 기미가 보이는 노동자들은 해고하거나 사업장에서 몰아내었다. 또 해고노동자들 간의 친목조직에 대해서도 와해공작을 진행하였다.

< 표 > 도시산업선교회 출신 위장취업자 165)

위장취업자 출신노조	취업 업체	인원
서통노조	은영상사(1), 서전기업(4), 청송실업(1), 정한산업(1)	7명
무궁화섬유노조	학산섬유(2), 코오롱스포츠사(1), 공릉섬유(3)	6명
원풍모방노조	평안섬유(2), 우진전기(1)	3명
태창섬유노조	선은섬유(1), 동산섬유(1)	2명
동남전기노조	동우산업(2)	2명
남화노조	태우양행(1)	1명
대협노조	무궁화섬유(1)	1명
계	14개 업체	

한편 1984년경에는 기존 블랙리스트에 대해 노동자들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시 대상자를 125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활동 성향을 A, B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A급 28명은 사업장 접근 철저히 차단, 위장 취업 시 즉각 해고, 도시산업선교회 회관 주변으로 행동반경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B급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고 자영업을 유도하며 위장 취업 시에는 순화공작을 실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고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 결정은 중앙노동대책회의의 실무관계관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분기 별로 등급을 재조정하고 동향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 표 > 위장취업자 등급 분류 현황(단위: 명)¹⁶⁶⁾

업체, 구분	A급	B급	소계
원풍모방	15	25	40
CDK	5	28	33
태창섬유	3	5	8
청계피복	3	5	8
동일방직	1	7	8
서통	1	6	7
무궁화섬유	.	5	5
반도상사	.	4	4
기타 12개 업체	.	12	12
합계	28	97	125

165)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1983.3.2).

166) 안기부, 「해고도산근로자 최근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1984.1.10).

한편 1980년대 초반에는 노학연대 흐름 속에서 늘어난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수사기관·정보기관에서 파악한 위장취업자는 연도별·출신·학교별·지역별로 정리되어 통제의 기초 자료로 유포되었다.¹⁶⁷⁾

< 표 > (80.5.17~ 87.8간) 학생출신 노동운동가 적발 현황¹⁶⁸⁾ (단위: 명)

지역별	인천	구로	경기	부산	대구	전남·전북	대전	창원	
641	232	158	152	43	27	23	4	2	
연도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641	3	5	11	34	157	296	120	15	
출신학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기타
641	168	67	43	41	33	28	12	10	239

두 번째로 중정과 안기부는 노동운동 관련단체들에 대한 자세한 내사를 실시하여 통제의 기초 자료로 작성하였다. 중정 시기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톨릭노동청년회(JOC)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내사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안기부 시기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및 기타 정치적 노동단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 수집·생산 작업이 진행되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통제자료 생산사례였던 도시산업선교회 연합회에 대한 내사 및 조사계획을 보면 그 내용과 범위에서 매우 치밀하고 광범한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는 1974년 상반기 약 40여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에는 연합회와 영등포·인천 등 대표적인 조직만이 아니라 동서울·동인천·대구·청주·광주·마산 등 연합회에 속한 모든 지역선교회의 회장과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모든 구성원도 내사 대상이었다.

167) 안기부, 「최근 노사분규 관련 외부개입 불순세력 수사처리대책」(1987.8.).

168) 한편 1988년 말 작성된 국정원 보존자료 「문제권 학생출신 노동계 침투실태」에서는 ‘위장취업자’의 수가 1985년 329명, 1986년 463명, 1987년 195명, 1988년 9월까지 43명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정보기관의 이 통계수치는 전체 ‘위장취업자’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다만 공간기관이 파악한 수치일 뿐이다.

조사 내용은 조직현황과 연결망·구성원 개인의 성분·활동상황·활동 대상 목표업체·자금출처·분규개입현황·구성원의 개인비리·배후조종 세력 여부 등으로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내사 방법에는 종교탄압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은밀히 내사하고 구성원 주변인물의 사상성분까지 파악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타 단체와의 관련성, 노사 분규 개입여부 규명, 국가보안법 저촉행위 유무 등과 함께 외국자금 수수 등 자금흐름까지 파악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초반 노동자복지협의회 등 소규모 단체에 대해 계속되던 단체에 대한 내사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자 다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노협에 대한 자세한 내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미 1989년 상반기부터 민주노조들의 전국조직 결성 움직임을 은밀히 추적하던 안기부는 1990년 초 전노협 결성 직후 포괄적인 내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전노협 조직과 핵심 간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는 물론 결성 배경과 관련된 노동단체들의 동향·강령 분석과 조직 성격에 대한 자세한 이념적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전노협 결성을 지원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주요한 활동 견해도 자세하게 분석 평가 하였다. 안기부는 전노협이 노동해방·민중해방 등 체제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계급혁명의 전위세력으로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런 분석에 따라 전노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 되었다. 전노협의 실체 및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도출, 재야·학원 등 외부세력과의 연계차단, 노동단체의 의식화 학습행위 엄단,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발본색원, 분규개입 및 노조 의무금과 기부금 의법 조치, 각종 행사 원천봉쇄, 기업 자체 교육과 위장취업자 적발, 문제인물 순화, 가입노조 탈퇴유도 및 신규가담억제, 근로자 복지정책 확대로 투쟁명분 제거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당시 전노협에 대한 반공 이데올로기 이념공세가 집중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보고서의 분석은 범정부 차원의 전노협 와해공작을 실행하는 정책적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전노협에 대한 내사와 자료생산은 당시 주요한 노동단체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와 전교협, 현대중공업과 서울 지하철, 언론사노조 등 업종노조회의, 현총련,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회의, 전국민주금속연맹, 전국자동차연맹 등 주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및 노동조합 내부의 각종 서클까지도 동향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노동자대학 등 공개 노동단체와 인노련과 서노련, 국제사회주의자들, 노동해방의 불꽃 편집국 등 비합법 노조지원단체와 진보정치연합과 같은 정치적 노동운동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것은 당시 안기부가 노동운동 전반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들은 범정부적인 노동통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기관이 생산한 자료 중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노동운동을 좌경 급진세력으로 규정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9년 6월 말 안기부가 작성한 『국내 좌경실상자료집』이 있었다. 민정당의 내부 세미나 자료로 제작되고 공개되었으나 이는 언론홍보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작된 자료였다. ‘좌경침투단체 126개, 핵심세력 1만여 명’을 골자로 하는 이 자료는 보수언론에 의해 대규모로 유포되었고 당시 야당 총재를 압박하고 통일·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조성된 공안정국 정치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해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정치적 공작이 되풀이되곤 하였다. 노동자대투쟁이 급속히 번지던 1987년 8월에 안기부는 당시 노사분규를 계급혁명을 획책하는 외부 불순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왜곡 설명하는 자료를 생산·발표하였다. 인노련·서노련 등의 이른바 좌경용공 노동단체는 물론 학생운동권·교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나 야당 정치인도 이런 외부 불순세력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외부 불순세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해서 노사분규 개입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잘 것 없었다. 한국중공업 사장에 대해 분규 주동자(손석형)가

식칼로 위협했다는 사건 등 7, 8건이 제시되었으나 급진 노동단체와의 연관은 뚜렷이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 자료들은 정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되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급진 좌경세력이 사주한 투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좌경세력 색출을 위한 범정부적 ‘합동수사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 보수언론은 이를 기초로 해서 대규모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 | 통제전략의 수립과 조정·지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정과 안기부가 노동통제에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체적으로 노동통제전략을 기획하고 조율·집행한 데에 있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도 정보기관의 지도적 역할은 마찬가지였으나¹⁶⁹⁾ 그것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1981년 2월 노동대책회의가 정식 설립된 이후로 판단된다. 노동대책회의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 노동대책회의의 구성

구 분	중앙노동대책회의	지역노동대책회의	시군구 노동대책회의
위 원 장	노동부 장관	서울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위 원	안기부 1차장 경제기획원 차관 재무부 차관 상공부 차관 동력자원부 차관 건설부 차관 문화공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치안본부장 국세청장 중앙노동위원장	안기부 분실장 지검公安부장 시도 경찰국장 지방국세청장 시도 보건사회국장 시도 노동위원장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위원장 위촉
특별위원	위원장 위촉	위원장 위촉	-

169) 예컨대 YH무역 노동쟁의에 대한 일차적 수습책은 1979년 4월 17일 노동청 차장실에서 열렸던 중앙노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노동대책회의는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범정부적 기구였다. 이 기구는 형식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의사 진행을 주도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안기부가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 표 >노동부 안기부의 비밀문서 수발현황 자료

구분	일 자	발 송 수 신	주 요 내 용
정 보 수 집 계 획	1987.7.4	노동장관 - 안기부	정보사업 운영계획 수정 통보
	1988.7.13	안기부 - 노동부	1988년 정보사업 운영계획 수정
	1988.11.21	노동장관 - 안기부	정보사업 운영계획 수정 승인 요청
	1989.4.28	노동장관 - 안기부	국가정보 세부자료 수집계획 수립
정 보 예 산 편 성 집 행	1988.4.1	안기부 - 노동부	정보사업 예산 편성 지침
	1988.7.21	노동부 - 안기부	상반기 정보사업 예산 심사분석 보고
	1988.7.27	노동부 - 안기부	1989년도 정보사업 계획 예산서 제출
	1988.11.27	노동부 - 안기부	노사대책비 집행계획서 제출
	1989.4.27	노동부 - 안기부	지휘활동비 전용 요구

* 노중기(1995)에서 재인용.

1987년 여름의 노동자대투쟁 시기나 1989년 여름 공안정국에서 구성된 합동수사대책기구나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은밀히 진행되었던 중앙노동대책회의의 실체가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합동수사본부의 형식상 대표는 대검공안부장 이었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였다. 합수부를 지휘한 것은 안기부 1차장이 주도하는 수사대책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지역노동대책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상반기 안기부는 지역노동대책회의를 안기부가 통괄하고 있었던 지역대책협의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보고서¹⁷⁰⁾를 작성한 바 있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지역 보안부대장 및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역노동대책회의와 구성이 같았고 노동문제도 항시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므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1986년 한 해 동안 지역노동

170) 안기부, 「지역노동대책회의, 지역대책협의회로 통 폐합 운용필요」(1987.2.10)

대책회의는 총 9회, 실무회의는 총 43회 개최된 반면, 지역대책협의회는 총 3,324회나 개최되었다고 한다.

명칭이 무엇이든 안기부가 주도하는 지역 단위 대책회의는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처리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폐쇄조치는 종로구 지역대책회의와 서울시 노동대책실무회의의 결과로 실행되었다.

결국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안기부는 노동문제에 관한 한 정부 부서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88년 하반기 노동대책회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이후에도 '관계기관대책회'라는 명칭으로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¹⁷¹⁾ 이로부터 1990년대 전반기까지 안기부는 최고 권력기구인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수행하는 국가 노동정책의 최상위 기관이었다.

1990년 1월 전노협 결성 직전에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그 중요한 사례였다. 여기서는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 발동 및 불응시 사법조치·제 3자 개입사례 정밀조사·창립기금 모금행위 의법 조치·대응논리 홍보 및 교육, 중앙 및 지역별 설득 팀 운영·불법행사 원천 봉쇄·경제단체 및 한국노총 자구책 강화 유도 등의 주요 대책의 기본틀이 결정되었다. 여러 기관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전노협 와해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 방안을 지시한 것은 안기부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노협 결성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안기부의 대책들은 통보의 형식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법무부·상공부·노동부 등에 전달되었다.

또 각 시도에서도 안기부 지시에 따라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노협 조직이 전국에 걸쳐 산재했으므로 안기부 전국 조직망의 가동은 필연적이었다. 전노협의 핵심 사업장이자 대사업장이

171) 노동부는 1988년 10월 19일 노동대책회의 폐지 이후 공식기구 구성이 어려워지자 대형 불법 분규 발생 시 검찰, 치안본부, 안기부 등과 비공식적인 협의 방침을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었다. 요컨대 안기부 주도의 노동대책회의는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었던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에 대한 회유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탈퇴 공작을 주도한 것은 안기부 지부였다. 중앙 조직이 거시적인 제도와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성에 주력하였다면 지역의 업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제도적인 압박이 어려운 경우 중앙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비합법적인 방법이나 물리적 억압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업무조사의 경우 안기부 지역 조직은 유관기관의 방문조사 강행을 독려했고 조사 불응시 사법조치 하는 지시를 내린 주체였다.

안기부는 전노협 대책의 세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와해공작을 주도하였다. 1차 업무조사에 응한 노조의 수가 적자 2차 업무 조사를 추진하였고 탈퇴공작을 직접 실행하였다. 예컨대 지역의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지역 158개 노조에 대해 탈퇴공작을 한 결과 3월말에 이르면 28개를 탈퇴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이들 중 18개 노조 간부를 규합하여 4월 3일에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에서 ‘전노협 탈퇴선언 및 노총가입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안기부는 이 행사를 일간신문과 방송사를 조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또 당시 전노협 대표가 노조 위원장이었던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의 위원장 불신임 결의도 와해공작의 일부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탈퇴한 노조의 관리가 문제로 떠오르자 탈퇴노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탈퇴노조 관리방안은 노·사·정 공조 하에 이들에 대한 제반 이념교육을 하고 제도권 상급단체에 가입 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그중에서도 안기부가 한국노총과 산별노련 및 산하 시도지역본부를 동원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198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던 안기부의 전노협 대책은 1990년말에 이르면 대기업연대회의에 대한 대책으로 확장되었다.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은 대사업장 제조업 노조들의 향배는 전노협 와해에 결정적인 관건이었고 안기부는 신속하게 연대 차단, 집회 봉쇄, 핵심간부 사법조치 및

지도부 무력화의 대책을 제출하였다. 또 파업시에는 초동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 걸프전쟁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선전 방침도 마련하였다. 내무부·법무부·노동부·상공부 등에 통보된 안기부 전략 방침은 1991년 초 대기업연대회의 간부들이 대거 체포 구속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기업연대회의가 실질적으로 해체된 이후에도 안기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노협 대공장특위의 한 위원(전희식 대우자동차 해고자)이 연대회의 조직 재건을 기도 중이라고 판단, 경찰로 하여금 조기 검거 처리토록 하고 관련 동향을 철저히 내사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는 전노협, 대기업연대회의 등 주요 노동조직에 대한 안기부의 통제전략이 실제로 치밀하게 지시되고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1987년을 전환점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어 국가 성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 내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최상위 정책결정은 여전히 안기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7년 대투쟁과 1989년 공안정국 당시의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정책, 1990년 이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등 노동단체에 대한 와해 공작과 억압 등 주요한 국면들에서 이런 현실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런 정책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대중들의 자발적인 기본권 요구를 봉쇄하고자 했던 점에서 본질적으로 군부독재의 노동통제전략, 즉 억압적 배제전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렸던 다수의 노동대중과 노동조합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이와 같은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화가 진행되는 정치적 조건에서 정부의 가혹한 억압과 대규모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시민들의 저항과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것이다. 물리적 힘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도 억압적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탄압 일변도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 갔다. 문민정부 전반기에 되풀이된

실패를 거치면서 정부의 노동통제전략은 서서히 변화하였고 결국 국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같은 헤게모니적 요소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제반 통제장치의 개발과 실행 : 법·제도·이데올로기

국가가 노동통제에 동원하는 통제장치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물리적 수단, 법적 제도적 수단, 이데올로기적 수단, 조직적 수단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노중기, 1995)

그러나 억압적 배제체제와 1987년 노동체제에서 두 정보기관들이 전체 노동통제에서 차지했던 역할은 직접적인 억압적 정책 실행을 넘어서는 일이 많았다. 이들은 이른바 유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수단 외의 새로운 통제수단들을 만드는 데에 깊이 개입하였다. 실제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제안하는 통제장치들 중에서 실행 수단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통제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관료제 조직으로서 이들 기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그 자체가 업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노동청년회, 크리스찬아카데미 등 노동자 지원 종교단체는 중정의 일급 감시 대상이었고 관련자들에게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5공 초기 민주노조의 와해 공작으로 관련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었다. 또 당시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대거 현장에 투신함에 따라 해고노동자와 위장취업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사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의 노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주요 노동쟁의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합동수사대책기구’를 편성하고 운용한 것도 새로운 통제장치 개발의 주요한 사례가 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나 1989년 공안정국기의 노동쟁의, 그리고 전노협 결성 전후의 노동문제는 1970년대나 1980년대 전반기의 노동문제와 달리 그 규모가

방대하며 전국적인 사안이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가의 통제조직은 검찰·경찰·안기부·보안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웠다. ‘합동수사대책기구’나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미리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권력 운용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이었다.

형식적으로 대검공안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중추 기구였으나 실제로는 안기부 제1차장이 주도한 수사대책위원회가 그 상위에 존재하는 이원적 조직이었다. 안기부가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그 집행 책임은 검찰이 맡았으며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상설기구로 운영되었던 수사실무대책회의는 검찰이 주도했으나 안기부도 참가하였다. 노동부나 여타 정부 부처는 자료를 제공하고 논리를 개발하며 정책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형식들을 보완하였다. 실무 수준 기구에서는 내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방향과 처리방침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적용 법률이나 조항까지도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또 대체로 1987년 이후에는 각 시도에 안기부가 주관하는 ‘정보공유체계’가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대투쟁시기에 마련된 안기부의 방안에 의하면 이 기구는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사, 근로감독관, 기업주, 시도 관계부서, 교육위원회로 구성된다. 그 임무는 각 지역 대책협의회에 정보를 지원하고 현장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노사분규 현장의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보의 생산과 전파 외에도 사법처리를 위한 현장체증 활동, 공권력 투입문제 검토 등 현장대처방안 강구, 구사 대항세력의 육성 지원 및 활용이 포함되었다.

대투쟁 이후 노동쟁의의 규모나 강도가 크게 높아지자 안기부는 이른바 ‘구사대’로 불린 노조 대항세력을 육성 활용하는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구사대는 애초에 갑자기 폭발한 쟁의를 막기 위한 사측의

자구조치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는 이를 보다 공식화하고 체계화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도적인 통제장치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구사대는 노사분규 주동 및 배후세력에 대항하는 직접적 목적 외에도 정보기관의 공작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쟁의에 반대하는 주민대책 기구를 조직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한편 정보기관의 조직 성격상 직접적인 국가 기구 외의 관련 사회단체들을 통제하거나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시도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안기부가 주로 관심을 기울인 단체들에는 합법 노조조직이었던 한국노총, 전경련과 경총 등 기업단체,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 각종 언론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안기부는 민주노조와 전노협의 조직적 도전에 대해 한국노총을 지원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직접적 당사자였던 기업단체와의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정책 실행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전노협 대책에서는 ‘경제단체 및 노총과 협조하여 민주노조에 대응하는 이념투쟁 전개, 기금 모금활동 견제, 하부조직 이탈 유도’방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기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통제수단은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각종 홍보 선전 및 교육이었다. ‘좌경 실상 자료’와 같이 노동운동을 체제변혁세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경제위기, 걸프전, 불법 폭력, 시민 피해 등 새로운 내용이 속속 개발되었다. 홍보 선전을 매개로 한 노동통제는 시기와 대상 산업, 업종과 무관하게 강조되었으나 특히 전교조 등 교육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두드러졌다.

이미 ‘민중교육지’ 사건수사, 전국교사협의회에 대한 은밀한 내사를 진행해오던 안기부는 1989년 5월 말 전교조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대책을 개발 실시하였다. 여기¹⁷²⁾에는 구속 수배 등 직접적 억압 조치 외에 여론을

172) 안기부, 「전교협 교원노조결성 관련대책 추진실태와 전망」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선전 작업이 주요한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언론과 협조하여 교원노조의 부당성과 강경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언론 외에 대한교련 및 학부모단체,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전교협·전교조 교사들을 좌경의식화 교사로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대응방안 중에는 문교당국의 ‘교원 처우 개선 방안 제시’가 강조되었는데 이것도 비난여론을 동원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의 ‘교원노조 분쇄대책’ 중 홍보대책에서 안기부의 공식적 역할은 크지 않았으나 실제 비중은 훨씬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 표 > ‘교원노조 분쇄대책 : 협조사항’ 중 대국민 홍보대책 요약

실 행	역 할 분 담	주 요 내 용
1. 대 통 령		- 민정당 각 조직, 지역 조직을 통한 교사 학부모 설득
2. 안 기 부		- 관련 정보의 수시 제공,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적극 지원
3. 감 사 원		- 홍보 집행비 관련 감사의 융통성 인정
4. 총 무 처		- 전 공무원의 홍보 설득 참여 추진
5. 경제기획원		- 1989년 홍보 예비비(19억) 조속 지원, 1990년 예산 26억 확보
6. 내 무 부		-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주도, 공무원의 학부모 설득 참여 (반상회 활용)
7. 치안본부		- 문교부와 관련 정보 주기적 교환 활용, 자료 제공 협조
8. 법 무 부		- 이념적 배후수사 공표, 좌경세력 수사 검거 발표
9. 문 공 부		- 정부차원의 홍보물 제작, 언론기관 협조
10. 전국 시/도		- 시도 공무원의 교원 학부모 설득, 반상회 통한 대민 홍보, 육성회 단체 지원

한편 노동자에 대한 교육사업은 중정 이래 정보기관이 항상 주시하던 일상적 통제장치였다. 정보기관은 직접적인 교육 주관 기관은 아니었으나 교육 내용을 공급하고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교육 성과 거양을 위한 문제점 보완 필요」라는 중요정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각종 명칭으로 이루어졌던 노동자 교육의 규모는 매년 150만을 넘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아래표 참조)

< 표 > 노사교육실적 및 '87계획'¹⁷³⁾ (단위: 명)

교육과정/구분	'84	'85	'86	'87(계획)	주관
근로자 정신, 경제	157만 1,036	154만 1,121	159만 7,963	150만	기업체
노조간부	3,812	4,003	4,085	4,000	노총연수원
작업, 조 반장	39,315	29,457	14,721	(폐지)	노동부지방사무소
고충처리위원	-	-	-	2,000(신설)	산업훈련협회
노무관리자	31,469	39,217	19,351	3,000	시, 도 경영자협회
최고경영자	3,308	5,335	1,667	1,000	"
노사관계지도관	-	541	700	1,000	노동연수원
노사교육교관	-	50	44	100	"
근로청소년 견학	-	78,757	33,313	38,000	노동부 등
합 계	164만 8,935	169만 8,481	167만 1,844	154만 9,100	-

마지막으로 중정과 안기부는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에도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11월 법 개정 등 각 시기의 개정 방향 결정 과정에서 정보 수집은 항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실무 법제 부처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지시를 받는 조정자의 역할이었다. 특히 1988년 하반기 이래 야 3당 주도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 안기부는 사회 안정 저해, 경제적 타격, 노조의 정치단체화 및 질서 파괴 등을 근거로 현행법 체제 유지 방침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이를 여당과 유관 부처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여당의 협상 대안 조속 마련', '노총, 경총 등 경제단체의 대 야당 로비활동 지원', '법 개정 운동관련 집회, 서명 사전 봉쇄'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앞두고 노동계의 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자 '국내 노동현실과 특수성 홍보', '대응논리 개발', '장기적으로 상급단체에 한해서 복수노조 인정' 등 기관의 입장을 노동부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법 개정 외에도 안기부는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신중검토 필요'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173) 안기부, 「중요정보보고<A>: 노사교육 성과거양을 위한 문제점 보완필요」(1987.3.5.)

중정과 안기부의 임무 중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은 일상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활동이었다. 중정 설립 초기부터 이 작업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 시기의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례, 예컨대 한국노총 설립을 준비한 9인 위원회 구성이나 특정 노조 활동가를 노동운동에서 축출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노조 간부나 운동가 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면 이런 공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보기관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거나 내사한 노조 간부나 노동운동가의 전체적 규모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이와 같은 포괄적인 정리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내용이 시기 별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아서 1970년대에는 민주노조 간부와 주요 노조운동가, 그리고 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련 내부의 소수 인물들이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987년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도 크게 늘어났으므로 감시와 사찰의 대상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정·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군 정보기관까지 포함해서 국가 공안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표 > 주요 블랙리스트사건(1988-1992) (자료)노중기(1995)에서 재인용

발견 시점	발견 장소	대상자 수	작성주체	기재사항
1988. 6	성남 고려피혁	743명	성남경찰서 대공과	인적사항, 경력
1990. 2	서울 시경	65,000명	경찰	신상기록, 경력
1990. 3	경남 지역 일원	200여 명	경남도청 지방과	인적사항, 경력
1990. 3	노동부	148명	노동부	경력 및 활동상황
1990. 10	국군 보안사령부	247명	국군 보안사령부	인적사항, 성향분류
1991. 2	현대자동차서비스	115명	회사 측	인적사항, 성향분류
1991. 9	부산 금호상사	8천여 명	노우회(신발업자 모임)	인적사항, 경력

< 표 >에서 나타난 여러 사례는 모두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87년 이후 우연히 발견된 블랙리스트들이었다. 이 중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졌던 사건은 보안사 탈영병 윤석양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었는데 전체 1,303명 중 노동자는 24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노협과 단위 노조 간부들이 주 대상이었으며 주요 기재내용에는 인적 사항이나 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인맥, 성향, 심지어 발언내용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보안사의 노동자 사찰 실태로 미루어 볼 때 민간을 대상으로 했던 안기부의 사찰규모는 훨씬 컸고 자세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70년대 정보기관의 노동자 사찰 실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당시 정보기관의 주목하고 있었던 반도상사 노조지부 간부에 대한 사찰을 들 수 있다.

1974년 봄 반도상사에 노조 지부가 결성되고 내부에서 분규가 발생하였다. 증정은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인 기숙사 등 작업환경 개선 작업을 회사에 직접 지시하고 불만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5월 초 ‘실력행사도 불사 한다’는 한순임의 인터뷰기사가 일간신문에 실리자 자세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사항은 한순임의 인적 사항, 언동의 배경과 저의, 도시산업선교회와의 관계, 배후 접촉 인물과 불순 세력 개입 여부, 노조원과 회사 측의 동향 등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도산과의 관계, 배후 인물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도산 활동가였던 최영희, 조화순과의 관계가 자세히 추적되었고 섬유노조 등 상급단체나 타 노조와의 접촉 사항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 내사에서는 특별한 불순세력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잡지 『世界』 9월호에 「한국노동운동의 현장-어느 지하 투쟁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반도상사의 쟁의가 소개되자 내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1974년 9월 20일에서 10월 7일까지 진행된 내사는 회사의 간부, 사원 5명을 공작원으로 만들고 이들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는 공작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공작원들은 1975년 9월 말까지 노조간부 및 도산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하였고 이들의 대화에서 나온 중요한 발언은 세세하게 기록되어 보고 되었다. 결국 중정은 이 기사가 외국인 선교사 오명걸이 작성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정에서 조사받은 인천 산업선교회 간사 최OO에게 각서를 요구하여 도산 간사 직에서 사퇴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¹⁷⁴⁾

한편 1980년 9월에는 1974년 반도상사 노조 결성 당시 부지부장이었던 장OO에 대한 내사보고¹⁷⁵⁾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는 민주노조 원풍모방노조 간부였던 방용석과 빈번하게 접촉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OO에 대한 자료에는 주요동향으로 1977년 2월부터 1979년 5월말까지 약 2년 반에 걸친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1977년 3월 지부장으로 피선된 사항을 포함해서 거의 매월단위로 주요 활동내용이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1977년 12월 19일과 20일에는 중정 요원을 접촉하여 조합원잔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약속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계급의식을 자극하는 연극을 전면 취소하는 데 합의’하고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또 조합원잔치에서 관계 기관에 구두로 감사의 뜻을 밝힌 일, 1978년 1월 중정의 인솔에 따라 노조간부 12명을 대동하고 판문점을 견학한 일, 3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참고인으로 중정에 연행 조사받은 사실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내사보고서는 이런 장OO의 행적을 적시하며 순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79년 4월 본조 파견대의원 선거에서 남자 대의원들이 장OO 계파에만 유리하게 되었다며 선거결과를 비난하자 중정이 개입하여 문제를 처리해준 일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1979년 5월말 중정 경기지부가 장OO를 중점감시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로 동향보고는 끝을 맺었다. 장OO 뿐만 아니라 반도상사 노조지부장 김OO에 대해서도 중정은 노조활동 중단공작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도상사

174) 최OO가 중정의 강요에 의해 각서를 제출하고 도산실무자를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보 기관에 끌려가서 쓰는 각서는 통상적인 것이었다(전 인천도산 실무자 최OO 면담 내용 중에서).

175) 중정, 「불순협외 노조간부 내사결과보고」(1980.9.6).

노조 간부에 대한 감시·사찰 사례는 당시 민주노조들 대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 청계피복노조 등 대표적인 민주노조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했던 노동쟁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그러하였을 것이다. 동일방직, 원풍모방, 반도상사, YH무역, 청계피복노조 등의 노조간부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많은 노조간부가 감시의 대상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동운동 관련 단체나 활동가에 대한 내사도 광범하게 자세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산업선교회, 카톨릭 노동청년회 등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관련 변호사들이 주요 내사대상이었다. 그리고 앞 절에서 본 도시산업선교회 내사 계획에서 본 바와 같이 내사는 전국적인 인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나 지부 단체의 모든 간부, 구성원들에도 이루어져 그 규모는 매우 방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980년 경 진행된 「OOO공작 관련자(인OO) 신원내사 보고」 사례와 같이 내사 대상과 자주 접촉하는 인물들을 다시 추적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OO은 당시 내사 중이었던 문OO과 자주 접촉한다는 이유로 내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사 과정은 공작원을 부식하고 접촉·회유하는 방식의 공작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OO 사례의 경우 사측의 직원이 공작원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 내사는 회사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하게 공작이 진행된 상황에서 정보기관은 노조와 노조 간부를 지원, 매수하거나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까지는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해고 노동자, 학생 출신 위장취업자 및 기타 노동단체 사건 관련자들이 주로 내사 대상이었다. 이때까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감시 사찰의 범위는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1987년 8월 말경 합동수사본부는 9~10월 투쟁공세에 대비해서 노동·학원·종교·재야 각 분야의

이른바 좌경위해분자 1,619명을 수하는 확대수사 방침을 마련하였다. 당시 경찰, 안기부, 보안사의 모든 대공수사력이 집중 투입된 이 수사에서 수사대상 노동자는 697명에 이르렀고 그 구성은 노사분규 개입 불순세력 56명, 위장취업 전력자 641명으로 되어있었다. 또 「노사분규 개입 외부 세력 수사보고」에 의하면 총 98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1987년 10월 중순 최종수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는 6.29 이후 좌경분자 1,680명, 노사분규 관련자 3,130명을 수사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 중 노사분규 관련 구속자는 5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크게 늘어났던 학생출신 노동단체 사건 관련자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1987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요령’을 보면 안기부는 이들과 ‘노동단체 침투 좌경 지하조직의 관계’, ‘학원 종교 및 재야 정치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당시 수사본부가 수배한 26명의 ‘노동현장 침투 좌경사건 수배자’ 자료에는 M-L당 사건, 해방동맹당 사건, 구학련, 전학련, 민민투, 반제동맹, 노동자해방 사상연구회 관련자들이 명기되어 있었다.

1988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수사는 대체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감시대상자들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사찰과 감시의 양상도 약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나 전노협 연대회의 등의 상급 노조단체, 그리고 급진적인 노조 지원 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요 쟁의사업장의 핵심 간부들이 주요한 수사대상이 되었다.

마 | 노동조합과 주요 쟁의에 대한 지배 개입과 공작·수사

정보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개입은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로 민주노조로 불렸던 저항적 독립노조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 대투쟁 이후에는 민주노조가

대거 등장하였으므로 주로 대사업장이나 국가 기간산업 노조, 혹은 전노협 소속 노조들이 집중적인 개입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파업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 지배·개입이 집중되었다.

먼저 1970년대에는 민주노조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민주노조에 대해서 중정은 지배·개입을 시도하였다. 70년대 중·후반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동일방직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동일방직에 민주노조가 들어서고 노노간·노사간 대립이 심화되자 중정은 경기지부로 하여금 동향을 감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도산 등 외부 종교 단체와의 불순한 연계활동을 감시·저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조합원들이 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사건해부식을 기획 준비하자 중정은 집회 저지와 노동청을 조정하여 수습책을 강구하고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중정의 개입 하에 1977년 2월 5일 노동청 노정국장과 섬유노조, 동일방직 사장, 대책위는 수습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에도 노동자들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중정은 이OO 계열의 여공들을 엄중 위법 처리토록 관계기관을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8년 2월 21일 동일방직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일에 발생한 인분사태는 노조파괴를 위한 중정 공작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 사태는 섬유노조 조직국장 우OO과 조직행동대 맹OO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정이 배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정 경기지부 최OO의 증언에 의하면 한 섬유노조 본조의 개입과 인분폭력사태를 중정이 직접 개입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정동향보고 중에서 이OO과 인쇄소 사장이 대화하는 내용에서도 이OO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배후에는 중정이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속수무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동청을 조정하여 중재하거나 사법처리 방침을 기관에 통보한 점 등은 중정의 전반적 개입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들이다. 특히 매우 자세한 일일 상황보고에서 세세한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도 최OO의

증언과 부합하는 사실들이다.

반도상사노조에 대한 개입은 중정 자료만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정은 반도상사 노조 결성과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측이 제출한 「노사분규 시정방안 보고서 제출 의견」이었다. 반도상사 대표이사과 이사들의 인감 날인이 첨부되어 중정부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작업장 기숙사 식당 등 시설개선 16개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귀부에 심려를 기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 내용에서 중정의 압력강도는 잘 드러나 있었다. 중정 보고 문서에 ‘부장님 보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시설개선 사항의 이행은 중정부장이 직접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정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요인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한OO, 장OO 등 노조간부에 대한 수사와 회유도 병행하였던 것이다. 비슷하게 1979년 YH무역 노조의 쟁의에서도 중정은 노동청 차장과 회사 측을 소집하여 중앙노동대책위를 개최, 신속히 대응한 바가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콘트롤데이터 등 민주노조 사업장에 대한 안기부의 개입하였다. 1985년 6월 구로동맹파업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미 대우어패럴과 효성물산 등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며 파악해오던 안기부는 24일 대우어패럴 조합원들이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하자 신속히 대응하였다. 인근 10여 개의 노조들이 동맹파업에 돌입하자 안기부는 관계기관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구로-영등포 지역노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6일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자진해산 유도 외에 외부 불순세력 개입 적극 차단, 농성주동자 및 극렬 주동세력 강력 의법 조치, 인근 사업장의 동조농성 저지, 기동대책반 운용,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대책들은 모두 강력하게 실행되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구속되면서 파업은 쉽게 종료되었다.

또 창원의 삼미특수강 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해 노골적인 와해 공작이 진행된 사례였다. 1986년 말 설립신고서를 받은 노조에 대해 안기부는 노조해산 지침을 내렸으나 1,2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의 반발을 염려한 회사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1987년 1월 안기부는 노조를 점진적으로 와해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순차적인 대처방안을 결정하였다. 먼저 노조간부에 대해 순화나 경고조치를 취하면서 건전 근로자를 규합하여 임원불신임 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방법이였다. 그 다음 노조의 해산결의를 유도하거나 건전노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도 안기부는 다수의 사업장에 개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파업이 격렬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대사업장 현대중공업은 특별하게 취급되었다. 9월 2일 쟁의가 발생하자 안기부는 곧 자세한 일일 동향을 작성하였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1987년 9월 4일에는 도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위연행자 사법조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사망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장례방침을 결정하였다. 또 5일 이후에는 독신근로자 조기 귀향조치, 가족농성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출입 차단, 조기장례 실시유도, 강경대응 불가피성 홍보지속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쟁의가 끝난 이후인 22일에는 울산시 지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조업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는 회사 측이 정상조업을 강행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과 농성근로자와 조업근로자의 격리, 관리직 동원과 조업분위기 조성, 현대그룹노조협의회장 소환 및 개입경고, 경찰병력 20개 중대 출근 전 배치 위력시위, 통반장 노인회 동원 순화활동 등이 있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은 1989년 3월 쟁의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 이후 보고 된 자료는 공권력 투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전망과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노조집행부로 하여금 임시 총회를 조기 개최하되 집행부 구성이 어려울 때는 울산시가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가 그룹 차원의 로비를 적극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과 공작은 1990년과 1991·1992년 쟁의에서도 되풀이해서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이 생겨난 민주노조 일반에 대한 지배 개입의 정책 방안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9월 작성된 「소위 민주노조 투쟁 양상 및 관련 대책」 보고서에는 그 전체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안기부는 합동수사단으로 하여금 39개 민주노조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외부불순세력과의 연계여부, 위장취업자 가담·조종여부, 노조설립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법적하자요인 등이었다. 그리고 각종 조치사항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안기부의 민주노조에 대한 개입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선 불법행위 주동자 및 배후 불순세력은 의법 조치하며 노조의 법적 하자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 위장취업자 및 핵심 추종세력은 축출하되 제도권 내 기존노조는 노동부 및 유관기관을 하여금 적극보호 육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노조의 요구는 적극 수렴하여 어용시비를 해소하고(회사), 유관 기관이 나서 기존노조의 구사대 조직 등 대응세력화를 측면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한국노총도 안기부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1988년 11월 9일 한국노총 새 집행부(위원장 박종근)가 ‘노총 혁신과 비민주적 노조 운동 혁신’의 기치를 걸고 당선되자 안기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최근 노총활동 실태와 전망」 보고에서는 한국노총이 향후 혁신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반 집행부의 온건 보수 세력을 활용하여 이를 견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노총 내 과격 급진성향의 인물에 대해서는 순화책임자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의법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1990년 KBS노조와 MBC노조의 파업, 1989년 풍산금속 안강공장 쟁의, 서울지하철노조, 1988년 포항제철노조 등 대사업장

노조나 쟁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보기관의 개입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노협 가입 산하 노조와 대기업연대회의 소속 노조,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안기부의 지배·개입은 노조 와해공작의 대표적인 사례이나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1989년 정부의 강경한 노동억압의 출발점이 된 1989년 1월 4일 풍산 금속 공권력 투입은 검찰·보안사·안기부가 참여한 12월 30일 경북도 지역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대책협의회는 “방산업체 분규의 부당성 및 공권력 투입 불가피성을 홍보 후에 분규상황에 따라 89.1.2 또는 1.4 경찰병력(3000여명)을 투입, 검찰지휘 하에 경찰·노동부 합동으로 불법쟁의행위 주동자 10명을 색출·검거하고 병역특례자 중 극렬가담자는 해고 후에 입영 조치키로 결정”¹⁷⁶⁾하였다. 물론 이 결정은 안기부 본부와 최고 권력기구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988년 7월 강경성향의 노조가 들어선 포항제철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거개입을 통한 온건노조 대의원 확보, 15명의 정보 및 대공형사로 구성된 대응팀 조직, 관련기관 실무협의회 수시개최 등의 방침을 결정하고 실시하였다.¹⁷⁷⁾ 또 MBC 방송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방송 중단도 불사한다는 기본방침 위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안기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은 “비노조원과 온건 노조원을 통해 노조 집행부 책임추궁, 퇴진요구 등 극렬행동에 대한 비리여론을 확산, 강경노조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노조투쟁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사측 및 관계당국자의 언행에 주의, 사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적극 노력”¹⁷⁸⁾할 것 등이었다. 그리고 이 대책은 해당 주무관청인 문공부에 통보되었다.

1989년 서울지하철 파업대책에서는 직권중재, 대체인력투입,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적용할 통제장치들을 전반적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반대

176) 안기부, 「경북도, 풍산금속 안강공장 분규관련 공권력 투입방침」

177) 안기부, 「포항지역기관, 포철노조 견제대책 부심」

178) 안기부, 「MBC노조 파업전망 및 대책」(1992.9).

세력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즉 “수배자 검거이후 노사협상 창구로 노조 내 수습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하면서 온건세력의 참여를 이면 지원”¹⁷⁹⁾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침은 민정당, 노동부, 내무부, 법무부에 통보되었고 대체로 그대로 실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과 노조 내외의 자발적인 노동자 모임에 대해서도 안기부는 개입하였다. 안기부는 이를 ‘사업장 내 불순 서클활동’으로 규정하여 해체하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안기부가 조사한 불온서클 사례에는 포항제철의 민족포철 민주노조 추진협의회, 대우조선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현대자동차 노민추, 한진중공업 백두회, 탄광업체들의 노동조건 개선 추진위원회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사용자들의 견제 방안 마련 촉구, 온건 노조 집행부를 통한 견제, 핵심 주동자 및 배후 지원세력의 위법 행위 포착 및 고발 징계 등이 제시되었다.

바 | 노동운동 단체에 대한 사찰 감시와 사법 처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막론하고 중정·안기부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노동운동 단체에 있었다. 그것은 대체로 이들 단체가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 비해 이념적으로 급진적이었으며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중정과 안기부는 이들 노동운동 단체가 노동자들에게 급진적인 이념을 전파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는 강한 신념 속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정은 1970년대 초반 도시산업선교회의 조직 현황과 구성원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그리고 도산에 대한 감시와 억압은 1980년대 초반 도산 관련 해고자들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10년을 넘어 지속되었다. 1985년 이후 안기부는 당시 기독교 노동운동과 연관되었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나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단체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카톨릭노동청년회와 크리스찬아카데미, 전민노련, 한국노동자복지

179) 안기부, 「서울지하철 파업수습동향 및 향후 대책」(1989.4).

협의회, 서노련과 인노련, 경수노련 등 거의 모든 노동단체들에서 되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산업선교회의 사례와 달리 일부 단체들은 그 활동 내용을 문제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씌워졌고 반국가단체 등 조직 사건으로 확대 조작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1970년대 초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학내 학술연구서클 한맥회 관련자들을 반국가 정부전복을 기도한 것으로 조작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처리한 사건도 넓은 의미의 노동통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을 보면 정보기관의 노동단체에 대한 사찰 감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노동자 교육생들을 접촉하고 교육 내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찰하였다. 당국이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은 주로 교육 이념과 목적, 참여 강사, 민중 등 급진적 사상 전파와 사회주의 이념 성향 여부, 새마을 사업 등 국가 정책에 대한 불만 교육 여부, 주요 활동가들의 친소관계 등 세세한 것이었다. 또 중정은 교육 간사와 실무자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회합의 내용이나 발언 내용, 학습하는 교재 등에 이르는 사항을 모두 체증, 기록해두었다. 이렇게 세세한 사찰과 감시·내사자료는 적당한 시기에 조직 사건을 만드는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다. 결국 온건한 노동자교육활동은 당시 2차 석유파동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저항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1982년 초 이른바 ‘전민련 사건’ 관련 실무회의 자료에서 보면 공안기관의 노동운동 단체에 대한 통제의 전체적 구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전민련 사건에 대해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 비난여론과 구명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치안본부 대공과장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는 치안본부에서 대공과장, 정보3과, 서울시경 제2부국장이, 그리고 문공부에서 종무2과장이 참가하였다. 안기부에서는 담당과장이 참가하여 회의를 주도하였다. 회의에서는 전민련

사건관련 교계동향분석, 교계 문제인물 및 구속자 가족순화 방법과 대상 인물 선정, 대통령에 탄원한 6개 교단의 진정서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결정되었는데 각 기관은 이를 분담하여 맡았다. 경찰은 주로 실무처리에 동원되어 구속자 가족 25명에 대한 동향감시, 경고 차단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 23명과 천주교 강경과 3명에 대한 동향파악, 경고순화도 경찰의 몫이었다. 그리고 교계 지도층에 대한 연고별 분담순화는 안기부, 문공부, 경찰이 나누어 맡았다. 공판대책과 요구수용문제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은 안기부의 업무로 배정되었다. 문공부는 진정서의 고문주장이 사실무근이자 법정투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일 뿐이며 이태복 등 관련자들은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교단 총무들에게 브리핑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0년 전노협 대책에서는 전노협 결성을 지원하였던 사회단체들도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었음이 나타나있다. 당시 30여 개 재야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정밀 감시되었다. 예컨대 「좌경세력의 전노협 선동 및 지원 실태」 자료에는 공동대표가 심포지움에서 행한 발언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 전노협 대책에서는 전노협 자체에 대한 통제 방침과 함께 ‘재야 학원 등 외부세력과의 연계 철저 차단’, ‘노동상담소, 정치학교 등 의식화 학습 행위 엄단’, ‘노동계 침투 지하조직 발본색원’ 등이 대응방안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전노협 와해 공작에서 노동운동 관련 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광범한 수사나 감시가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전노협 지원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였다. 전국노운협은 전노협 출범 이전부터 새로이 생겨난 민주노조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가 단체였으며 지역별 단체를 결집한 전국적 규모를 갖고 있었다.

안기부는 노운협의 조직체제와 규모 등 조직 상황과 핵심 인물의 경력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활동을 추적·감시하는

한편 기관지 ‘노동운동’ 성향을 파악하고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안기부의 평가에 의하면 노우협은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유도하는 급진적 노동운동 단체’이며 ‘민주노조 조직 지도’, ‘대정부 투쟁과 노사분규 배후 선동’,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결속 강화 및 투쟁 선동’, ‘타 계급 계층 정당과의 연대 제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특히 정보당국은 노동운동 내부의 의견대립이나 논쟁의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 노동단체 일부에서 민주정당 건설을 추진한 일에 대해 전국노우협은 민주생존권 투쟁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며 전노협은 지지유보의 입장이라고 판단한 일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국노우협 등 노동조합 지원 단체들은 전노협과 동일한 수준에서 통제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사법처리를 통해 조직을 무력화하거나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9년경 안기부의 자료는 이른바 문제노동단체에 대한 대응의 목적이 한국노총이 민주노조를 흡수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노동권이 합법적 절차를 가장하고 의식화 기도를 할 때에는 강력히 의법 조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 노조협의회가 추진하는 ‘노동자대학’에 대해서는 그 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의식화교육을 강행할 때는 의법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주간노동자신문』에 대해서는 창간시 게재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법 조치 또는 폐간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지원 단체에 대한 대책은 1989년 전교조 대책에서도 대동소이하게 확인된다. 전국 2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원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가두서명, 징계위원회 방해 등 불법 활동이 드러날 때에는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의 ‘교원노조 대학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총·학장을 통해 책임지고 설득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별 육성회, 학부모회 등

대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여론 형성을 꾀하며 여론 매체를 통한 지원 단체의 실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물리적 억압의 실행 : 직접적 인신 구속 및 공권력 투입과 집회 봉쇄

구속과 수배, 제반 공작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납치와 연행, 공권력 투입과 집회 봉쇄 등의 물리적 억압의 실행을 직접 담당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중정이나 안기부가 아니었다. 때때로 안기부 비밀 장소로 노동자나 노동운동가가 연행 또는 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개 직접적 실행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회사 측의 수사대가 실행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 행사의 결정과정에서 중정과 안기부의 판단과 지시가 결정적이었던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쟁의 사업장이나 집회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의 방식과 수위가 결정된 것은 각급 노동대책회의를 통해서였다. 이 회의를 주도한 것은 정보기관이었고 대개 정보기관 본부나 청와대 등 상급 권력기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회의를 통해서 각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던 것이다.

또 물리적 억압의 실행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통제수단들과 연관되거나 종속된 하위 통제수단이었다. 그런 만큼 그것은 여타 통제수단의 실행에서 일반적으로 부수적 통제장치였다. 예컨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나 쟁의 파괴 과정은 최종적으로 공권력 투입이나 인신 구속과 같은 물리적 억압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정 안기부의 노동통제에서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분석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억압적 국가기구 일반이 그러하듯이 이들 기관의 통제력의 바탕에는 물리적 억압이라는 권력자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중정과 안기부의 물리적 행사는 1987년 대투쟁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검찰을 이용한 구속 수배 등 사법 처리를

제외하면 이 시기에는 공권력 투입이나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 봉쇄 등의 사례는 드물었다. 동일방직노조와 YH노조 쟁의, 구로동맹파업과 같이 큰 사안이 있었을 때는 물론 물리력 동원이 이루어졌다. 1980년 9월 안기부는 도산 관계 노동자들의 월례 집회를 사전에 막았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1982년경에는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을 물리력을 동원해 폐쇄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집회나 시위사태가 빈발하자 국가의 물리력 행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풍산금속, KBS,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와 대우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쟁의들은 흔히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때 안기부는 각종 노동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 전노협 결성을 앞둔 1989년 하반기부터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노조들 간의 각종 연대집회가 빈번하였고 공안기관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대책을 실행하곤 하였다.

특히 전노협 결성 대회 등 전노협 주도의 집회에 대해서는 치밀한 원천 봉쇄 대책이 마련되었다. 1990년 1월 22일 결성대회에 대해 안기부는 상경 노동자들을 전국에서 저지하고 행사장으로 예정된 서울대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그리고 당일에는 전국의 주요 도심·국가기관 청사 등에는 시위 예방용으로 대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전국노동자대회 전에는 노동자들의 참가를 막기 위해 지역 사업주와 협의해서 행사 당일 체육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공권력 동원은 직접 파업이나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노동자들, 특히 소극적인 노동자들과 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공안기관은 사용자들의 고소 고발을 미리 유도하여 합법적인 경찰력 투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한편 1987년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나 쟁의 외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억압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1987년 11월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전태일 추모 행사에 대해 관계기관은 집회 장소 불허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고려대학교 주변을 봉쇄한 적이 있었다. 또 모란공원 묘지의 추도식 진행까지도 세밀하게 규제하였다. 특히 이소선, 김영대 등 행사 주관자 12명을 연행하여 격리할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3 중정·안기부의 노동통제 특성과 함의

1961년 이후 약 30년이 넘는 기간에 진행된 중정과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노동문제 개입은 매우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것이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표면화된 단편 사례들을 기초로 그 개입의 정도와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또 직접 수사를 받거나 통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하는 방식으로 대강을 짐작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었다.

앞서 자세하게 고찰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세간의 추론과 추측이 대체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중정과 안기부는 중요한 노동쟁의나 사건에 관여하였고 권위주의 국가권력이 선호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 주요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의 간부들은 항상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던 민주노조들을 협조주의 노조 또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과 수배 조치, 사건 조작이나 공작, 노조 와해 공작, 공권력 투입 등 억압적 조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직접 처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 반도상사와 동일방직노조 쟁의에 대한 개입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권위주의시기에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노동통제 전반을 주도하고 기획한 최상위 권력기구일 것이라는 추측도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였다. 정보기관이자 최고 권력자가 가장 신임하는 국가기구로서 중정과 안기부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종합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부나 내무부·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정보는 정보기관에 의해 종합되었다. 이는 중앙 수준에서건 지역 수준에서건 동일하였다. 심지어 필요할 경우 중정과 안기부는 기업이나 기업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업 내부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반 노동대책회의라는 공식·비공식 국가기구를 구성하고 제도화한 것은 이런 위상이 객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대책회의는 1988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기능은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비공식적 기구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도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 기구는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대책회의(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공안합동 수사본부라는 노동관련 협의기구의 성격과 내용은 권위주의시기 노동통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정과 안기부는 형식적으로 노동대책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대외적으로 회의를 대표하고 주관한 기관은 노동부나 검찰이었고 실행 기관은 경찰이나 노동부 및 관련 정부 부처들로 되어 있었다. 정보기관의 역할은 대체로 정보 제공과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두 기관의 역할은 공식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들 기관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하였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정부기관들에 각기 역할을 분배하여 지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최상위 노동통제기구로 여타 정부 부서를 통괄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 등 최고 권력기관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제반 국가 부처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시기 전반에 걸쳐 중정·안기부는 가장 중요한 노동통제기구였으나 그 내용은 시기 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성격 변화, 그리고 국가 권력 및 국가정치의 성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변화는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61년에서 1970년까지의 첫 시기에 중정의 노동문제 개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노동 관련법 개정과

한국노총 조직체제 구축은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의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노조 간부나 노동운동을 감시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 한국노총 내 일부 노조 간부들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을 때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시기는 전태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수의 민주노조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유신 전후 학생과 재야 그리고 종교단체 중심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어 그 영향이 노동운동에 강하게 미쳤던 시기였다. 민주화 운동이나 반정부투쟁으로부터 권위주의 정권을 방어하는 핵심적 기구였던 중정은 노동운동을 반정부운동과 분리하는 데 통제의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잠재적 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치의 정치적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불란한 유신체제의 딜레마는 생존권 요구조차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반공과 경제성장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는 정권으로서는 노동운동을 그 두 가지 정당성의 결절 점에 위치한 핵심적인 통제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민주노조에 대한 내사나 수사는 흔히 도시산업선교회나 학생운동 단체 등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되었다. 국가당국의 이와 같은 노동문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연발생적이고 소박한 생존권 요구는 흔히 체제에 도전하는 반정부운동이나 외부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인지되거나 조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동일방직과 반도상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중정의 민주노조에 대한 감시·사찰 그리고 각종 대책들은 매우 조밀하고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주노조들은 쉽게 그

성격이 바뀌거나 활동이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 국가 권력은 1980년대 후반과 같이 대규모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범정부적 노동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구속 수배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정이 시도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생존권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불만은 보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노동통제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노조에 대한 통제에 국한되었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두더지잡기 놀이에 비유할만한 것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외부세력들은 게임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요소였지만 중정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주연배우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국가정치의 위기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중첩된 국면에서 발생한 생존권 투쟁, 곧 YH무역의 쟁의는 한 번에 국가권력 전체를 무너뜨리는 촉발요인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시기는 억압적 배제체제에서 국가의 노동 억압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국가는 노동법을 개악하거나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속속 도입하여 민주노조의 성립이나 쟁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또 1970년대의 민주노조들을 각개 격파하여 더 이상의 자주적인 노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중정에서 이름을 바꾼 안기부는 1980년대 전반기 동안 강화된 통제 체제 하에서 민주노조의 활동이나 쟁의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표면적으로 쟁의는 다시 줄어들었고 1970년대와 같은 민주노조의 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4년 대구 택시노동자들의 시위를 전환점으로 해서 1985년에는 대우자동차파업과 구로동맹파업과 같은 보다 조직적이고 폭발적인 쟁의가 발생하였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이 두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보다 조직화되고

급진적인 쟁의였으며 중화학공업 대공장에서 발생한 투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안기부가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나 급진적 노동운동단체의 통제에 주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시기에 안기부는 구로동맹파업 등 주요쟁의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통제력을 보여주었다. 또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산재했던 위장취업자들을 색출하고 사업장에서 축출하는데 집중하였다. 또 그 수가 작지 않았던 1970년대 민주노조 세력의 영향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였다. 민주노조와 쟁의를 엄격히 통제하고 1,000명이 넘는 위장취업자를 파악해내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억압적 노동통제의 딜레마 자체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다. 억압적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봉인되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기본권 요구는 정치적 민주화 국면에서 폭발하였다. 3저 호황의 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민주화와 중첩된 상황조건은 1979년의 상황과 크게 대비되었다. 그렇지만 국가 권력의 억압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봉쇄할 수 없었다는 본질적 조건은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대투쟁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시기부터 안기부의 노동통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안기부는 노동자대투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 두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3,300건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전국적 쟁의였기 때문이다.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5공 국가권력의 대응 방식은 이전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안기부는 대규모 쟁의의 주요한 원인을 여전히 외부세력의 개입에서 찾았으며 합동수사본부는 그 증거를 수집하고 사례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대응은 과거의 억압전략에 연원하는 관성적인 것이었으며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

8월 중순 이후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수사로 사태는 급속하게 진압되었으나 결과는 이전과 달랐다. 많은 수의 민주노조들이 대투쟁의

결과로 생겨났고 특히 대사업장이 조직화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1987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안기부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 더 활발히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통제의 대상은 동시에 수 백 개의 노조로 확대되었고 개별 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나 상급노조도 포함되었다. 쟁의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강력한 쟁의가 빈발한 점이었다. 또 1980년대 전반에 노동운동에 뛰어든 수 천 명의 학생 출신 활동가들이 공개적인 단체를 구성하였던 바 이들도 주요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막강한 통제 효력을 발휘했던 안기부의 개입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었던 국면에서 통제의 정당성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안기부 노동통제전략의 기본 틀은 상당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노태우정권 말기까지 국가기구 내부에서 안기부는 노동통제의 기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했으며 제반 사안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매개로 반공이데올로기와 억압적 통제장치들을 동원하는 통제방식은 확대된 규모로 재생산되었다. 또 전노협 와해대책에서 나타나듯이 민주노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적 목표도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1989년의 공안정국과 공안합동수사본부 운용, 1990년 전노협 와해대책 수립과 실행, 1991년 대기업연대회의 해체 등 커다란 사안들에서 전통적인 통제 전략은 되풀이되었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다만 통제의 규모가 훨씬 커져 대규모 공권력 동원이 필요했으며 통제의 결과나 효과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와 함께 새로이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나 법과 질서 이데

올로지 등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는 해계모니적 배제전략의 요소들이 이 시기에 새로이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1987년 이후 안기부의 노동문제 개입은 대체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우선 민주노조를 해체하거나 와해한다는 목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컨대 현대중공업노조처럼 노조지도부를 거의 구속하거나 사업장에서 격리하여 쟁의를 진압했으나 다시 새로운 민주노조가 성립하는 문제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는 전노협 와해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하반기부터 1991년까지 집중된 억압적 통제로 전노협 조직자체는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1991년 이후 대기업 연대회의 등 대사업장 노조와 업종별 사무직 노조, 전노협 중심의 제조업 민주노조가 연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최소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마저 봉쇄하고 노사협력주의를 강요하는 억압적 통제는 전노협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안기부의 개입은 1995년 말 민주노총 결성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서 안기부의 억압적 노동통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노동통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점은 민주화 이전 시기의 억압적 통제와 결정적으로 구별되었다. 1987년 이전의 억압은 권위주의 국가정치의 조건에서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그것은 6공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잠식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자유화되기 시작했던 시민사회는 낡은 방식으로 억압을 지속하던 정부의 통제를 비난하고 민주노조와 연대하였다. 또 ILO,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정치적 압력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결국 끊임없이 국가권력에 패배했던 민주노조운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국가억압의 구조적 문제점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체제라는 독특한 모순구조를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정·안기부의 노동억압은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민주노조라는 독특한 성격의 독립노조운동이 발생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서구의 노동 연구자와 노동운동가들이 주목하였던 대표적인 제3세계 노동운동 중 하나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은 크게 약화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발전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와 국내의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은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등이었다. 노조를 조합원 의사대로 운영하며 사용자나 국가 등 외부의 지배개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특성이었다. 또 일본 기업 노조와 같이 기업단위 개별노조의 자족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연대를 확대하는 성질을 주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주노조의 속성들은 중정과 안기부의 노동통제방식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 통제의 핵심적 요소였던 기업별 노조체제의 강제와 관련된다. 앞서 보았듯이 중정과 안기부는 노조가 외부와 연계되거나 연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외부는 노동운동 지원단체이든 다른 노조나 상급노조이든 마찬가지였다. 결국 민주노조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때 현격한 역량 격차를 경험하게 된다.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의 지지와 협력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전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구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노조는 사업장 내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대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것은 ‘민주성’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자주성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억압적 통제의 산물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노조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개입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사용자의 전횡과 저임금 장시간 체제를 묵인하는 노사협조주의 이념을 강요하였던 바, 그 결과 어용노조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 사용자와 협조주의노조 그리고 국가 권력이 결탁해서 유지했던 이 어용

노총 체제에 대한 반발이 민주노조를 발생시키고 유지한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연대성 또한 국가억압의 직접적 산물이었다. 1970년대까지 느슨하게 나타났던 민주노조 간 연대는 1980년대 이후 기업별 노조가 강제조항으로 도입되고 국가억압이 극도로 강화되는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1985년의 구로동맹파업이었다. 여기서 나타난 모델은 1987년 대투쟁에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되었고 이후 1989년 이후 국가억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안착했던 것이다. 그것은 결국 개별노조로서 압도적으로 강력한 국가 억압을 막을 수 없다는 대중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중정과 안기부의 억압적 통제는 역설적으로 민주노조들 간의 강한 연대정신을 확산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IV 결 론

본 진실위의 노동분야 조사활동 목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동조합 운동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노동 통제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과거 중정·안기부는 법적 권한 여하를 막론하고 정보수집 및 조정활동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노동 통제와 개입을 한 측면이 있다.

중정·안기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은 청와대·노동부·검찰·경찰·보안사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동대책회의나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노동문제를 다루어왔다. 당시의 대책방안에 의하면 중정·안기부가 노동운동을 국가안보 또는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노동문제에 대응해 왔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중정·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수집과 조정활동실태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비민주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던 통제의 실상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진실위에 주어진 제한된 활동시간과 자료,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보안문제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중정·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개입·통제의혹을 국정원 보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동안 의혹만으로 제기되어 왔던 중정·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정활동 실태를 국정원이 보유한 문서를 통해 확인 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사례 중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평가와 분석 등은 그 자체가 훌륭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보고서에 다루어진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정활동에 대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사건들의

단면일 뿐 아니라 알려진 사안 중심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국정원 내부 문서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한된 시간과 접근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위가 조사활동을 통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정·안기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조정활동을 통하여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체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온 사실을 국정원에 보존된 문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정활동을 통한 노동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노동계 재편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노총 상층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총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하는 민주노조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계 활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내사·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보·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고 확대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같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소위 ‘조직사건’을 통해 노동운동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행위가 일부 있었고 기소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과 확대해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과대 포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정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을 확대 홍보함으로써 아카데미의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넷째, 중정·안기부는 일부 개별 사업장 및 활동가에 대해서 물리력을

포함한 다양한 순화·견제·포섭활동을 실시하거나 노조 등 노동운동 조직에 대한 와해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산업평화저해 불순노동운동’에 의한 외부세력 차단 명분 하에 기업·노동부·경찰 등의 상호 정보교류 속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동향감시 및 재취업 제한조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등 회유 전략을 통해 민주노조 사업장과 주요 활동가에 대한 감시·사찰 등 조직와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1989년 청와대에서 있었던 전교조 대책문건과 국정원 보유 문서를 보면 전교조 문제를 공안대책 차원에서 다룬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탈퇴공작을 추진하고 복직교사나 신규임용교사들에 대해 대학 재학 중 시위주도 전력이나 불순단체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책을 제안하고,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와 홍보방안 등 주요대책을 제시하면서 조직확대 방지, 조직탈퇴 등을 목표로 정부정책 실현에 앞장서 왔다.

여섯째, 안기부는 전노협·대기업연대회의 등 범외노동단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과 지침을 마련하여 유관부서에 지속적으로 통보하면서 추진 작업을 점검하고 관여하였다. 또한 국정원 보유문서에 의하면 전노협 탈퇴 홍보를 위해 한국노총을 통해서 각종 신문에 확대보도를 요청하고,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에 기자회견 촬영분을 지정 날짜에 방송하도록 하는 등 언론홍보를 통한 조직탈퇴 및 와해 활동을 추진하였다.

일곱째,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해 위장취업자·임투 대책 등 노동정책을 조율하였고, 주도적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노동문제에 깊숙히 개입하였으며 노동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노사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노동 운동 위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사실도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중정 및 안기부 등 국가정보기관이 정부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를 정권의 위기상황 및 체제 도전으로 인식, 노동운동을 불순세력의 지원에 의한 체제전복활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개입·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중정·안기부 시절 국가수반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사용하여온 과정에서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국가정보기관 내부의 조직팽창욕구와 오랜 활동관성에 따른 경직된 사고가 노동개입을 관행화해온 측면도 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정치 · 사법편(Ⅳ)

● 언론 · 노동편(Ⅴ)

● 학원 · 간첩편(Ⅵ)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언론 · 노동편 (Ⅴ) —

편 집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 국가정보원

발간일 | 2007년 10월 10일